

2017

분야별 전문교육 자료집

목 차

IT 3종 셋트

PPT	1
엑셀	25
카드뉴스	69

회계·세무

비영리 회계의 이해	89
공익법인 세무	159

철학

절대세계와 상대세계의 사이에서	197
나쁜 나라, 좋은 나라 / 일상과 원칙 사이에서	211

보고서·보도자료 작성법

보고서 작성법	219
보도자료 쓰기	241

인권

인권국가는 어떻게 가능 한가	261
역사로 보는 인권, 인권으로 보는 역사	291
예민해도 괜찮아	303
경찰, 그리고 검찰 개혁, 왜? 어떻게?	311

헌법

헌법은 무엇인가?	335
헌법은 무엇이어야 하나?	477
합의제 원리와 목표	505

모금

후원개발에 대한 이해	521
후원개발을 위한 마케팅 기획	527
다양한 후원개발 아이디어	569
후원자 조사 및 개발	603
후원에 힘을 더하는 메시지 개발	617
후원개발 기획 프로세스 소개	649

IT 3종 셋트

PPT

김세나(퍼티위즈 강사)

IT3종 교육 셋트 참고자료

PPT 디자인 편(1주차)

CONTENTS DIRECTOR SSEN



프로그램부터 켜지말것
시작은 기획입니다



많이 볼수록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이해하기_디자인 원리



CONTRAST

Unique elements in a design should stand apart from one another. One way to do this is to use contrast. Good contrast in design adds visual interest and makes it easier for the viewer's eye to flow naturally.

By the way, you can use design to create contrast in your design.

COLOR

TONES/VALUE

SIZE/SHAPE

DIRECTION

대비

- 색상 대비, 명도&정도 대비, 크기 대비, 방향 대비 등
- 차이를 확실하게 주어서 강조하는 것
- 여러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REPETITION

Repetition adds consistency to a design. It's a simple concept, but it's a powerful one. By repeating elements, you can create a sense of unity and rhythm.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you're working with a complex design.

The more you repeat, the more consistent your design will be.

반복

- 같은 색, 같은 서체, 같은 위치 등을 반복
-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만들 수 있다

주요주선내용

주요주선내용

주요주선내용

주요주선내용

ALIGNMENT

Alignment is a key principle of design. It's all about how elements are arranged on the page. Good alignment makes a design look clean and professional. It's a simple concept, but it's a powerful one.

정렬

- 가장 중요한 개체를 중심으로 정렬한다
- 피워포인트의 맞춤 이용하기

PROXIMITY

Proximity allows for visual unity in a design. It's all about how elements are grouped together. Good proximity makes a design look organized and easy to read. It's a simple concept, but it's a powerful one.

근접

- 내용상 관련 있는 개체들은 가깝게 배치
- 관련성이 적은 개체들은 거리가 먼 곳에 배치



서울 지식재산 Hub 코팅 구축

2014 우수

찾아가는 지식재산컨설팅 확대

인사이드아웃

발견과 혁신

대표인력



디자인 이해하기_바꿀 수 있는 것들



경쟁사 대비 매출현황

단위:억\$

	2010	2013	2016
A사	13	25	28
B사	12	18	30
본사	10	30	45



디자인 이해하기_바꿀 수 있는 것들



경쟁사 대비 매출현황

단위: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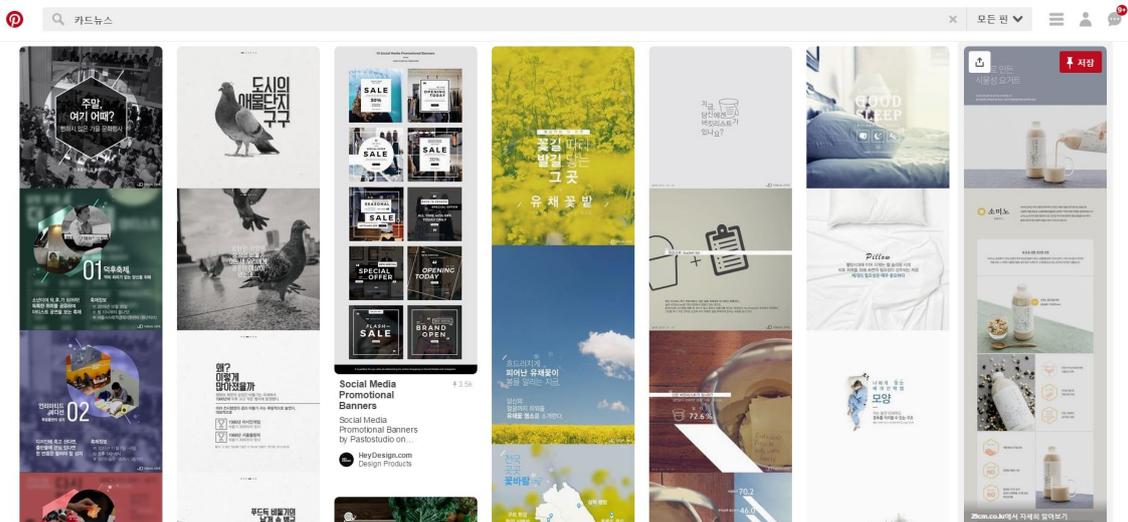
	2010	2013	2016
A사	13	25	28
B사	12	18	30
본사	10	30	45



많이 볼수록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pinterest.com

이미지 참고에 좋은 사이트
'카드뉴스', '인포그래픽'등을 검색하면
참고할 디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구성요소



색을 참고할 이미지를 찾으면 파워포인트2010버전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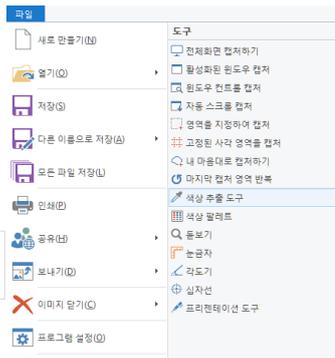


<http://ngwin.com/kr>
포털 사이트에서 '픽픽' 검색

★ 페이지 상단의 다운로드탭을 이용해 설치
[색상 추출도구] 이용 원하는 색 클릭
RGB 값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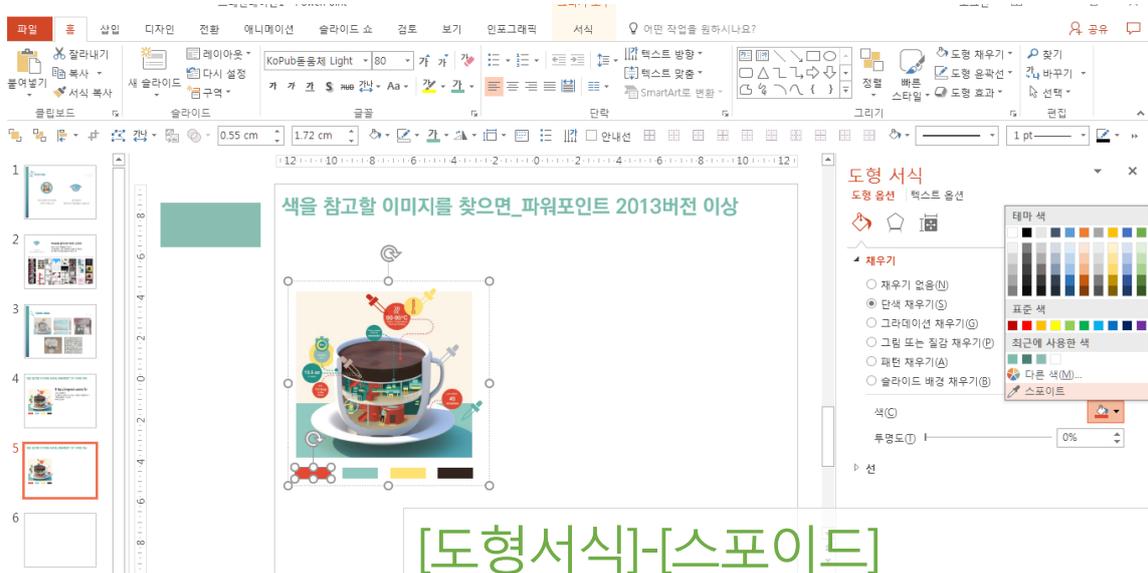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도형서식-다른색-RGB 값 입력

픽픽
색상추출도구



파워포인트
도형서식-다른색

색을 참고할 이미지를 찾으면 파워포인트2013버전이상



[도형서식]-[스포이드]

이미지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삽입 - 색을 채울 도형 그리기
 -[도형서식]-[스포이드] 선택 - 원하는 색 클릭

찾아볼만한 서체들

<p>KoPub 돌움체 B KoPub 돌움체 M KoPub 돌움체 L KoPub 바탕체 B KoPub 바탕체 M KoPub 바탕체 L</p> <p>한국출판인회의 다운로드 : www.kopus.org</p>	<p>나눔 고딕 EB 나눔 고딕 R 나눔바른 고딕 B 나눔바른 고딕 R</p> <p>네이버 다운로드 : www.naver.com</p>	<p>성동고딕 EB 성동고딕 B 성동명조 B 성동명조 R</p> <p>성동구청 다운로드 : www.sd.go.kr</p>	<p>정고딕 170 정고딕 150 정고딕 110</p> <p>한국전자출판협회 다운로드 : www.kepa.or.kr</p>
<p>바른 돌움체 Pro1 바른 돌움체 Pro2 바른 돌움체 Pro3</p> <p>한국출판인회의. 무료, 배포가능? www.kopus.org</p>	<p>뫼비우스 B 뫼비우스 R</p> <p>SK 웹테크 다운로드 : www.tworid.co.kr</p>	<p>서울 남산체 EB 서울 남산체 M 서울 한강체 EB 서울 한강체 B</p> <p>서울특별시 다운로드 : design.seoul.go.kr</p>	<p>고도체 B 고도체 M</p> <p>고도 소프트 다운로드 : www.godo.co.kr</p>
<p>제주고딕체 제주 한라산체</p> <p>제주특별자치도 다운로드 : www.jeju.go.kr</p>	<p>10X10 B 10X10 R</p> <p>텐비엔 다운로드 : www.10x10.co.kr</p>	<p>다음체 Semi Bold 다음체 Regular</p> <p>다음 다운로드 : www.daum.net</p>	<p>아리따체 B 아리따체 M 아리따체 L</p> <p>아모레 퍼시픽 다운로드 : www.amorepacific.com</p>

찾아볼만한 서체들_KoPub체

커리큘럼

<http://www.kopus.org/biz/electronic/font.aspx>

- 인포그래픽의 이해**
 - 실무에 쓰이는 인포그래픽의 이해(배색부터 그래픽까지)
 -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는 인포그래픽 디자인 방법
- 나만의 인포그래픽 기획하기**
 - 주제 선정부터 컨셉, 스케치까지 단계별로 기획하기
 - 필요한 내용 파악, 제대로 된 표현을 위한 인포그래픽 스케치하기
-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한 파워포인트 셋팅**
 - 빠른 그래픽 제작을 위한 파워포인트 사용법/슬라이드 셋팅
 - 그래픽 작업을 위해 알아둬야 할 기능들
-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한 그래프, 아이콘 만들기**
 - 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그래프의 종류와 사용
 - 파워포인트 도형으로 그래프 제작하기
- 인포그래픽 제작 멘토링**
 - 수강생 개인 제작 인포그래픽 멘토링

찾아볼만한 서체들_포천막걸리체

(포천시청-포천시소개-포천의상징물)

<http://www.pcs21.net/pocheon/sub/pocheonSub.do?key=2582>

카미노 데
산티아고



찾아볼만한 서체들 나눔바른펜

BOOK REVIEW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논리가 쌓이면 마법이 생긴다
마법의 디자인
사카모토 신지 지음 김경균 편역 우음지



CONTENTS DIRECTOR SSEN

찾아볼만한 서체들 해수체

커리큘럼

<http://blog.naver.com/koreamof/120199897671>

디자인 이해하기
복사와 붙여넣기가 더 편했던 나를 위해

1hr
파워포인트 디자인 사례분석
핀터레스트로 스크랩 북 만들기

파워포인트 실습
빠르게, 제대로 파워포인트 쓰는 법

1hr
빠른 작업 팁과 메뉴 익히기
1hr
도형 다루기와 그래프 만들기
1hr
텍스트와 이미지 편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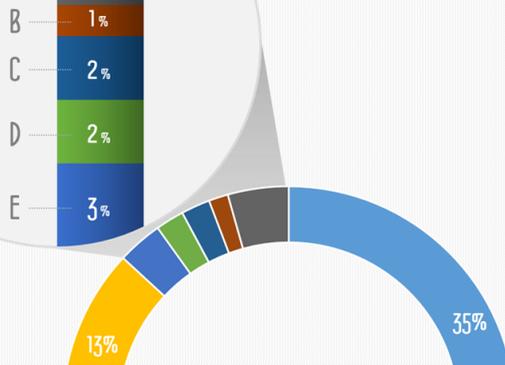
슬라이드 디자인
본격 작업 시작하기

1hr
내용 분석과 기획 하기
1hr
슬라이드 작업 실습

좀 더 나아지는 파워포인트
그래프 확대로 데이터 강조하기

(영문&숫자)

<http://fontsov.com/download-fonts/concursomodernebtnlt37434.html>



 슬라이드의 구성요소 도식화(다이아그램)



1. 생각나는 대로 쓴다

기존의 검증된 아티스트 위주의 공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접하고 싶어하는 관객들에게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인디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제공합니다.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특성을 살리고 각 콘텐츠간의 콜라보 공연을 라디오 방송이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진행합니다. 관객들이 공연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아티스트들에게도 관객과 소통할 기회, 아티스트들 사이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인디문화의 활성화와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서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구성요소 도식화(다이아그램)



2. 소리내어 읽으며 짧은 문장으로 완성한다

기존의 검증된 아티스트 위주의 공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접하고 싶어하는 관객들에게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인디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제공합니다.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특성을 살리고 각 콘텐츠간의 **콜라보 공연**을
라디오 방송이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진행합니다.
 관객들이 공연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아티스트들에게도 **관객과 소통할 기회**,
 아티스트들 사이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인디문화의 활성화와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서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구성요소 도식화(다이아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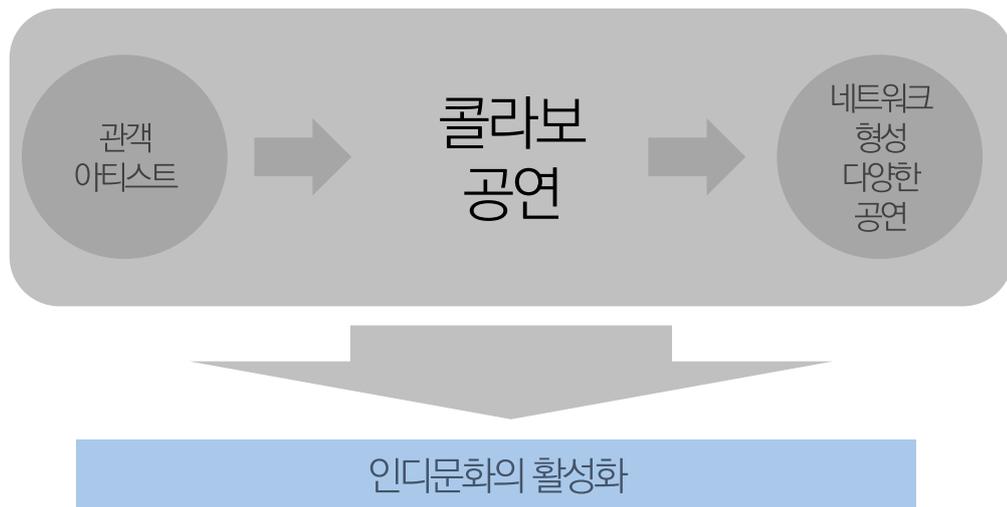


3. 단어만 추출, "관계 있는 것" 끼리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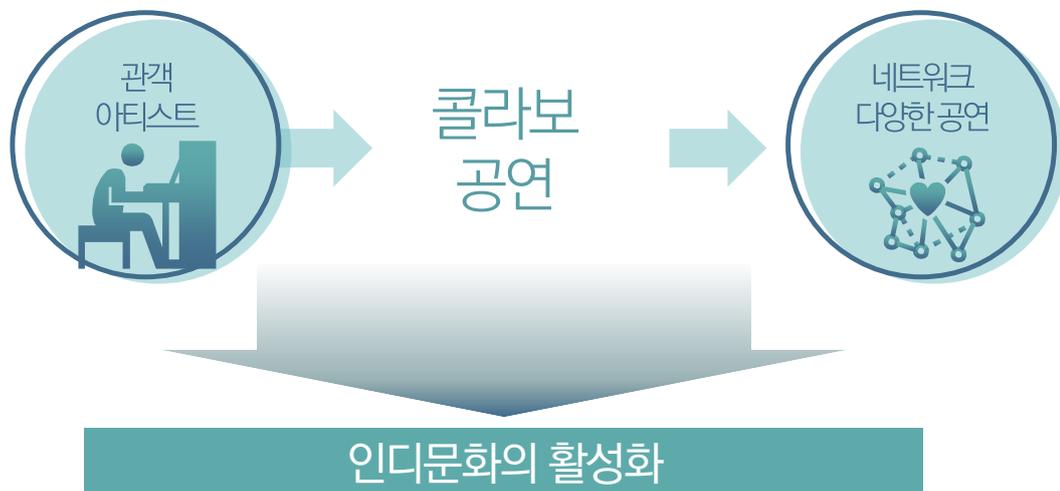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것을 접하고 싶어하는 관객들 인디 아티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남 콜라보 공연 라디오 방송이라는 하나의 컨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객과 소통할 기회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공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문화의 활성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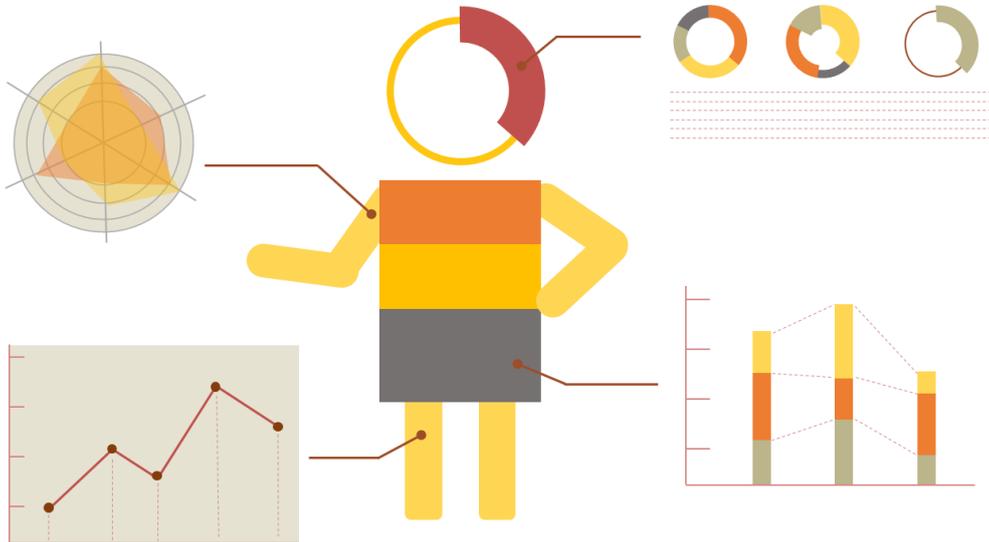
4. 그룹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 도식화 한다



4. 그룹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 도식화 한다



슬라이드의 구성요소 그래프



IT3종 교육 세트 참고자료

PPT 디자인 편(2주차)

CONTENTS DIRECTOR SSEN

파워포인트 작업법_빠른 작업팁

1 빠른 실행도구 모음 Alt키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필요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텅 비어있는 슬라이드에서 바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색이나 레이아웃 배치를 참고할만한 이미지를 먼저 찾아보는 작업을 해보세요

3

4 관찰은 이미지들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스크랩하거나 파워포인트로 따로 만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배색이 좋은 자료의 경우 「픽픽」이나 파워포인트의 [도형채우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1~2% 정도 색을 고른 후 이 색보다 좀 더 진하거나 연한 색을 골라 사용합니다.

다이어그램(Diagram)은 문서 사색의 배열을 말하는데, 특히 문서 또는 출판적 기호를 중심으로 한 2차원적 표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는 인쇄물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종이 화면이 아닌 PC도 많이 사용되어 구별적인 그래픽 디자인 장치를 가리키고 일련의 디자인의 용어에 많이 쓰이는 말도 있다. 즉, 일련의 디자인 분야에서는 컬러 사색, 글자 배치, 여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현재 다이어그램의 영역은 매우 방대하며,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전 분야에 두루 응용되고 있다. 다이어그램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활자 조판과 사색 디자인
- 핸드 라인과 컬러 그래픽
- 그래픽 디자인과 전인 교차
- 포스터 디자인과 표시판과 발판의 같은 다른 대형의 글자체
- 비디오텍스 커뮤케이션과 부수적인 프로덕션
- 광고
- 문자 상징과 사색적 로고(마크업)

안내선 사용하기 [보기] 탭의 안내선 메뉴나 슬라이드 위에서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눈금 및 안내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위아래에 적당한 안내선을 그려서 개체들을 맞춰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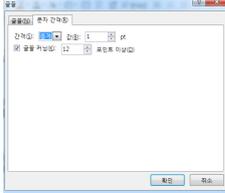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킬 텍스트 효과적으로 편집하기

맑은고딕, 18pt, 자간 : 보통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맑은고딕, 18pt, 자간 : 좁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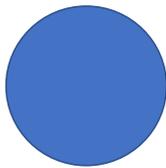
Enter로 줄 구분하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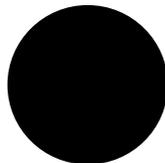
Shift+Enter로 줄 구분하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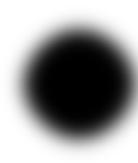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킬 그림자 그리기(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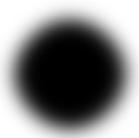
[삽입]도형>원을 그립니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정원을 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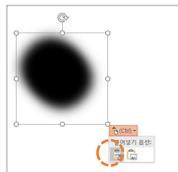
도형 위에서 오른쪽 단추 클릭-
[도형 서식]-채우기 색을 검은
색으로 변경합니다(다른 색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설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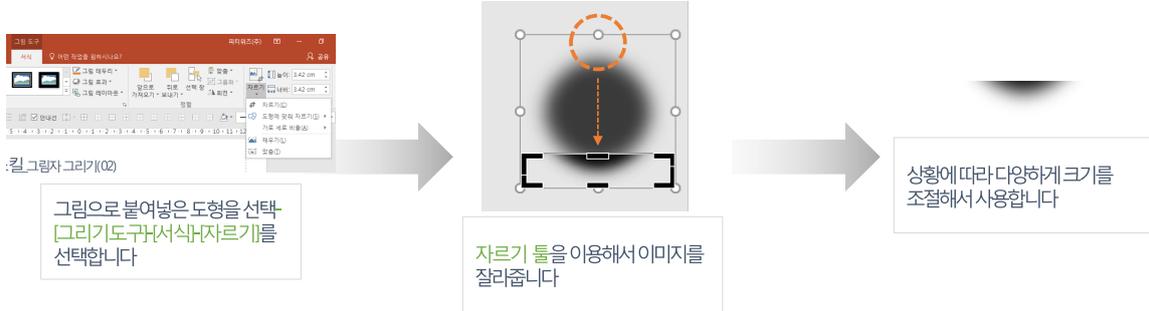


Ctrl+C를 눌러서 이미지를 복사
Ctrl+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옵션-[그림으로 붙여넣기]
를 선택합니다

파워포인트 스킬 그림자 그리기(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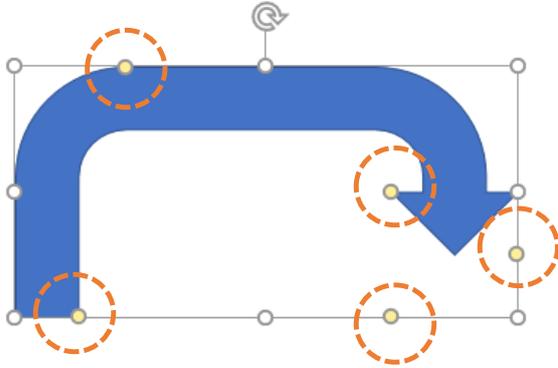
사용 예)



파워포인트 스킬 화살표 편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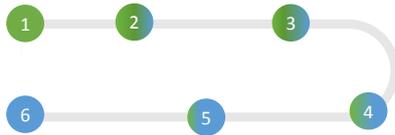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킬 화살표 편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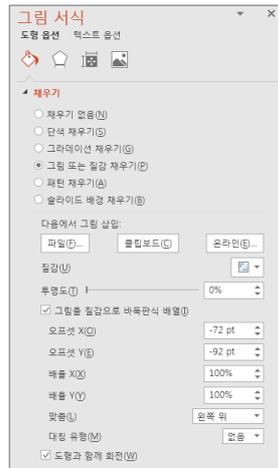


화살표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예)



파워포인트 스킬 사진 편집하기



파워포인트의 삽입>그림을 이용해 사진을 삽입하면 슬라이드에 어울리게 사진을 편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미리 스케치를 하거나 생각한 대로 미리 도형을 이용해 위치를 잡아 놓고 **채우기-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이용해서 도형을 사진으로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사한 이미지는 **클립보드**에 사진 파일이 있는 경우는 **파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위치나 비율은 **오프셋**과 **배율**에서 조정해 보세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기획 하기

서비스업 생산 규모보다 고용인원 높기 때문
 "전문 서비스업 기업 육성·정부 지원제도 개선해야"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일본의 7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5만1401달러였다.
 이는 미국 10만1470달러의 절반, 일본 7만2374달러의 7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문 서비스기업 육성,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정부 지원제도 개선 등의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각화 계획 세우기_그래프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5만1401달러였다.
 이는 미국 10만1470달러의 절반, 일본 7만2374달러의 71% 수준에 불과하다.



시각화 계획 세우기_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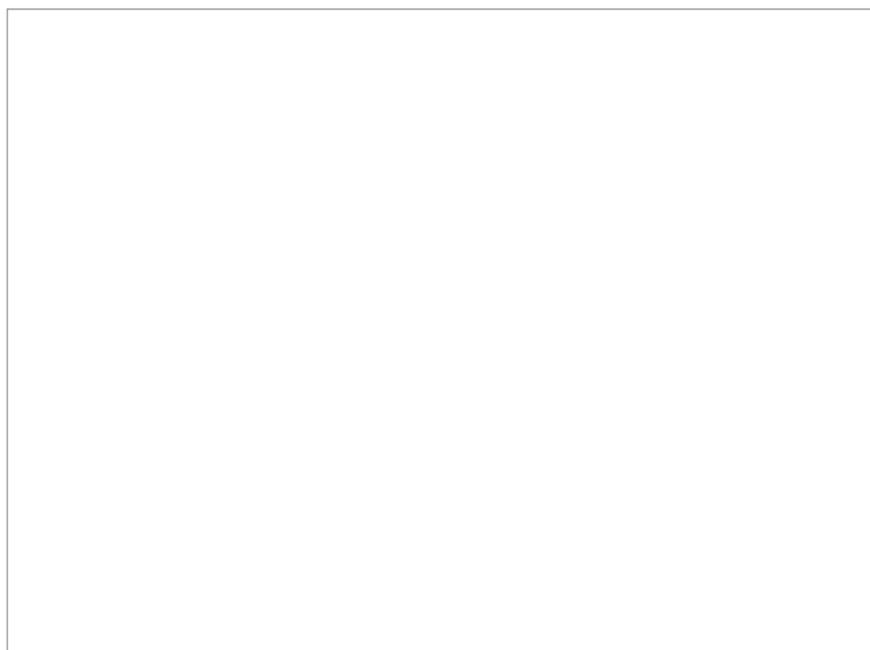
50	146	247	241
111	208	116	240
234	80	22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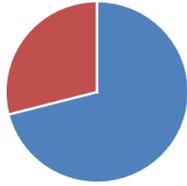
14	229	238
143	232	127
147	155	37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스케치 하기_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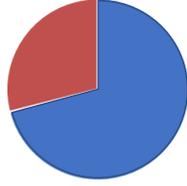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킬_파이 그래프 그리기



원하는 비율의 파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Ctrl+C Ctrl+V [붙여넣기 옵션의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원본은 슬라이드 밖으로 치우거나
지웁니다



[삽입]>[도형]>[부분 원형]을
삽입합니다
Shift 키를 이용해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이 유지합니다

도형 양쪽의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
원하는 비율에 맞춰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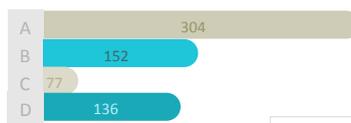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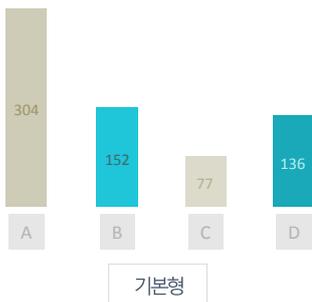
이 그래프의 경우
[그리기 도구 서식]>[정렬]>[회전]을
이용해 좌우 대칭으로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다양한 서식을 이용해서 컨셉에 맞게
정리해줍니다

도형을 그릴 때는 맞춤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정렬>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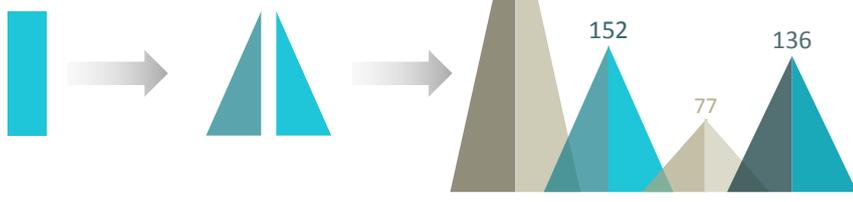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킬_막대 그래프 그리기



방향전환&도형모양변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래프 그리기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차트 삽입으로 그래프 그리기
-그림으로 붙여넣기>도형으로 따라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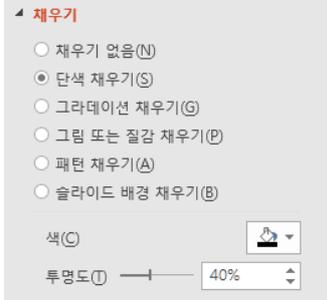
기본형으로 그린 도형은
[그리기 도구 서식]>[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을 통해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형모양변경(직각삼각형>개로 변형)

파워포인트 스킬 투명도 이용하기

도형의 투명도를 이용해서
사진 위에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텍스트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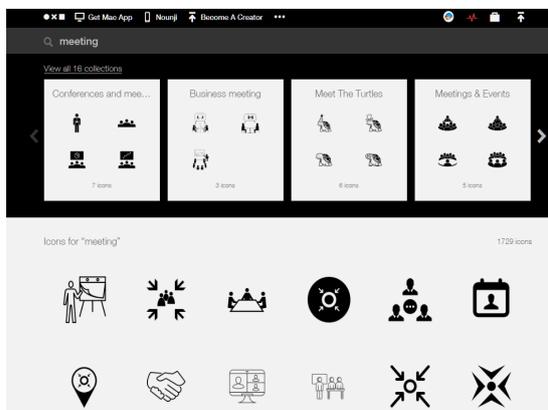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킬 픽토그램이 필요할 때

thenounproject.com

다운받은 SVG 파일을 변환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검색어+sv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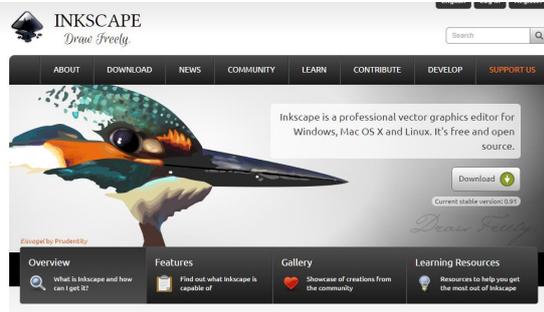
구글 사이트에서
원하는 아이콘 + svg 를 검색하면
픽토그램 파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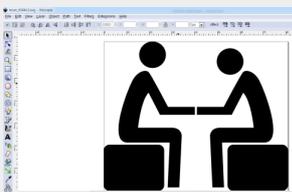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킬 픽토그램이 필요할때

<https://inkscape.org>

다운받은 SVG파일을 변환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잉크스케이프 사용법



SVG 파일 불러오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emf] 지정



파워포인트 삽입
-그룹 해제(Ctrl+Shift+G) 해서 사용

파워포인트 디자인 실습

겨울맞이 안구건조증 예방하기

안구건조증 : 눈물샘의 기능 저하로 눈물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는 질환이다.

주로 눈물 생성기관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발병한다.

증상으로는 눈이 시리거나 뻑뻑하고 자극, 이물감 등이 느껴지고 충혈이 자주 되거나 시야가 뿌옇고 겹쳐보인다.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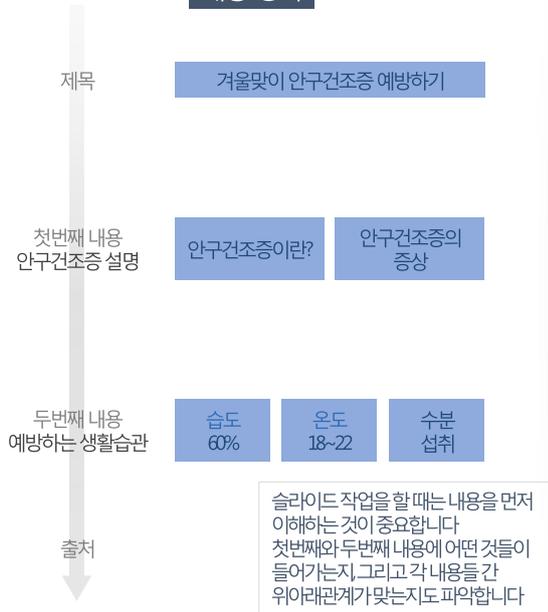
- 실내의 습도를 60%이상으로 유지
- 실내 온도는 18~22
- 수시로 물을 마신다

출처 : 2016.12.26 건설경제, '안구건조증, 왜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할까?'

경희대학교 병원 김응석 교수

파워포인트 디자인 실습

내용 정리



스케치



내용정리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스케치합니다

1. 슬라이드 비율에 따라 사각형을 그립니다
2. 내용이 어디에 배치될지 정합니다
3. 내용을 시각화 할 방법을 정합니다

예) 텍스트, 사진, 일러스트, 그래프, 픽토그램 등

스케치 단계에서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시도해 보세요. 머릿속에 가능성이 많을 수록 작업시간은 의외로 줄어듭니다

IT 3종 셋트

엑셀

정다운(캐치업 대표)



비영리 활동가를 위한 엑셀강좌

-1회차-

강사
정다운

강사 소개

- 이름 : 정다운
- 전 (주) 나우테크 품질보증과 반장 (회사 전체 업무시스템 엑셀 자동화)
- 전 비영리컨퍼런스 TEDxDaejeon 총괄 디렉터 및 회계 담당
- 전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팀장
- 실무 엑셀 경력 10년차
- 엑셀 매크로활용 프로그래밍 경력 9년차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KM, (주)나우테크, 삼성SDS, SK하이닉스 등 다수 기업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수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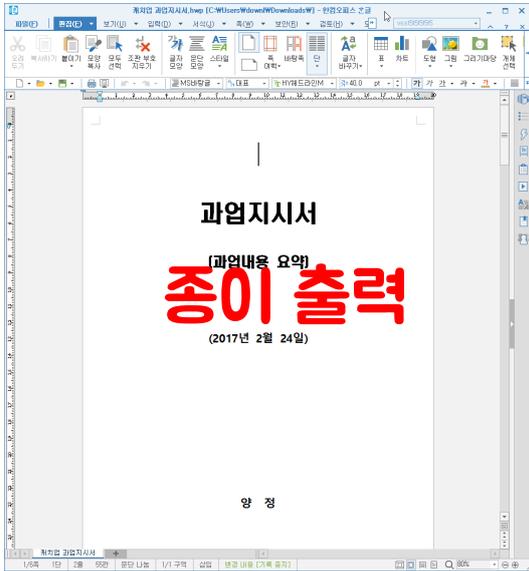
초급 - 중급

비영리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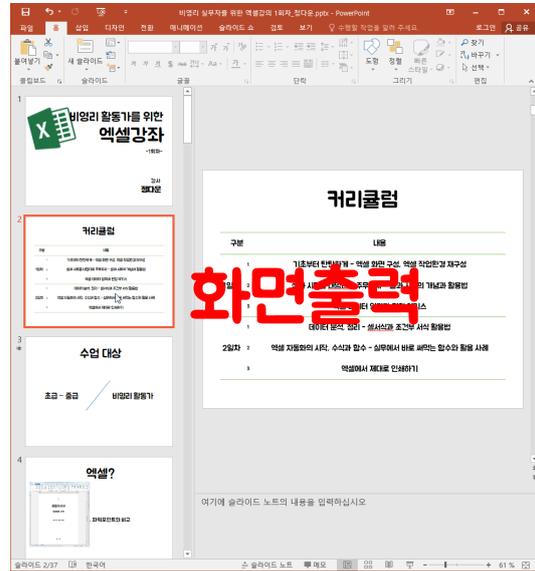
커리큘럼

구분	내용
1일차	1 기초부터 탄탄하게 - 엑셀 화면 구성, 엑셀 작업환경 재구성
	2 셀과 시트를 내맘대로 주무르자 - 셀과 시트의 개념과 활용법
	3 엑셀 데이터 입력과 편집 엑기스
2일차	1 데이터 분석, 정리 - 셀서식과 조건부 서식 활용법
	2 엑셀 자동화의 시작, 수식과 함수 -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함수와 활용 사례
	3 엑셀에서 제대로 인쇄하기

엑셀?



워드(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1	A	B	C	D	E	F	G	H	I	J
2		사업명	계정과목	구분	내역	수입	지출	날짜		
3		일반운영	회의비	수익	사업계획 팀회의		36,000	01월 04일		
4		회비 및 후원	지급수수료	수익	CMS보증보험 갱신 수수료		59,550	01월 05일		
5		일반운영	교육관련비	수익	공육비(공익활동보고회 참가)		20,000	01월 05일		
6		일반운영	회의비	수익	사무국 전체 회의비		5,500	01월 06일		
7		일반운영	회의비	고유목적	사무국 주간회의 진행 다과		5,000	01월 08일		
8		일반운영	여비교통비	고유목적	사무국 신년회식 이동		5,000	01월 08일		
9		회원과회 만남	회의비	후원금	다과비		3,000	01월 12일		
10		일반운영	여비교통비	후원금	아근교통비		5,400	01월 12일		
11		회비 및 후원	후원금수입	후원금	1월 정기회비 및 후원금	750,000		01월 26일		
12		일반운영	집대비	후원금	선물용 화분 구입비		150,250	01월 25일		
13		일반운영	복리후생비	후원금	아근식대		6,500	01월 25일		
14		회비 및 후원	후원금수입	후원금	1월 정기회비 및 후원금	750,000		01월 26일		

출력 < 데이터 처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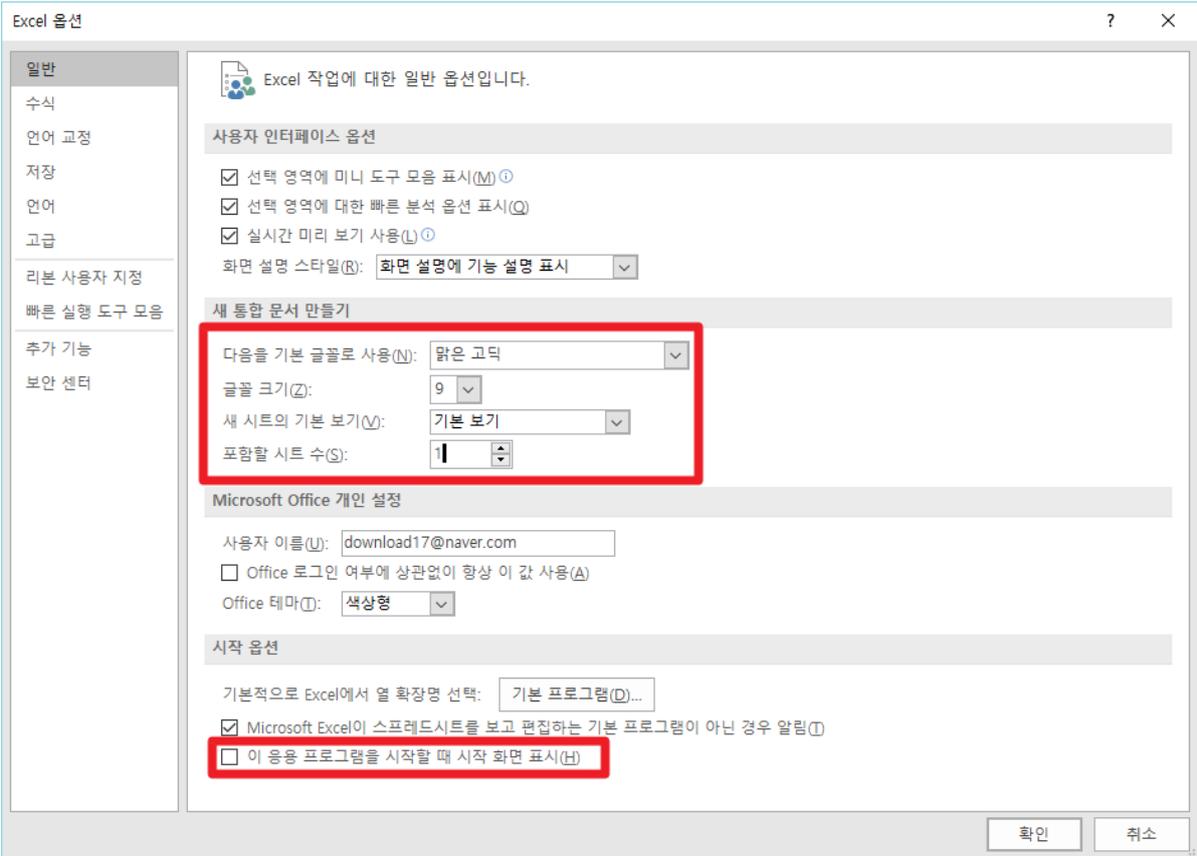
엑셀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5가지

1.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때
2. 계산 작업이 필요 할 때
3. 함수를 써야 할 때
4.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 때
5.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

엑셀 작업환경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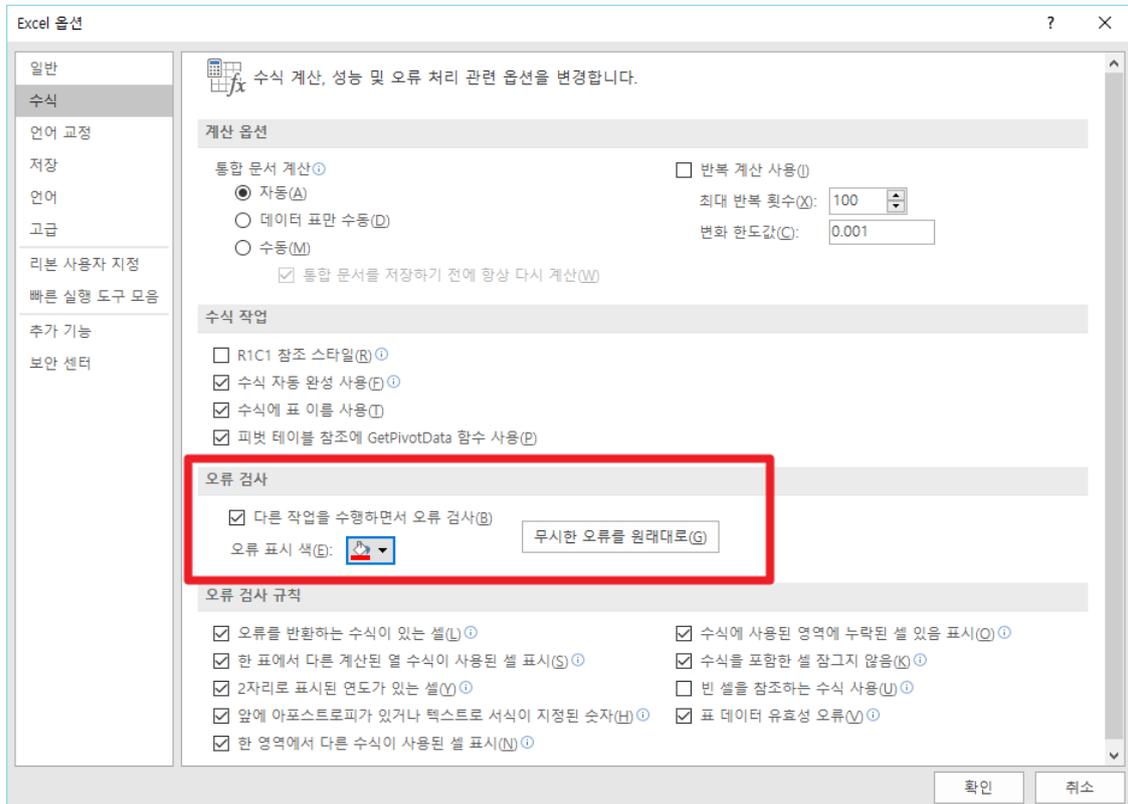
사용자 기본환경 설정

경로 : [파일] 탭 - [옵션] -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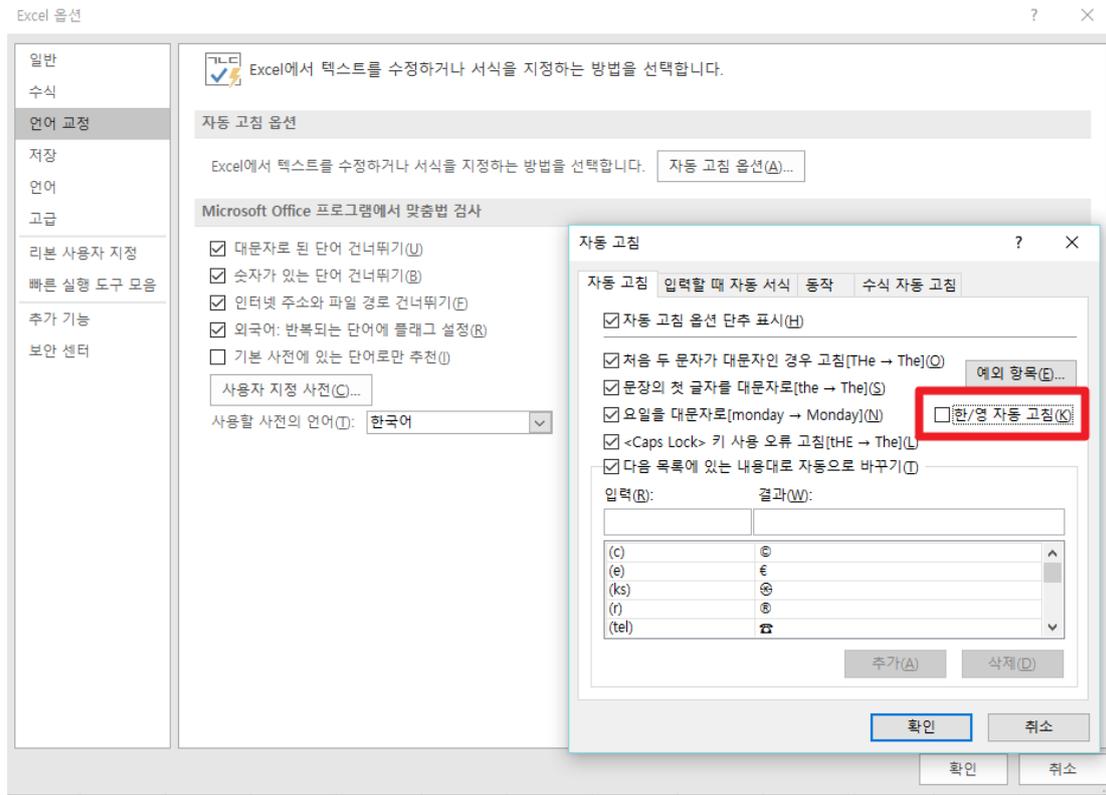
사용자 기본환경 설정

경로 : [파일] 탭 - [옵션] - [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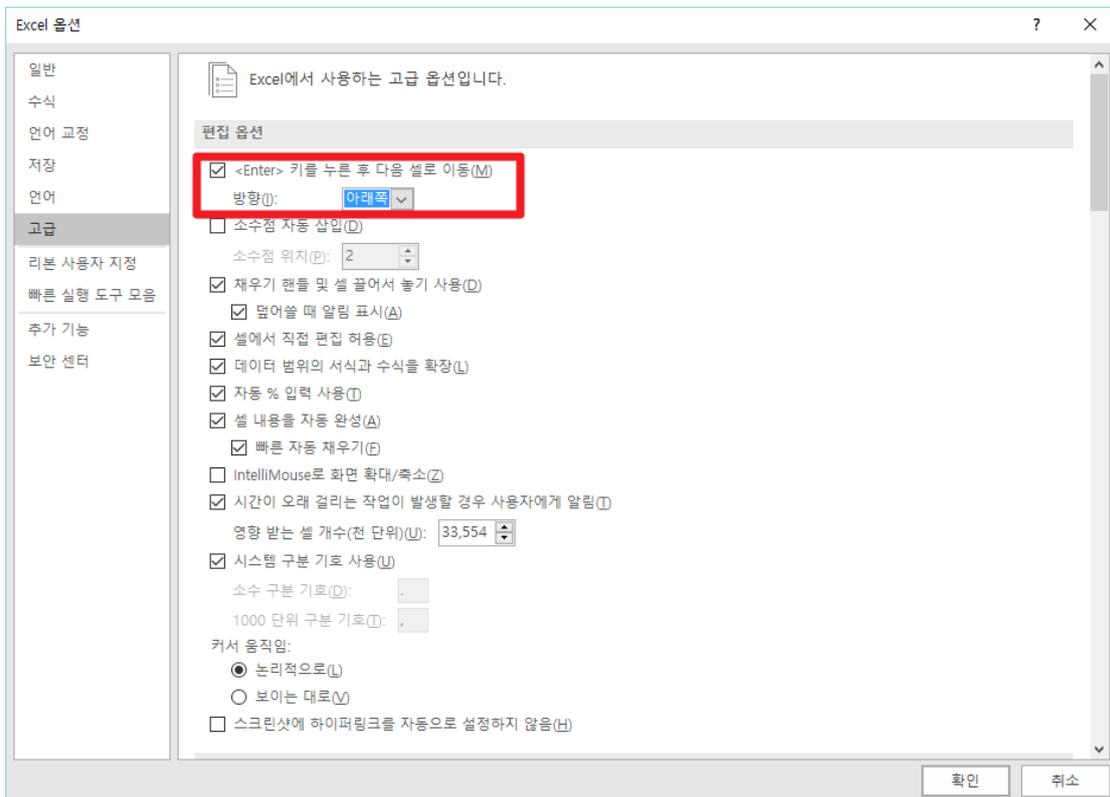
사용자 기본환경 설정

경로 : [파일] 탭 - [옵션] - [언어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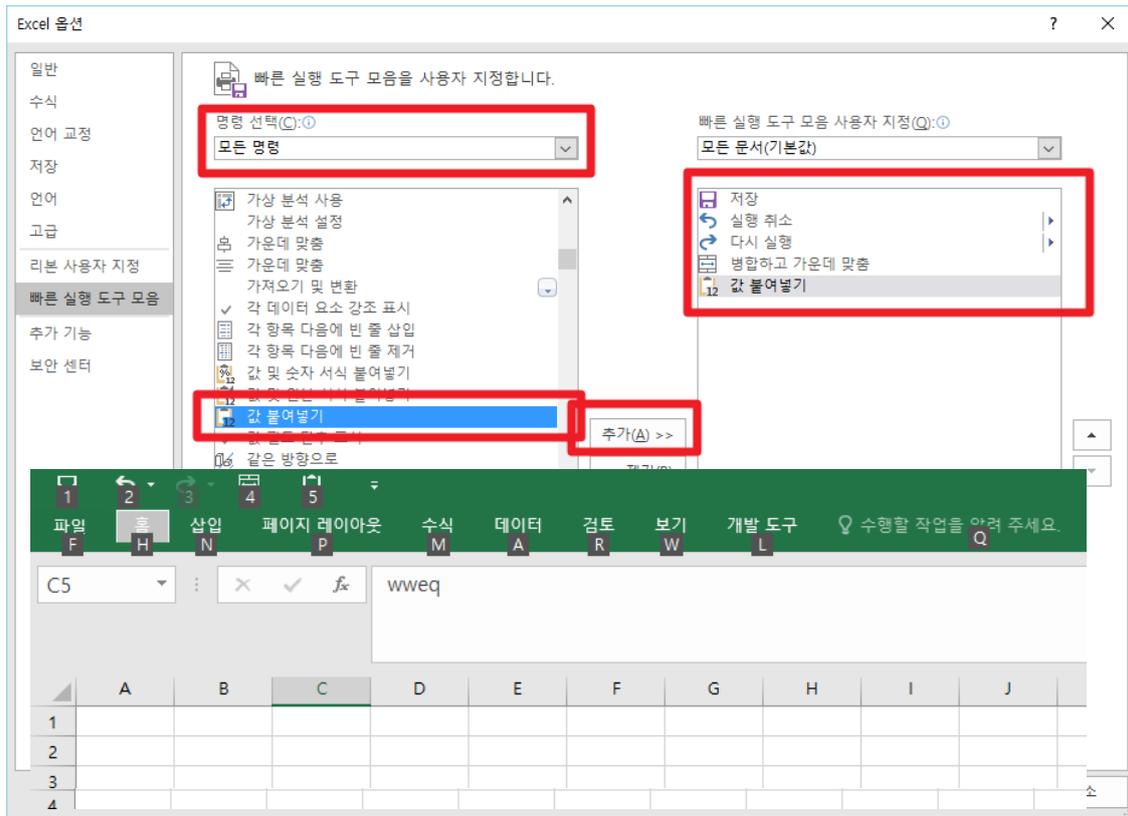
사용자 기본환경 설정

경로 : [파일] 탭 - [옵션] - [고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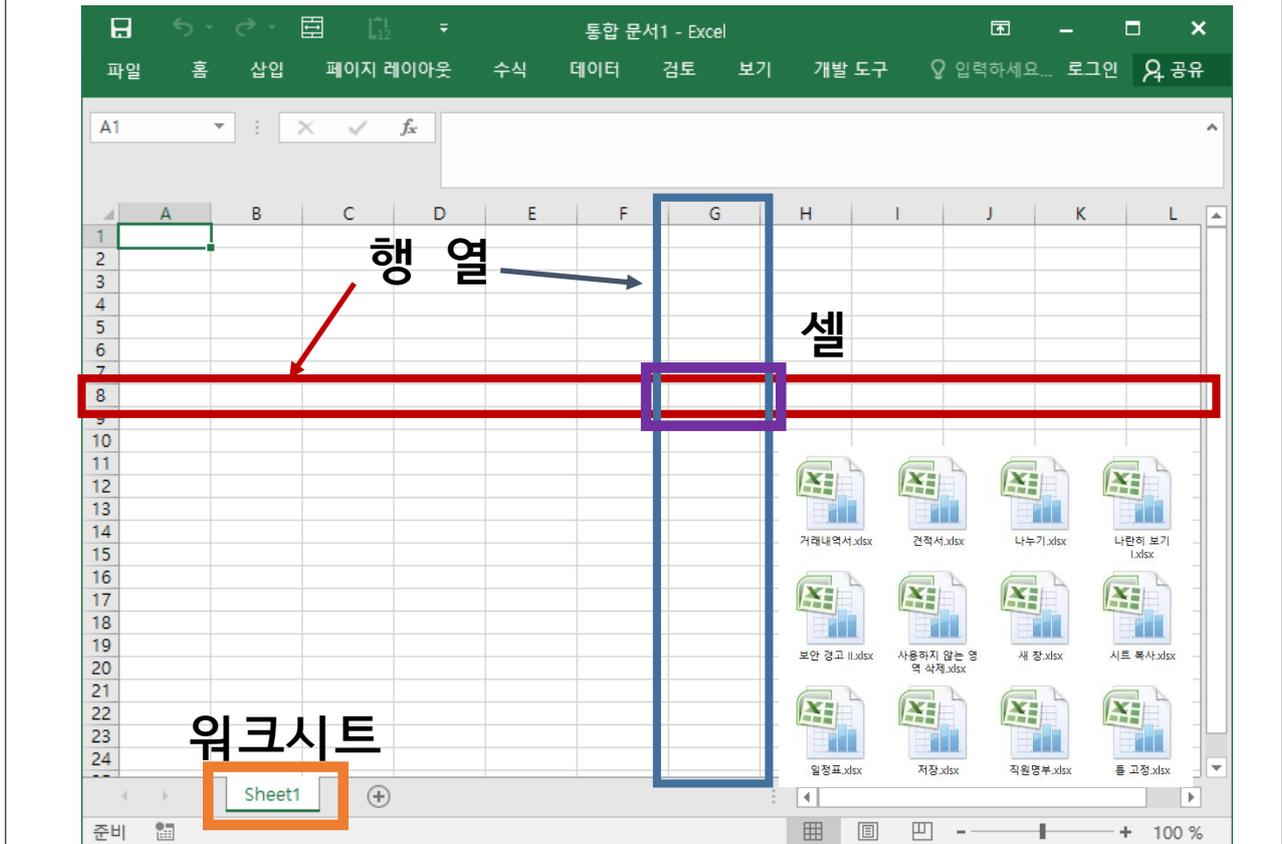
사용자 기본환경 설정

경로 : [파일] 탭 - [옵션] - [빠른 실행도구 모음]



엑셀의 기본 구조

엑셀의 기본 구조



데이터 입력하기

데이터 입력하기 - 기본



	A	B	C	D	E	F	G	H	I	J
1	회원번호	이름	지역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생년월일	후원시작일	후원년수	핸드폰
2										
3										
4										
5										
6										
7										
8										
9										
10										
11										
12										

빠른입력

Tab : 오른쪽 셀 선택

Enter : 아래 셀 선택

Shift + Tab : 왼쪽 셀 선택

Shift + Enter : 위쪽 셀 선택

	A	B	C	D	E	F	G	H	I	J	K
1	회원번호	이름	지역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생년월일	후원시작일	후원년수	핸드폰	
2											
3											
4											
5											
6											
7											
8											
9											
10											
11											
12											

Only

Tab & Shift + Tab

회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별	나이	생년월일	후원시작일	후원년수	핸드폰
1	김덕훈	730219-1234567	서구	남	45	1973-02-19	2001-05-14	16년 1개월	010-5486-6840
2	안정훈	800304-1234567	유성구	남	38	1980-03-04	2005-10-17	11년 7개월	010-5525-5586
3	김소미	821208-2134567	서구	여	36	1982-12-08	2005-05-01	12년 1개월	010-4102-1345
4	윤대현	830830-1234567	유성구	남	35	1983-08-30	2009-04-01	8년 2개월	010-5844-6365
5	최소라	890919-2134567	대덕구	여	29	1989-09-19	2009-05-03	8년 1개월	010-3444-1234
6	김찬진	830702-1234567	중구	남	35	1983-07-02	2006-10-17	10년 7개월	011-255-2255
7	오영수	900529-1234567	동구	남	28	1990-05-29	2010-01-02	7년 5개월	010-2266-3664
8	선하라	880109-2134567	유성구	여	30	1988-01-09	2010-03-05	7년 3개월	010-4115-1234
9	유가을	860127-2134567	서구	여	32	1986-01-27	2011-11-15	5년 7개월	010-2555-6682

데이터 입력하기 -레코드관리



회원명부 시트

사번	이름	직위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생년월일	입사일	근속년수	핸드폰
1	김덕훈	부장	730219-123456	남	45	1973-02-19	2001-05-14	16년 1개월	010-5486-6840
2	안정훈	과장	800304-123456	남	38				
3	김소미	사원	821208-213456	여	36				
4	윤대현	대리	830830-123456	남	35				
5	최소라	사원	890919-213456	여	29				
6	김창진	대리	830702-123456	남	35				
7	오영수	사원	900529-123456	남	28				
8	선하라	사원	880109-213456	여	30				
9	유가을	사원	860127-213456	여	32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새 기록 만들기, 열기, 저장, 전자 메일, 빠른 인쇄,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맞춤법 검사,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오프자손 정렬, 내림차순 정렬, 터지/마우스 모드, 기타 명령(M)...

직원명부 대화 상자: 사번(A), 이름(B), 직위(E), 주민등록번호(G), 성별(O), 나이(I), 생년월일(K), 입사일(M), 근속년수(O), 핸드폰(Q), 새 레코드, 새로 만들기(N), 삭제(D), 복원(R), 이전 찾기(B), 다음 찾기(N), 조건(C), 닫기(L)

데이터 입력하기 -여러줄 입력

여러줄 입력

Alt + Enter

행 구분선 더블클릭

자동으로 줄 나누기

회원번호	이름	지역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생년월일	후원
1	김덕훈	서울	730219-123456	남	45	1973-02-19	
2	안정훈	경기	800304-123456	남	38		
3	김소미	충청	821208-213456	여	36		
4	윤대현	전라	830830-123456	남	35		
5	최소라	경상	890919-213456	여	29		
6	김창진	충청	830702-123456	남	35		
7	오영수	전라	900529-123456	남	28		
8	선하라	경상	880109-213456	여	30		
9	유가을	전라	860127-213456	여	32		

셀에 여러 줄로 나누기 대화 상자: 셀에 여러 줄로 나누기

자동으로 줄 나누기 대화 상자: 자동 줄 나누기

데이터 입력하기 - 날짜와 시간



	A	B	C	D	E
1					
2		데이터 형식	표시	입력	
3		날짜	42,005		
4		시간	0.5		
5					

홈 - 표시형식

	A	B	C	D	E
1					
2		데이터 형식	표시	입력	
3		날짜	2015-01-01		
4		시간	오후 12:00:00		
5					

홈 - 표시형식 - 간단한 날짜
홈 - 표시형식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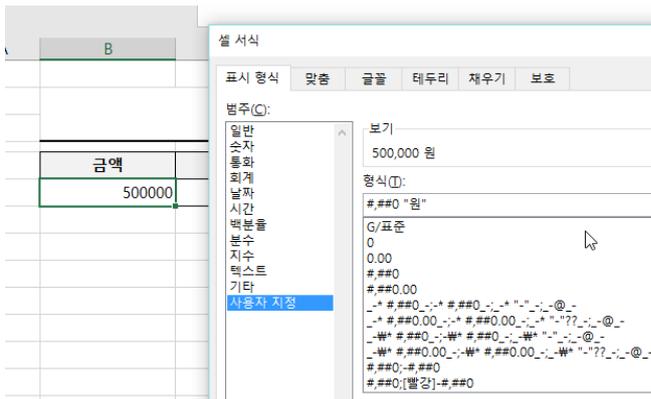
입력해보기!

D3 : 2015-01-01
D4 : 오후 12:00:00

Ctrl + ;

Ctrl + Shift + ;

데이터 입력하기



표시형식 사용자 지정

Ctrl + 1

사용자 지정

#,##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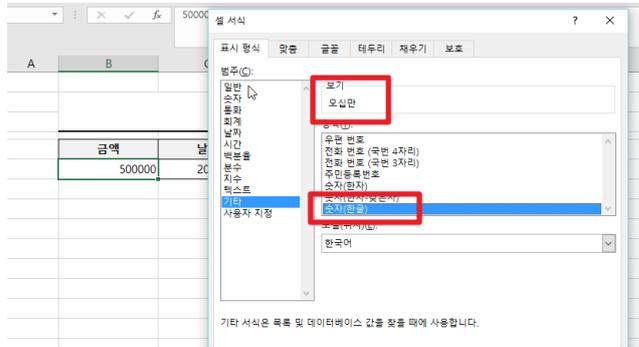
숫자 서식 코드

###,###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합니다.

###,###.00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값을 표시하는데 소수점 이하 값이 없으면 '0'을 반환합니다.

0% 숫자를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데이터 입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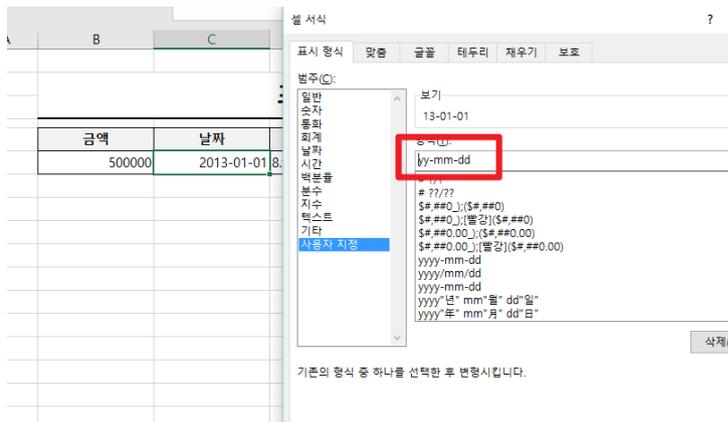
숫자를 한글로

Ctrl + 1

기타

숫자(한글)

데이터 입력하기



Ctrl + 1

사용자 지정

yy-mm-dd

서식 코드

yy-mm-dd

연도를 두자리로 표시합니다.

m"월"/d"일 "

월과 일을 슬래시(/)로 구분하며, 날짜 단위를 표시합니다.

데이터 입력하기



표시형식(서식코드)

표시 형식(서식 코드)

날짜	주민등록번호	시간
2013-01-01	8.90615E+12	9:15 AM

Ctrl + 1
기타
주민등록번호

Ctrl + 1
사용자 지정
h:mm AM/PM

데이터 입력하기



표시형식(서식코드)

서식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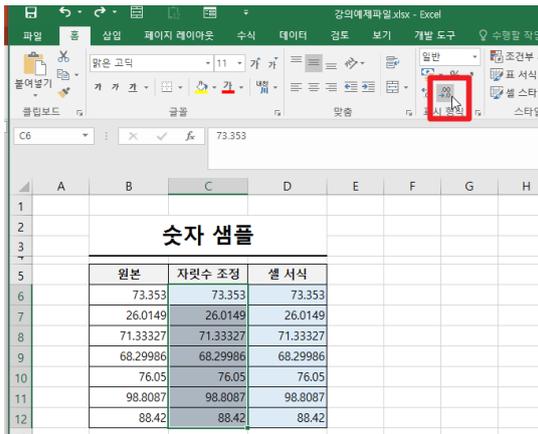
번호	시간	텍스트
2	9:15	엑셀

Ctrl + 1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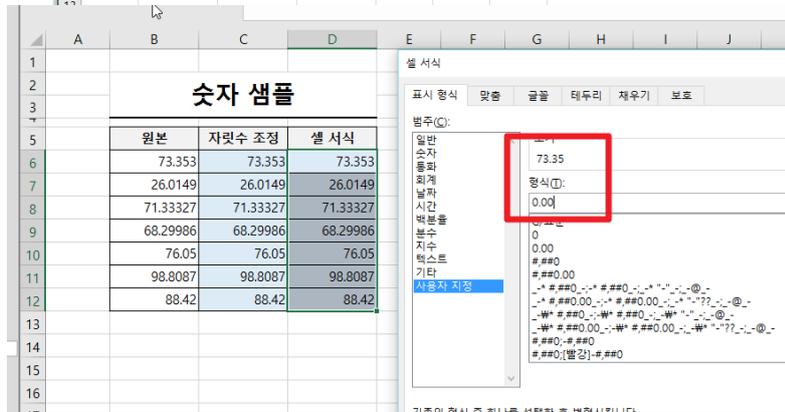
데이터 입력하기



소수점 이하 자리 맞춤
시트



홈 - 표시형식 - 자릿수 줄임



Ctrl + 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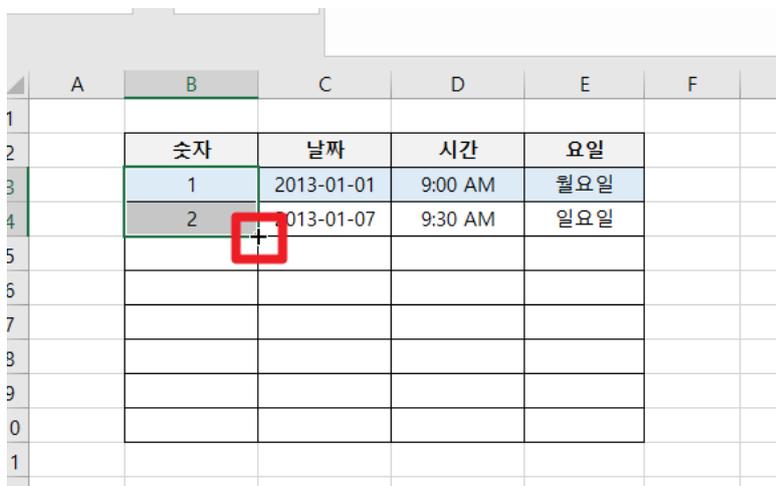
0.00

데이터 입력하기



자동채우기 시트

자동 채우기 기능



데이터 입력하기



빠른 채우기 기능

Excel ribbon showing the '데이터' (Data) tab and the '빠른 채우기' (Fill) button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spreadsheet below shows a table titled '직원 명부' (Employee List) with columns for '사번' (ID), '이름' (Name), '직위' (Position), '입사일' (Start Date), '연' (Year), and '월' (Month). The '연' column for the first row contains '2001' and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사번	이름	직위	입사일	연	월
1	김덕훈	부장	2001-05-1	2001	
2	안정준	과장	2005-10-1		
3	김소미	사원	2005-05-0		
4	윤대현	대리	2009-04-01		
5	최소라	사원	2009-05-03		
6	김찬진	대리	2006-10-17		
7	오영수	사원	2010-01-02		
8	선하라	사원	2010-03-05		
9	유가을	사원	2011-11-15		

데이터 입력하기



셀 값 일부 바꾸기

Excel spreadsheet showing a table titled '바꾸기 예제' (Change Example) with columns for '주민등록번호' (Residence Registration Number) and '전화번호' (Phone Number). The '주민등록번호' colum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 '찾기 및 바꾸기' (Find and Replace) dialog box is open, with '찾을 내용' (Find what) set to '-1*' and '바꿀 내용' (Replace with) set to '-1*****'. The '모두 바꾸기' (Replace All)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720401-1442889	(02) 344-9876
720801-1304789	(031) 422-5432
881201-2705567	(02) 912-1234
720301-1337688	(032) 322-3456
850801-2393302	(051) 542-7890
750501-1494181	(031) 733-4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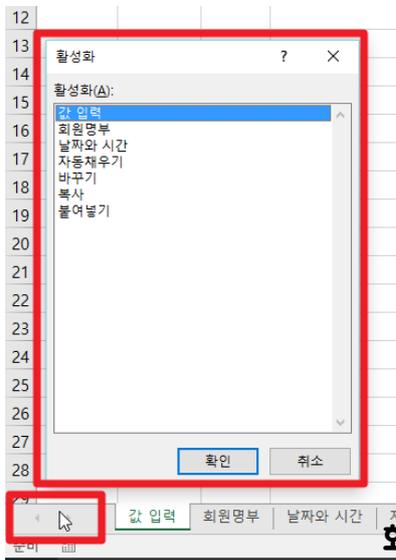
단축키 - Ctrl+h

Excel spreadsheet showing the same table as above. The '주민등록번호' colum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 '찾기 및 바꾸기' (Find and Replace) dialog box is open, with '찾을 내용' (Find what) set to '(*)' and '바꿀 내용' (Replace with) set to an empty field. The '모두 바꾸기' (Replace All)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720401-1442889	(02) 344-9876
720801-1304789	(031) 422-5432
881201-2705567	(02) 912-1234
720301-1337688	(032) 322-3456
850801-2393302	(051) 542-7890
750501-1494181	(031) 733-4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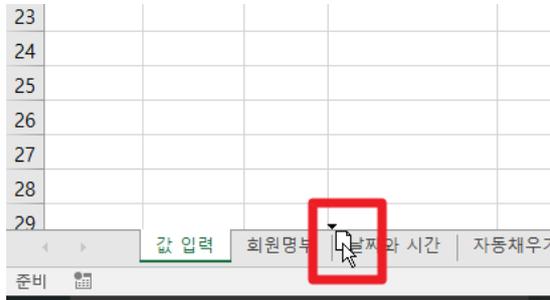
셀, 행, 열과 시트 편집

시트 선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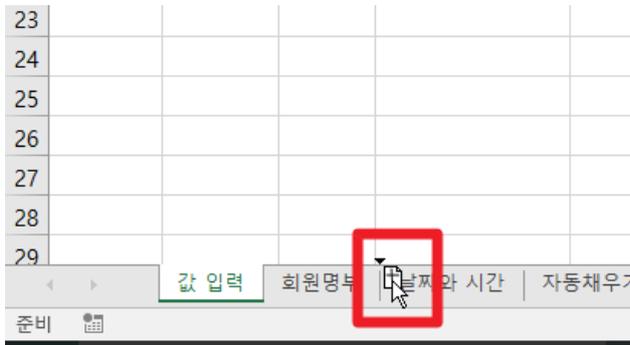
화살표에 오른쪽 클릭

시트 이동, 복사하기



시트 이동

드래그



시트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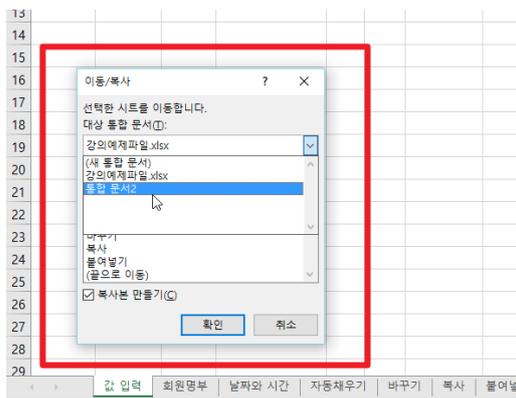
Ctrl + 드래그

시트 이동, 복사하기



시트 이동

오른쪽 클릭 - 이동/복사



통합문서 선택 - 위치 선택

행, 열 선택하기



회원번호	이름	지역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생년월일	후원시작일	후

행 or 열 전체 선택

열이름 또는 행이름 선택

다중 선택

Ctrl + 클릭

전체 선택

Ctrl + a

구간 전체 선택

Shift + 클릭

모든 데이터 선택

Ctrl + Shift + 방향키

행, 열 이동



회원번호	이름	지역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생년월일	후
1	김덕훈	서구	730219-1234567	남	45	1973-02-19	2001-05-14
2	안정훈	유성구	800304-1234567	남	38	1980-03-04	2005-10-17
3	김소미	서구	821208-2134567	여	36	1982-12-08	2005-05-01
4	윤대현	유성구	830830-1234567	남	35	1983-08-30	2009-04-01
5	최소라	대덕구	890919-2134567	여	29	1989-09-19	2009-05-03
6	김찬진	중구	830702-1234567	남	35	1983-07-02	20
7	오영수	동구	900529-1234567	남	28	1990-05-29	20
8	선하라	유성구	880109-2134567	여	30	1988-01-09	20
9	유기을	서구	860127-2134567	여	32	1986-01-27	20

행 or 열 전체 선택

이동 마우스 포인터

원하는 위치로 이동

Shift + 드래그

행, 열 삽입



	A	B	C	D	E
1	회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별
2	1	김덕훈	730219-1234567	서구	남
3	2	안정훈	800304-1234567	유성구	남
4	3	김소미	821208-2134567	서구	여
5	4	윤대현	830830-1234567	유성구	남
6	5	최소라	890919-2134567	대덕구	여
7	6	김찬진	830702-1234567	중구	남
8	7	오영수	900529-1234567	동구	남

원하는 위치 바로 뒤

	A	B	C	D	E	F
1				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2				1	김덕훈	730219-1234567
3				2	안정훈	800304-1234567
4				3	김소미	821208-2134567
5				4	윤대현	830830-1234567
6				5	최소라	890919-2134567
7				6	김찬진	830702-1234567
8				7	오영수	900529-1234567
9				8	선하라	880109-2134567
10				9	유가을	860127-2134567
11						
12						

삽입

Ctrl + Shift + +

복사 후 삽입

셀 선택, 이동, 삽입, 삭제



행, 열과 동일

데이터 입력하기



복사, 붙여넣기

회원번호	이름	지역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생년월일	후원시작일	후원년수	핸드폰
1	김덕훈	서구	730219-1234567	남	45	1973-02-19	2001-05-14	16년 1개월	010-5486-6840
2	안정훈	유성구	800304-1234567	남	38	1980-03-04	2005-10-17	11년 7개월	010-5525-5586
3	김소미	서구	821208-2134567	여	36	1982-12-08	2005-05-01	12년 1개월	010-4102-1345
4	윤대현	유성구	830830-1234567	남	35	1983-08-30	2009-04-01	8년 2개월	010-5844-6365
5	최소라	대덕구	890919-2134567	여	29	1989-09-19	2009-05-03	8년 1개월	010-3444-1234
6	김찬진	중구	830702-1234567	남	35	1983-07-02	2006-10-17	10년 7개월	011-255-2255
7	오영수	동구	900529-1234567	남	28	1990-05-29	2010-01-02	7년 5개월	010-2266-3664
8	선희라	유성구	880109-2134567	여	30	1988-01-09	2010-03-05	7년 3개월	010-4115-1234
9	유가을	서구	860127-2134567	여	32	1986-01-27	2011-11-15	5년 6개월	010-2555-6682

데이터 입력하기



선택해서 붙여넣기

The context menu shows options like '붙여넣기 옵션' (Paste Options) and '선택하여 붙여넣기(S)...' (Paste Special...). The '선택하여 붙여넣기' dialog box is open, showing various options for pasting content.

선택하여 붙여넣기	
<input checked="" type="radio"/> 모두(A)	<input type="radio"/> 원본 테마 사용(H)
<input type="radio"/> 수식(F)	<input type="radio"/> 테두리란 제외(X)
<input type="radio"/> 값(V)	<input type="radio"/> 열 너비(W)
<input type="radio"/> 서식(O)	<input type="radio"/> 수식 및 숫자 서식(S)
<input type="radio"/> 메모(C)	<input type="radio"/> 값 및 숫자 서식(U)
<input type="radio"/> 유효성 검사(N)	<input type="radio"/> 조건부 서식 모두 병합(G)
연산	
<input checked="" type="radio"/> 없음(O)	<input type="radio"/> 곱하기(M)
<input type="radio"/> 더하기(D)	<input type="radio"/> 나누기(I)
<input type="radio"/> 빼기(S)	
<input type="checkbox"/>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B)	<input type="checkbox"/> 행/열 바꿈(E)

셀 서식 및 스타일 적용



The screenshot shows an Excel spreadsheet with a table of financial data. The table has columns for '순번' (No.), '사업명' (Business Name), '계정과목' (Account Item), '구분' (Category), '내역' (Details), '액수' (Amount), '입지' (Location), and '출납' (In/Out). The data includes various entries like '일반운영 회의비' and '회비 및 후원회금수입'.

The right-hand task pane is open to the 'Style' section, showing a list of styles such as '표준', '표준_직원', '강조', '강조_1', etc., with corresponding color swatches. The '셀 서식' (Cell Style) task pane is also visible, showing options for font, fill, and borders.

질문해주세요!



비영리 활동가를 위한 엑셀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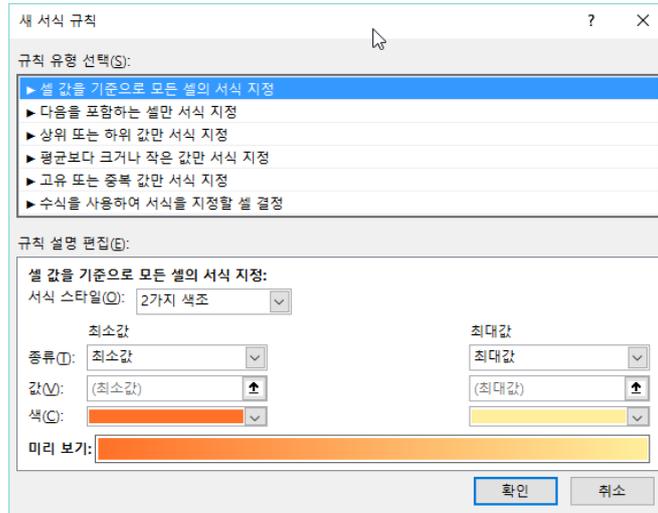
-2회차-

강사
정다운

커리큘럼

구분	내용
1일차	1 기초부터 탄탄하게 - 엑셀 화면 구성, 엑셀 작업환경 재구성
	2 셀과 시트를 내맘대로 주무르자 - 셀과 시트의 개념과 활용법
	3 엑셀 데이터 입력과 편집 엑기스
2일차	1 데이터 분석, 정리 - 셀서식과 조건부 서식 활용법
	2 엑셀 자동화의 시작, 수식과 함수 -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함수와 활용 사례
	3 엑셀에서 제대로 인쇄하기

조건부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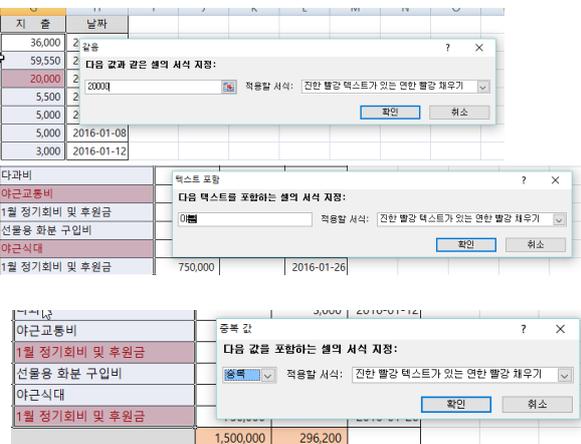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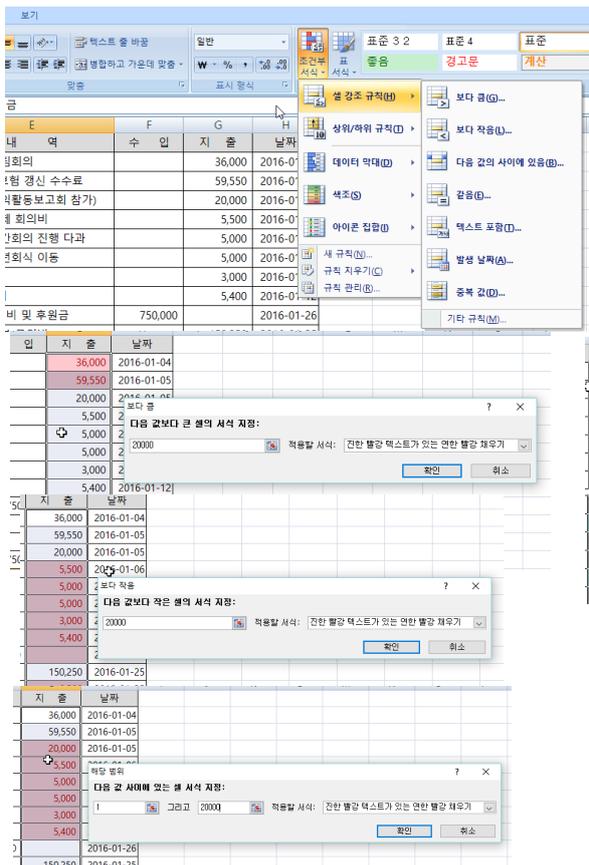


셀에 들어있는 값이나 수식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이 지정되게 하는 기능

셀 강조 하기



- 보다는
- 보다 작음
- 값 사이에 있음
- 같음
- 텍스트 포함
- 중복 값



상위/하위 규칙



역	F 수 입	G 지 출	H 날짜
수수료		36,000	2016-01-26
교회 참가)		59,550	2016-01-25
행 다과		20,000	2016-01-25
동		5,500	2016-01-25
		5,000	2016-01-25
		3,000	2016-01-25
		5,400	2016-01-26
원금	750,000		2016-01-26
		150,250	2016-01-25
		6,500	2016-01-25
원금	750,000		2016-01-26
	1,500,000	206,200	

데이터 막대



영업사원	판매량	매출
김덕훈	7,473	202,334,305
김소미	8,463	204,085,010
김찬진	5,654	135,191,675
선하라	6,620	143,642,795
안정훈	5,083	129,169,100
오영수	6,520	178,199,415
유가을	4,647	129,478,690
윤대현	9,172	237,138,860
최소라	10,303	245,852,510

새 서식 규칙

규칙 유형 선택(S):

- ▶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 ▶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 ▶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 ▶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
- ▶ 고유 또는 중복 값만 서식 지정
- ▶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규칙 설명 편집(E):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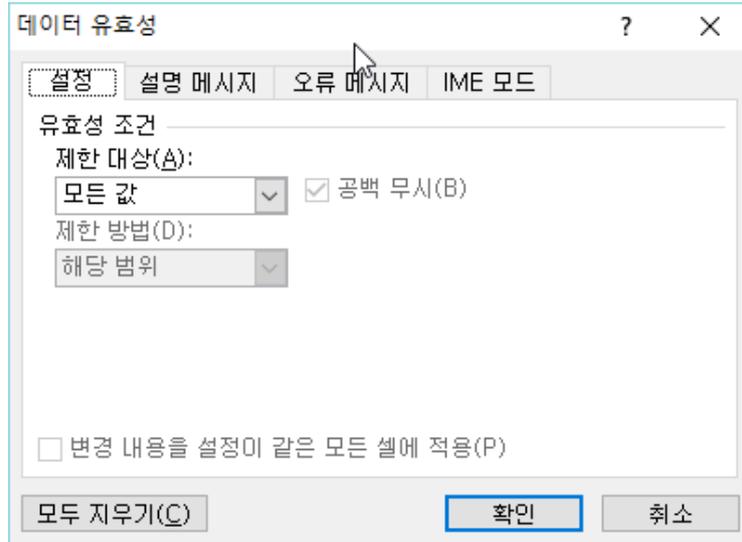
서식 스타일(O): 데이터 막대 막대만 표시(O)

종류(T): 가장 짧은 막대 가장 긴 막대

값(V): (최소값) (최대값)

막대 색(C): 미리 보기:

유효성 검사



오류 검증이나 표준 적합 검증을 위해 소프트웨어나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검사.
예를 들어, 나이를 입력할 때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오면 잘못된 자료로 인식하는 검사

숫자 입력 제한



D	E	F	G	H	I	J	K
지역	성별	나이	생년월일				
서구	남	45	1973-01-01				
성구	남	38	1980-02-02				
서구	여	36	1982-11-11				
성구	남	35	1983-03-03				
덕구	여	29	1989-04-04				
중구	남	35	1983-05-05				
동구	남	28	1990-06-06				
성구	여	30	1988-07-07				
서구	여	32	1986-08-08				

자릿수 고정

	C	D	E	F	G	H	I	J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	데이터 유효성					
훈	730219-1234567	서구	남						
훈	800304-1234567	유성구	남						
미	821208-2134567	서구	여						
현	830830-1234567	유성구	남						
라	890919-2134567	대덕구	여						
진	830702-1234567	중구	남						
수	900529-1234567	동구	남						
라	880109-2134567	유성구	여						
을	860127-2134567	서구	여						

데이터 유효성

설정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IME 모드

유효성 조건

제한 대상(S):
 공백 무시(B)

제한 방법(D):

길이(L):

변경 내용을 설정이 같은 모든 셀에 적용(E)

모두 지우기(C)

안내메시지 표시하기

B	C	D	E	F	G	H	I	J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역	데이터 유효성					핸드
김덕훈	730219-1234567	서구						-548
안정훈	800304-1234567	유성						-552
김소미	821208-2134567	서구						-410
윤대현	830830-1234567	유성						-584
최소라	890919-2134567	대덕						-344
김찬진	830702-1234567	중구						1-25
오영수	900529-1234567	동구						-226
선하라	880109-2134567	유성						-411
유가을	860127-2134567	서구						-255

데이터 유효성

설정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IME 모드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 표시(S)

셀을 선택하면 나타낼 설명 메시지

제목(T):

설명 메시지(I):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880123-1234567

모두 지우기(C)

오류 메시지 설정



	C	D	E	F	G	H	I
	주민등록번호	지역	데이터 유효성				
1	730219-1234567	서구					
2	800304-1234567	유성구					
3	821208-2134567	서구					
4	830830-1234567	유성구					
5	890919-2134567	대덕구					
6	830702-1234567	중구					
7	900529-1234567	동구					
8	880109-2134567	유성구					
9	860127-2134567	서구					

설정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IME 모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 표시(O)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나타낼 오류 메시지 _____

스타일(Y): _____ 제목(T): 주민등록번호 입력

종지 _____ 오류 메시지(E):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는 공백문자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값을 확인하고 다시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지우기(C) 확인 취소

목록 선택 입력



D	E	F	G	H	I	J	K	L
지역	성별	나이	데이터 유효성					
서구	남	45						대전광역시 행정구
유성구	남	38	유효성 주석					대덕구
서구	여	36	제한 대상(S):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백 무시(B)				동구
유성구	남	35	목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드롭다운 표시(I)				서구
대덕구	여	29	제한 범위(C):					유성구
중구	남	35	해당 범위					중구
동구	남	28	원본(S):					
유성구	여	30	=L\$3:L\$7					
서구	여	32	<input type="checkbox"/> 변경 내용을 설정이 같은 모든 셀에 적용(P)					

A	B	C	D	E
회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별
1	김덕훈	730219-1234567	서구	남
2	안정훈	800304-1234567	대덕구	남
3	김소미	821208-2134567	서구	여
4	윤대현	830830-1234567	유성구	남
5	최소라	890919-2134567	대덕구	여
6	김찬진	830702-1234567	중구	남
7	오영수	900529-1234567	동구	남
8	선하라	880109-2134567	유성구	여

데이터 정렬

데이터 정렬 기본



The first screenshot shows the Excel ribbon with the '오름차순' (Ascending) button highlighted in the '데이터' (Data) tab. The spreadsheet below it contains the following data:

회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나이	생년월일	입회일자	회원연수	핸드폰
1	김덕훈	730219-1234567					1개월	010-5486-6840
2	안정훈	800304-1234567					8개월	010-5525-5586
3	김소미	821208-2134567					1개월	010-4102-1345
4	윤대현	830830-1234567					2개월	010-5844-6365
5	최소라	890919-2134567					1개월	010-3444-1234
6	김찬진	830702-1234567					8개월	011-255-2255
7	오영수	900529-1234567	동구	남	1990-05-29	2010-01-02	7년 5개월	010-2266-3664
8	선하라	880109-2134567	유성구	여	1988-01-09	2010-03-05	7년 3개월	010-4115-1234
9	유가울	860127-2134567	서구	여	1986-01-27	2011-11-15	5년 7개월	010-2555-6682

The second screenshot shows the '정렬' (Sort) dialog box with '오름차순' (Ascending) selected for the '회원번호' column. The dialog box options are as follows:

- 정렬 기준: 회원번호
- 정렬 방법: 오름차순
- 정렬 범위: 전체 데이터 범위
- 정렬 기준: 이름
- 정렬 방법: 오름차순

여러 기준으로 정렬



Excel ribbon: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연결, 정렬 및 필터, 다중 기준 정렬, 유효성 검사, 문맥, 예제, 윤곽선

Worksheet: A2, 1

A	B	C	D	E	F	G
회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별	나이	생년
1	김덕훈	730219-1234567	서구	남	45	1973
2	안정훈	800304-1234567	유성구	남	38	1980
3	김소미	821208-2134567	서구	여	36	1982
4	윤대현	830830-1234567	유성구	남	35	1983
5	최소라	890919-2134567	대덕구	여	29	1989
6	김찬진	830702-1234567	중구	남	35	1983
7	오영수	900529-1234567	동구	남	28	1990
8	선하라	880109-2134567	유성구	여	30	1988
9	유가을	860127-2134567	서구	여	32	1986

정렬 대화상자 (Sort dialog box):

- 기준 추가(+) (Add Level)
- 기준 삭제(D) (Remove Level)
- 기준 복사(C) (Copy Level)
- 옵션(O)... (Options...)
-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B) (My data has header rows)

정렬 기준 (Sort by):

- 정렬 기준: 이름 (Ascending)
- 다음 기준: 나이 (Ascending)
- 다음 기준: 후원시작일 (Ascending)

정렬 기준 (Sort by):

- 정렬 기준: 값 (Ascending)
- 정렬 기준: 오름차순 (Ascending)
- 정렬 기준: 오름차순 (Ascending)
- 정렬 기준: 오름차순 (Ascending)

Buttons: 확인 (OK), 취소 (Cancel)

자동 필터

자동필터 설정



회원 명부 시트

A	B	C	D	E	F	G	H	I	J
회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	나이	생년월일	후원시작	후원년수	핸드폰
1	김덕훈	730219-1234567	서구	남	45	1973-02-19	2001-05-14	16년 1개월	010-5486-6840
3	김소미	821208-2134567	서구	여	36	1982-12-08	2005-05-01	12년 1개월	010-4102-1345
6	김찬진	830702-1234567	중구	남	35	1983-07-02	2006-10-17	10년 8개월	011-255-2255
8	선하라	880109-2134567	유성구	여	30	1988-01-09	2010-03-05	7년 3개월	010-4115-1234
2	안정훈	800304-1234567	유성구	남	38	1980-03-04	2005-10-17	11년 8개월	010-5525-5586
7	오영수	900529-1234567	동구	남	28	1990-05-29	2010-01-02	7년 5개월	010-2266-3664
9	유가을	860127-2134567	서구	여	32	1986-01-27	2011-11-15	5년 7개월	010-2555-6682
4	윤대현	830830-1234567	유성구	남	35	1983-08-30	2009-04-01	8년 2개월	010-5844-6365
5	최소라	890919-2134567	대덕구	여	29	1989-09-19	2009-05-03	8년 1개월	010-3444-1234

자동필터 기본기능



회원 명부 시트

A	B	C	D	E	F	G	H
회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	나이	생년월일	후원시작
1				남	45	1973-02-19	2001-05-14
3				여	36	1982-12-08	2005-05-01
6				남	35	1983-07-02	2006-10-17
8				여	30	1988-01-09	2010-03-05
2				남	38	1980-03-04	2005-10-17
7				남	28	1990-05-29	2010-01-02
9				여	32	1986-01-27	2011-11-15
4				남	35	1983-08-30	2009-04-01
5				여	29	1989-09-19	2009-05-03

색상 필터 사용



A	B	C	D	E	F	G	H	I
회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	나이	생년월일	후원시작	후원년수
1	김덕훈	7302				1973-02-19	2001-05-14	16년 1개월
2	안정훈	8003				1980-03-04	2005-10-17	11년 8개월
3	김소미	8212						12년 1개월
4	윤대현	8308						8년 2개월
5	최소라	8909						8년 1개월
6	김찬진	8307						7년 10개월
7	오영수	9005						2년 7개월
8	선하라	8801						5년 7개월
9	유가을	8601				1986-01-27	2011-11-15	5년 7개월

날짜 데이터 필터링



A	B	C	D	E	F	G	H	I	J	K	L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	나이	생년월일	후원시작	후원년수	핸드폰		
1	김덕훈	730219-1234567					2001-05-14	16년 1개월	010-5486-6840		대전광역시 행정구
2	안정훈	800304-1234567					2005-10-17	11년 8개월	010-5525-5586		대덕구
3	김소미	821208-2134567					2005-05-01	12년 1개월	010-4102-1345		동구
4	윤대현	830830-1234567					2009-04-01	8년 2개월	010-5844-6365		서구
5	최소라	890919-2134567					2000-05-02	11년 1개월	010-3444-1234		유성구
6	김찬진	830702-1234567							011-255-2255		중구
7	오영수	900529-1234567							10-2266-3664		
8	선하라	880109-2134567							10-4115-1234		
9	유가을	860127-2134567							10-2555-6682		

자동 필터를 활용해 빈셀 삭제



자동 필터 - 빈 셀

품번	품명	단가	재고량	판매여부
1	태양 100% 오렌지 주스	10,300		
2	태양 100% 레몬 주스	11,900		
3	태양 체리 시럽	5,800		
4	신한 100% 복숭아 시럽	13,400		
5	신한 100% 파인애플 시럽	13,700		
6	대양 특선 블루베리 잼	14,600		
7	대양 특선 건과(배)	18,100		
8	대양 특선 딸기 소스	24,000		
9	북미산 상등육 쇠고기	54,200		
10	노르웨이산 연어알 조림	19,400		

자동 필터 - 빈 셀

품번	품명	단가	재고량
5	신한 100% 파인애플 시럽	13,700	
9	북미산 상등육 쇠고기	54,200	

숫자 필터



자동 필터 - 빈 셀

품번	품명	단가	재고량	판매여부
1	태양 100% 오렌지 주스	10,300	39	판매중
2	태양 100% 레몬 주스	11,900	17	판매중
3	태양 체리 시럽	5,800	13	판매중
4	신한 100% 복숭아 시럽	13,400	53	판매중
5	신한 100% 파인애플 시럽	13,700		
6	대양 특선 블루베리 잼	14,600		
7	대양 특선 건과(배)	18,100		
8	대양 특선 딸기 소스	24,000		
9	북미산 상등육 쇠고기	54,200		
10	노르웨이산 연어알 조림	19,400		

고급 필터

고급 필터 적용 데이터 추출



회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별	나이	생년월일	후원시작	후원년수	핸드폰
1	김덕훈	730219-1234567	서구	남	45	1973-02-19	2001-05-14	16년 1개월	010-5486-6840
2	안정훈	800304-1234567	유성구	남	38	1980-03-04	2005-10-17	11년 8개월	010-5525-5586
3	김소미	821208-2134567	서구	여	36	1982-12-08	2005-05-01	12년 1개월	010-4102-1345
4	윤대현	830830-1234567	유성구	남	35	1983-08-30	2009-04-01	8년 2개월	010-5844-6365
5	최소라	890919-2134567	대덕구	여	29	1989-09-19	2009-05-03	8년 1개월	010-3444-1234
6	김찬진	830702-1234567	중구	남	35	1983-07-02	2006-10-17	10년 8개월	011-255-2255
7	오영수	900529-1234567	동구	남	28	1990-05-29	2010-01-02	7년 5개월	010-2266-3664
8	선하라	880109-2134567	유성구	여	30	1988-01-09	2010-03-05	7년 3개월	010-4115-1234
9	유가을	860127-2134567	서구	여	32	1986-01-27	2011-11-15	5년 7개월	010-2555-6682

중복제거

중복 데이터에서 고유항목 추출



엑셀의 '데이터' 탭에서 '고유' 기능을 사용하여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엑셀 리본 메뉴의 '데이터' 탭에서 '고유' 버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 테이블:

주민등록번호	지역	성	나이	생년월일	핸드폰
730219-1234567	서구	남	45	1973-02-	5486-6840
800304-1234567	유성구	남	38	1980-03-	5525-5586
821208-2134567	서구	여	36	1982-12-	4102-1345
830830-1234567	유성구	남	35	1983-08-	5844-6365
890919-2134567	대덕구	여	29	1989-09-	3444-1234
830702-1234567	중구	남	35	1983-07-	255-2255
900529-1234567	동구	남	28	1990-05-29	2010-01-02 7년 5개월 010-2266-3664
880109-2134567	유성구	여	30	1988-01-09	2010-03-05 7년 3개월 010-4115-1234
860127-2134567	서구	여	32	1986-01-27	2011-11-15 5년 7개월 010-2555-6682

고유 필터 대화 상자 설정:

- 결과: 현재 위치(에 필터(F))
- 다른 장소에 복사(O)
- 목록 범위(L): !(결과)!\$D:\$9:\$D\$18
- 조건 범위(C):
- 복사 위치(T): 부(결과)!\$K:\$2
-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B)

대화 상자 버튼: 확인, 취소

중복값 제거



Excel ribbon: 데이터 > 중복된 항목 제거 (highlighted)

Worksheet: 중복 제거

부류	제품
유제품	현진 커피 밀크
곡류	싱가폴 원산 옥수수
유제품	대관령 특제 버터
가공 식품	유미 건조 다시마
가공 식품	유림 사과 통조림
해산물	훈제 대합조개 통조림
가공 식품	유림 사과 통조림
조미료	루이지애나 특산 후추
곡류	신성 시리얼

중복된 항목 제거 대화상자:

중복 값을 삭제하려면 중복 값이 있는 열을 하나 이상 선택하십시오.

모두 선택(A)
 모두 선택 취소(U)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M)

열:

- 부류
- 제품

확인 취소

표를 빠르게 집계



Excel ribbon: 자동 합계 (highligh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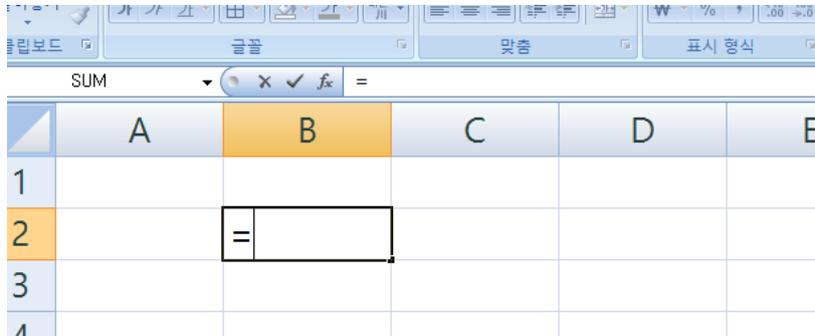
Worksheet: 자동 합계

월	판매수량	매출
1월	2,414	53,649,200
2월	3,030	65,821,650
3월	1,704	34,405,150
4월	2,356	48,330,450
5월	1,336	28,475,700
6월	1,655	46,888,600
합계	12,495	277,570,750
평균	2,083	46,261,792
최대	3,030	65,821,650
최소	1,336	28,475,700

자동 합계 대화상자:

합계(S) 평균(A) 숫자 개수(C) 최대값(M) 최소값(N) 함수 추가(O)...

수식



등호(=)로 시작하는 모든 계산식

수식의 기본 이해



※ 산술 연산자									
연산자	의미	연산자	의미						
+	(더하기 기호)	/	(슬래시)						
-	(빼기 기호)	%	(백분율 기호)						
*	(별표)	^	(캐럿)						
※ 연산자 우선순위(왼쪽에서 오른쪽)									
연산자	클론() 공백() 실표()	-	&	^	* 및 /	+ 및 -	&	=	
설명	참조연산자	부정(-:1)	백분율	거듭제곱	곱하기와 나누기	더하기와 빼기	두 개의 값 연결	비교 연산자	
※ 연산자 사용 사례				※참고 표					
연산자	결과	수식	1월	2월	3월				
클론()	65	65 =SUM(E25:E28)	12	20	19				
교차(공백)	25	25 =F25:F28 E25:G28	16	25	15				
총합()	145	145 =SUM(E25:E28,G25:G28)	21	27	40				
부정(-)	4	4 =-2^2	16	25	6				
부정(-)	-4	-4 =-(2^2)							
백분율(%)	0.1	0.1 =10*1%							
곱→나→더→빼	18.5	18.5 =7*3+5/2-5	시작일	종료일	기간				
앰퍼샌드(&)	프로젝트 기간은 5일	프로젝트 기간은 5일	= "프로젝트 기간은 "&F32-E32+1&"일"	2016-09-01	2016-09-05	5			
비교연산자	TRUE	TRUE	=F32>=F32-E32						
단축키				설명					
F2	편집 모드로								
F4	참조 형태 전환 (A1→A\$1→\$A1→\$A\$1)								
F9	선택한 범위 결과 미리 확인								
F3	정의한 이름 목록								
F5	수식이 적용된 셀로 이동								
Ctrl+	화면에 수식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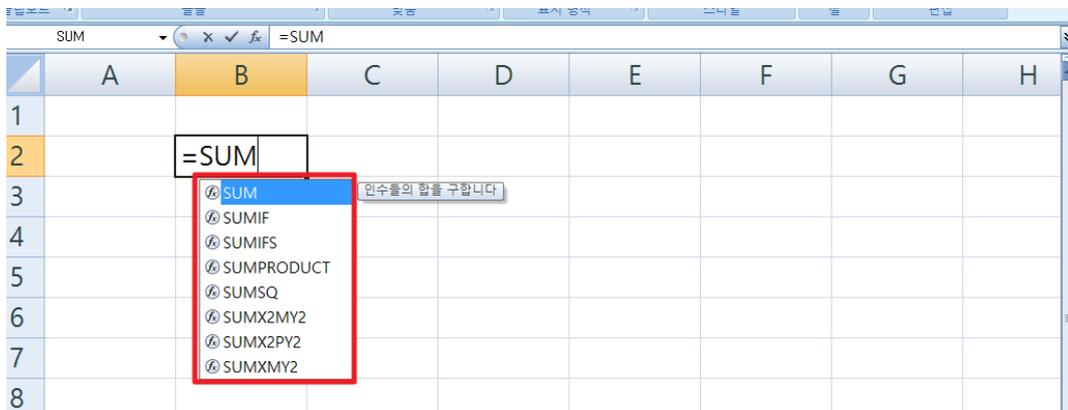
다른 위치 값 참조 및 참조의 종류



위치	참조 수식
현재 시트	=셀 주소
다른 시트	=시트명!셀 주소
다른 파일	=[전체 경로\파일명.xlsx]시트명!셀 주소

방식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참조	
참조 모양	[A2]	[\$A\$2]	[A\$2]	[\$A2]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행과 열 모두 변함	행과 열 모두 변하지 않음	열만 변함	행만 변함

함수



추출 함수



A	B	C	D	E	F
※ 문자, 숫자 값에서 추출					
	LEFT	RIGHT	MID		
주소	왼쪽 3글자	오른쪽 2글자	"-"이후에 3글자		
572-YEW/CA	=LEFT(A4,3)	=RIGHT(A4,2)	=MID(A4,5,3)		
503-MSA/WA	=LEFT(A5,3)	=RIGHT(A5,2)	=MID(A5,5,3)		
708-LIJ/OR	=VALUE(LEFT(A6,3))	=RIGHT(A6,2)	=MID(A6,5,3)		
※ 날짜 값에서 추출					
	YEAR	MONTH	DAY	WEEKDAY	WEEKNUM
날짜	연	월	일	요일 번호	주 번호
42533	=YEAR(A11)	=MONTH(A11)	=DAY(A11)	=WEEKDAY(A11)	=WEEKNUM(A11)
42534	=YEAR(A12)	=MONTH(A12)	=DAY(A12)	=WEEKDAY(A12)	=WEEKNUM(A12)

데이터

LEFT, RIGHT, MID

날짜

YEAR, MONTH, DAY,
WEEKDAY, WEEKNUM, TODAY

찾기 함수



	A	B	C
1			FIND
2	ID	첫번째 "-"의 위치	소문자 'a' FIND
3	AAA-234-B25R	=FIND("-",A3)	=FIND("a",A3)
4	D-464-B25R	=FIND("-",A4)	=FIND("a",A4)
5	aAA-795-B25R	=FIND("-",A5)	=FIND("a",A5)
6	AAa-234-B25R	=FIND("-",A6)	=FIND("a",A6)
7			

FIND

추출 응용



	A	B	C	D	E	F
1	※ LEFT, 앰퍼샌드(&)				※ LEFT, FIND	
2						
3	주민등록번호	별(*)로	없애기		ID	추출
4	770101-1111111				AAA-234-B25R	
5	760926-2222222				D-464-B25R	
6	540915-1222222				AAA-795-B25R	
7	440807-2111111				BB-345-C20R	
8					CCCC-765-Q20L	
9						
10					※ MID, FIND	
11						
12					ID	추출
13					AAA-234-B25R	
14					D-464-B25R	
15					AAA-795-B25R	
16					BB-345-C20R	
17					CCCC-765-Q20L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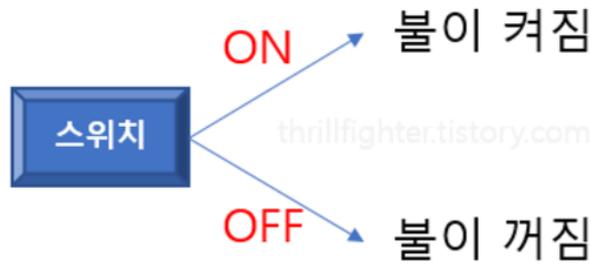
집계 및 통계 함수



자동 합계		
월	판매수량	매출
1월	2414	53649200
2월	3030	65821650
3월	1704	34405150
4월	2356	48330450
5월	1336	28475700
6월	1655	46888600
합계	=SUM(C6:C11)	=SUM(D6:D11)
평균	=AVERAGE(C6:C11)	=AVERAGE(D6:D11)
최대	=MAX(C6:C11)	=MAX(D6:D11)
최소	=MIN(C6:C11)	=MIN(D6:D11)

SUM, AVERAGE, MAX, MIN

논리 함수 IF함수



IF(logical_test, value_if_true, value_if_false)

IF(사과=과일, "참", "거짓")

	A	B
1	※ 매출과 비용을 비교	
2		
3	매출	5000
4	비용	2000
5	=IF(B3>B4,"이익","손실")	=IF(B3>B4,B3-B4,B4-B3)
6		

수식 계산과정 살펴보기



The screenshot shows the Excel interface with the formula bar containing `=IF(B3>B4,B3-B4,B4-B3)`. A dialog box titled '수식 계산' (Formula Calculation) is open, showing the formula being calculated in cell B5. The dialog box has a '계산(E)' button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spreadsheet shows the following data:

	A	B	C	D	E	F	G
1	※ 매출과 비용을 비교			※ 판매금액에 따른 보너스 금액 지정			
2							
3	매출	5,000					
4	비용	2,000					
5	이익	3,000					
6							
7							
8							
9							
10							

인쇄 하기

인쇄 설정



사용 방법: 셀값이 포함되어야 하는 행에는 T를 입력하십시오. 이 상자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영업 담당자	구매 주문서 번호	납품일	운송 수단	인도 지역	조건
					인도 시 대금 지불
1 페이지					
수량	내역	단가	과세 여부	금액	
				스케	₩ -
				세율	8.60%
				판매세	-
				기타	-
				합계	₩ -

본 견적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름] [전화 번호] [전자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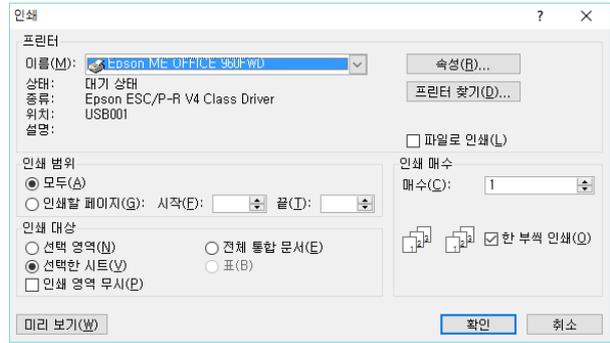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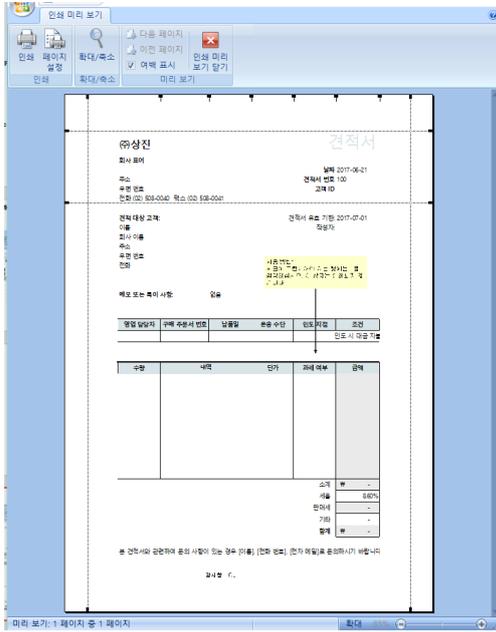
사용 방법: 셀값이 포함되어야 하는 행에는 T를 입력하십시오. 이 상자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영업 담당자	구매 주문서 번호	납품일	운송 수단	인도 지역	조건
					인도 시 대금 지불
1 페이지					
수량	내역	단가	과세 여부	금액	
				스케	₩ -
				세율	8.60%
				판매세	-
				기타	-
				합계	₩ -

본 견적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름] [전화 번호] [전자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설정



질문해주세요!

IT 3종 셋트

카드뉴스

김세나(퍼티위즈 강사)

II 3종 교육 셋트 참고자료

카드뉴스 편(1주차)

CONTENTS DIRECTOR SSEN



프로그램부터 꺼지말것
시작은 기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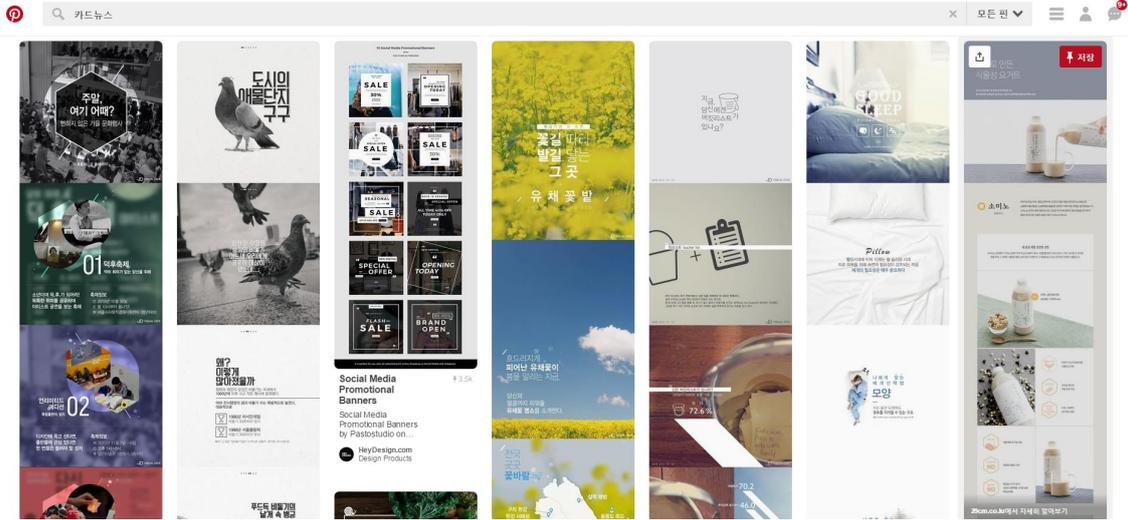
많이 볼수록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볼수록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pinterest.com

이미지 참고에 좋은 사이트
'카드뉴스', '인포그래픽'등을 검색하면
참고할 디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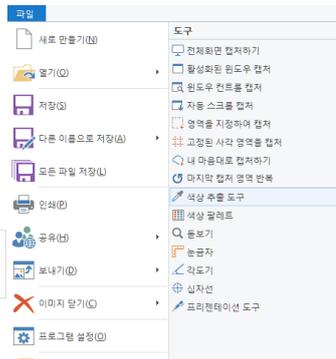
색을 참고할 이미지를 찾으면 파워포인트2010버전이하



<http://ngwin.com/kr>
포털 사이트에서 '픽픽'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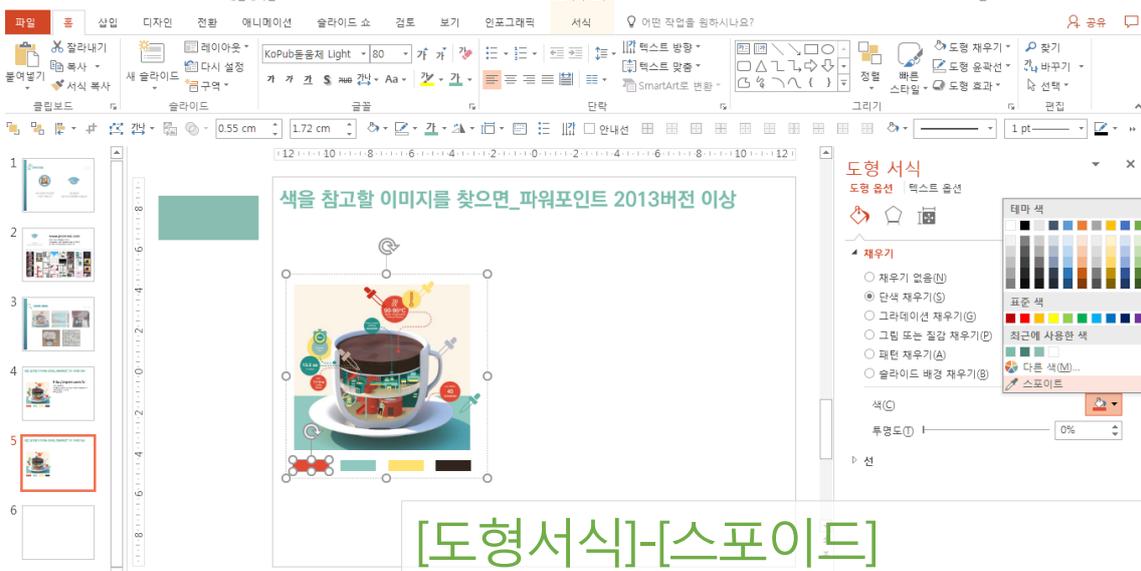
★ 페이지 상단의 [다운로드]탭을 이용해 설치
[색상 추출도구] 이용-원하는 색 클릭
RGB 값 출력

파워포인트 도형서식-다른색-RGB 값 입력



파워포인트
[도형서식]-다른색

색을 참고할 이미지를 찾으면 파워포인트2013버전이상



[도형서식]-[스포이드]

이미지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삽입 - 색을 채울 도형 그리기
- [도형서식]-[스포이드] 선택 - 원하는 색 클릭

찾아볼만한 서체들

<p>KoPub 돌움체 B KoPub 돌움체 M KoPub 돌움체 L KoPub 바탕체 B KoPub 바탕체 M KoPub 바탕체 L</p> <p>한국출판인회의 다운로드 : www.kopus.org</p>	<p>나눔 고딕 EB 나눔 고딕 R 나눔 바른 고딕 B 나눔 바른 고딕 R</p> <p>네이버 다운로드 : www.naver.com</p>	<p>성동고딕 EB 성동고딕 B 성동명조 B 성동명조 R</p> <p>성동구청 다운로드 : www.sd.go.kr</p>	<p>정고딕 170 정고딕 150 정고딕 110</p> <p>한국전자출판협회 다운로드 : www.kepa.or.kr</p>
<p>바른 돌움체 Pro1 바른 돌움체 Pro2 바른 돌움체 Pro3</p> <p>한국출판인회의, 무료, 배포가능? www.kopus.org</p>	<p>뫼비우스 B 뫼비우스 R</p> <p>SK 텔레콤 다운로드 : www.tworld.co.kr</p>	<p>서울 남산체 EB 서울 남산체 M 서울 한강체 EB 서울 한강체 B</p> <p>서울특별시 다운로드 : design.seoul.go.kr</p>	<p>고도체 B 고도체 M</p> <p>고도 소프트 다운로드 : www.godo.co.kr</p>
<p>제주고딕체 제주 할라산체</p> <p>제주특별자치도 다운로드 : www.jeju.go.kr</p>	<p>10X10 B 10X10 R</p> <p>텐바이텐 다운로드 : www.10x10.co.kr</p>	<p>다음체 Semi Bold 다음체 Regular</p> <p>다음 다운로드 : www.daum.net</p>	<p>아리따체 B 아리따체 M 아리따체 L</p> <p>아모레 퍼시픽 다운로드 : www.amorepacific.com</p>

찾아볼만한 서체들 KoPub체

커리큘럼

<http://www.kopus.org/biz/electronic/font.aspx>

- 인포그래픽의 이해**
 - 실무에 쓰이는 인포그래픽의 이해(배색부터 그래픽까지)
 -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는 인포그래픽 디자인 방법
- 나만의 인포그래픽 기획하기**
 - 주제 선정부터 컨셉, 스케치까지 단계별로 기획하기
 - 필요한 내용 파악, 제대로 된 표현을 위한 인포그래픽 스케치하기
-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한 파워포인트 셋팅**
 - 빠른 그래픽 제작을 위한 파워포인트 사용법/슬라이드 셋팅
 - 그래픽 작업을 위해 알아둬야 할 기능들
-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한 그래픽 아이콘 만들기**
 - 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그래픽의 종류와 사용
 - 파워포인트 도형으로 그래픽 제작하기
- 인포그래픽 제작 멘토링**
 - 수강생 개인 제작 인포그래픽 멘토링

찾아볼만한 서체들_포천막걸리체

(포천시청-포천시소개-포천의상징물)

<http://www.pcs21.net/pocheon/sub/pocheonSub.do?key=2582>

카미노 데
산티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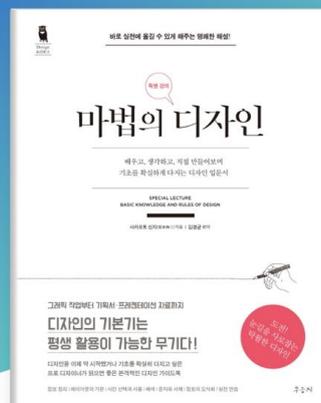


찾아볼만한 서체들_나눔바른펜

BOOK REVIEW

<http://hangeul.naver.com/2016/nanum>

논리가 쌓이면 마법이 생긴다
마법의 디자인
사카모토 신지 지음 김경균 편역 우음지



CONTENTS DIRECTOR SSEN

찾아볼만한 서체들 해수체

커리큘럼

- 디자인 이해하기**
 복사와 붙여넣기가 더 편했던 나를 위해
 1hr 파워포인트 디자인 사례분석
 핀터레스트로 스크랩 북 만들기
- 파워포인트 실습**
 빠르게, 제대로 파워포인트 쓰는 법
 1hr 빠른 작업 팁과 메뉴 익히기
 1hr 도형 다루기와 그래프 만들기
 1hr 텍스트와 이미지 편집하기
- 슬라이드 디자인**
 본격 작업 시작하기
 1hr 내용 분석과 기획 하기
 1hr 슬라이드 작업 실습

<http://blog.naver.com/koreamof/120199897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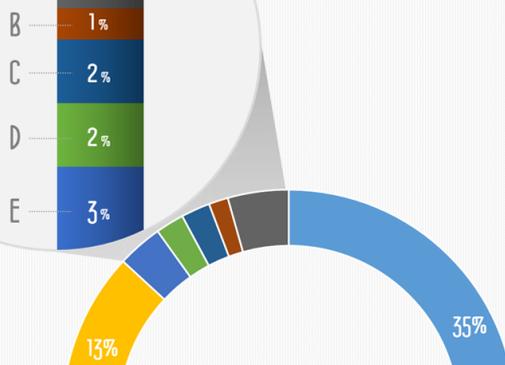
찾아볼만한 서체들 ConcorsoModemeBTN LT

PTWIZ

좀 더 나아지는 파워포인트 그래프 확대로 데이터 강조하기

(영문&숫자)

<http://fontsov.com/download-fonts/concursomodemebtnlt37434.html>



텍스트 편집하기

글자색은 배경과 분위기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검은색 '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흰색 배경일 경우 보통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부분의 색을 텍스트 색에서 골라서 사용합니다.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는 활자 서체의 배열을 말하는데, 특히 문자 또는 활판적 기호를 중심으로 한 2차원적 표현을 가리킨다. 활판으로 하는 인쇄술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뜻이 바뀌어 사진까지도 첨가하여 구성적인 **그래픽 디자인**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인 디자인과 동의어 같이 쓰이는 일도 있다. 즉, 편집 디자인 분야에서는 활자의 서체나 글꼴 따위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현재 타이포그래피의 영역은 매우 방대하며, 시각디자인과 관련하여 **전 분야에 두루 응용**된다. 타이포그래피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활자 조판과 서체 디자인
- 핸드 라이팅과 캘리 그래피
- 그래피티 비문과 전각 글자
- 포스터 디자인과 표시판과 빌보드와 같은 다른 대형
-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부수적인 프로모션
- 광고
- 문자상징과 서체적 로고(로고타입)

텍스트 편집하기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는 활 중심으로 한 2차원적 표현을 가리킨다. 오늘날에는 뜻이 바뀌어 사진까지도 첨가하여 구성적인 그래픽 디자인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인 디자인과 동의어 같이 쓰이는 일도 있다. 즉, 편집 디자인 분야에서는 활자의 서체나 글꼴 따위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금자** 를 보면 **모래시계**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모래시계는 위와 아래, 혹은 전체 세가지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나내어쓰기의 간격을 조정할 때 이용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폰트는 KoPub 폰음 Medium 입니다. 왼쪽의 그래픽 디자인 ' 을 강조하기 위해 색을 바꿨는데이럴 경우 글자체도 한단계 더 두꺼운 폰트인 KoPub 폰음 Bold 로 바꾸는 것이 좀더 어울리게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KoPub 서체는 한국출판인회의(kopus.org)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사례 분석

시작하는 인포그래픽 어울리는 색을 찾아 주세요

1. 좋은 색 조합으로 감각 높이기

2. 시작하는 색부터 찾는대

3. 강조 색을 찾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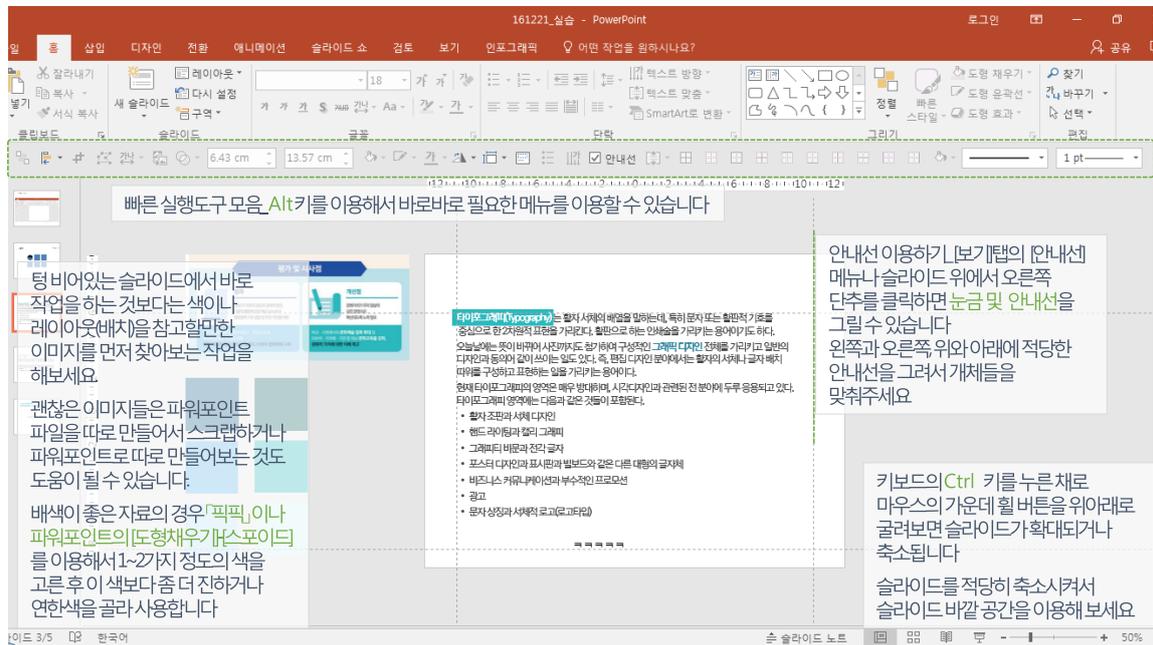
적절한 제목인가요?

카드마다 적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떤 컬러나 도형이 사용되었나요?

파워포인트로 만든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빠른 작업을 위한 파워포인트 응용법



카드뉴스 기획실습자료

- 강의 제목 : 좀 더 나은 파워포인트 클래스 제작편
- 강의 소개 :
파워포인트에 대한 강의는 많지만 프로그램에 익숙하다고 슬라이드를 쉽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작업은 슬라이드 밖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내용 분석과 빠른 작업을 위한 팁, 실제 디자인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좀 더 나은 파워포인트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 강의 대상 :
빈슬라이드가 무섭거나 촌스러운 디자인이 익숙한 파워포인트 사용자
(수강생 이야기 디자인 감각이 없어서 못 만들겠어요,
파워포인트로는 못 만드는 것들이 많으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매울까요?
왜 파워포인트는 오래 쓴 만큼 예쁘게 못 만들까요?)

4. 커리큘럼

시간	주제	내용
1hr	디자인 이해하기 : 복사와 붙여넣기가 더 편했던 나를 위해	파워포인트 디자인 사례 분석
1hr	파워포인트 실습 : 빠르게, 제대로 파워포인트 쓰는 법	핀터레스트로 스크랩북 만들기
1hr		빠른 작업 팁과 메뉴 익히기
1hr		도형 다루기와 그래프 만들기
1hr		텍스트와 이미지 편집하기
1hr	슬라이드 디자인 : 본격 작업 시작하기	내용 분석과 기획하기
1hr		슬라이드 작업 실습

카드뉴스 기획인포그래픽플래너

Infographic
Planner

Subject	Target & Purpose	Concept	Sketch	Collect
Content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itle			
Setting Colo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Reference		Size & Format		

II 3종 교육셋트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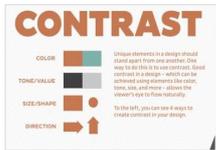
카드뉴스 편(2주차)

CONTENTS DIRECTOR SSEN

카드뉴스 기획_디자인 컨셉잡기



카드뉴스 기획_디자인 원리 이해하기



대비

색상대비, 명도&정도대비, 크기대비방향대비 등 차이를 확실하게 줘서 강조하는 것
여러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반복

같은 색, 같은 서체, 같은 위치등을 반복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만들 수 있다



정렬

가장 중요한 개체를 중심으로 정렬한다
파워포인트의 **맞춤**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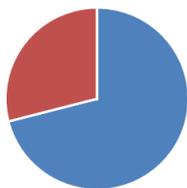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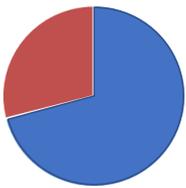
내용상 관련 있는 개체들은 가깝게 배치
관련성이 적은 개체들은 거리가 먼 곳에 배치



파워포인트 스킬 파이 그래프 그리기



원하는 비율의 파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Ctrl+C Ctrl+V [붙여넣기 옵션의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원본은 슬라이드 밖으로 치우거나 지워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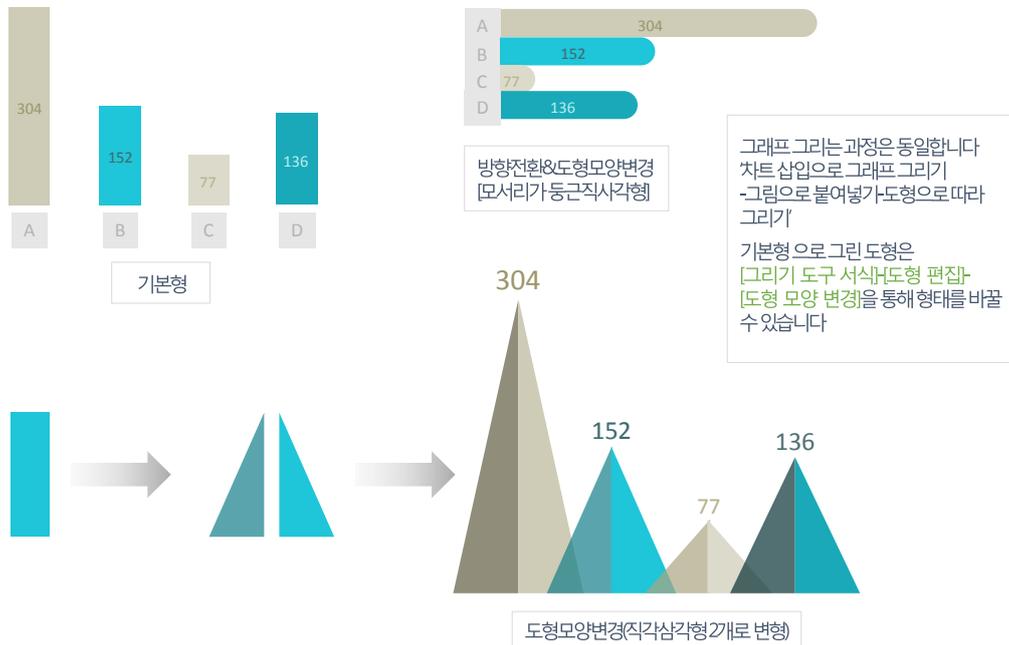


[삽입]->도형->부분 원형을 삽입합니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이 유지합니다
도형 양쪽의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 원하는 비율에 맞춰줍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 [그리기 도구 서식]->[정렬]->[회전]을 이용해 좌우 대칭으로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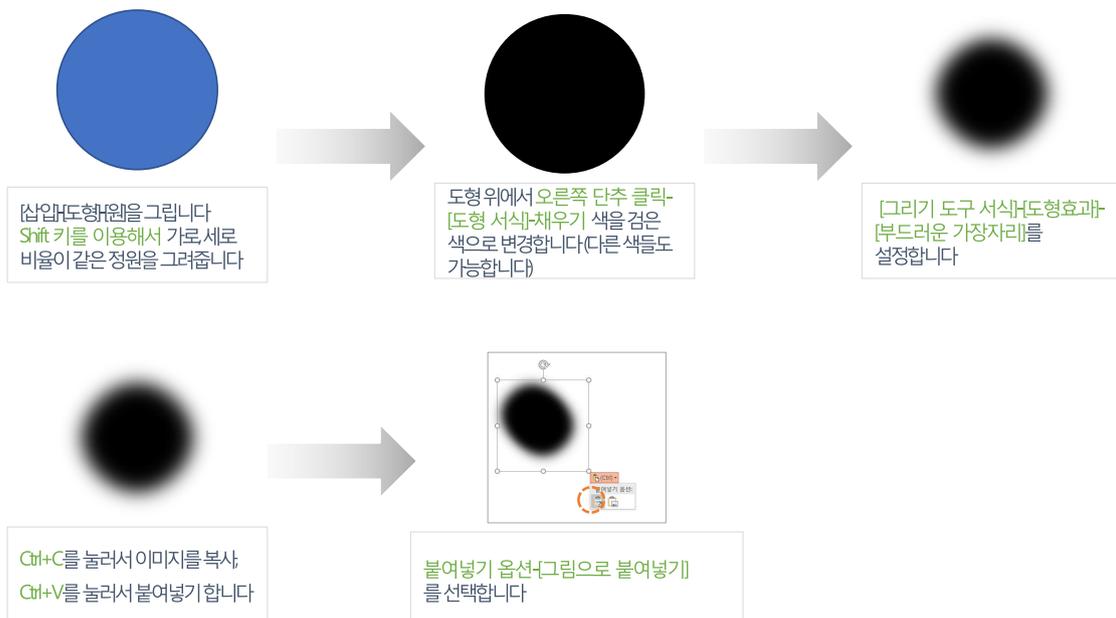


다양한 서식을 이용해서 컨셉에 맞게 정리해줍니다
도형을 그릴 때는 **맞춤**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정렬-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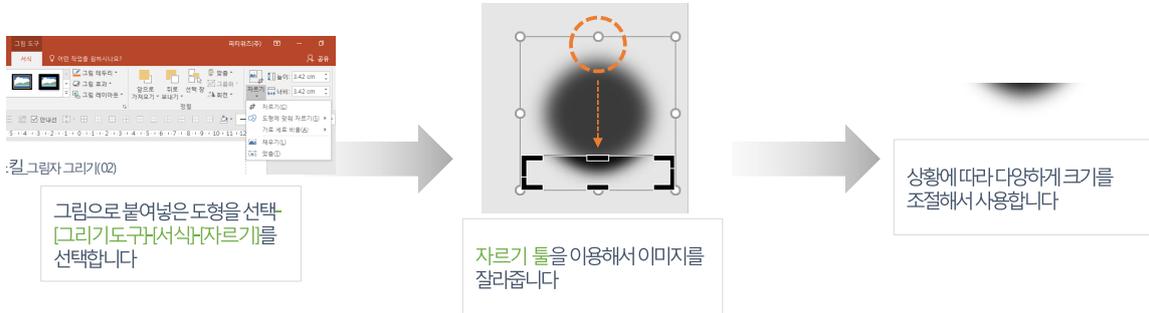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킬 막대 그래프 그리기



파워포인트 스킬 그림자 그리기(01)



파워포인트 스킬 그림자 그리기(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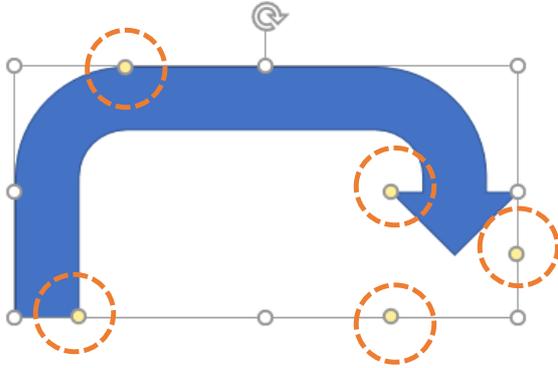
사용 예)



파워포인트 스킬 화살표 편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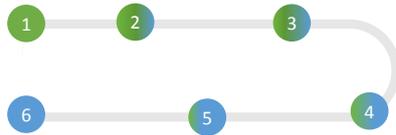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킬 화살표 응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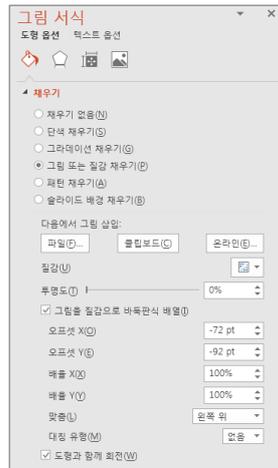


화살표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예)



사진을 이용한 카드뉴스 만들기



파워포인트의 삽입>그림을 이용해 사진을 삽입하면 슬라이드에 어울리게 사진을 편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미리 스케치를 하거나 생각한 대로 미리 도형을 이용해 위치를 잡아 놓고 **채우기-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이용해서 도형을 사진으로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사한 이미지는 **클립보드**에 사진 파일이 있는 경우는 **파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위치나 비율은 **오프셋**과 **배율**에서 조정해 보세요

사진을 이용한 카드뉴스 만들기 사용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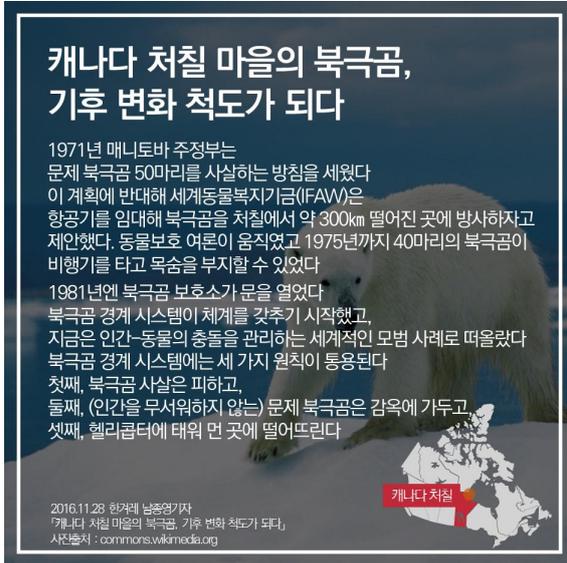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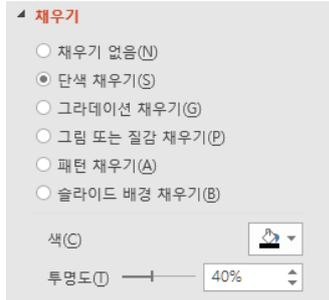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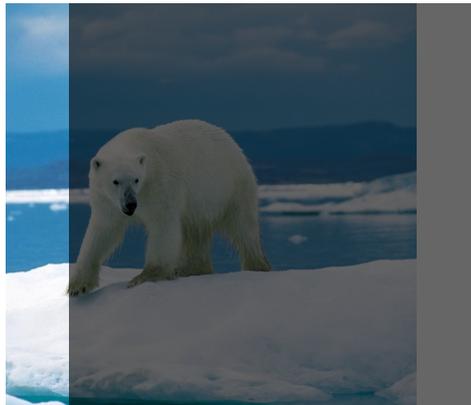
사진 출처
<https://goo.gl/pB45YT>

자간, 행간 조절을 이용해서
보기 편하게 편집했다

지도 이미지를 추가하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파워포인트 스킴투명도 사용하기

도형의 투명도를 이용해서
사진 위에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텍스트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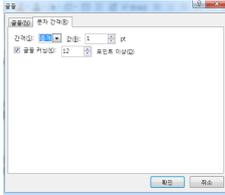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킬 텍스트 효과적으로 편집하기

맑은고딕, 18pt, 자간 : 보통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맑은고딕, 18pt, 자간 : 좁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Enter로 줄 구분하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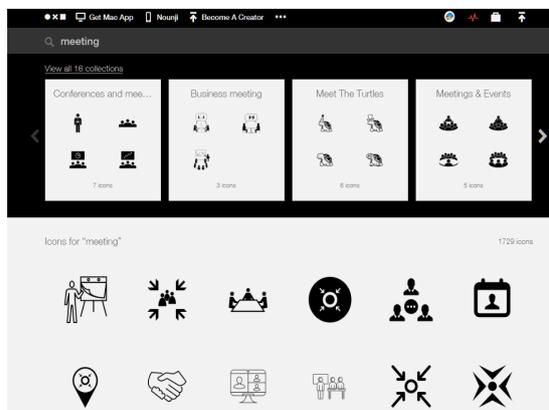
Shift+Enter로 줄 구분하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파워포인트 스킬 픽토그램이 필요할 때

thenounproject.com

다운받은 SVG 파일을 변환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검색어+sv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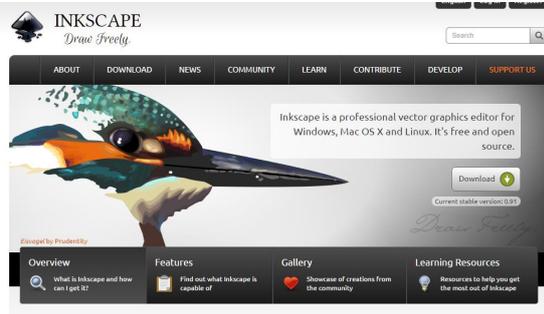
구글 사이트에서
원하는 아이콘 + svg 를 검색하면
픽토그램 파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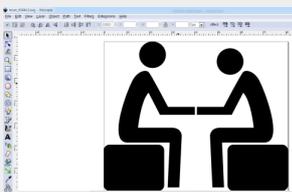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스킴 픽토그램이 필요할 때

<https://inkscape.org>

다운받은 SVG파일을 변환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잉크스케이프 사용법



SVG 파일 불러오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emf] 지정



파워포인트 삽입
-그룹 해제(Ctrl+Shift+G) 해서 사용

카드 뉴스 실습_2

겨울맞이 안구건조증 예방하기

안구건조증 : 눈물샘의 기능 저하로 눈물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는 질환이다.

주로 눈물 생성기관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발병한다.

증상으로는 눈이 시리거나 뻑뻑하고 자극, 이물감 등이 느껴지고 충혈이 자주 되거나 시야가 뿌옇고 겹쳐보인다.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 실내의 습도를 60%이상으로 유지
- 실내 온도는 18~22
- 수시로 물을 마신다

출처 : 2016.12.26 건설경제, '안구건조증, 왜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할까?'

경희대학교 병원 김응석 교수

카드 뉴스 실습2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는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각 내용들간 위아래관계가 맞는지도 파악합니다



스케치



내용정리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스케치합니다

1. 슬라이드 비율에 따라 사각형을 그립니다
2. 내용이 어디에 배치될지 정합니다
3. 내용을 시각화 할 방법을 정합니다
 예) 텍스트, 사진, 일러스트, 그래프, 픽토그램 등

스케치 단계에서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시도해 보세요
 머릿속에 가능성이 많을 수록 작업시간은 의외로 줄어듭니다

회계·세무

비영리 회계의 이해

최호운(삼화회계법인 이사)

비영리 회계 이해

공인회계사 최호운
(ngo114@gmail.com)

비영리회계 이해

비영리조직의 출발



But,

정보제공의 일방향성
기부자들의 요구에 대한 재무정보의 질적 속성 한계
▼
기부문화 활성화의 걸림돌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회계정보의 유용성

●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유용성 판단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1 목적 적합성

2 신뢰성

3 비교가능성

● 한국 vs 해외 비영리회계기준

- 한국: 2003년 3월 한국회계연구원이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지침서' 발표
-> 강제성 없는 지침서
- 미국 SFAS, 영국 SORP, 일본 NPO會計基準 등 -> 규범적 강제성이 있는 규정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회계정보의 유용성

●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방향성(Objective): SFAC, SORP, NPO회계기준

- 현재 및 잠재적인 자원의 제공자와 기타 이용자의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평가에 유용한 정보
- 비영리단체 **관리자의 수탁책임 및 성과 측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 비영리단체 조직의 **경제적 자원, 부채, 순자산 및 변화**에 관한 정보 제공
- 비영리단체의 **유동성**에 관한 정보
- 정보이용자들이 제공된 재무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 및 해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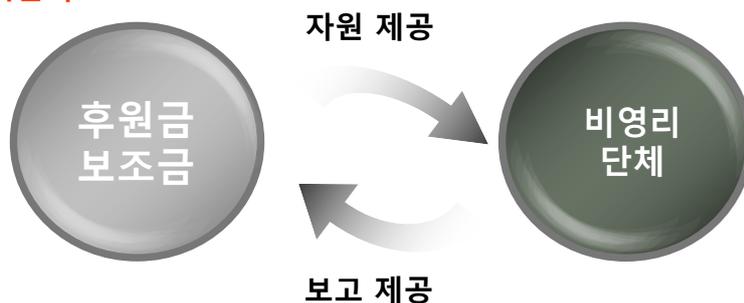
회계규정이 명시한 회계정보 질적 속성의 공통점은.....

수탁책임 이행여부와 효율적 운용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비영리 단체는 **자원제공자와 대리 관계를 형성**하며 대리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수탁업무에 대한 보고책임이 따른다.**



▶ 수탁업무 보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확보해야 되는 속성

1 투명성(Transparency)

2 목적적합성 - 정보이용자관점
- 계정과목 체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투명성(Transparency) :



영리는 공개할수록
경쟁업체에 기밀유출
VS
비영리는 공개할수록
후원자 확보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2014

귀하께서는 기부 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할 단체/기관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현재와 같은 수동적
재무정보 접근절차를 극복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기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투명성이 확보됨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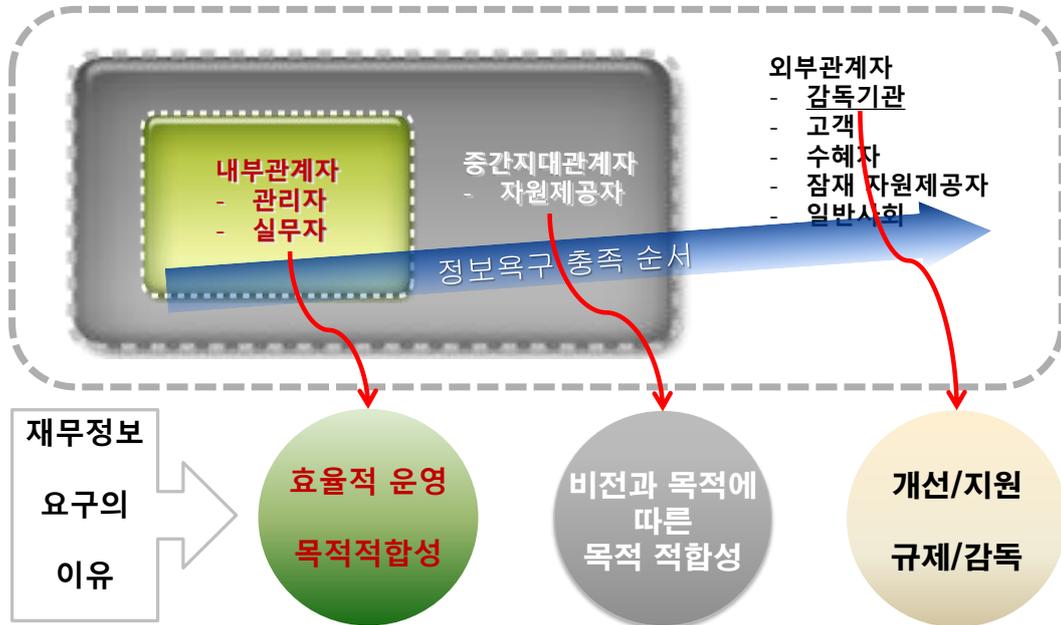
목적적합성 - 정보이용자관점

구 분	재무 요구 정보
관리자 및 실무자	비전/미션수행, 조직운영, 수탁관리책임 이행에 대한 수행과 감독을 위해 정보 활용
자원제공자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데 정보 활용
감독기관	비영리단체 평가 및 새로운 정책을 변경, 입안하기 위해 정보 활용
고객 및 수혜자	미래의 자원제공자이자 서비스 대상자
잠재 자원제공자	본인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정보 활용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 목적적합성 – 정보이용자관점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 목적적합성 – 계정과목체계

계정과목체계는 목적적합성을 확보하는 도구적 관점으로 **계정과목체계는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분	구성 목적	분류	비고
수익(또는 수입)	자원 제공원인과 자원 제공자의 의도 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	- 회비(membership fee) - 지정 후원금 - 일반 후원금 - 사업수익 - 보조금 - 수익사업수익	개인후원금, 단체후원금, CMS후원금, 모금후원금 등으로 구분 <- 대리인 역할 망각
비용(또는 지출)	자원제공자의 목적 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체계로 구성	※ 자원제공자가 부가한 제약조건 → 해당 목적별 분류 - 직접사업비 - 간접사업비 - 일반관리비	회원서비스/모금관리비항목이 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별도 항목으로 구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설립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회계정보의 속성

구 분	명 칭	회계정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	재무정보의 질적 속성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고시	*** <u>(주무부처)</u>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감독과 규제 관점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다른 기관의 옷을 입거나 각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무정보를 작성해야 하는 현실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외국사례

● 미국(FASB)

- 자원제공자가 부가한 **제약조건**(단체 스스로 부가한 제약조건 포함)별로 자원 관리
-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업비, 관리비, 모금비로 분류 보고
- 회계처리 관련 **사안별 회계처리** 방안을 정한 의견서
 - SFAC No. 4 : 비영리조직의 재무회계 개념체계
 - SFAS No. 117: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 SFAS No. 116: 비영리조직의 후원금
 - SFAS No. 93 : 비영리조직의 감가상각
 - SFAS No. 124: 비영리조직의 투자자산
 - SFAS No. 136: 비영리조직의 자산교환

구분	합계	사업비(Program)		일반관리	모금
		A	B		
인건비 타 조직 기부금 여비교통비 소모품 *****					
비용 합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외국사례 - 미국사례

	2014		
	Unrestricted	Temporarily Restricted	Total
REVENUE AND SUPPORT			
Contributions	\$ 8,213,956	\$ 146,939	\$ 8,360,895
Grants (Notes 7 and 14):			
U.S. Government	-	18,276,473	18,276,473
Non-U.S. Government	-	37,994,912	37,994,912
In-kind contributions (Note 10)	1,428,709	-	1,428,709
Interest	4,797	-	4,797
Other	335,989	50,291	386,279
Net assets released from donor restrictions (Note 8)	51,013,314	(51,013,314)	-
Total revenue and support	60,996,765	5,455,301	66,452,066
EXPENSES			
Program Service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Programs	9,259,647	-	9,259,647
Kenya Programs	4,097,978	-	4,097,978
South Sudan Programs	10,208,057	-	10,208,057
Uganda Programs	3,675,918	-	3,675,918
Pakistan Programs	13,409,461	-	13,409,461
Nigeria Programs	5,230,680	-	5,230,680
Cambodia Programs	90,890	-	90,890
Other Field Strategic Programs	2,124,002	-	2,124,002
Programs Sub-contracted to Network:			
Somalia Programs	-	-	-
Haiti Programs	900	-	900
Philippines Programs	1,557,919	-	1,557,919
Mali Programs	-	-	-
Ethiopia Programs	-	-	-
Mauritania Programs	215,442	-	215,442
Liberia Programs	21,781	-	21,781
Sierra Leone Programs	209,320	-	209,320
Total program services	50,101,995	-	50,101,995
<i>Save your TIME, Save your MISSION!</i>			
Supporting Services:			
Program Support	3,956,491	-	3,956,491

외국사례 - 미국사례

STATEMENT OF FUNCTIONAL EXPENSES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14

	Program Service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Programs	Kenya Programs	South Sudan Programs	Uganda Programs	Pakistan Programs	Nigeria Programs	Cambodia Programs
Personnel:							
U.S. staff	\$ -	\$ -	\$ 26,046	\$ -	\$ 252,991	\$ 6,944	\$ 2,105
Other U.S. payroll	1,044,636	169,526	1,250,413	448,052	191,586	448,414	45,155
Fringe benefits (Note 12)	577,110	122,788	742,143	135,623	352,448	318,023	22,589
National Field Staff	2,932,277	2,081,104	1,851,550	714,748	3,998,743	1,563,155	5,210
Office running costs and services:							
Insurance	4,303	-	-	-	-	-	-
Rent and utilities (Note 11)	217,290	237,477	454,904	153,301	224,341	150,822	3,453
Professional fees	38,205	17,263	46,014	17,190	1,770	4,365	-
Travel	203,255	18,473	332,357	16,384	149,798	87,455	4,948
Telecommunications	134,622	50,396	141,725	63,903	57,700	80,982	395
Postage and custom fees	19,584	1,911	62	50	8,852	1,591	13
Finance charges	31,335	4,972	56,865	10,364	67,522	25,133	207
Meeting expenses	-	(2,199)	-	-	-	-	-
Human resources	-	-	-	-	-	-	-
Office equipment and supplies:							
Office supplies	177,103	50,362	419,529	37,188	163,959	84,559	3,399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	91,981	10,451	-	1,906	-
Equipment rental and maintenance	2,550	202	5,547	3,335	6,744	3,588	55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외국사례 - 미국사례

Other Country and Strategic Programs	Programs Sub-contracted to Network	Total Program Services	Program Support	Supporting Services			Total Supporting Services	Public Information Campaign	Total Expenses
				Management and General	Fundraising				
\$ 174,124	\$ -	\$ 462,210	\$2,220,064	\$ 1,020,358	\$ 456,016	\$3,696,438	\$ -	\$ 4,158,648	
192,421	-	3,790,203	293,621	122,692	51,733	468,046	-	4,258,249	
61,541	-	2,332,265	652,005	275,239	108,484	1,035,728	-	3,367,993	
1,783	-	13,148,570	214,636	-	-	214,636	-	13,363,206	
-	-	4,303	-	14,851	-	14,851	-	19,154	
5,663	-	1,447,251	58,755	601,660	2,550	662,965	-	2,110,216	
1,177	-	125,984	114,233	132,419	50,498	297,150	-	423,134	
55,592	-	868,262	252,997	51,776	14,165	318,938	-	1,187,200	
176	-	529,899	19,047	59,087	-	78,134	-	608,033	
281	-	32,344	3,680	4,208	40,035	47,923	-	80,267	
856	-	197,254	1,057	44,817	39,151	85,025	-	282,279	
1,179	-	(1,020)	19,397	16,539	2,753	38,689	-	37,669	
-	-	-	11,074	330	-	11,404	-	11,404	
4,346	-	940,445	32,221	63,494	4,177	99,892	-	1,040,337	
-	-	104,338	11,983	25,287	-	37,270	-	141,608	
-	-	22,021	401	35,671	-	36,072	-	58,093	
-	-	-	-	-	583,234	583,234	227,192	810,426	
-	-	-	834	108,075	-	-	-	108,909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외국사례

● 영국(CCEW – SORP:Accounting and Reporting by Charities)

- 표시하는 보고서 형식은 차이가 있으나 자원제공자가 부가한 제약조건, 사업관련 기능적 분류로 분류하는 체계는 미국의 기준과 동일
- 보고서 양식(Statement of Activities)

	Unrestricted Fund	Restricted Funds	Endowment Funds	Total Funds	Prior period Funds	Further details
Income and endowments						
● Donations and legacies						
● Charitable activities						
● Other trading activities						
● Other						
Expenditure on:						
● Raising funds						
● Charitable activities						
● Other						
Net Income /(Expenditure)						
Transfers between funds						
Others						
Net movement in funds						

● 비용 지출 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양식

Activity or programme	Activities undertaken directly	Grant funding of activities	Support costs	Total
Activity 1				
Activity 2				
Total				

●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주석 표시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외국사례

○ 일본

- 公益法人會計基準, NPO法人會計基準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기준
- 사용 용도별 제약조건에 따라 분류하여 그 사용 용도에 제약조건이 부가된 재산을 구분하여 수탁책임을 명확화
- 순자산(正味財産)증감계산서 내역표

	공익목적사업				수익사업				법인 회계	내부거래 제거	합계
	A사업	B사업	공통	소계	A사업	B사업	공통	소계			
경상수익 경상비용 경상외수익 경상외비용 지정재산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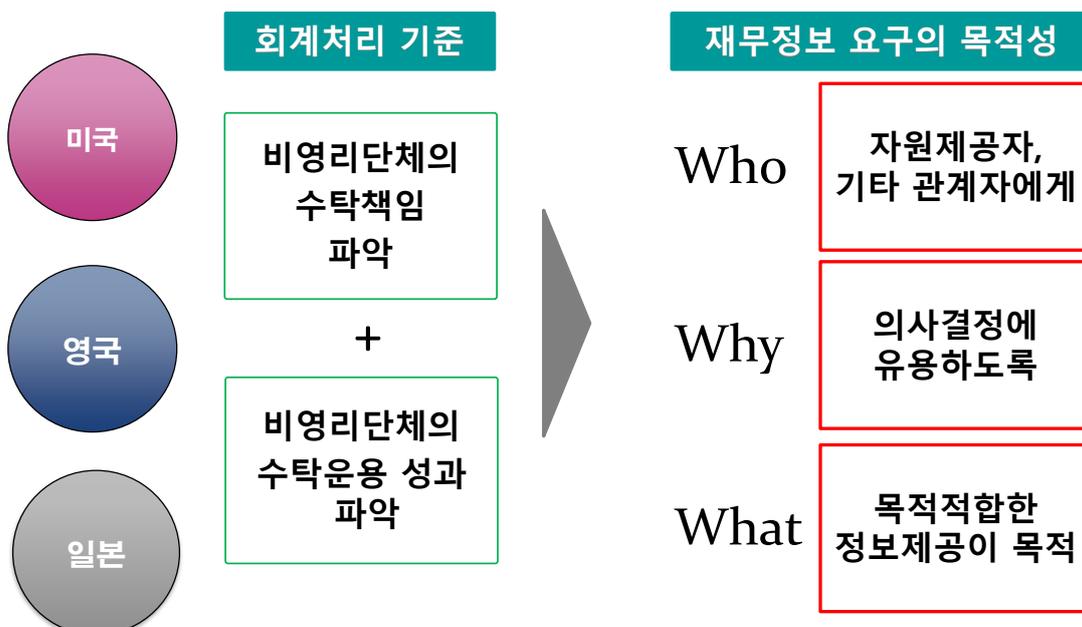
● 사업비 내역을 주석(注記)사항으로 보고

과목	A사업	B사업	합계
인건비 ****				
기타제경비 ***				

- 재무제표 본문으로 표시할 수 없는 정보는 주석으로 별도 보충적 표시
 - 중요한 회계방침 / 기본재산과 특정재산의 종류, 증감내역 / 담보제공자산
 -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내역 / 보조금 내역과 당기 중 수령액, 사용액, 잔액
 - 기금, 대체기금의 증감 내역 / 지정순자산과 일반순자산간 전환 내역
 - 특수관계자 및 관련 거래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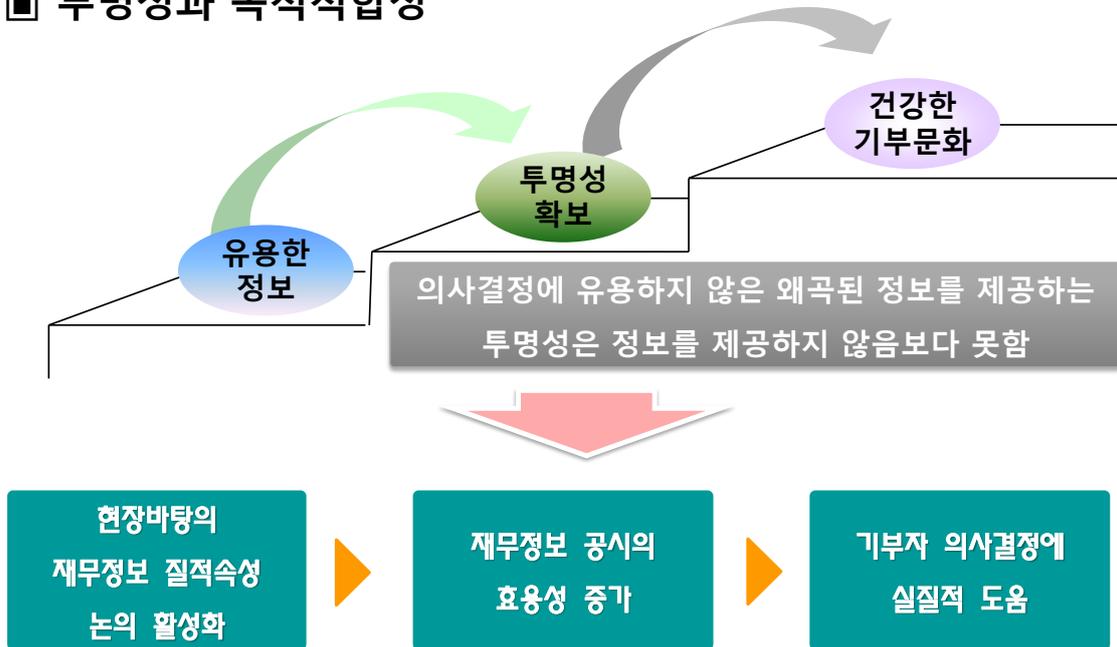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외국사례(외국 비영리 재무규정의 목적)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투명성과 목적적합성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 조직이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누가 답답한가?

- ☞ 보조금 중심 운영단체
- ☞ 후원자 중심 운영단체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원리 이해와 실습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회계 일반



+



가)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음.

나) 회계(會計, Account-ing)는?

- 의사전달도구로서 언어(Language)의 일종이다
- 일정한 기준으로 집합시키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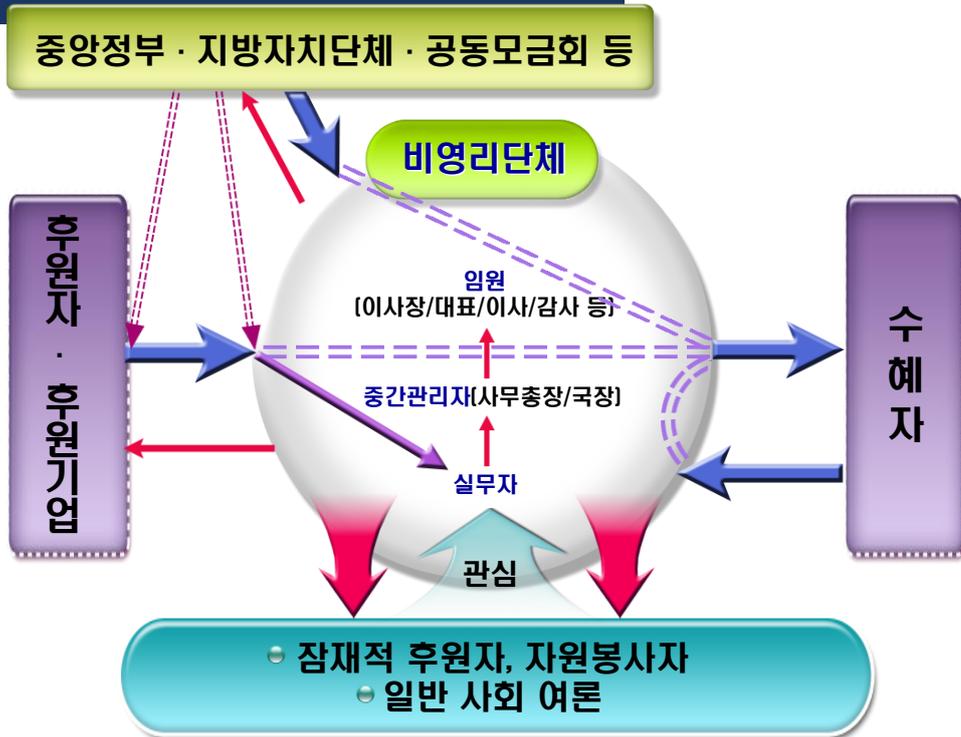
다) 회계활동을 하는 이유는?

- 과거의 활동결과를 측정하고
- 현재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 미래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라) 현실은?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회계 일반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회계 일반

비영리회계 특성

수탁책임보고회계

- 자원제공자의 의도
-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기금회계

예산회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회계 일반

비영리회계 특성

기업회계와의 차이

- 손익측정 ↔ 활동내역측정
- 미래가치에 따른 다양한 자원 운용이 가능
↔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진행

수익사업

- 정관 VS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회계 일반

회계인식방법 - I

현금주의 (Cash Basis)

유입[증가]

수입

유출[감소]

지출

- 장점
- 단점
현물거래를 인식할 수 없다
기간귀속계산이 부정확
자산이 과대평가(비용의 과소)되는 결과를 초래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회계 일반

회계인식방법 - II

발생주의 (Accrual Basis)

- 주체의 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
- 장점
기간 귀속의 정확성
종합적인 정보제공
- 단점
자의적인 판단과 추정이 개입
과다한 회계처리비용이 발생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회계 기준

가)공통적 규정 기준: 일반 회계원리

나)종류별 적용기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령/2015.12.24]
- 사립학교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교육부령/2016.11.3]
- 병원: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보건복지부령/2015.12.31]
- 종교법인: 기준 없음
- 시민단체: 기준 없음
- 중앙정부: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기획재정부령/2015.12.31)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2014.11.29]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비영리회계 기준

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작성과 표시지침서(한국회계연구원) :
≪제안이나 의무적 적용규정은 아니다.

라) 비영리조직회계기준(초안)(한국회계기준원)(2013.8)

마) 외국(미국)의 기준

- SFAC No. 4: 비영리조직 재무보고 목적
- SFAS No.117: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 SFAS No.116: 후원금 회계처리
- SFAS No.124: 비영리조직의 투자자산 회계처리
- SFAS No. 93: 비영리법인의 감가상각인식
- SFAS No.136: 자산교환

바) 영국: Charities SORP(Statement of Recommended Practice)
“SORP: Accounting and Reporting by Charities”

사) 일본: 公益法人會計基準, NPO法人會計基準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1. 거래의 이중적 속성

- ① 매매: 판매자 vs 구매자
- ② 임대차: 임대인 vs 임차인
- ③ 근로: 고용주 vs 종업원
- ④ 금전: 대여자 vs 차입자
- ⑤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2. 단식부기(Single Entry):

- ① 단일항목의 증감변화를 기록
- ② 원인은 개별 거래의 적요로서만 파악
- ③ 장점:
- ④ 단점:
 - 보고서의 종류가 제한적
 - 종합적인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 기간별 활동비교가 불가능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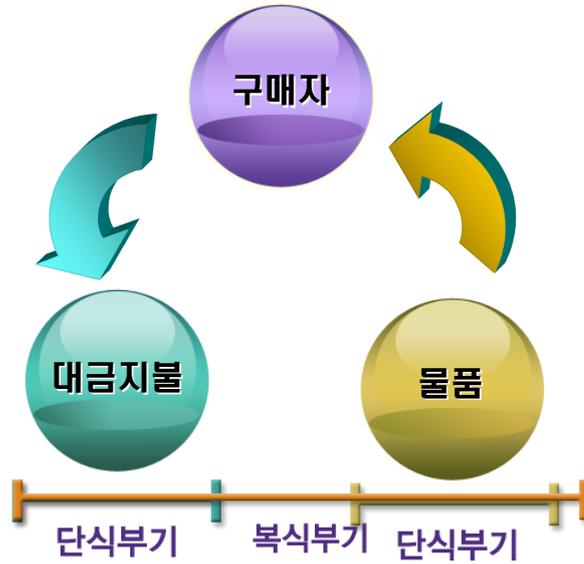
3. 복식부기(Double Entry):

- ① 이중적 속성에 따른 자금의 원천별 조달과 자금의 운용결과
- ② 장점:
 - 활동 전체를 파악하기가 용이
 - 다양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
 - 자기검증 기능
- ③ 단점: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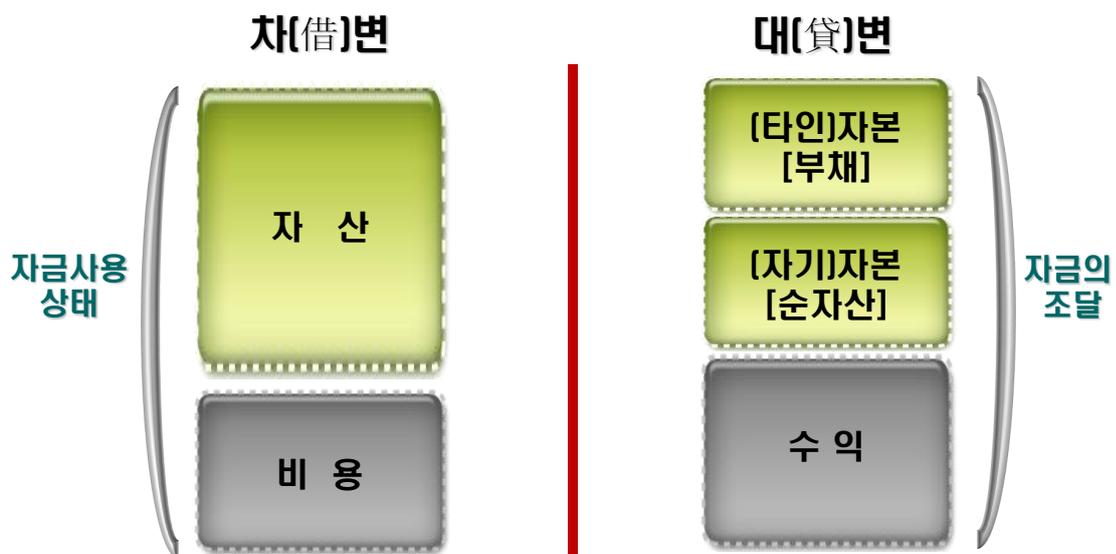
4. 단식부기 vs 복식부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자금의 흐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순자산

- 초기 조달 자원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금액
- 조직이 **존속하는 동안 상환의무 없음**
- 지분자금과 목적사업활동결과로 구성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 회계주체가 **일정기간내 상환할 의무 부담**
- 이행을 위하여 미래 자원의 유출이 예상

수익

- 활동 결과 순자산의 증가결과를 가져오는 요소
- 회계기간 단위로 집계. **이월되지 않음**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자산

- 회계주체가 통제 가능하고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됨
- 회계주체가 일정기간 **계속 사용가능 => 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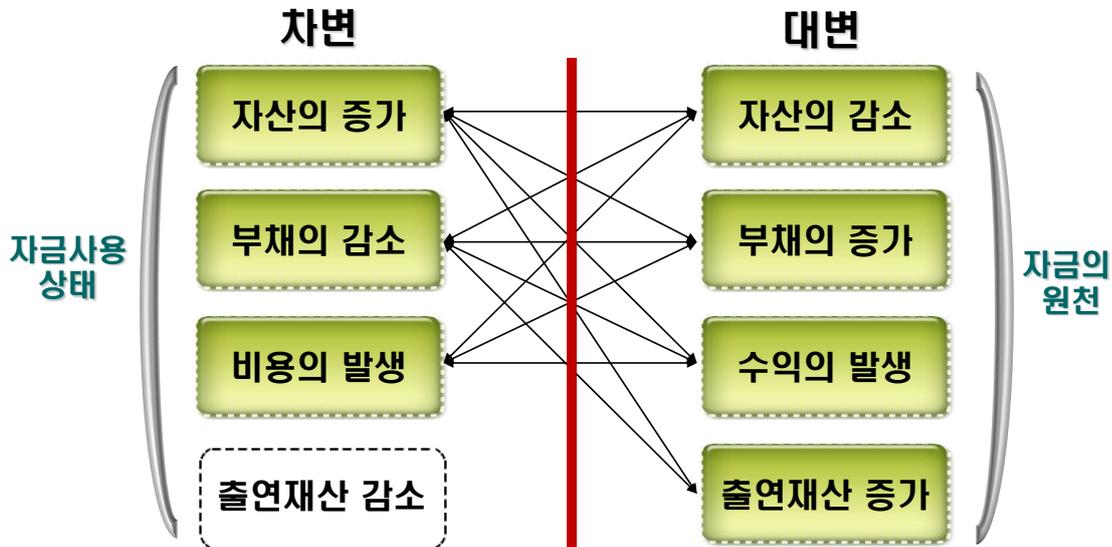
비용

- 순자산의 감소결과를 가져오는 요소
- **소비**하고 이월되지 않음
- 회계기간 단위로 집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5. 거래의 7요소 결합관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6. 복식부기거래 분개 절차

사실관계의 확정:

가장 먼저 다음의 회계적 정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 ①일시
- ②거래 당사자(주체 및 상대방)
- ③경제적 권리관계 변동내역
- ④측정 가능한 금액적 효과

발생항목별 속성(자산/부채/수익/비용)의 구분 및 증감 파악:

사실관계의 발생 항목들을 속성별로 구분하여 증가 또는 감소여부를 파악하고

계정과목 결정: 해당하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결정한 후

차변/대변 구분: 속성과 증감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한 후

금액 기재: 해당되는 화폐가치 측정치를 기재하면 된다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 현금 20만원을 은행에 입금하다.
- 보통예금계좌에서 17만원을 인출하였다.
- 현금 160만원을 지불하고 노트북 1대를 구입하였다.
-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주인에게 송금하였다.
- 복사기(220만원)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2주일뒤 대금지불예정이다.
- 2주일뒤 복사기대금 22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다.
- 후원자 홍길동씨가 운영후원금 100만원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 후원자 이철수씨가 프린터기 1대(180만원상당)를 현물로 후원하였다.
- 지급하지 못한 임차료 150만원을 후원자 이나눔씨가 대신 지급하였다.
- 사무실 임차료 1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간사가 개인비용으로 지급한 식비 5만원을 청구하였다.
(4/20 지출, 4/25 청구, 5/2에 정산지급예정)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 현금 20만원을 은행에 입금하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 보통예금 계좌에서 17만원을 인출하였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 현금 160만원 지급하고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주인에게 송금하였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 복사기(220만원)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 복사기 미지급금 22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 후원자 홍길동씨가 운영후원금 100만원을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 후원자가 프린터기(180만원) 1대를 현물로 후원하였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금 150만원을 후원자가 대신 납부하였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금을 후원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대신 납부한 것을 후원금으로 처리해달라고 한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 사무실 관리비 1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 간사가 개인비용으로 지급한 식비 5만원을 청구하였다
(4/20지출, 4/25청구, 5/2 정산 지급예정)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사례)

● 인쇄비 외상대 80만원을 예금에서 인출하여 송금하면서 수수료 500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 하였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 은행 예금계좌에 이자 86만원이 입금되었다. [단체는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총액]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거래의 기록 - 분개/전표작성

- 은행 예금계좌에 이자 86만원이 입금되었다. [순액]
[단체는 회계연도 종료후 별도로 법인세 신고를 안한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 은행 예금계좌에 이자 86만원이 입금되었다.
[단체는 회계연도 종료후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해왔다]

- ① 증가(또는 감소)한 것은?
- ② 증가(또는 감소)한 계정의 속성은?
- ③ 순자산이 증가(감소)하였는지?

④ 차변: _____ / 대변: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이해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숲을 보는 것과 나무를 보는 것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 계정과목?

Q1

역량강화교육사업부에서 실무자 집체교육
진행시 장소사용료 200만원을 지불하다
역량강화 사업비
집체교육비
지급임차료(장소사용료)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분류 기준

- 부서기준 (Center)
- 기능/활동기준 (Function)
- 속성/성질기준 (Nature)

기본 가정

- 기업실체
- 계속기업
- 기간별 비교
- 발생주의 회계

설정 기준

- 목적적합성
- 구분과 통합 : 중요성
- 계속성
- 간단, 명료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속성별 구분

- 자산
- 부채
- 순자산
- 수익
- 비용

조기 활용가능 여부

- 1회전 주기적 사용 => 유동
- 계속 사용 => 비유동

목적사업 관련성

- 직접 관련 => [목적]사업, 매출
- 간접 관련 => 판매 및 일반관리
- 목적외 활동 => [목적]사업외, 영업외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당좌자산

현금

- 통화
-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 수표...)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자산

- 현금전환비용이 별로 없음
- 취득당시 3개월 이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단기투자자산

- 단기자금운용목적 1년 이내 만기도래
- 단기금융상품
 - 단기매매증권
 - 단기대여금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당좌자산

매출채권

- 목적사업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구성

미수금

- 목적사업이외의 상거래 발생
- 확정 채권

미수수익

- 발생주의 수익발생
- 기간경과로 인한 수익발생분
- 미확정 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자산

사례 :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

	미수금	미수수익
임대기간	10/1~10/31	10/16~11/15
임대료	300만원	300만원
임대료청구일	10/31	11/15
10/31기준 임대수입	300만원	150만원
10/31기준 청구가능성	가능	기다려야 함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Q 임대료 미수액 : _____

Q 간병료 미수액 : _____

Q 상품판매 외상대 : _____

Q 후원금 미수금 : _____

Q 결산시점(12/31)에 만기(익년 5/31) 미도래 정기예금 이자분 :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선금금

- 상품/원재료 등 자산의 구입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

선금비용

- 미리 지급한 비용중
- 소멸기간 미경과분

부가세대급금

- 과세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 미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
-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Q

여름행사 장소계약금 : _____

Q

결산시점(12/31)에 아직 보험기간(~익년3/31) 만기 미도래 자동차보험료: _____

Q

목적사업에 사용할 컴퓨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 _____

Q

임대사업 사용 책결상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 _____

Q

학원 교육사업에 사용할 빔프로젝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선납세금

-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당하였거나
- 중간예납시 선납한 세액

단기대여금

- 빌려준 자금으로 1년 이내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여금

기금간 채권

- 내부 기금/회계단위간 거래로서
- 회수할 것을 전제로
- 대여 또는 대지급(代支給)한 금액

기타의 당좌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Q

이자소득 수령시 공제된 원천징수
법인소득세 : _____

Q

수익사업에서 다른 수익사업으로
대여한 자금 :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재고자산

상품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를 위하여 대기

제품

내부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를 위하여 대기

재공품

생산에 투입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

원재료

제품으로 변환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

수증물품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Q

노숙자 치료를 위해 후원받은

의료약품 :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투자자산** :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적립하는 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기금/적립금

3. 투자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4. 퇴직연금운용자산(DB)

5. 장기대여금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유형자산** :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자산

1. 토지

2. 건물/구축물

3. 비품

4. 차량운반구

5. 기계장치

6.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중간관리계정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무형[無形]자산 : 형체를 식별할 수 없는 자산

1. 전세권

2. 영업권

3. 소프트웨어

4. 임차권리금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유동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기타비유동자산 : 그 외의 비유동자산

1. 보증금(임차/기타)

2. 장기성매출채권

3. 기타의 기타비유동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부채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매입채무

1. (사업목적관련)상거래에서 발생
2.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 미지급금

1.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부채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미지급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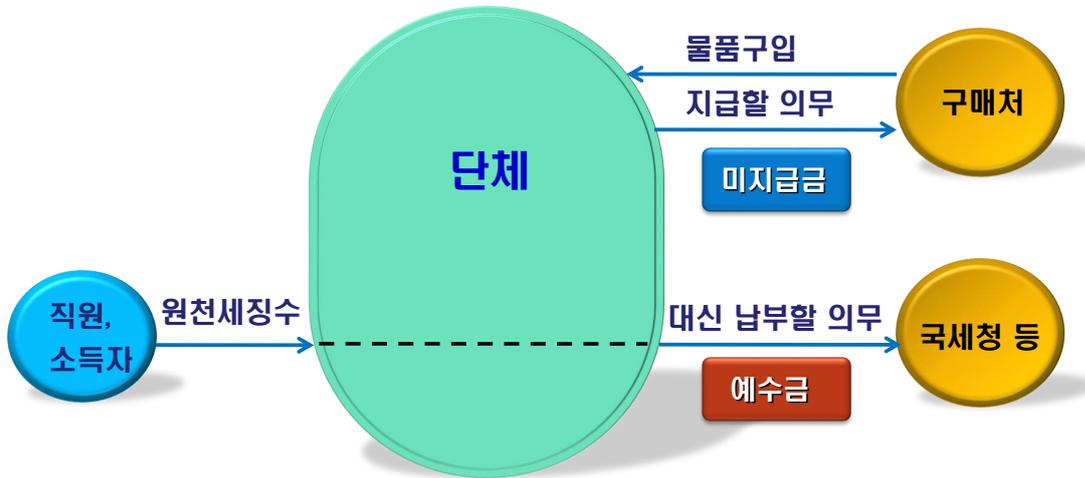
1. 기간경과로 인하여
2.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3. 미확정채무

● 예수금

1. 타인이 부담할 부채금액을
2. 회계주체가 받아서
3. 회계주체가 지급할 부담을 가짐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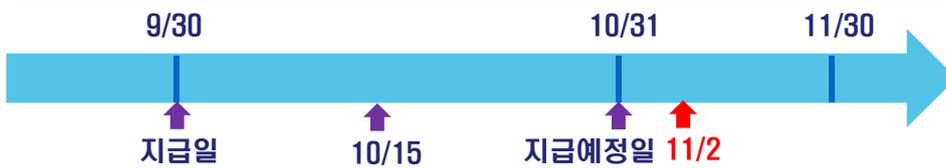
● 미지급금과 예수금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사례

차입금액 : 1,000만원
 년이자율 : 12%
 이자지급 : 매월 말일 후불



10/15시점의 10월분 지급이자 :

11/2 시점의 10월분 지급이자 :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부채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선수금

1. 일반상거래에서
2. 미리받은 금액으로서
3.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

● 선수수익

1. 미리 받은 수익금액 중
2.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유동부채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제약	
일시적제약	
무제약	

● 부가세예수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 장기부채 : 비유동부채중 1년내 상환기일이 도래한 부분

● 기금간 채무

- 내부 기금간 거래로서
- 지급할 것을 전제로
- 차입 또는 미지급(未支給)한 금액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유동부채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계약	
일시적계약	
무계약	

- 임대보증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1. 결산일 현재

2.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

- 장기차입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순자산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순자산(자본)	
영구적계약	
일시적계약	
무계약	

- 영구적계약조건이 있는 자산

1. 기본재산

2. [설립]출연재산

- 일시적계약조건이 있는 자산

1. *** 적립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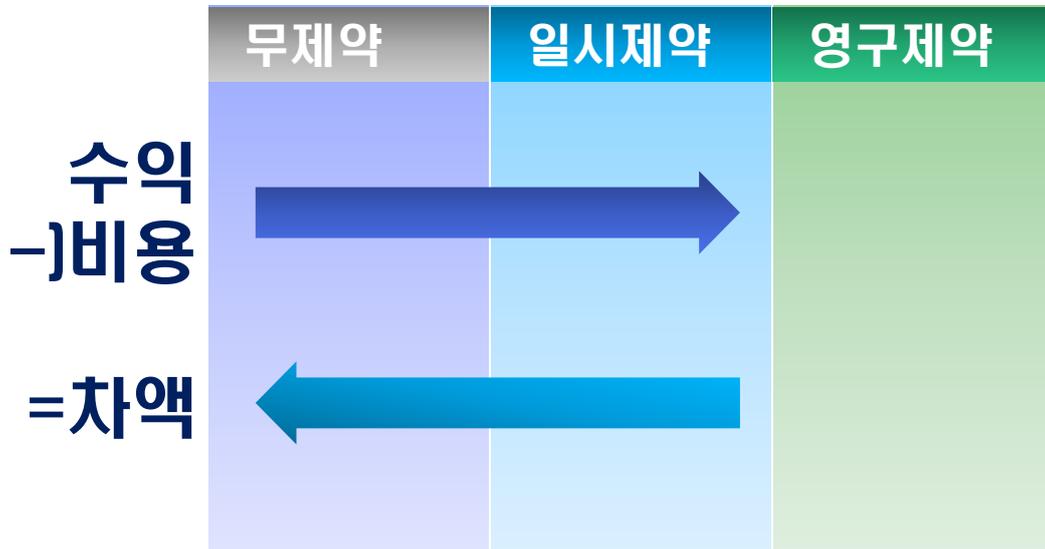
2. *** 기금

- 제약조건이 없는 자산

1. 잉여차액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순자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수익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 목적사업수익

1. 회비와 후원금

- 회비 :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 분담금
- 후원금 : 자발적인 기부금

2. 일반후원금과 특정후원금

- 일반후원금 :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
- 특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

3. 현금후원과 현물후원

- 현금후원
- 현물후원 : 물품으로 받은 후원금(시가평가)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수익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Q 정회원 의무 납입금 : _____

Q 정회원 추가 납입금 : _____

Q 후원회원 후원금 : _____

Q 후원자들의 후원금 : _____

Q 결손가정 지정 후원금 :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수익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Q 단체홍보내용 보고 후원 : _____

Q 지역아동센터 주방용품 후원 : _____

Q 독거노인 식사지원보조금: _____

Q 사회적일자리 인건비보조금 : _____

Q 장애인고용지원금: _____

Q 법인->시설회계 전입금 :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수익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4. 보조금

- 국가 ·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 대가성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지원금

5. (법인전입금)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용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 사업비용

1. ** 사업비 <- 행사성격

- [사업]인건비
- 강사비
- [사업]회의비 / 간식비
- [사업]출장비 / 여비교통비 / 숙박비
- [사업]임차료 / 장비임차료
- 자료구입비
- 자료제작비
- [사업]홍보비
- 행사용품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용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 사업비용

2. ** 사업비 <- 지원성격

- 급식재료비
- 피복지원비
- 교육지원비
-
- ** 물품지원비
- ** 지원비
-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사례) - 비용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Q

사업담당간사 인건비 : _____

Q

사업참여간사 업무 교육비 :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용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관리운영비용

- [관리]인건비(급여/상여)
- 퇴직급여
- 법정복리비
- 복리후생비
- 여비교통비
- 회의비
- 통신비
- 세금과공과(조세공과)
- 지급임차료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수선비
- 교육훈련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용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관리운영비용

- 차량유지비
- 홍보비(광고선전비)
- 접대비
- 도서인쇄비
- 보험료
- 지급수수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잡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용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Q 일반 실무자교육 강사비: _____

Q 내부 간사 SW활용 교육 강사비: _____

Q 지역아동센터 학생 교육 강사비 : _____

Q 단체홍보 홈페이지 제작비 : _____

Q 특정사업 홍보 홈페이지 제작비 :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비용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Q 확정기여 납부 퇴직연금 : _____

Q 확정급여 납부 퇴직연금 : _____

Q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 설정: _____

Q 법인부담 건강보험료: _____

Q 임의가입 건강보험료 부담분 : _____

Q 간사 결혼 경조비 지급 : _____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사업외수익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 수입이자
- 배당금수익
- 환차이익
- 외화환산이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 법인전입금 / 기금간 전입금
- 잡이익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계정과목 - 사업외비용

사업수익	
목적사업수익	
회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사업수익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지원사업비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모금관리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잉여차액	

- 지급이자
- 환차손실
- 외환환산손실
- 유형자산처분손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 기금간 전출금
- 잡손실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회계 장부와 보고서 이해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현금출납장

1. 현금출납장 작성 사례 _ 현금

4/1 전월 이월액 5,200,000원(현금:200,000원 / 보통예금:5,000,000원)

4/2 예금에서 400만원 현금으로 인출

4/2 담당자가 400만원 현금 가불하여 개인용으로 사용

4/28 담당자가 400만원 사무실에 현금으로 가져옴

4/29 현금 400만원을 예금에 입금

4/30 차월 이월액 5,200,000원(현금:200,000원 / 보통예금:5,000,000원)

일시	적요	입금	출금	잔액
4/1	전월 이월	200,000		200,000
4/2	예금 인출	4,000,000		
	***가불금 지급		4,000,000	200,000
4/28	***가불금 회수	4,000,000		4,200,000
4/29	예금 입금		4,000,000	2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현금출납장

1. 현금출납장 작성 사례 - 자금

- 4/1 전월 이월액 5,200,000원(현금:200,000원 / 보통예금:5,000,000원)
- 4/2 예금에서 400만원 현금으로 인출
- 4/2 담당자가 400만원 현금 가불하여 개인용으로 사용
- 4/28 담당자가 400만원 사무실에 현금으로 가져옴
- 4/29 현금 400만원을 예금에 입금
- 4/30 차월 이월액 5,200,000원(현금:200,000원 / 보통예금:5,000,000원)

일시	적요	입금	출금	잔액
4/1	전월 이월	5,200,000		5,200,000
4/2	예금 인출	-	-	-
	***가불금 지급		4,000,000	1,200,000
4/28	***가불금 회수	4,000,000		5,200,000
4/29	예금 입금	-	-	-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장부와 보고서 작성(사례)

- 전월이월 : 70만원(현금 60만원, 보통예금 10만원)
- 4/2 : 월례회의비 15만원 현금으로 지출
- 4/10 : 복사지 대금 10만원 외상으로 구입
- 4/12 : 후원금 50만원 예금으로 입금
- 4/13 : 필기도구 3만원 현금지출하고 구입
- 4/14 : 복사지 외상대 10만원 현금으로 지급
- 4/15 : 임대료 150만원 청구 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미지급
- 4/16 : 사무실 방문한 후원자가 후원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
- 4/18 : 100만원 상당의 책걸상을 현물로 기부받음
- 4/20 : 컴퓨터 200만원 외상으로 구입
- 4/21 : 저녁회의시 식대 2만원 현금으로 지급함
- 4/30 : 월말 간사 인건비 300만원 자금부족으로 미지급
- 차월이월 : 100만원(현금40만원, 보통예금60만원)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 4/2 : 지출: 월례회의비 150,000

일시	적 요	입 금	출 금	잔 액
4/1	전월 이월			700,000
4/2	회의비 지출		150,000	550,000

계정과목 : 회의비

일시	적 요	금 액
4/2	월례회의비	15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 4/12 : __수입: 후원금 50만원__

일시	적 요	입 금	출 금	잔 액
4/1	전월 이월			700,000
4/2	회의비 지출		150,000	550,000
4/12	후원금 예금으로 입금	500,000		1,050,000

계정과목 : 후원금

일시	적 요	금 액
4/12	***예금으로 후원금 입금	5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 4/13 : 지출: 사무용품비 3만원 _____

일시	적 요	입 금	출 금	잔 액
4/1	전월 이월			700,000
4/2	회의비 지출		150,000	550,000
4/12	후원금 예금으로 입금	500,000		1,050,000
4/13	필기도구 구입비		30,000	1,020,000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일시	적 요	금 액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 4/14 : 지출: 사무용품비 10만원 _____

일시	적 요	입 금	출 금	잔 액
4/1	전월 이월			700,000
4/2	회의비 지출		150,000	550,000
4/12	후원금 예금으로 입금	500,000		1,050,000
4/13	필기도구 구입비		30,000	1,020,000
4/14	복사지 구입		100,000	920,000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일시	적 요	금 액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4/14	복사지 구입	1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 4/16 : 수입: 후원금 10만원 _____

일시	적 요	입 금	출 금	잔 액
4/1	전월 이월			700,000
4/2	회의비 지출		150,000	550,000
4/12	후원금 예금으로 입금	500,000		1,050,000
4/13	필기도구 구입비		30,000	1,020,000
4/14	복사지 구입		100,000	920,000
4/16	후원금 현금 수령	100,000		1,020,000

계정과목 : 후원금

일시	적 요	금 액
4/12	***예금으로 후원금 입금	500,000
4/16	***현금으로 후원	1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 4/21 : 지출: 회의비 2만원 _____

일시	적 요	입 금	출 금	잔 액
4/1	전월 이월			700,000
4/2	회의비 지출		150,000	550,000
4/12	후원금 예금으로 입금	500,000		1,050,000
4/13	필기도구 구입비		30,000	1,020,000
4/14	복사지 구입		100,000	920,000
4/16	후원금 현금 수령	100,000		1,020,000
4/21	저녁회의시 식대 지출		20,000	1,000,000

계정과목 : 회의비

일시	적 요	금 액
4/2	월례회의시	150,000
4/21	저녁회의시 식대	2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계정과목 : 후원금

일시	적 요	금 액
4/12	***예금으로 후원금 입금	500,000
4/16	***현금으로 후원	100,000
	합계	600,000

계정과목 : 회의비

일시	적 요	금 액
4/2	월례회의시	150,000
4/21	저녁회의시 식대	20,000
	합계	17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일시	적 요	금 액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4/14	복사지 구입	100,000
	합계	130,000

계정과목 : 임대료

일시	적 요	금 액

계정과목 : 비품구입비

일시	적 요	금 액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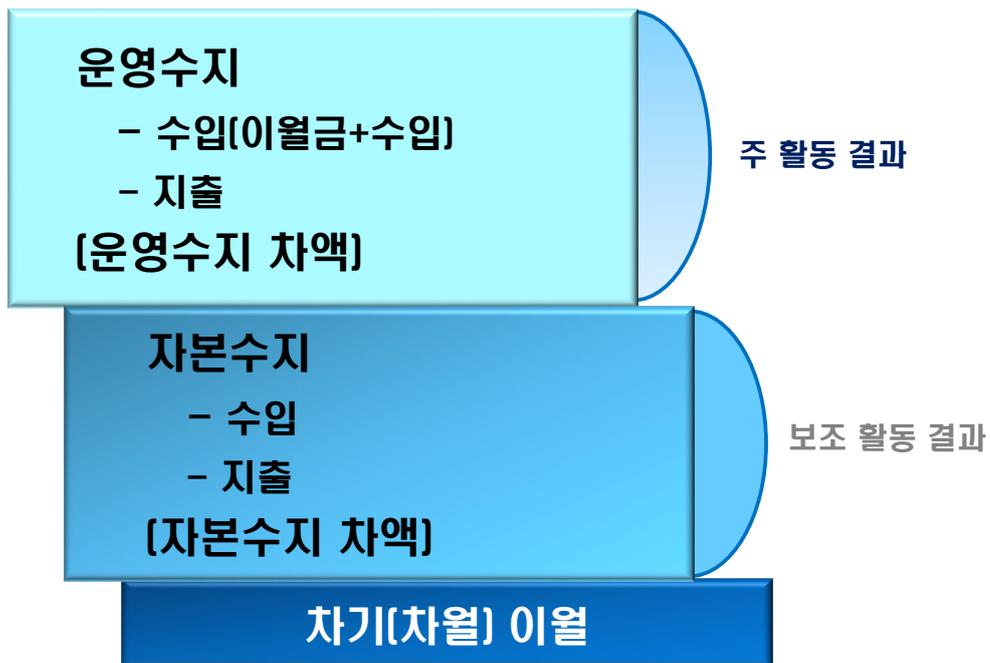
수지결산서작성 - 단식부기

2. 수지결산서

수입		1,300,000
● 전월이월	700,000	
● 후원금	600,000	
지출		300,000
● 회의비	170,000	
● 사무용품비	130,000	
● 임대료	-	
● 비품구입비	-	
● 인건비	-	
차월이월		1,0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수지결산서 체계 - 단식부기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3. 복식부기 분개 처리(분개장)

- 4/2 : 차변) (비용)회의비 15만원 / 대변) (자산) 현금 15만원
- 4/10 : 차변) (비용)사무용품비 1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10만원
- 4/12 : 차변) (자산)예금 5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50만원
- 4/13 : 차변) (비용)사무용품비 3만원 / 대변) (자산)현금 3만원
- 4/14 : 차변) (부채)미지급금 10만원 / 대변) (자산)현금 10만원
- 4/15 : 차변) (비용)임차료 15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150만원
- 4/16 : 차변) (자산)현금 1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10만원
- 4/18 : 차변) (자산)비품 10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100만원
- 4/20 : 차변) (자산) 비품 20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200만원
- 4/21 : 차변) (비용)회의비 2만원 / 대변) (자산)현금 2만원
- 4/30 : 차변) (비용)인건비 30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300만원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2 : 차변) 회의비 150,000 / 대변) 현금 150,000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	전월 이월	600,000		600,000
4/2	원래회의비시 지출		150,000	450,000

계정과목 : 회의비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2	월례회의비	150,000		15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10 : 차변) (비용)사무용품비 1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10만원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0	복사지 구입	↓ 100,000		100,000

계정과목 : 미지급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0	복사지 외상 구입		↓ 100,000	1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12 : 차변) (자산)예금 5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50만원

계정과목 : 예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	전월 이월	100,000		100,000
4/12	***후원금 입금	↓ 500,000		600,000
	합계	600,000	0	600,000

계정과목 : 후원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2	후원금		↓ 500,000	5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13 : 차변) (비용)사무용품비 3만원 / 대변) (자산)현금 3만원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0	복사지 구입	100,000		100,000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130,000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	전월 이월	600,000		600,000
4/2	원래회의비시 지출		150,000	450,000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42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14 : 차변) (부채)미지급금 10만원 / 대변) (자산)현금 10만원

계정과목 : 미지급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0	복사지 외상 구입		100,000	100,000
4/14	복사지 외상대 결제	100,000		0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	전월 이월	600,000		600,000
4/2	원래회의비시 지출		150,000	450,000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420,000
4/14	복사지 외상대 지급		100,000	32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15 : 차변) (비용)임차료 15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150만원

계정과목 : 지급임차료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5	4월분 임차료	1,500,000		1,500,000

계정과목 : 미지급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0	복사지 외상 구입		100,000	100,000
4/14	복사지 외상대 결제	100,000		0
4/15	4월분 임차료 미지급		1,500,000	1,5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16 : 차변) (자산)현금 1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10만원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	전월 이월	600,000		600,000
4/2	원례회의비시 지출		150,000	450,000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420,000
4/14	복사지 외상대 지급		100,000	320,000
4/16	***후원금 현금 수령	100,000		420,000

계정과목 : 후원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2	후원금		500,000	500,000
4/16	현금 후원금		100,000	6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18 : 차변) (자산)비품 100만원 / 대변) (수익)후원금 100만원

계정과목 : 비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8	책걸상 후원 받음	1,000,000		1,000,000

계정과목 : 후원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2	후원금		500,000	500,000
4/16	현금 후원금		100,000	600,000
4/18	책걸상 현물 후원		1,000,000	1,6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20 : 차변) (자산) 비품 20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200만원

계정과목 : 비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8	책걸상 후원 받음	1,000,000		1,000,000
4/20	컴퓨터 구입	2,000,000		3,000,000

계정과목 : 미지급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0	복사지 외상 구입		100,000	100,000
4/14	복사지 외상대 결제	100,000		0
4/15	4월분 임차료 미지급		1,500,000	1,500,000
4/20	컴퓨터 외상 구입대		2,000,000	3,5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21 : 차변) (비용)회의비 2만원 / 대변) (자산)현금 2만원

계정과목 : 회의비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2	월례회의비	150,000		150,000
4/21	저녁회의식대	20,000		170,000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	전월 이월	600,000		600,000
4/2	원례회의비시 지출		150,000	450,000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420,000
4/14	복사지 외상대 지급		100,000	320,000
4/16	***후원금 현금 수령	100,000		420,000
4/21	저녁회의 식대 지급		20,000	4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 4/30 : 차변) (비용)인건비 300만원 / 대변) (부채)미지급금 300만원

계정과목 : 인건비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30	4월 급여	3,000,000		3,000,000

계정과목 : 미지급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0	복사지 외상 구입		100,000	100,000
4/14	복사지 외상대 결제	100,000		0
4/15	4월분 임차료 미지급		1,500,000	1,500,000
4/20	컴퓨터 외상 구입대		2,000,000	3,500,000
4/30	4월분 인건비 미지급		3,000,000	6,5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계정과목 : 현금출납장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	전월 이월	600,000		600,000
4/2	원례회의비시 지출		150,000	450,000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420,000
4/14	복사지 외상대 지급		100,000	320,000
4/16	***후원금 현금 수령	100,000		420,000
4/21	저녁회의 식대 지급		20,000	400,000
	합계	700,000	3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계정과목 : 예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	전월 이월	100,000		100,000
4/12	***후원금 입금	500,000		600,000
	합계	600,000	0	

계정과목 : 비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8	책걸상 후원 받음	1,000,000		1,000,000
4/20	컴퓨터 구입	2,000,000		3,000,000
	합계	3,000,000	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계정과목 : 미지급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0	복사지 외상 구입		100,000	100,000
4/14	복사지 외상대 결제	100,000		0
4/15	4월분 임차료 미지급		1,500,000	1,500,000
4/20	컴퓨터 외상 구입대		2,000,000	3,500,000
4/30	4월분 인건비 미지급		3,000,000	6,500,000
	합계	100,000	6,6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계정과목 : 잉여차액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	전월 이월		700,000	700,000
	합계	0	700,000	

계정과목 : 후원금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2	후원금		500,000	500,000
4/16	현금 후원금		100,000	600,000
4/18	책걸상 현물 후원		1,000,000	1,600,000
	합계	0	1,6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계정과목 : 인건비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30	4월 급여	3,000,000		3,000,000
	합계	3,000,000	0	

계정과목 : 회의비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2	월례회의비	150,000		150,000
4/21	저녁회의시 식대	20,000		170,000
	합계	170,000	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계정별원장 전기

계정과목 : 지급임차료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5	4월분 임차료	1,500,000		1,500,000
	합계	1,500,000	0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일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4/10	복사지 구입	100,000		100,000
4/13	필기도구 구입	30,000		130,000
	합계	130,000	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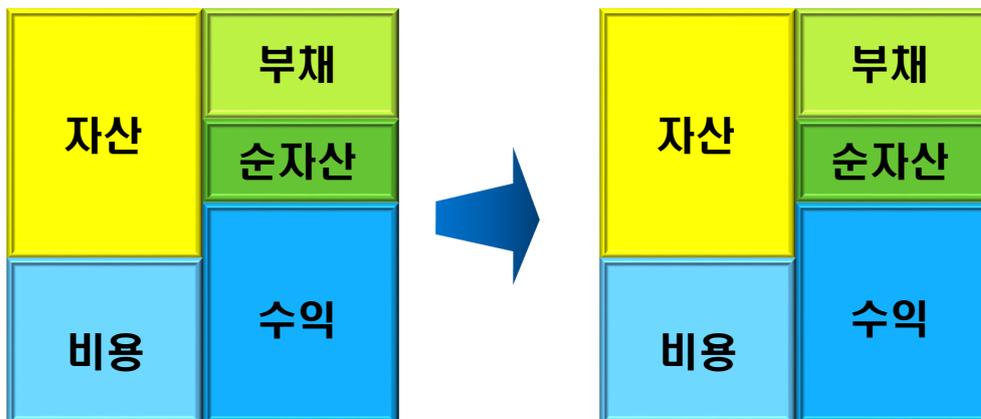
4.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 일반적 양식

잔액	합계	계정과목	합계	잔액
400,000	700,000	현 금	300,000	
600,000	600,000	예 금	0	
3,000,000	3,000,000	비 품	0	
	100,000	미 지 급 금	6,600,000	6,500,000
		기 본 재 산		
		잉 여 차 액	700,000	700,000
		후 원 금	1,600,000	1,600,000
3,000,000	3,000,000	인 건 비		
170,000	170,000	회 의 비		
130,000	130,000	사 무 용 품 비		
1,500,000	1,500,000	지 급 임 차 료		
8,800,000	9,200,000	합 계	9,200,000	8,8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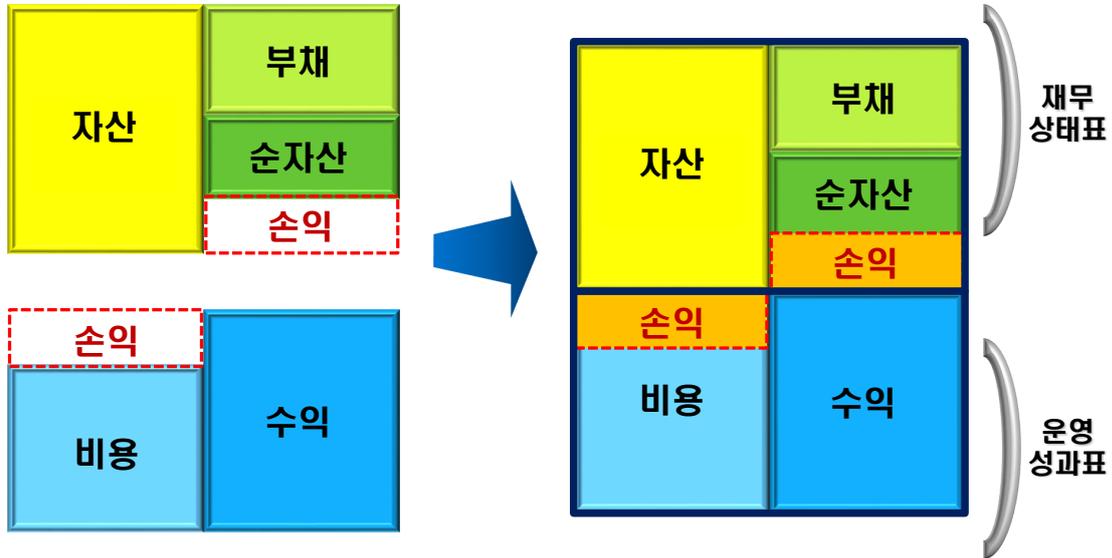
5. 손익마감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보고서

5. 손익마감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운영성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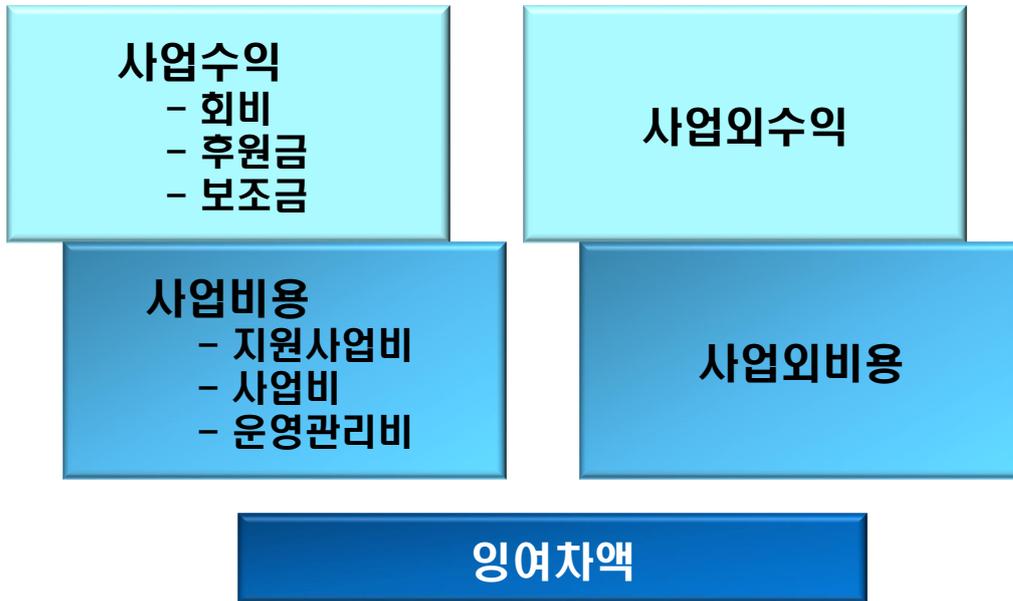
6. 운영성과표 작성

수익		1,600,000
후원금	1,600,000	
비용		4,800,000
인건비	3,000,000	
회의비	170,000	
사무용품비	130,000	
지급임차료	1,500,000	
잉여차액		<u><u>(3,200,000)</u></u>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운영성과표

7. 운영성과표 체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기능별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

(3기: 2016-01 ~ 2016-12)

단체명: 실무교육2016

회계단위: (개별)
프로젝트: (전체)

성질별분류	합계		교육		컨설팅		모금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사업수익	235,800,000	215,096,010	84,000,000	75,000,000	1,800,000	12,000,000	150,000,000	128,096,010
후원금	150,000,000	128,096,010	-	-	-	-	150,000,000	128,096,010
일반후원금	60,000,000	43,070,000	-	-	-	-	60,000,000	43,070,000
지정후원금	90,000,000	85,026,010	-	-	-	-	90,000,000	85,026,010
목적사업수입	84,000,000	75,000,000	84,000,000	75,000,000	-	-	-	-
등록비수입	80,000,000	72,000,000	80,000,000	72,000,000	-	-	-	-
교재판매수입(목)	4,000,000	3,000,000	4,000,000	3,000,000	-	-	-	-
수익사업수익	1,800,000	12,000,000	-	-	1,800,000	12,000,000	-	-
용역수입	1,800,000	12,000,000	-	-	1,800,000	12,000,000	-	-
사업비용	124,240,000	122,472,310	84,000,000	88,371,710	17,640,000	15,854,950	22,600,000	18,245,650
사업인건비	98,000,000	86,100,000	82,000,000	71,000,000	16,000,000	15,100,000	-	-
급여(사)	82,000,000	71,600,000	70,000,000	60,000,000	12,000,000	11,600,000	-	-
상여(사)	4,000,000	3,500,000	-	-	4,000,000	3,500,000	-	-
강사비(사)	12,000,000	11,000,000	12,000,000	11,000,000	-	-	-	-
사업진행비	14,240,000	26,949,110	2,000,000	17,371,710	1,640,000	754,950	10,600,000	8,822,450
회의비(사)	1,400,000	1,000,860	600,000	378,410	800,000	622,450	-	-
지급임차료(사)	-	16,500,000	-	16,500,000	-	-	-	-
지급수수료(사)	1,840,000	1,433,850	-	-	240,000	500	1,600,000	1,433,350
통신비(사)	9,600,000	7,521,100	-	-	600,000	132,000	9,000,000	7,389,100
자료집 제작비(사)	1,400,000	493,300	1,400,000	493,300	-	-	-	-
사업홍보비	12,000,000	9,423,200	-	-	-	-	12,000,000	9,423,200
홍보물제작비(사)	12,000,000	9,423,200	-	-	-	-	12,000,000	9,423,200
당기 순자산의 증(감)	111,560,000	92,623,700	-	(13,371,710)	(15,840,000)	(3,854,950)	127,400,000	109,850,36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재무상태표

8. 재무상태표 작성

[자산]		[부채]	
현금	400,000	미지급금	6,500,000
예금	600,000	[순자산]	
비품	3,000,000	잉여차액	(2,500,000)
자산총계	4,000,000	부채 및 순자산총계	4,000,000

• 당기분 잉여차액	(3,200,000)
• 전기이월분	700,000
• 당기말 잔액	(2,500,000)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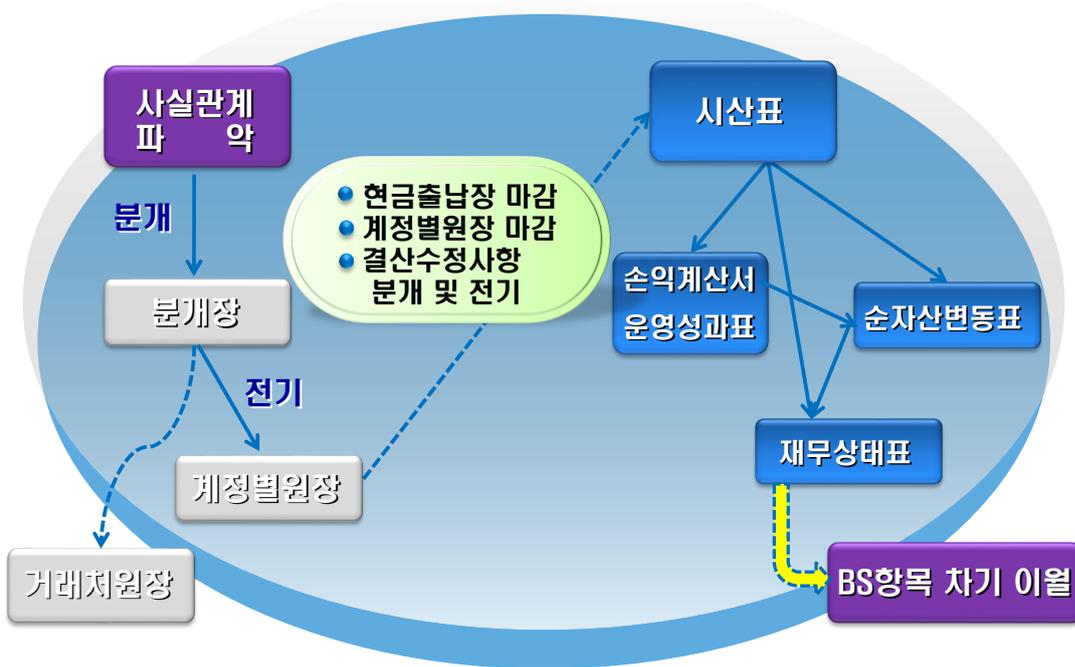
복식부기 - 재무상태표

8. 재무상태표 체계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회계 순환마감 절차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보고서 차이

9. 수지결산서

수입		1,300,000
● 전월이월	700,000	
● 후원금	600,000	
지출		300,000
● 회의비	170,000	
● 사무용품비	130,000	
● 임대료	-	
● 비품구입비	-	
● 인건비	-	
차월이월		1,000,000

알 수 있는 정보

- ✓ 직원은?
- ✓ 사무실은?
- ✓ 여유는?
- ✓ 잘하고 있는지?
- ✓ 재정상태?
- ✓ 자립도?
- ✓ 재산/채권/채무관
- ✓ 기타?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복식부기 - 보고서

10. 보고서별 속성

수지결산서

- 특정기간 동안의 자금(현금 + 요구불예금)의 증감 내역을 표시
- 자금보유 규모 파악이 주된 관심
- 자금의 증감이 없는 회계주체의 변동사항을 표시할 수 없다는 한계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특정기간 동안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변동원인을 표시
- 비자금(非資金)거래를 포함한 회계주체의 전체적 변동상황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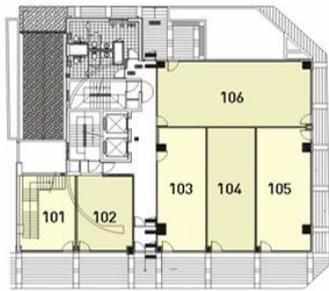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Balance Report)

- 특정시점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현황을 표시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보고서별 역할

● 평면도



● 측면도



● 정면도



Q & A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여러분
감사합니다.

Save your TIME, Serve your MISSION!

회계·세무

공익법인 세무

신충휴(신협중앙회연구소 연구원)



공익법인(비영리법인) 세무법령 이해



1



I. 조세란 무엇인가?

II.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III.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IV.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V.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I. 조세란 무엇인가?

3

I.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租稅)란

조세(세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 갖춘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

과세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과세 목적

공공서비스 제공 등
재원확보

과세 요건

법률 요건 충족



조세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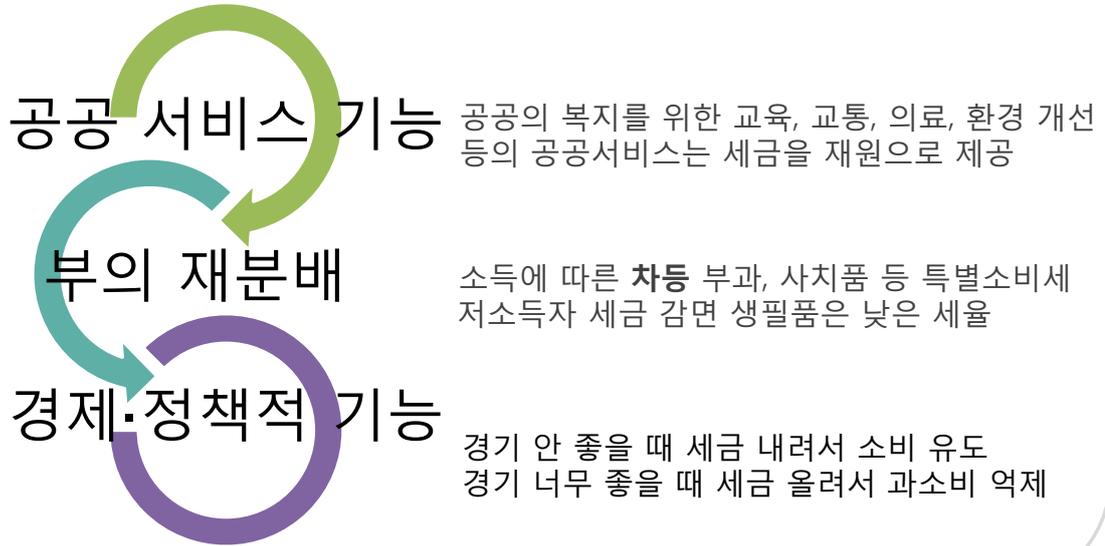
직접 반대급부 없음

납부방법

금전 납부 원칙
예외적 물납제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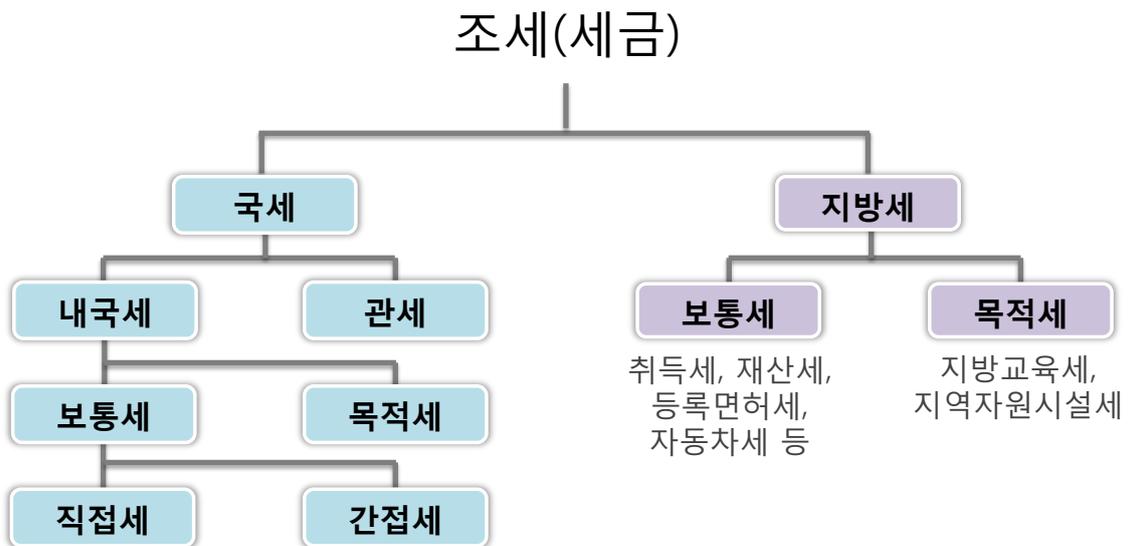
I.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租稅)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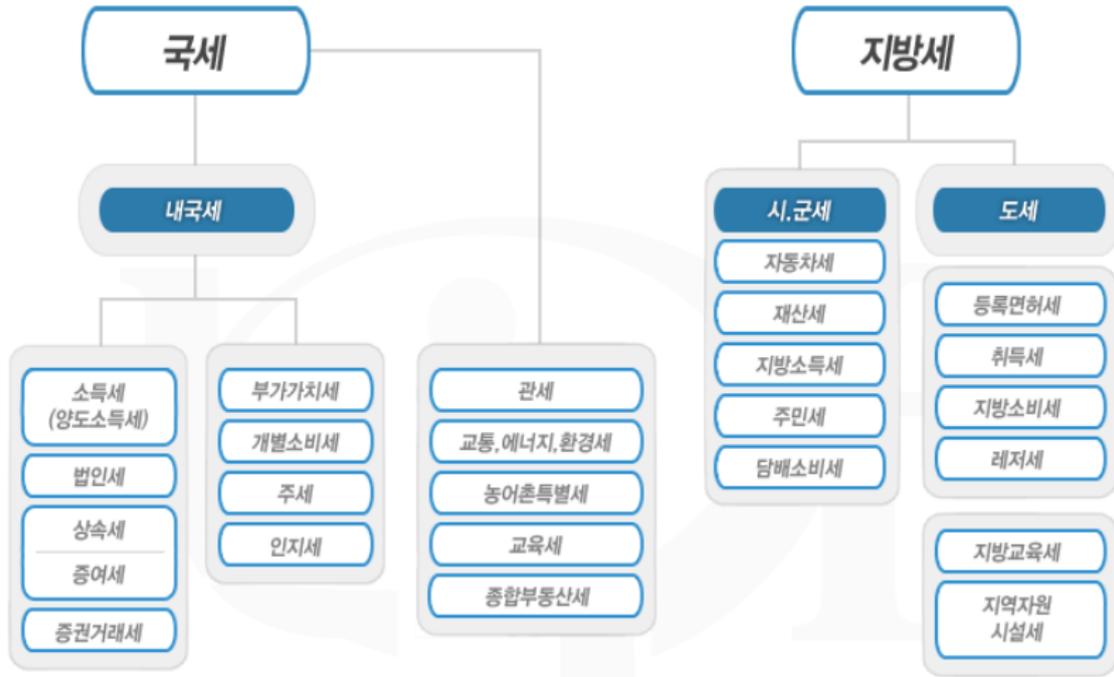
I.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租稅) 체계



I. 조세란 무엇인가 ?

현행 조세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세목으로 분류



I.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 법률주의



I.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 평등주의



조세 부담은 담세력에 따라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함

신의 성실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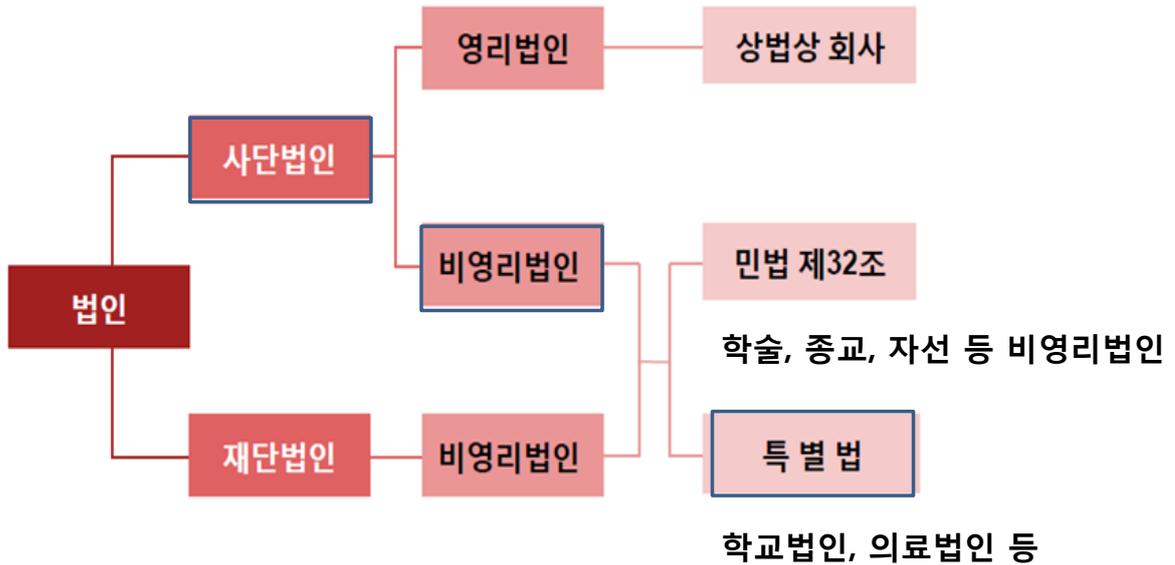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한 것



II.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II.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1. 법인의 종류



II.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세법상의 취급



설립등기를 안했는데...

법인으로 과세?

개인으로 과세 ?

(1)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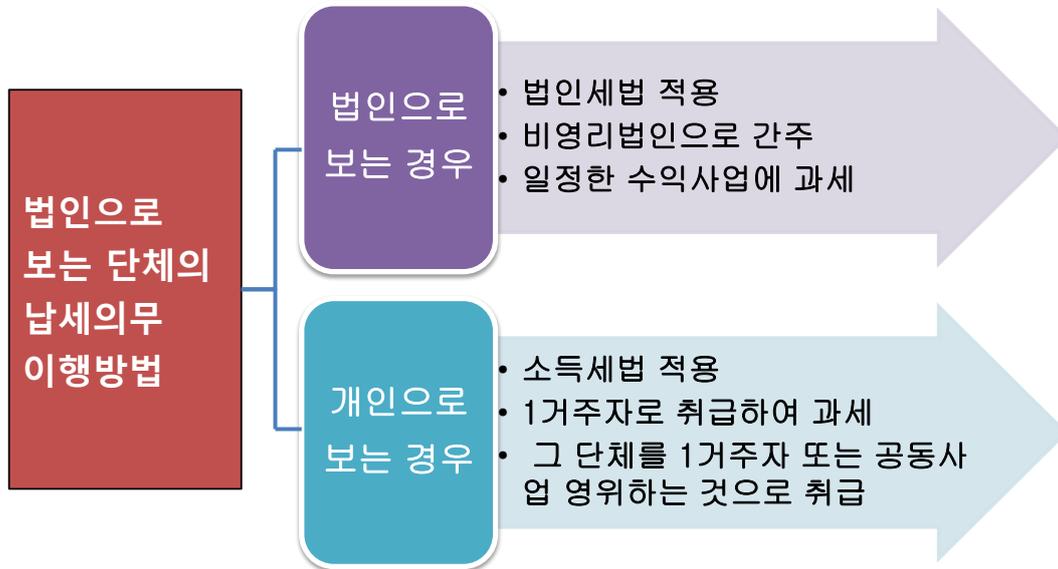
-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II.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2.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세법상의 취급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



II.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2.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세법상의 취급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경우	☞ 비영리법인으로 간주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그 외의 경우	손익 분배 ×	☞ 단체를 1거주자로 간주 (단체는 구성원 등과는 독립한 별도의 소득세 납세의무자임)
		손익 분배 ○	☞ 거주자별 과세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구성원들이 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납세의무를 짐)

II.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2.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세법상의 취급

- ❖ 따라서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함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함(상증령 제12조)

-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
- 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II. 비영리법인 과세방식

2.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세법상의 취급

비영리법인 VS 공익법인

-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는 ?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함
-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 비영리민간조직(NGO)단체 >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
공익법인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17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비영리법인 오해와 착각

비영리법인은 세금이 없다 ?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1.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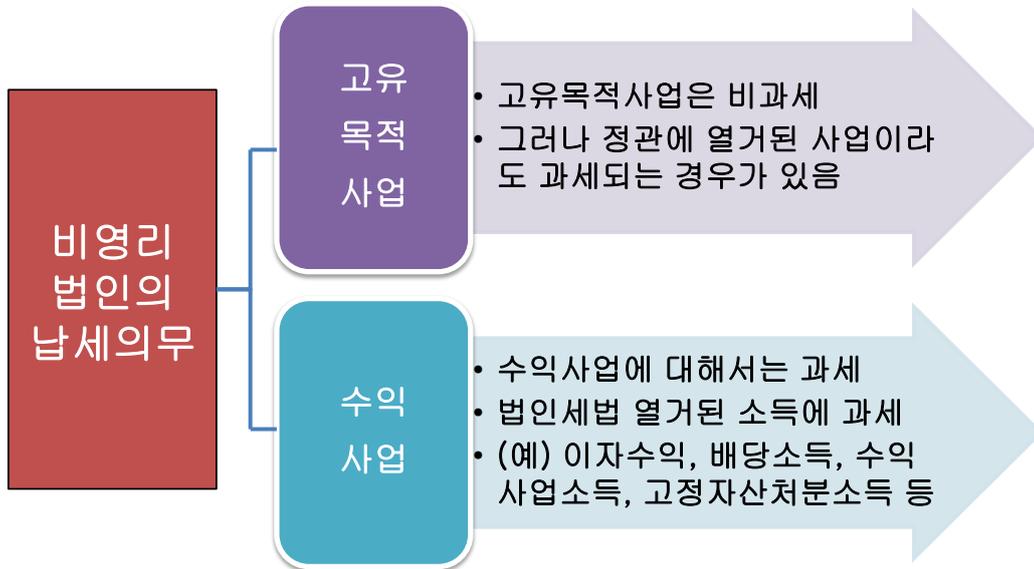
비영리법인 납세의무

<input type="checkbox"/>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O, X
<input type="checkbox"/>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 X
<input type="checkbox"/>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O, X
<input type="checkbox"/>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O, X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1.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 (정관에 열거된 소득이라도 법인세법에서 과세되는 수익사업이라면 과세함을 유의)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1.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법인 사업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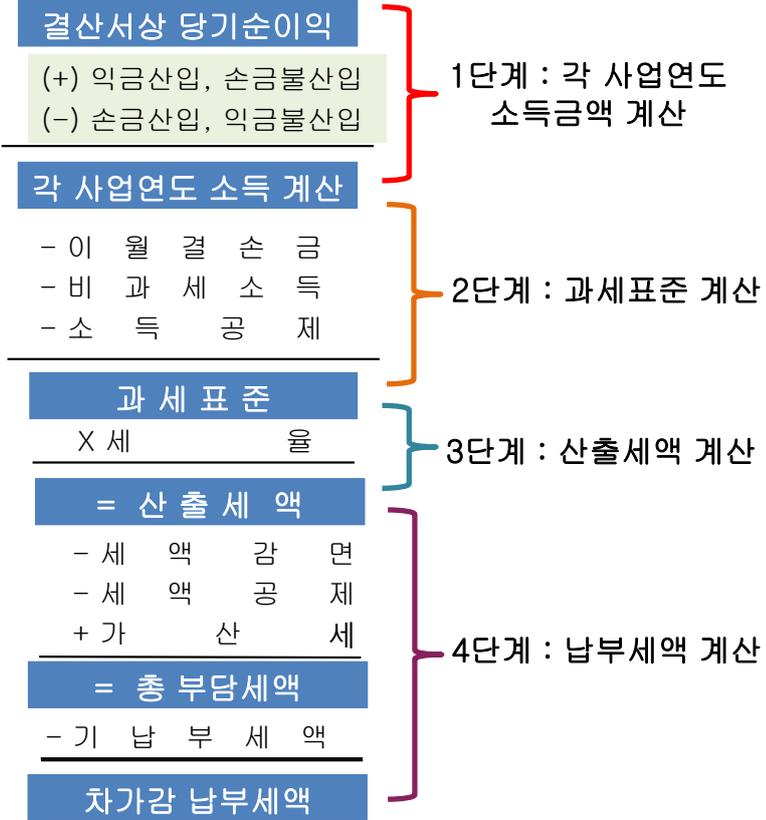
Enjoy the Quality



동일한 우유판매사업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이의 과세형평이 침해되고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비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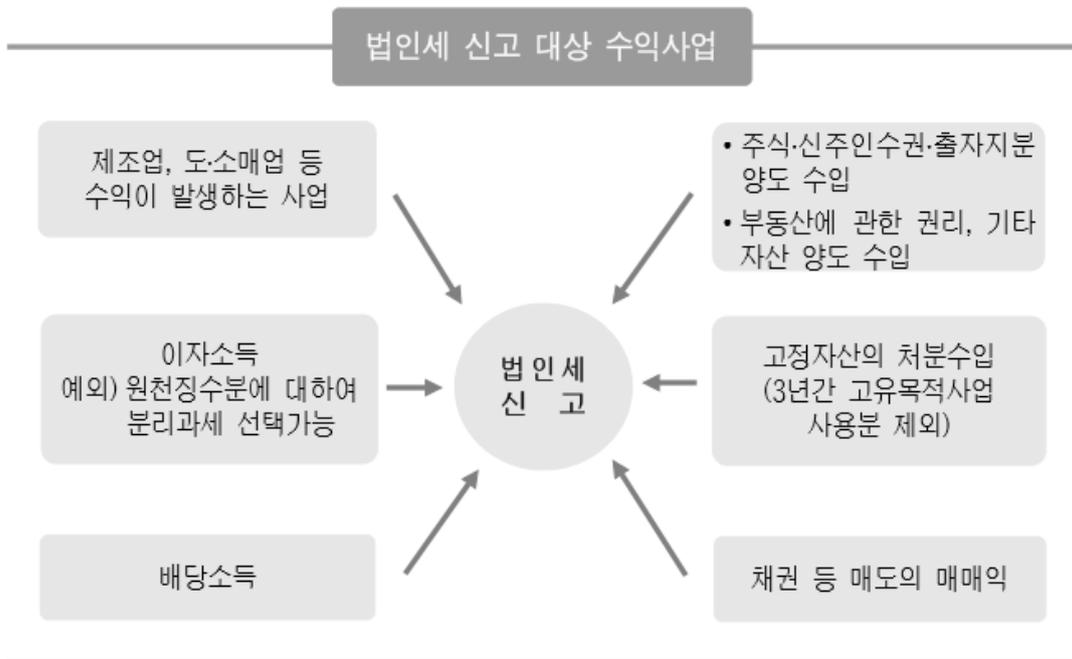
나. 법인세 계산구조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유형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유형

- ❖ 비영리법인에 있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 구분이 매우 중요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 그 자체 내용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관련된 경우 수익사업 여부(예)>

- ❖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1209,2006.6.26)
- ❖ 장학금 지급과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인법인이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입관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416,2005.9.5)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손금산입 한도 : 이자(배당)소득 100%, 기타 수익사업 50%(또는 80%)
- ❖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함

구 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법인		설정가능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지정기부금단체	
	2.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	
	3.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 마.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선택
- ❖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음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 마.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선택

이자소득 신고 vs 분리과세로 종결

- ❖ 이자소득 연 1천만원(세전)일 경우 어떠한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자소득 = 당기순이익)

신고했을 때 세부담액	분리과세 세부담액
????	1,400,000원

- ❖ 과세방법의 선택은 전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가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방법을 선택한 것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것이 됨
- ❖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 적용가능함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바. 법인세 신고 등

-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봄)
- ❖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3.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가. 개요

-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

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 비영리법인이 명시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정규지출증빙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음
- ❖ 정규지출증빙이란 함은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다.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 예외

-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 ②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3.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구분	해당금액	관련증빙요건	증빙불비 불이익 및 효과
일반관리비	3만원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증빙(신용카드, 직원 개인카드도 가능, 세금계산서, 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거래금액*2%의 가산세 부담
	3만원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증, 거래사실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입증이나 영수증 있으면 세무불이익 없음
	직원 경조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조사 사실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념범위내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 사회통념상 초과금액은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됨
접대비	1만원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금불산입 : 법인세 비용 추가부담 위장신용카드 거래분 : 손금불산입
	1만원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증, 거래사실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입증이나 영수증 있으면 세무불이익 없음
	거래처 경조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첩장, 초청장, 부고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만원 초과지출은 법정증빙서류 수취 필요 * 20만원 이하 금액은 지출관련 증빙(청첩, 초청장 등)을 구비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4.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가. 개념

- ❖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하는 간접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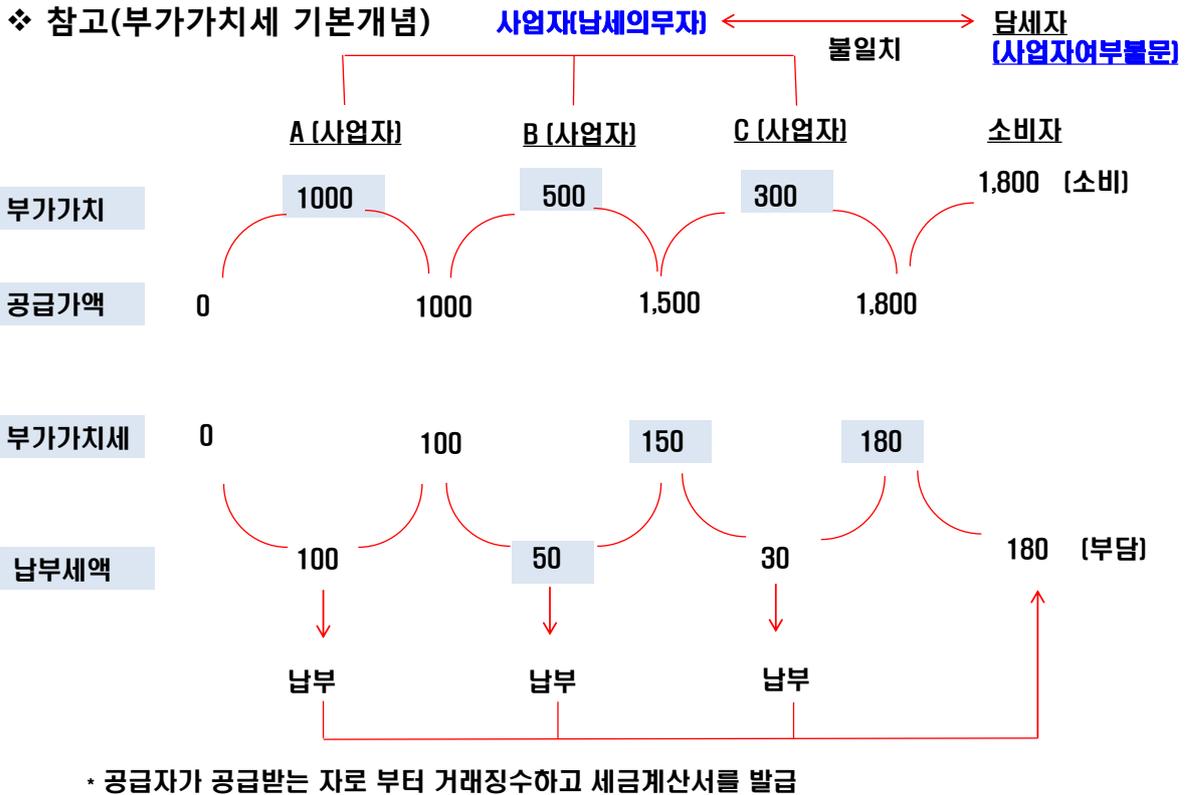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제공한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 사업자 등록

- ❖ 신규로 과세,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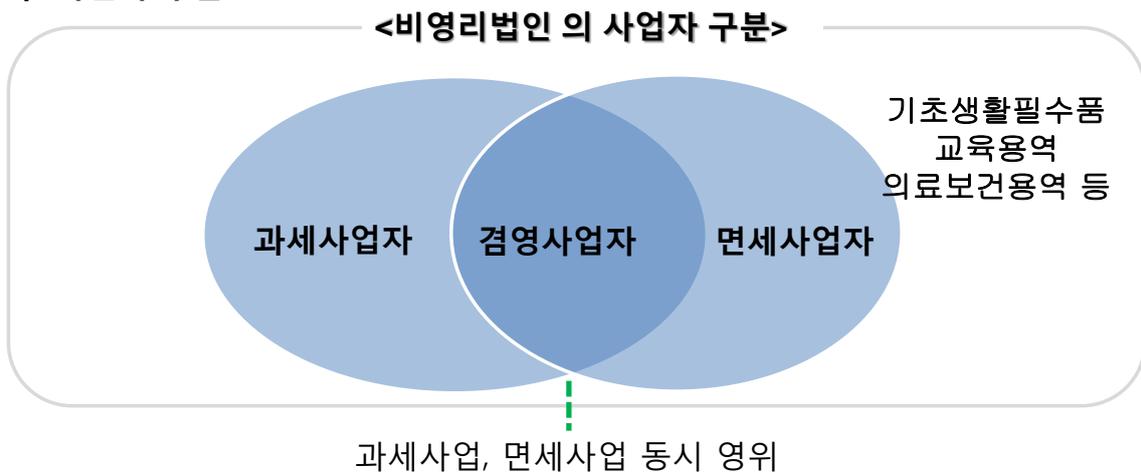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4.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라. 사업자 구분



❖ 관할세무서장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단체 등에게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4.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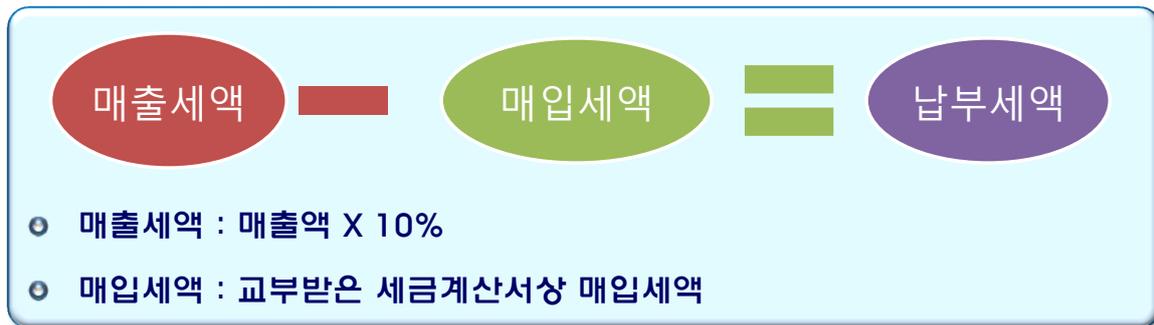
마. 사업자 특성

사업자	구분	내용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 과세사업자중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 - 부가가치세율 = 10%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면세·과세 겸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안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부가가치율(20~40%) × 10% -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면제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발행 - 면세사업자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4.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한다면 ?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면세거래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과세거래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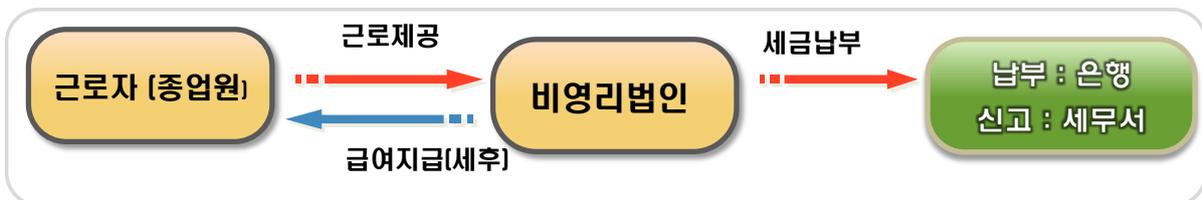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 등의 목적으로 납세의무를 면제 (면세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의용역, 교육용역,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법 소정 재화, 용역 등)

- ❖ 공익목적단체 공급하는 재화, 용역 ?
 - 상증법상 공익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NGO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한다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NGO단체에서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함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5. 비영리법인의 원천세 납세의무

- (원천징수제도)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상시고용인 20명 이하 사업장은 6월단위 신고가능**)



-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봉사료 수입금액
- (원천징수대상 시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로 제출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5. 비영리법인의 원천세 납세의무

구분	대표적인 소득	신고납부의무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신고, 다음연도 2월 급여시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일당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타소득	원고료, 인세, 강연료, 사례금 등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사업소득	외부강사료(직업적 인적용역)	·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Ⅲ.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세금

5. 비영리법인의 원천세 납세의무

❖ 원천징수대상 소득 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대상소득		세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근로소득	매월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기타소득	기타소득	20%

❖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
- ㉠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3%
- ㉡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



IV.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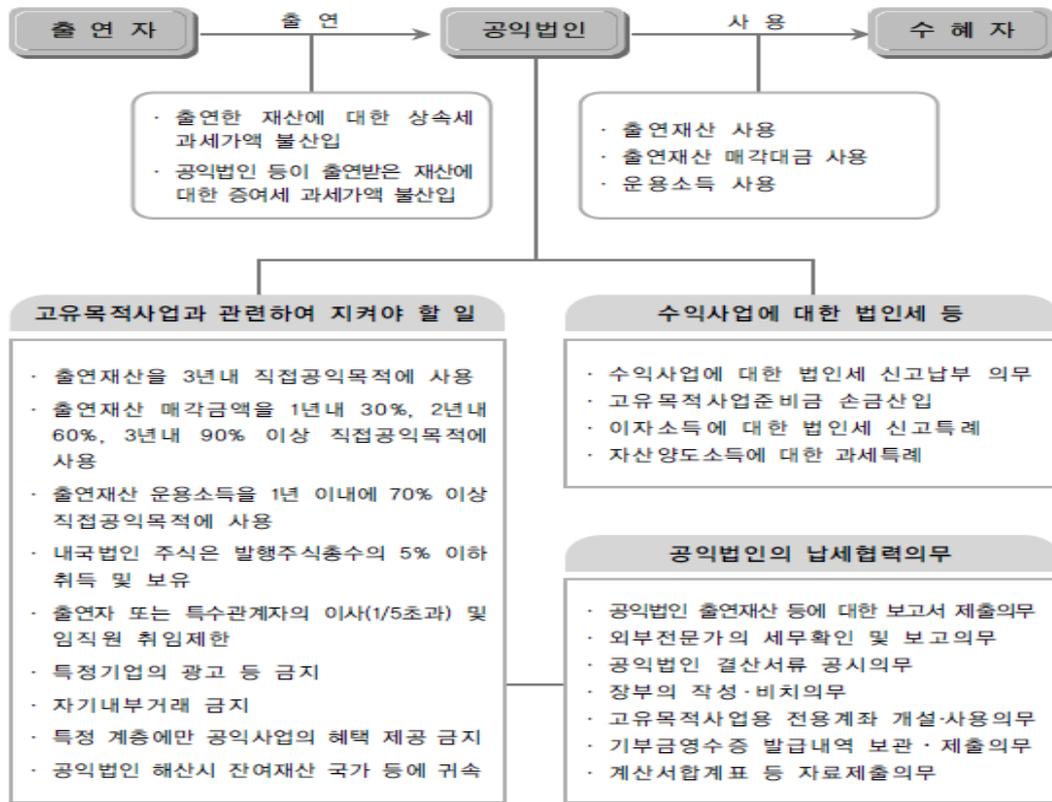
41

IV.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공익법인 납세의무



IV.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IV.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결산보고서는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총계부문별로 제출)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1% 가산세 부과

2. 결산서류 공시의무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IV.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함
- 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x 0.07%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해당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함

IV.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함
- 전용계좌 개설은 공익법인이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변경(추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②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 ③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④ 100만원을 초과하는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 ⑤ 수익용 자산의 처분대금 등

IV.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6.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부법인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7.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VI. 공익법인의 세무

3. 공익법인 세무일정

업무구분	일정	대상	관련규정
1.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상증령 §41 ①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수입금액 및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상증법 §50
3.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상증법 §50 ③
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 단체	법령 §36 ⑤
5. 결산서류 공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수입금액 및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상증법 §50의3 상증령 §43의3 ④
6.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법법 §112의2 ③
7.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지정일부터 매 2년마다 3월 31일	지정기부금단체	법령 §36⑥ 등

VI. 공익법인의 세무

4. 공익법인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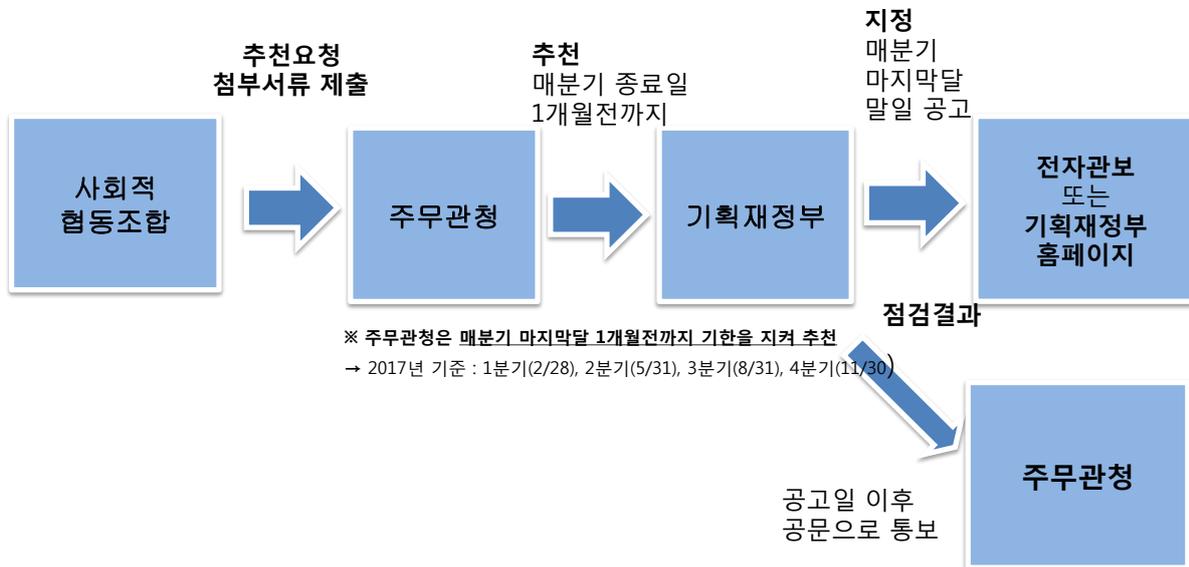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사업 등에 사용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접 공익목사업 등에 전부사용해라 (공익목적 외 사용, 미사용금액에 증여세 부과)
2.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해라!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치해라.(수익사업회계,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
4.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10년간 보존해라
5. 일정규모 이상이면 결산서류 공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아라
6. 공익목적사업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라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라



V.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V.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1.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지정 흐름



V.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2. 추천 대상요건

-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⑤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V.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3. 제출서류(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 ①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이 작성)
- ②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추천일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함**)
- ④ 정 관
-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⑥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제출일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제출

V.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4. 의무이행

- ①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 ②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등
 -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등
 -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
 -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V.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4. 의무이행

③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 제출 의무

-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이 정하는 양식으로 발급해야 하며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관할세무서장이 **기부금 발급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V. 참고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등)

5.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
- B.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C.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1. 기부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

(1) 기부금품의 개념(법 제2조 제1호)

-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함

(2)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법 제2조제2호)

- ❖ 기부금품 모집이란 광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2. 기부금품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

(1)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 ❖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 ✓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사용완료,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관여

(2) 기부금품 적용제외 대상(법 제3조)

- ❖ 정치자금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음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1) 개요

- ❖ 기부금품 모집관련 절차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모집결과보고, 기부금품 사용,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 단계로 이루어짐

단계	작성서식	비고(법정서식)
가.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
	기부금품모집계획서	
	기부금품사용계획서	
나. 기부금품 모집	기부모집출납부	○
	기부모집물품출납부	○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
	기부금품영수증	○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단계	작성서식	비고(법정서식)
다. 모집변경신청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라. 기부금품 모집결과보고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
마. 기부금품 사용		
바. 기부금품 목적외 사용승인	기부금처분(사용)계획서	○
사. 기부금품 사용완료보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
	지출대장	
	세부지출대장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단계	작성서식	비고(법정서식)
다. 모집변경신청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라. 기부금품 모집결과보고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
마. 기부금품 사용		
바. 기부금품 목적외 사용승인	기부금처분(사용)계획서	○
사. 기부금품 사용완료보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
	지출대장	
	세부지출대장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2]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등록신청
- ❖ 단, 기부금품모집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등록신청
 - ☞ 기부금품 모집대상사업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시민참여, 자원봉사 사업,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등
- ❖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등록청에 제출
 - ①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 ② 기부금품모집계획서
 - ③ 기부금품사용계획서
 - ④ 정관
 - ⑤ 그 밖의 서류(금융기관의 예금통장, 대표자 이력서, 임원인적사항 등)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연 락 처	
모집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⑤ 명 칭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⑤ 연 락 처	042 - 720 - 1322
	⑦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 11층(문산동, 신협중앙회)		
	⑧ 대표자 성명	문철상	⑨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 대표자 주소		⑪ 대표자 연락처	042 - 720 - 10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2016년 1월 1일

신청인 문철상



행정자치부 장관 귀하

< 등록(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7. 그 밖의 사항

수수료

없음

기부금품모집계획서

① 모집목적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원, 취약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②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③ 모집목표액	2,000,000,000원
④ 모집지역	전국
⑤ 모집방법	<p>가.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 후원하는 개인, 법인, 기업에서 직접 지정은행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p> <p>나. 모금함 설치 : 신청의 재장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방문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부하게 한다.</p> <p>다. 기부상품 운영 : 이자 1,000원 미만 끝전을 기부하는 신협 예·적금 상품을 개발하여 모아진 금액을 기부하게 한다.</p>
⑥ 모집기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⑦ 모집금품 보관방법	<p>가.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 후원하는 개인, 법인, 기업에서 직접 지정은행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p> <p>나. 모금함 설치 : 모금한 금액을 모금함 설치 장소(신협) 금고에 보관한 후 모집기간 종료 15일 전에 개수하여 지정은행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다.</p> <p>다. 기부상품 운영 : 모금한 금액을 신협에 예수한 후 모집기간 종료 15일 전에 합산하여 지정은행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다.</p>

기부금품사용계획서

1. 사용목적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신흥사회공헌재단의 사업을 위해 사용(붙임1 : 재단 정관 59조(사업의 종류))

2. 사용기간 : 2016년 1월 1일 ~2017년 6월 30일

3. 사용방법 :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금융비용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편의 비용, 불우이웃 및 복지단체 후원, 긴급구호, 의료봉사 후원금 등
- 지역사회 기여 :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 문화행사 및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역 재난 대비 등
- 취약한 사회적 경제조직 자립 지원 및 봉사문화 확산 지원 등 : 취약한 사회적 경제조직 교육 컨설팅 및 결연 등, 봉사단체 등 우수 사회공헌프로그램 선정 지원 및 봉사문화 확산 캠페인 등

사용분야	금액	사용세부일정	산출근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1,220백만원	'16.1.1~'17.6.30	붙임3 참조
지역사회 기여	300백만원	'16.1.1~'17.6.30	붙임3 참조
취약한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 지원 및 봉사문화 확산 지원	300백만원	'16.1.1~'17.6.30	붙임3 참조
합계	1,820백만원		

4. 모집비용 예정액 : 180백만원(모집액의 9.0%)

사용분야	금액	산출근거
인건비	60백만원	300만원×12월×1명+200만원×12월×1명
모금활동비	26백만원	모금활동 기념품 제작 10,000개×2,000원 배부 및 디자인 등 6백만원
홍보비	24백만원	홍페이지 운영 및 사업홍보 등
자원봉사교육	15백만원	조합원에 대한 수시 교육(15개 지역) 등
기타 운영비	55백만원	임차료, 총회·이사회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통신운반비, 세금과공과, 감사비 등
합계	180백만원	

* 사회적협동조합 신흥사회공헌재단은 출자금과 기부금을 수 재원으로 운영함

5. 모집비용 조달방법 : 재단 자산으로 우선 조달 후 모집된 기부금으로 대체

사업구분	세부사업	산출근거	예산액(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충 지원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금융편의 지원 * 세부내용 후첨	대출이자 지원 : 300명*50만원 자립 장려금 지원 : 1,000명*30만원 자활지원서비스 : 1,300명*20만원	710,000,000
	도시락, 연탄, 유류, 김장 등 생필품 지원	1,500만원*15지역	225,000,000
	장애인시설 및 경로시설, 소년소녀 가정 등 복지단체 후원	1,500만원*15지역	225,000,000
	중증환자 및 긴급구호가 필요한 불우이웃 지원(온부리에 사랑을 캠페인)	평균 250만원*3명*12월	90,000,000
	무료 의료봉사(열린의사회 후원)	국내 2,000만원*15개 지역*1회 해외(몽골) 1억5,000만원	450,000,000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출산 장려 및 지역인재 발굴 지원	1,000,000원*100명 포스터 제작 등 5,000,000원	205,000,000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1,500만원*15지역	225,000,00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장바구니 제작 2,000원*10만개 관련 홍보비 등 5,000,000원	205,000,000
	지역 천재지변 및 재난의 구호(자연재해는 제외)	긴급 봉사활동 및 성금지원 (대형재난은 특별성금 모금)	50,000,000
취약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취약한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자립을 위한 컨설팅 등 운영 지원	저개발국가 신용협동조합 운영 지원(몽골)	50,000,000
		취약한 사회적 경제조직 등 지원	50,000,000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단 및 봉사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수 봉사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 봉사단체 지원	300,000,000
합계			2,785,000,000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3] 기부금품의 적용대상

- ❖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
- ❖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등은 제외

구 분	기부금품 적용여부	회계구분	사업비사용방법
비조합원의 기부금	적용대상	기부금	모집등록시 사용계획에 적시된 목적으로만 사용
조합원의 기부금	비적용대상	출연금	정관에 의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사용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4] 기부금품의 모집

- ❖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완료되면 모집활동을 수행함
- ❖ 기부금품 모집시 모집자는 기부금품 접수사실을 기록,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기부금 출연 강요 금지,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등)
- ❖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모집금액	적용비율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이하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이하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이하
200억 초과	모집금액의 10%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5] 기부금품의 모집등록변경 신청

- ❖ 기부금품의 모집 중 **모집기간의 연장, 목표액 증액** 등 등록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부금품 모집 변경을 신청해야 함
- ❖ 기부금품 모집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처음에 제출한 서류를 다시 재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
- ❖ 유의(중요)사항
 - **모집기간 연장** : 등록된 모집기간 만료 이전에 서류를 제출
(기간만료 후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없음)
 - **목표액 증액** : 등록된 모집 목표액 도달 이전에 서류를 제출
(사전 승인없이 목표액을 초과 모집한 경우 등록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될 수 있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6] 기부금품 모집 결과 보고

- ❖ 기부금품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
- ❖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결과를 보고**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7] 기부금품의 사용

- ❖ 기부금품 모집이 종료되면 등록신청시 제출한 계획대로 집행
- ❖ 당초 승인된 사용기한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기한 만료 이전에 기부금품 사용기한 연장을 신청**

V. 참고자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3. 기부금품 모집절차

[8] 기부금품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 ❖ 모집등록이 말소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 사유서 및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
- ❖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용도로 사용한다면 ???
 -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9]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

- ❖ 기부금품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기한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등록청에 기부금품 사용완료보고**(단 모집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세무법령의 이해

신협연구소

연구원(세무사) 신충휴

전화 : 042-720-1153
E-mail : sch4226@cu.co.kr

철학

절대세계와
상대세계의 사이에서

김조년(한남대학교 명예교수)

절대세계와 상대세계 사이에서

김 조 년
대전NGO지원센터
2017. 7. 11. 14:00-

이 두 세계는 실재하는가?
하나의 가상의 세계인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절대인가? 상대인가?
다시, 그것들은 실재인가? 가상, 또는 허상인가?

왜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설정하고 사는가?
어느 세계에서 살기를 희망하는가?

이 둘에서 왜 살기를 희망하는가를 아무리 따져 물어도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요,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노자의 글에서, 생각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1장을 분석하여 정리한다면

도(道)-무(無)-묘(妙)-시(始)-예(禮;경;經)-체(體)
명(名)-유(有)-교(요;徽)-모(母)-권(權)-용(用)의 변증관계다.
이것들은 하나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를 뿐이다. 동출이이명(同出而異名)
그러나 이것들은 다 알 수 없는 까닭이다. 묘한 일이다.
이것들의 결론은 현(玄), 까맣, 까맣으로 나타난다. 아주 묘한 것들의 집합이다.
이것들은 일종의 절대세계를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2장에 가면 어느 것 한 가지도 그 자체로 존재하거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없다. 거기에는 아주 철저히 관계와 상대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유무상생(有無相生)

난이상성(難易相成)

장단상형(長短相形)

고하상경(高下相傾)

성음상화(聲音相和)

전후상수(前後相隨); 그래서 성인은 하지 앎의 일에 처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그러면서 이룬 일에 머물지 않고 떠남으로, 곧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功成而不居, 夫唯不居是以不去)

모든 것은 상탈(相奪)한다. 서로 상관한다. 제한한다. 이끌고 끌린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가득한 듯 텅 비어 있다.(4장) 그것을 도(道)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좌기에(挫其銳)

해기분(解其紛)

화기광동기진(和其光同其塵); 화광동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자신을 계몽한다고 할까? 무수히 많은 미신, 미몽으로부터 벗어나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 하늘은 우리를 돕는다거나 어렵게 만든다든지,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거나 별을 준다는 것

우리에게 운명의 신이 손을 들어 주고 있다는 희망스런 미신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해.

그래서 노자는 다시 천지불인(天地不仁), 성인불인(聖人不仁)을 말한다.(5장)

되고 되지 않고는 어느 높은 존재의 인격적 관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단 말인가?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들에 의하여 세뇌되어서 산다. 문화화하고 사회화하여 산다. 그것은 원래 순수한 것이 아니라, 색깔이 입혀진 것이다.

노자 12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다.

오색영인목맹(五色令人目盲)

오음영인이농(五音令人耳聾)
오미영인구상(五味令人口爽)
치빙전렵 영인심발광(馳騁畋獵 令人心發狂)
난득지화 영인행방(難得之貨 令人行妨)
시이성인위복불위목(是以聖人爲腹不爲目)

이렇게 하여 결국엔 끝없는 빚에 도달하고, 그것을 지극히 지키는 일이 남는다. 그렇게 하여 모두는 다 각각 근본, 뿌리로 돌아간다.(14장)

보지 않음으로 보고, 듣지 않음으로 듣는다.

뿌리로 돌아감을 정(靜)이라 하고,

정을 복명(復命)이라 하고,

복명을 상(常)이라 하고,

지상(知常)을 명(明)이라 하고, 부지상(不知常)을 망(妄)이라고 한다.

이 명에 이름이 곧 절대와 상대의 합일, 만남이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常)을 아는 데 있다.

상은 가장 평범한 것, 떳떳한 것,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다. 들플처럼 많은 것, 모래알처럼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에 도달하자는 것이 내가 보기에 철학이다.

다시 철학을 한 마디로 한다면 ‘깨뚫어 봄’이다.

그러기 위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일이다.

그러할 때 다시 상대와 절대는 얽히고 뒤바뀌고 그것이 그것임을 알게 된다.

평화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김 조 년

나는 오래도록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참 많이 생각했다. 어려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민족의 통일, 나라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우리에게 통일이 절체절명의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한 민족으로서, 외세의 강력한 개입과 내부의 정치논리에 따라서 갈라진 나라, 그래서 두 나라 체제로 굳어진 상태에서 통일이라는 것이 왜 절대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여 보았다. 또 통일을 말하는 정부들이나 정당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지성인들의 이야기와 실제 정책이나 행동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통일의지가 나타난 6·25 전쟁의 살벌한 결과와 무의미성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그럴 때마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곧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또 전쟁을 서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국제관계 상 쉽게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미 6·25 전쟁을 통하여, 그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 그것에 따른 어떤 좋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으로 느껴졌다. 상당히 많은 정권들이 내놓은 평화정책이라는 것들은 분단고착이요 대결이요 서로 미움과 갈등만을 고조시키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평화를 더 중요하게 보는 나로서는,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세상을 만드는 것은 곧 통일이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의심하게 되었다. 그 때까지 나온 것들은 통일을 위하여 강력한 무장을 하고, 무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철통같은 안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현실정책을 보았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강력한 세력들은 결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갈라진 상태로 두면서 자신들 나라의 이득을 최대화하면 된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 때부터 통일을 말하는 것은 곧 전쟁을 통한 통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그것을 위한 필요하지 않은 군비강화의 씨이소 게임만이 존속한다는 것이 잡혔다. 그런 게임의 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국제

무대의 꼭두각시놀음을 하는 슬픈 존재로 보였다. 그 때부터 나는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서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이루어진 독일의 재통일을 보면서 전쟁 없이도 통일은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전쟁을 통한 통일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가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독일식의 평화통일 방법이 많이 논의되고, 통일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매우 높은 것을 보았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반통일의 기운으로 매우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른바 통일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계산이 들기 때문이다. 그 부담을 내가 지고 가기 싫다는 심리다. 분단이 다른 차원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많은 것도 보았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기주의의 발산이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상은 아닐 것이다. 이 때 나는 다시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여 본다. 물론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는가? 현실이 어렵다고 이상도 가지지 말란 말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는 통일을 앞세워 말하지 말자는 것이다. 어떤 당위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바탕으로 두고 실제로 가능한 것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민족, 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니 통일된 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70년 이상 갈라진 나라의 살림을 해오고 있다. 또 1991년부터는 두 나라 체제로 공식화 되어 UN에 각각 독립된 나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남북한의 두 정부는 각각 공식으로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대표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두 나라는 각각 다른 체제를 정체로 삼는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6·25 전쟁의 연결선상에 있는 정전협정을 빠른 시간 안에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의 진전을 위하여 법논리에 따르거나 현실 권력체계에 따르거나 당사자들끼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 독립된 국가로서 상호불가침조약을 맺고 군비를 축소하며, 실제 경제와 생활과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는 반쪽의 논리를 벗어나서, 그냥 지금 상태를 온전한 국가체제로 인정하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과 협력체제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군사협정, 경제협력, 문화활동, 학문과 인간 교류가 자연스

럽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의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편지교류 따위를 굉장한 혜택을 주듯이 하는 어떤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정부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과 그 외 다른 나라와 맺는 온갖 협약체계를 북한과 맺는 것이다. 비자문제, 여행문제, 무역문제 따위를 국가단위로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간에도 한중 한일 한미관계처럼 나라들 사이의 정상관계가 이루어져서 평화체제가 형성될 것이 아닌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놓고 협상해야 하고, 우리와 같이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갈 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상관계가 이루어져 평화세상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판단한다.(2017. 5. 22. 금강일보.)

홀로 그리고 함께

김 조 년

인간은 홀로 살면서 동시에 함께 산다. 원래 인간은 고립되고 독립된 존재이면서 다른 존재와 함께 사는 유적 존재다. 아무리 개인의 속성상 혼자 이기를 즐기는 사람도 일정한 정도는 다른 사람이나 것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힘들어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홀로와 함께를 넘나든다. 고립되고 고독하지 않으면 깊은 명상과 성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그렇게만은 살 수가 없어서 스스로 그것을 깨고 공동의 마당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삶이라면 지극한 정상이다. 그러니까 홀로와 함께는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이란 말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홀로사회’란 사회현상에 큰 우려를 나타내는 듯이 보인다. 쉽게 하는 말로 ‘혼밥’ ‘혼술’ ‘혼잠’ ‘혼영’이란 말들을 만들어 쓰면서 혼자 사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한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이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였고, ‘이혼’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어느 때는 너무 일찍 혼인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은 너무 늦게 혼인하는 만혼을 걱정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성이 홀로 사는 경향이 더 높고, 도시나 경제력이 있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성이 홀로 사는 경향이 높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한다. 더욱이나 남녀를 막론하고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비혼상태로 사는 경향이 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진 것은 지금의 사회현상이다. 결혼한 뒤에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 앞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는 듯이 보이지만, 뒤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어떤 부정의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미혼모’라는 딱지가 붙어서 고운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족’이란 고정된 그림과 평가가 달라진다. 좀 심하게는 이런 현상을 두고 사회구성의 기초였던 ‘가족’이란 것의 해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심하게는 ‘가족해체’의 위기상황

이러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은 끊임없이 해체되어 왔고, 새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해체위기가 아니라 가족의 변동이요 변화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은 언제나 변하여 왔다. 결혼제도 역시 끊임없이 변동되었으며, 자녀생산이나 양육방식 또한 달라졌다. 혼인을 통하여 가정이란 것을 형성하든, 그냥 혼자 살든, 혼인이라는 절차 없이 남녀가 함께 살든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헤어져 살든, 그렇게 하여 다시 다른 이와 인연을 맺어 살든, 아니면 그냥 혼자 살든 그 자체로서는 어떤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그런 삶의 양상을 따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부분이다. 물론 자기가 어느 삶의 모양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 어느 삶의 모습을 더 좋아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몫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몫이기도 하다. ‘홀로사회’라고 표현하여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홀로’라는 것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홀로’ 사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의 요소들 때문일 것이다. ‘부정’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는지 모르지만, 아예 처음부터 홀로 사는 사람들, 함께 살다가 형편에 따라서 도로 홀로 살게 된 ‘돌싱’상태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인식이나 사회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 염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염려상황이란 무엇일까?

홀로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의 형태를 가진 다음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에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잘못된 결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헤어져 홀로 사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간절히 함께 사는 것을 바라지만 자신의 성향이나 주변의 형편 때문에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이것을 어느 누가 대신하여 해결하여 줄 수는 없다. 정부나 단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달라지고 계몽되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형태에 대한 고정된 인식의 변환이요 의식의 전환이다.

모든 삶의 형태는 끊임없이 달라진다. 진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말 속에는 고정된 정당한 제도와 그에 대한 판단은 없단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범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형태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 좋겠다. 사회의 눈이 무서워서 억지로 ‘홀로’나 ‘함께’를 유지하는 것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한 사람과 만나 70년 가까이

를 함께 살아!’ 하는 말이 쉽게 오고가는 것은 이 시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을 바꾸면 ‘이 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외롭게 홀로 걸어갈 수가 있어!’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홀로’와 ‘함께’를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사회인식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성간의 함께 삶, 미혼상태로 함께 삶, 그렇게 하여 태어난 아이사람에 대한 평가, 함께 삶의 다양한 계약관계 따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홀로이기에 심리·사회상, 건강상, 문제해결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홀로’와 ‘함께’ 사는 형태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금강일보, 2017. 7. 3.)

뚫어 보자

함 석 헌

뚫어보자 이제 뒤에 '있다'를
나 뒤에 너를
역사 뒤에 심판을
물결 밑에 고기를
세계 뒤에 하나님을
뚫고 내다보자!

모든 자리 심판 자리
모든 자리 구원 자리
절정이 바닥이오
잃음이 얻음이오
'살았고나' 죽음이오
'죽았고나' 삶이로다

하나님 나를 시간마다 판대(判臺) 밑에 꿰리시고
사탄 나를 시간마다 성전탑(聖殿塔) 끝에 세워놓고
'너는 죽을 죄인이라'
'너는 세상 주인이라'

선고(宣告), 칭찬이 번갈아 번갈아
흐린 눈 참을 보기에 아즐아즐하지만
뚫어보자!
뚫고 말갭게 드러다 보자!

너나 생각하지 말자
너나 놓고 속는 살림
너라 하고 안심하고

내라 하고 겁내지만
네가 지는 내짐이오
나란 네 맘 그림자다
나를 사랑하실 때에
너를 쳐서 상하셨고
네게 주실 질거움을
내 손에다 부쳤으니
뚫어보자 뚫고 너나 뒤에 한나를 만나 보자

살 뚫으면 뼈 뵈고
뼈뚫으면 에텔 뵈고
에텔 뚫려 법이오
법 뚫려 생명이라

뚫지 못한 살과 뼈 곱고 튼튼하건만
나 가두는 일생의 울타리오
그대로만 있는 법(法) 묘(妙)는 묘(妙)건만
나를 맴돌이질 시키는 소용돌이니

뚫고 나는 생명의 불길 아니면야
나를 이 세계의 그물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뚫어보자!
뚫어서 볼 것 없음에 살어보자!(1948. 4. 25.)

철학

나쁜나라, 좋은나라
일상과 원칙 사이에서

김조년(한남대학교 명예교수)

나쁜 나라, 좋은 나라

김 조 년

내가 어려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배우고 부른 노래 중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란 말로 끝나는 것이 있었다. 그 노랫말 속에는 좋은 나라의 조건들이 몇 개 있었다. 잠꾸러기가 없고, 거짓말을 안 하고, 서로 믿고 사는 데가 좋은 나라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잠꾸러기가 참으로 많았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서로 믿지 못해서 의심의 구름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지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어른에 가까워질수록 이 노래에 나온 말과는 아주 다른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내 자신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말을 믿지 못하여 몇 번에 걸쳐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그것도 인감도장을 쳐야 하고, 심지어는 열 손가락의 지문이 다 나오는 지장을 쳐야 한다. 그것도 믿지 못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불신이 가득한 사회였다. 노래와는 달리 좋은 나라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참말을 할 수 없는 사회나 나라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참말을 하면 벌을 받고, 삶에서 힘들고 고단하게 지내야 하는 삶의 현장과 사회 분위기. 그것은 참 슬프고 나쁜 현상이었다. 참말을 할 때는 쉬쉬 남이 들을까봐 조심해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 놓을 각오로 비장하게 해야 하는 현상.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아주 가깝게는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더 가깝게는 이념갈등과 독재체제에서 연유한 것이지 않을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일본인이 다 된 척 해야 하는 일제시대, 맘으로는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해야 하는 독재시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말조심을 하여야 하는 사회. 바른 말을 본업으로 하는 언론에도 재갈을 물려서 비뚤어진 말을 하여야 밥벌이가 온전하던 시대. 그런 시대와 사회와 나라가 곧 살고 싶은 괜찮은 나라요 사회요 시대라고 할 수는 없다. 집단이든 개인이든, 언론이든, 학문체계에서 참말을 못하게 하는 사회는 나쁜 것이요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생명논리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논리, 그것은 곧 자유로움에 있다. 자유로움의 핵심은 생각과 말과 글의 막힘없는 펼침에서 나타난다. 그것을 좀 거창한 듯한 말로 표현하면,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다. 이것들은 곧 생각과 말과 글이라는 상징물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은 생명의 본질이요 속성이다. 내가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 다른 것을 다른 말과 글로 표시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것들과 같은 것이 나타나고, 다른 것들끼리 조화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여 한 두 단계 훌쩍 뛰어오르는 진보와 진화를 경험한다. 이것이 곧 창조세계다. 그러한 창조의 가능성을 막는 사회와 나라는 나쁜 사회요 나라라 할 수 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때가 참으로 길고 어둡게 깔려 있었다. 그런 때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시기다. 이른바 인간의 살 권리, 곧 생존권과 인권이라는 것이 소멸되거나 억눌린 시대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낙인되고, '중국의 만델라'라 불리며 오랜 감옥생활을 한 류사오보(劉曉波) 씨가 고립된 상태에서 지난 7월 13일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 감옥에서 얻은 중병을 앓고 있는 그가 해외치료를 요구했으나 불허, 부인 류샤에 대한 장기간 가택연금, 사망 이틀만에 화장하여 바다에 넣은 것은 매우 놀라운 슬픈 처리다. 그는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던 '천안문 사건' 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귀국하였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운동에 함께 할 생각이었다. 부당하게 억압되는 일반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였고, 그것을 누르는 세력에 그는 말로 저항하였다. 그러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비폭력의 방법으로, 말과 글로, 때로는 예술 작품으로, 학문연구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그가 그렇게 억압된 상태, 감옥에서 병을 얻고 죽어간 것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세계의 언론들과 지성들이 슬퍼하면서 비판한다. 그와 부인을 다른 나라에서 치료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것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인권을 무시한 중국정부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라서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누가 되었든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체제는 비판받고 극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런 다른 나라의 노력과 비판과 요청을 '국내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로 거부하였다. '국내 문제'란 말로 모든 관심과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은 나쁜 나라, 나쁜 정부의 단골 식단이다. 인권, 사람의 생명권에 대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의 공동관심 사항이다. 자기 나라의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인권문제는 '국내 문제'로 축소될 일이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권은 소중한 것인데, 더욱이 정치범이나 양심범에 대하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중국정부가 류사오보를 감옥에 유폐한 것과 병을 치료할 수 없게 한 것과 가족들에게 주는 고통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짓은 위대한 나라의 일도 아니고, 진보되고 진화한 나라가 할 일도 아니다.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중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사회, 모든 나라에서 아주 예민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있는가를 따지고 고칠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일면 좋겠다. 좋은 나라? 자유로운 나라.(금강일보, 2017. 7. 17.)

생활철학; 일상과 원칙 사이에서; 개인과 사회 생명과 평화의 입장에서

김 조 년

chonkim@hnu.kr

010-9483-7310

ngo 지원센터

2017. 7. 18. 14:00부터

생명은 무엇일까? 生命, life, Leben: 易. 변화, 변혁의 존재
생명은 단독존재인가? 공동, 집단 존재인가?
특히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단독자인가? 집단인가?
이것들은 끊임없는 질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그 생명은 영속하는 존재인가? 순간을 사는 존재인가?
순간과 영원의 관계; 과거-현재-미래의 관계
그가 사는(생활하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인가? 지금, 여기
생명으로서의 인간은 생존경쟁의 존재인가? 상호부조 하는 공생존재인가?
생명은 스스로 함, 즉 자율, 자치, 자발존재인데, 왜 끊임없는 억압과 속박이
있는가?
타율존재로 살도록 만들어진 제도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하는 존재로 사는가?
resist, protest, revolt, 저항, 혁신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생명(삶)은 적응과 저항(거부)의 변증관계
생명(삶)은 낡음(창조)와 죽음(파괴, 소멸), 낡음과 새로움의 변증관계

생명이 생활하는 것, 그 명을 준행하는 것이 생활. 그러나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생활. 특수한 것도 일상처럼.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변하는 사회와 국가 속에 있는 개인의 삶
영원히 지속되면서 단절되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삶
그러니까 지금-여기의 삶만이 참 삶의 터전

그렇게 하여 개인의 삶의 길을 찾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그 분위기는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또 그 다음도 생각하고 행동하다보면 사회로 퍼져나가게 돼. 그것이 곧 민족성이라는 것으로 승화하거나 형성돼.

그것을 찾으려면 역시 책임감, 주체성을 내세우게 돼. 생명존재로서 개인은 독자로서 사는 것이면서 사회적 책임존재, 참여존재라는 것. 그래서 생각을 하되 공동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함께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게 돼.

그렇게 보면 철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고를 넘어, 집단 삶의 지혜를 찾는 것. 생활철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 삶의 지혜라고 하여야 할 것. 그것은 개인, 집단(사회)을 연결하고, 개인 속에 집단을, 그리고 집단 속에 있는 개인을 융합하여 생각하게 돼.

생각은 허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 그 안에서 어떻게 개인이 살고, 집단의 삶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를 따져 보는 것. 그것은 상식을 넘지 않을 것. 상식은 통찰이요 달관이면서 인생의 조감도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의 목적은 기질변화(Transformation)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생활철학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

그러기 위하여는 일단

일단 자기를 알아야 해. 개인으로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사회로서의 자기 이것을 아는 방법도 변하고, 그것들도 끊임없이 변해. 분(分)을 아는 것.

그러니까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는 것은 변하는 입장에서 보되 궁극진리와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생활철학이라고 생각해.

지식을 넘어 지혜로, 그것을 합하여 일상생활의 실천현장으로. 제 분에 따라서.

제대로 된 생활철학을 하기 위하여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하다.

생명의 절대긍정이라는 것

삶 역시 절대긍정이라는 것

그렇다면 절대긍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합하여 말한다면, 생활철학은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화로운 삶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어. 그런 개인, 그런 사회, 그런 세계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생명이 삶으로 표현되는 양식은 평화로운 것이란 말이 될 것.

그것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과는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치게 돼.

이러한 삶은 순간으로 고난일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어.

그러고 보면 평화의 입장에서 생명 살이를 한다는 것은 결코 시작과 과정과 결과
과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진리를 살아가는 것, 즉 생명의 살아가는
것만이 있어. 우리들의 위대한 선배들, 스승들의 삶을 우리는 결코 일반의 잣대
로 보아서 행복했다거나 성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그분들은 그냥 성공-실패,
행-불행,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진리실현의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을 뿐.

그래서 그 생활철학의 삶은 개인과 집단과 철학과 종교를 합한 삶의 형태라고
보아야.

그러고 보면 개인의 철학적 깊이를 위하여, 철저한 생활철학을 위하여는 선배
들을 따르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

쉽게 말해서 고전공부를 통하여,

개인의 수련과 수련, 명상을 통하여,

그렇게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생활에 적용하는 실습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일상에서, 날마다. 항상 이루어져야 해. 티끌쌓이듯이

보고서·보도자료 작성법

보고서 작성법

유승민(사회적경제연구원 이사장)

보고서(기획서) 작성법



1,000명의 사회적기업가, 10,000개의 협동조합, 100,000명 조합원으로 만드는 대전지역 사회적경제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집집 3층)
T. 042-223-9914 F. 070-8787-7000 c-mail@hanmail.net

보고서, 왜 문서?

- 정보 전달, 공유 : 데이터(시장, 지역) 조사, 분석
- 의견 제시 : 데이터의 선택과 해석
- 의견 교환 : 결정권자와 제안자, 실행자의 소통
- 평가 근거 : 목표와 평가의 근거
- 협업 기준 : 동료와 팀, 조직 내외부의 협력 기준

보고서 종류

-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 기획보고, 현황보고, 실적보고
- 정보보고, 출장보고, 동향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실패한 보고서

-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건가?
-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건가?
- 보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 이걸 나더러 다 읽으란 건가?
- 이게 가능한가?

실패한 보고서

-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건가?
: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했는데 판단은 당신이 해야지
-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건가?
: 그러니까 결정은 당신이 해야지
- 보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 나한테 미리 언질을 줬으면 답았잖아
- 이걸 나더러 다 읽으란 건가?
: 내가 이걸 작성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섭섭
- 이게 가능한가?
: 대표가 그것도 판단 못 하나

성공하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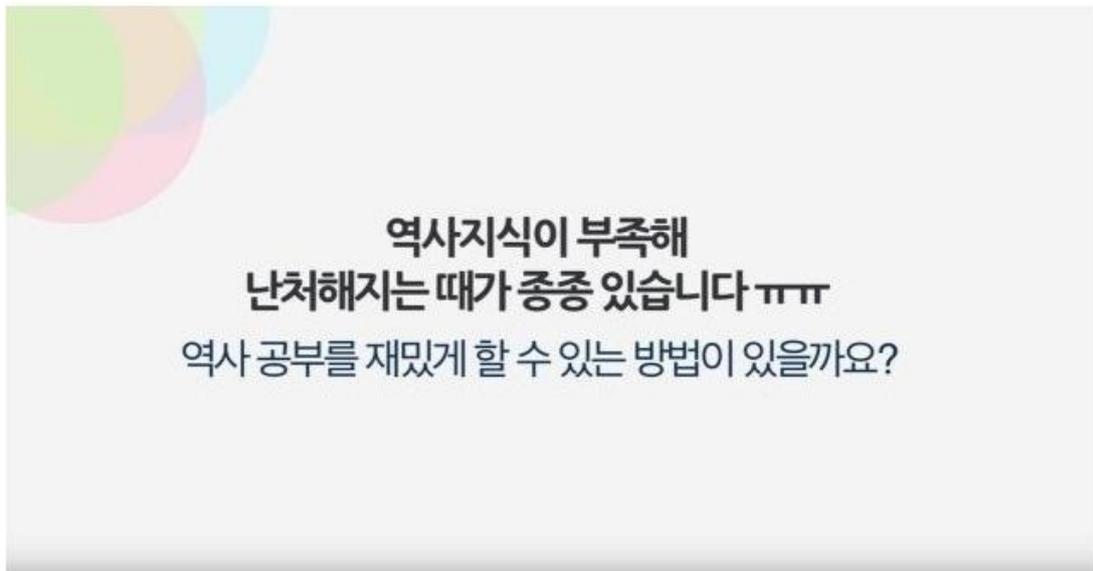
-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건가?
: 근거와 판단 제시
-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건가?
: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 보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 목적과 결론 선제시, 근거와 논리 후제시, 실행계획
- 이걸 나더러 다 읽으란 건가?
: 1장짜리 보고서
- 이게 가능한가?
: 성공 전략과 로드맵, 투자규모 제시















시대의 비천함을 함께 마음 아파하고
더러 못생긴 것, 낮게 놓여있는 것, 투박하거나 소박한 것을 향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을 언제나 좋아합니다.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찬찬히 알려주시는 시대의 어른으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왜 어려울까



문제는 발견하는 것



문제는 발견하는 것



문제를 발명하면 망함



당신

실무자로서 성과 창출

승진

중간관리자로서의 성과가 일치하지 않음

당황. 왜?

COO (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 책임자

최고의사결정권자의 핵심 참모

경영전략 기획자

미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성과관리 책임자

당신

COO에 대한 CEO의 기대

리스크 관리 책임자, 창업자의 미션을 정리하고 추진, 성과

COO에 대한 본인의 기대

조직 미션 커뮤니케이션, 주요 시스템 구축(규정, 문화, 의사소통체계 등)

COO에 대한 동료, 직원의 기대

조직 문화 구축, 직원 의견 수렴, 조직 갈등 조정

당신의 과제는?

중간관리자의 역량 = 소통의 역량

- 역량이란? 일을 통해서 성과와 연결 짓는 행동 특성
- 중간관리자의 경우, 성과와 연결 짓는 행동을 자신이 하는 경우 보다, 동료와 하는 경우가 더 많음
- 실무자의 경우,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업무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비중이 거의 100%. 중간관리자는 50% 미만
- 따라서 중간관리자는 자신보다 팀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
-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매니지먼트 역량과 리더십 역량이 동시에 필요

당신이 해야 할 일

중간관리자의 역량 = 소통의 역량

-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매니지먼트 역량과 리더십 역량이 동시에 필요
- 리더십은 팀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만들고
- 매니지먼트는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중간관리자는 리더십으로 구성원을 이끌되, 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리하고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능력이 필수
- 부하, 동료, 상사와의 관계에서 소통을 통해 나은 방법을 찾고 그 방법으로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 요구

기획서

- 기획 : 어떤 일을 꾸미고 계획함.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정리하고 공유하는 행위.
- 왜 기획?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 기획서 : 프로젝트의 의도(목적), 개요, 일정(일시), 비용 등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 계획을 기술한 문서

Google

전체 이미지 동영상 뉴스 지도 더보기 설정 도구

검색결과 약 17,000개 (0.43초)

프리에이전트 - 기획서 잘 쓰는 법 5가지 노하우 - Kakao Story
<https://story.kakao.com/ch/freeagent/fHLA4N8tix9>
 기획서 잘 쓰는 법 5가지 노하우.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 직장인이려면 1년에 몇 번은 기획서를 쓰느라 야근에 쫓겨까지 불사하신 적 다들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책벌레 - 기획서 잘 쓰는 법 5가지 1. 핵심을 잘 요약하라 기획서는 결국 ...
<https://ko-kr.facebook.com/bookworm.kr/posts/258575410972144>
 기획서 잘 쓰는 법 5가지 1. 핵심을 잘 요약하라 기획서는 결국 아이디어를 어떻게 작성하는나가 관건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즉, 잘 쓰여진 기획서는 ...

[기획서] 기획서를 잘 쓰는 방법) - 1doinsight | Vingle | 마케팅, 경제 ...
<https://www.vingle.net.../671235-%25EA%25B8%25B0%25ED%259A%258D%25C...>
 회사나 프로젝트를 할 때나, 어느 요일을 할 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기획서 쓰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의 기획서를 얼마나 잘 알고 잘 쓰고 계시나요?

기획을 잘 하고 싶은가 vs 기획서를 잘 쓰고 싶은가 - 브런치
<https://brunch.co.kr/@gsaham/46>
 2016. 1. 6. - 기획서 잘 쓰는 법, 파워포인트 활용법 같은 책들은 잠시 내려놓자. 그런 책들은 내게 좋은 기획이 있을 때 그 기획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용도다.

여섯번째 이야기, 마케팅 기획서 쓰는 법 - 흔한 네티즌의 블로그
https://taylor_ahn.postype.com/post/2416/
 대외활동, 공모전은 물론 실무에서도 자주 쓰게되는 기획서는 마케팅 활동을 할 때 훌륭한 무기와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선 마케팅 기획서 쓰는 ...

기획서 잘 쓰는 법 관련 이미지



→ [기획서 잘 쓰는 법에 대한 이미지 더보기](#)

[이미지 신고](#)

기획서 잘 쓰는 법 : 5가지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wecreative100/220651135715>
 2016. 3. 10. - 기획서 잘 쓰는 법 : 5가지. Creative마케팅에서 알려드리는 이야기. 오늘은 기획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서는 많이 써보면 ...

[기획안 기획서 잘 쓰는 법 : 네이버 블로그](#)

신입 직원 채용 기획

- **워크넷에 올린다?**
다수가 지원해서 업무 과중.
- **인맥을 활용해서 추천 부탁?**
안 뽑아주면 섭섭함

기획서 작성

1. 정보 수집(문제 발견)

- 사람을 만나라
- 현장에 가서 확인해라
- 검색해라
- 전문가를 찾아가라

기획서 작성

2. 기본 설계(문제 해결)

- 기획서의 목표를 제시.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 명시
- 주장의 근거는 데이터로 제시
- 비용과 수익을 명시
- 문제 해결 방안과 과정을 제시

기획서 작성

3. 보완 계획(PDCA) (발전)

- Plan : 현황, 달성 목표 설정, 전략 설정, 실행 계획
- Do : 우선순위, 투자자원, 추진일정, 업무분장
- Check : 진행 확인, 성과 측정, 문제 발견
- Action : 보완, 새로운 기획

사업개요	사업명	2015 대전사회적경제 박람회 아이디어 포럼		
	제안자	유승민	협력자	유인수, 김창근
	사업기간	2015.06 ~ 2015.07		
	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	<input type="checkbox"/> 사업지역 : 대전시민대학 <input type="checkbox"/> 대 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대전시, 고용센터, 비영리협동조합연대, 지원기관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2014 박람회 평가 및 2015 박람회 컨셉 도출 <input type="checkbox"/> 2015 박람회 운영 방안 합의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박람회 의사결정 단위 결정 - 박람회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단위로 운영위원회 구성 - 외부 입김 최소화 합의 <input type="checkbox"/> 박람회 방향 설정 - 목적 달성을 위한 박람회 방향 설정 - 키워드 파악 정도 진행 <input type="checkbox"/> 박람회 목적 합의 - 참가자 제안 및 전체 합의 <input type="checkbox"/> 박람회 콘텐츠 제안 - 아이디어 파악 정도 진행		
기대효과	1. 박람회 운영 방법 합의에 따른 의사 결정 지연 예방 2. 기획 과정부터 참여기관들의 의견 수렴 3. 박람회 책임 운영 단위를 명확화하여 외부 입김 차단			
평가척도	1. 포럼 참여기업의 의견 파악 2. 유관기관(지자체, 고용센터)의 참여와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요구 파악	수혜자	- 박람회 참여기업의 갈등 예방
	핵심파트너	
	재정지불자	대전시 : 대규모의 전시성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홍보 효과 극대화
성공적 기획요인 (차별성)	1.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트랙별 갈등을 차단 2. 기획, 홍보, 공연, 학술행사 등 박람회 전분야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설계	
세부 일정	<input type="checkbox"/> ~ 6월 12일(금) : 기획안 추진을 위한 대전시, 고용센터 협의 <input type="checkbox"/> ~ 6월 16일(화) : 행사 안내 공문 발송 <input type="checkbox"/> ~ 6월 19일(금) : 행사 참가 기업 모집 <input type="checkbox"/> ~ 6월 23일(화) : 행사 참가 기업 확정 <input type="checkbox"/> ~ 6월 26일(금) : 아이디어 포럼 개최 <input type="checkbox"/> ~ 6월 30일(화) : 아이디어 포럼 결과에 따른 박람회 기획안 작성	
세부 예산안	- 현수막 : 100천원 X 1식 = 100천원 - 간식비 : 3천원 X 50명 = 150천원 - 식 비 : 7천원 X 50명 = 350천원	

보고서·보도자료 작성법

보도자료 작성법

우희창(대전충남민언련 대표)

보도자료 쓰기

강사 우희창(언론학 박사)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목원대, 대전대, 순천향대, 청운대, 충남대, 우석대 외래교수

전 충청남도 미디어센터장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전 대전매일신문(충청투데이), 동양일보 기자

Phone 010-7477-6335

huma0011@gmail.com

목차

- 홍보란?
- 언론을 알아야 홍보를 한다
- 보도자료란?
- 기자를 알아야 보도자료를 쓴다
- 보도자료 쓰기 실제

홍보란?

- 홍보 弘報 - 널리 알리는 것
- 조직과 공중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 홍보는 화장술이 아니다
- 광고는 돈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필요로 하지만 홍보는 그렇지 않다.

홍보란?



언론 홍보

- 조직과 공중을 연결하는 기본은 언론
- 매스미디어-정보를 대량으로 다수의 공중에게...
-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언론....언론은 홍보매체가 아니다.

기자를 알아야 홍보가 된다

- 버릇없다
- 하루살이
- 술에 죽고 술에 산다
- 선민의식
- 학연과 지연으로 뚝뚝 뭉친 패거리 인생



기자는 어떻게 대하나?



기자들은 어떤 뉴스를 좋아하나

- 신기록 (최다, 최대, 최고, 최초)
- 십진법과 랭킹
- 숫자 놀음
- (시청률/시청점유율)
- (국방비-美 7390억\$/한국 339억\$/북한 23억\$)
-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선행경기지수, 조세부담률, 경상수지, 소비자심리지수 등
- 언론자유지수(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순위(우리나라 부분적 자유국)

뉴스 전체뉴스 > 관련뉴스 | 1-3 / 3건 뉴스검색 가이드

관련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검색결과 자동고침 시작 ▶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표석 대전 도심에 세워져 네이버뉴스

뉴스스 | 29분 전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대전추진위원회가 주관한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표석 제막식이 28일 대전 중구 중앙로역네거리에서 열렸다. 중앙로역네거리는 6월 항쟁 당시 많은 대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전시, 6·10민주항쟁 30주년 표석 세워 뉴데일리

뉴데일리 | 25분 전

[뉴데일리-김민형 기자] 대전시가 28일 중앙로역네거리에 6·10민주항쟁 30년 기념 표석을 세워 30주년을 기념했다. 제막식 행사에는 6월 항쟁 참가자 등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세종...

중앙로네거리에 6월 민주화 항쟁 담은 기념 표석 제막 대전일보

대전일보 | 21분 전

권선택 대전시장은 28일 중앙로역네거리에서 치러진 6·10민주항쟁 30년 기념 표석 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대전시가 후원했다. 중앙로역네거리는(옛 동백네거리)는 6월 항쟁...

기자들은 어떤 뉴스를 좋아하나

- 유행을 제조하고 유행에 편승
- 적폐, 갑질, 4차 산업혁명, 올로(Yolo-you only live once), 인공지능, 알파고, 알고리즘, 빅데이터, 응답하라, 각종 줄임말 등



- 광고유행어(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으~~리)



기자들은 어떤 뉴스를 좋아하나

- 경제에는 언론도 시민도 민감하다

제1736호
1997년 8월27일 수요일 <음 7월25일>

사 회

북한동포 242만명 한달식량 해결

동양백화점 부회장 탕진28억 얼마나 될까

미화 335만달러, 우리돈으로 28억4000만원이다. 동양백화점 오종섭부회장이 해외도박으로 한순간에 날린 금액이다. 서민로서는 평생동안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액수다. 28억여원은 동양백화점 본점과 중앙점 600~700여명의 직원이 지난해 열심히 벌어들인 탕기순이익 61억5000만원의 5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부에서는 "액수가 문제겠느냐"며 애써 달라고 있지만 이 금액이 대전시민 등 공익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열악한 재정으로 어둠에 가려져 있는 어느곳엔가는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전시가 수십년간 적립한 시문예진흥기금은 현재까지 28억6400여만원으로 오씨가 단 며칠새 날린 금액과 일치한다.

대전시의문예진흥기금은 적립액수의 이자만을 갖고 매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지원신청한 173개 단체 가운데 115개 단체만이 1년 한 행사에 100만~500만원을 겨우 쓰고 있는 형편.

3년 주기로 열리는 대전시 최대의 문화행사인 문화행사 총경비가 1억원일때 28억원이면 오는 2081년까지 28번의 화려한 행사를 치를수 있는 절미다. 28억원이 북한돕기 주머니에 쓰

여진다면 옥수수도 한달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로 산정, 242만 2145명의 한달식량이 해결된다. 동양백화점 본점에는 주차난으로 북새통을 이뤄 주변 붐블로를 오가는 시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돈을 자회사 주차난 해결에 쓰여졌다면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백화점 주차가 벌써 쾌적한 환경으로 바뀔수도 있었다. 추석을 앞두고 대전지역 7개업체 261명의 체불액이 7억1000만원으로 28억의 25%만 풀려도 이들은 추석을 따뜻하게 보낼수 있다. 동양백화점이 참여주주로서 단 5억원만을 출자해 올 초 창당한 대전시민 축구단은 자금난으로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억원이면 국제공인구 11만원(국내 3만원), 축구화 13만원으로 산정해 대전시민 선수 30명이 6개월마다 교체를 해준다고 해도 12년간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전시민의 향토기업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일축해버린 부도덕 기업가의 단면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연제민·조은희 기자>

수십년 적립 시 문예진흥기금 먹먹어 2081년까지 트리엔날레 행사 28회개최

기자들은 어떤 뉴스를 좋아하나

- 사회적 관심이 많은 이슈에는 풍부한 정보
- 대한항공 땅콩 회항 / 4대강 녹조 / 사드

[한국일보] 세종 금강유역 4대강 구간 대책 마련 시급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 붉은갈따구 여전, 마리나 등 시설은 방치



세종보 뿔에서 발견된 붉은갈따구와 강물에 떠다니는 조류 사체.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세종시 금강 유역의 수질이 나빠지고, 각종 시설은 사실상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두 달여 간 금강 세종보 집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상류 강바닥이 뿔과 녹조 사체들로 가득한 것을 확인했다.

뉴스의 가치를 알아야

- 시의성-EX)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 저명성-인물/장소
- 근접성-지리/심리
- 영향성-버스요금 인상 VS 택시요금 인상
- 흥미성-어린이, 애완동물, 돈, 성 등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

아! 그 놈의 보도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2017. 7. 11(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178)

순서

- 소개 / 발언
- 공익감사청구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기자회견문 /

170711.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자회견문.docx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장밋미와 드레스를 곁들이는 듯한 우리는 공익감사를 청구한 620명의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대진시민회 총합동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과 독특한 태도에서 비롯된 각종 위험 행위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은 내일이 결코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차분하고 고요한 목소리를 내며, 차분하게 각종 자료를 요구한 채 26년간 이 동안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방출하여, 내일에게 인종별 하나로 원자로 1호를 방사능 원자로로 바꿔버린 1천개가 넘는 구멍을 뚫고, 핵발전소보다 많은 방사능을 내뿜어 왔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안전을 감시하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 감시를 담당하기 전에 원자력연구원 측에 미리 납액과 검사 항목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내부당국의 통용된 이야기와 연계를 통해 보도되면서 대진시민회는 또한 변질되어왔다.

이중 참증의 원조로써도 돌리면서 있는 원자력연구원 당내와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까부른 사실을 어떻게 하였을까? 차차적인 대진시민회 유정우도 원자력연구원 안전 1km안에 사는 주민들도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연구가 없이는 원자력에 지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을 국민으로부터 원자력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 보고 있다.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이 과연 제대로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지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연구원과 안전을 관리하는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들의 불안 속에 '해바라기' 아모데움은 그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폐타입 측에 대해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던지 오래다. 원자력연구원이 30개에 달하는 위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방위 대책본부를 내세웠고, 원자력연구원은 미 최후방위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있다. 최근 오랜 기간을 대진시민회는 선진국의 여러 안전을 냈고, 앞으로 행정처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같이 방사능과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을 방출하는 저준위 방사능이 없었다면 감부장을 맡을 때에 다루었다는 후안무개적인 극악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한낱 안전도 한 거대한 안전도 기대할 수 없기에 시민이 직접 나서서 감사청구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시민들이 제기하는 위험, 부당 행위 의혹에 대하여 날마다 조사하여 두 기관에게 각종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대상인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의 기틀도 없이 감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620명의 대진총합동 시민들은 핵과 방사능 용질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열망을 하나로 모아 오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2017. 7. 11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문의: 010-3420-7506 / 010-5005-1178)

감사청구의 요지

1.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과정에서의 문제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문제점은 1986년 원전공정에서 제1회 KSC-100시, 낙하시험, 중력시험 등 정부가 규정한 사고조건시험을 하지 않았고,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문제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10톤 이상 미달하는 교방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정기적 중방실험(뉴스파라)도 실행하지 않았다.

중방실험은 이상 방사능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자체 내부로 발전소 내 미분출 감지된 것만 해도 원자력은 1998. 5부터 2010. 5까지 고려, 영랑, 송진외 원전에서 총 7차례에 걸쳐 309개의 중방실험 결과를 유출운송을 통해 약 300km를 이동시켰다(바레호의원 보도자료).

2. 원자력연구원 내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안전성 부족 문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안전성 부족 문제가 많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화재 또는 내진에 대한 안전성 부족으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이 연공을 원자로 기정시설로 수용 관리할 수 있는 1,699개의 사용자책임요건을 이행한 상태가 보편하고 있는지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파병길의원 보도자료).

3. 원전보다 많은 방사능을 배출하는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구원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의 양이 원전 1개에서 배출되는 기체 방사능을 배출한다 2-3배나 많다(추세선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은 대도시권 내각에 위치하고 주변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데도 이와 같이 원전보다 많은 방사능을 배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원전 조사와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체방사능을 배출하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은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안전성 부족 문제 때문이며, 원자력연구원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은 원자력연구원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고, 원자력연구원이 공개한 방사능 측정내역이 사실인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배출내역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이 필요하다.]

4. 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제보 목적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 부정 의혹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7. 4. 20.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초 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제보가 있었으나 원자력연구원 이를 부정했고, 이를 문제 삼은 유정우위원을 방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우위원은 내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출내역을 서로 공유했고, 감사결과와 제보내용을 놓고 다투었다는 내용이 내부 제보로 알려졌다(내전 KSC 보도 자료). 이는 중대 사건이나 원전외 조사결과에 투과되었으므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결론적으로

- 기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자....내가 기자라면 이따위 보도자료에 기사를 쓸까?

아! 그 놈의 보도자료

- 보도자료만 잘 써도 홍보의 성공(내가 기자라는 생각)

첫째 뉴스가치. 뉴스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 새로운 사실이고, 무엇이 큰 건인지...

둘째 정직과 신뢰성. 신뢰성이 낮으면 기자는 쓰지 않는다. 팩트에 근거한 보도자료가 신뢰성 있다.

셋째는 간결함. 신문에는 많게는 하루 수백 개의 기사가 실린다. 신문은 공간, 방송은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분명히 알려야 할 사실만을 간결하게 정리해야 한다.

넷째는 좋은 문장. 단어가 틀리거나, 문법이 맞지 않거나, 핵심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면 기자는 앞부분만 읽어보다가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린다.

아! 그 놈의 보도자료

- 이슈를 생각하라(국수주의 / 사대주의) (전원주의 / 개발주의)



아! 그 놈의 보도자료

- 남들도 못하는 처음이다 (의미제공)
- 어처구니없다 / 재미있다
- 사진이나 그림이 떠오르도록 한다(사진/이미지 제공)



(○)



(x)

- 보도자료 사진은?(이야기, 사람, 행동과 표정)

아! 그 놈의 보도자료

- 배포는 언제?
 - 보도자료 배포는 타이밍의 기술
 - * 이슈가 풍년일 때를 피하라
 - * 마감시간에 보도자료 배포는 가급적 피하라

아! 그 놈의 보도자료

- 네이밍의 힘-이름을 붙여라
 - 경기도 거꾸로 교실/미소금융/안심대출/행복 도시/햇볕정책/착한여행
 - 하이트진로 이슬톡톡/굽네볼케이노/오또케 (오감자토마토케첩맛)/아재버거/잘풀리는 집/일나그라
- 값진 슬로건 하나 열 광고 안 부럽다
 - 응답하라 1988/크리에이티브 코리아/공구리에서 녹색으로/이게 나라냐/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형식에 맞게 쓰기

■ 제목: 헤드라인(제목)은 독자가 눈을 한번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짧게 작성. 너무 길면 독자들의 집중도 하락

■ 부제목: 제목만을 설명이 충분치 않다면 부제목을 1~2개 붙인다. 이 경우, 제목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 리드: 리드는 전체의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다. 리드를 포함해 150자 이내의 영역에 핵심 키워드를 넣을 경우 보도자료 검색이 잘 될 수 있다.

■ 날짜 : 날짜와 장소는 꼭 필요. 보도자료에 기입된 날짜와 시간을 보고 기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함. 어떤 사람들 상대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

■ 인용구: 인용구는 특히 강조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면 보도자료의 3분의 2부분부터 작성

■ 단체 소개: 회사 소개 혹은 보도자료에 협력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협력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번 작성하면 보도자료에 계속 활용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작성 시 회사의 강점을 멋지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제3회 절전왕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이렇게 아끼세요! 제3회 절전왕대회 열려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는? 이애리씨 절전왕(대상) 수상

지난 7월 1일(토), 대전시민대학 식당산홀에서 '제3회 절전왕대회'가 열렸다. 대전충남녹색연합(상임대표 이동규)과 한국가스공사충청지역본부(본부장 오무진), 대전절전소네트워크(공동대표_석은자)가 주최하는 절전왕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절전 노하우 경연대회다.

"집의 바람길을 파악해서 가구를 배치하면 에어컨 사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온수기능을 꺼놓으면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날 대회에서는 가정에서의 절전 노하우가 다양하게 쏟아졌다. 서류 심사를 통해 엄선된 9명의 참가자가 자신만의 절전 노하우를 발표했고, 100여명의 시민들이 청중으로 참가해 발표를 듣고 절전 노하우를 배웠다.

심사위원 5명과 대전 시민 100명의 청중평가단이 절전 노하우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한 가정 한등 켜기와 '바람 길에 따른 가구 배치'를 실천한 이애리씨가 절전왕(대상)이 되었다. 이애리씨는 바람 길에 맞게 가구를 배치해서 선풍기 사용을 줄이고, 햇볕에 맞추어 책상을 배치해서 전등의 사용을 줄였다. 또한 가정에서 한 곳에 모여 전등을 하나만 켜는 '한 가정 한등 켜기'를 실천해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가족간의 소통과 유대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3년 동안 전기 요금 이한번도 1만원이 넘지 않은 점 또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였다. 3대 절전왕(대상)을 수상한 이애리씨는 '절전을 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는 것이 어렵다. 절전을 실천하면 지구도 살리고, 가족간의 화합도 다질 수 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여기서 다른분들의 노하우를 많이 배웠다. 절전을 더 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다.

절전 고수(최우수상)는 '아는만큼 절전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지영씨가 수상했다. 김지영씨는 절전을 위해 각종 절전 노하우와 방법을 공부해서 다양한 절전 방법을 실천하는 모습을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겨울철에 수제 팔합팩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가족 모두가 보온 의복을 입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외에도 절전을 위해 햇볕이 잘 들고, 평수가 작은 곳으로 이사한 최순예씨, 태양광발전기와 태양광 전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재완씨, 작년에 비해 45%이상 절전을 실천한 이주은씨가 절전 달인(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절전왕)에게는 해외 공정여행이 전액 지원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제주도 2인 왕복항공권이 상품으로 수여되었다. 우수상 수상자 3명에게는 에너지미티를 수여해 가정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이 제공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에게는 에너지 교육과 에너지 컨설팅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이 날 청중으로 참가한 2대 절전왕 주순하씨는 '제가 5가구 30평 아파트 전기요금 8,900원 내용으로 2대 절전왕이 되었는데 3대 절전왕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을 보니 더 노력해야겠다.' '절전 노하우를 배우기신 분들이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꼭 실천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꼼꼼하게 아이디어를 살펴 본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아 참가자들의 노하우를 칭찬했다. 김은정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는 '절전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반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절전이 생활화되려면 교육이 중요하다. 미래세대에게 절전 교육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양홍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절전이 곧 발전이다. 절전을 통해 탈핵, 탈석탄 사회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했다. 절전왕대회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절전노하우를 발표하고, 시민들은 그것들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다. 절전이 퍼져나가 탈핵, 탈석탄 사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보도자료는 헤드라인이 중요하다
 - 제목을 뽑을 때 시간을 많이 들여라
 - 제목과 문패는 다르다
(적폐청산 대전민중대회 개최 VS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사회 개혁촉구 목소리 높인다”
(충청언론학회 방송정책 세미나 VS 지역성 정상화 방송정책 바뀌어야)
 - 좋은 제목의 공통점-첫째 명쾌, 둘째 짧으며, 셋째는 독자에게 읽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
 - ① 좋은 제목이 나오려면 보도자료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핵심 내용을 제목에 담아야 한다(핵심 요약) ② 굵고 짧게-20자 이상 넘기지 말것-독자는 제목을 읽는데 1초밖에 안 걸린다 ③ 읽어보고 싶거나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 안된다 (과장이나 엉뚱한 제목 금물)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제목 뽑기
 - 동사 없는 제목은 없다. 표현되든 안되든 명확한 동사적 의미 내포 필요
예) “남산 아파트 역사속으로...”
 - 기사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제목을 뽑아야 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제목을 뽑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
 - 중복 회피-몇 자 안 되는 제목들 사이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면 그야말로 낭비이며 피로와 권태감을 준다. 특히 주제와 부제간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간혹 대구법을 활용하고자 의도적으로 중복시키기도 한다.
 - 의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제를 명확히 하라
 - 딱딱한 한자어나 명사만으로 구성된 제목은 뻥점-적절한 대구법이나 비유 등으로 리드미컬한 제목을 만들면 독자들에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다.
 - 감동적인 기사는 감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제목의 종류
 - 객관제목 : 요약형 / 인용형
 - 주관제목 : tone형(삽질 시작한 4대강서 문화유적 '칼칼') / 캠페인형 / 질문형 / 조어형(대청호 '녹조라떼' 사라질까) / 의인화 / 명령형 / 문제제기형

- 연습1 보도자료 제목 오류 뽑아내기

대전시민 50.9%, 권선택 민선6기 시정 '부정적'
대전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적' 18.6%... "더민주 지지 기반 흔들려, 심각"

제3회 절전왕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이렇게 아끼세요! 제3회 절전왕대회 열려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는?

이애리씨 절전왕(대상) 수상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리드쓰기
 - 기사의 첫 문장, 전문(前文)
 - 전체 기사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문장 또는 독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강조한 문장
 - 독자는 리드를 읽으면 글의 흐름이나 강도, 요지 등을 짐작함
 - '누구'를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언제'를 내세울 것인가, '어디서'를 앞세울 것인가? 또는 '어떻게'를 부각시킬 것인가, '왜'를 다룰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리드의 유형
 - 전체내용 제시형 / 다이제스트형(요약형) / 선택형 / 질문형 / 나열형 / 직접 인용형 / 사회 고발형

- 연습2 리드 쓰기

지난 7월 1일(토), 대전시민대학 식당산홀에서 '제3회 절전왕대회'가 열렸다.

대전충남녹색연합(상임대표 이동규)과 한국가스공사충청지역본부(본부장 오무진), 대전절전소네트워킹(공동대표_석은자)가 주최하는 절전왕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절전 노하우 경연대회다.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본문쓰기
 - 리드에서 제시한 사실에 대한 요약을 풀어 쓰기
 - 구체적 사실을 담은 정보로 리드를 뒷받침한다-중요한 사실부터 서술해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본문 쓰기
 -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
 - 다양한 경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휘 풍부
 -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
 - 6하 원칙-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
 - 형용사 부사 쓰지 않기
 - 중복 표현 금지
 - 전문가나 관계자의 인용 필요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본문 쓰기
 - 기자(궁극적으로는 독자)의 호기심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특정한 세대만의 언어는 쓰지 않는다
 - 결론부터 전하는 역피라미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한다

- 연습3 본문 쓰기

보도자료 쓰기의 실제

- 사진이나 그림은 가급적 함께 주면 좋다
- 보도자료 사진은?
 -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 사람이 들어가야 할 것
 - 행동과 표정이 담겨야 할 것



(○)



(X)

감사합니다

인권

인권국가는
어떻게 가능 한가?

조효제(성공회대학교 교수)

인권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인권 FAQ – 개념 - 팬더원칙)

6차 인권학교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17. 8. 22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참고문헌

- *류은숙. 2015. <심야인권식당>. 따비.
- *박경서 외. 2015.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철수와영희.
- *박래군. 2015.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클.
- *박찬운. 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
- *오창익. 2008.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삼인.
- *정희진. 2016. <아주 친밀한 폭력—여성주의와 가정폭력>. 교양인.
- *정희진 편. 2016.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 *조효제. 2015. <조효제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교양인.
- *표창원 외. 2016.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인권이 해답이다>. 철수와영희.

인권 교육

1. 인지적 교육
2. 도구적 교육
3. 계몽적 교육
4. 민주시민 교육

가부장제의 문제?

| 로버트 필머 vs. 존 로크 논쟁

_ 필머: 국가 = 대가족 = 국왕은 백성의 아버지(공사 영역 혼재)

_ 로크: 공적 영역 vs. 사적 영역 = 공사 영역 분리

| 로크의 역설: 왕권신수설 부정 → 그러나 부권신수설 인정

_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절대권력

_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는 권력(*paterfamilia*=patriarchy)=양호

_ 사적 영역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_ 그러나 가정에서 갈등-억압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막을 방법 없음

_ 개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역설적으로 인권침해 원인이 됨

| 자유주의 국가의 난제: 공사 구분하면서 동시에 사적 영역 인권보호

여성에 대한 폭력 (VAW=Violence Against Women)

| 주로 젠더상의 이유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일종의 증오범죄)

| 유엔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1993)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현이며...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지위로 몰아넣는 핵심적 사회메커니즘”

| VAW 종류:

강간. 부부간 강간. 가정폭력(명예살인, 지참금 폭력, 초산 폭력, 강제결혼). 군중 폭력. 스토킹. 성희롱-성추행.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과부차별. 마녀사냥. 전쟁시 강간. 전쟁시 성노예. 강제 불임시술. 강제 낙태. 석형(石刑). 여성생식기절제. 가슴 인두질. 비인도적 출산과 양육. 원주민 여성 차별 및 폭력. 여성운동선수에 대한 차별 및 폭력.

| “‘아내폭력’이 가족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성별제도(gender system)가 여성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정희진)

“여성 인권” 통한 인권의 발전

에바 브럼스의 3단계 원칙

(1) **동일 원칙**(sameness principle)

_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한 처우

(2) **특정 원칙**(specificity principle)

_ 젠더에 따른 특정한 욕구 인정

(3) **변혁 원칙**(transformation principle)

_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 고정관념을 타파

_ 남녀가 모두 새로운 젠더 역할 찾아야

타인을 혐오-증오할 “권리”?

| 권리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님: ← 인권의 근본적 오해

| <세계인권선언>

“타인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29조)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해석해서는 안 된다.”(30조)

→ 그러나 이런 원칙이 자칫 인권을 반대하는 독재자에게 빌미 제공

| 허용가능한 제한(permissible limitations)

- _ 권리를 제한하려면 **합당한 사유** 있어야: 공익 목적으로만 제한 가능
- _ **법률**로써 그 한계와 근거가 명시되어야
- _ **비례성**의 원칙: 공익 목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만

권리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나?

| 집회권 vs. 영업권 / 노동권 vs. 경영권 / 학생인권 vs. 교권 / 안보 vs. 자유 등

| 인권에서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확실한 정답 없음. 사례별로 따져야

| 권리간 갈등 문제를 다루는 원칙들

(1) 대다수 권리는 **절대적 권리** 아님: 표현의 자유 vs. 아동 음란물 제작

(2) 권리들이 충돌할 때 제로섬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균형과 비례 필요

(3) 어떤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무제한** 아님: (예) 다산 콜센터

(4) 권리들끼리 충돌할 때엔 **각 권리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사안의 **맥락**을 살펴야. 사회의 **문화적 규범**도 중요한 판단기준

(5) 사안별로 **본질적(핵심적) 권리** vs. **부차적(주변적) 권리** 구분되기도 함

성 소수자의 인권?

| 신앙. 정체성. 섹슈얼리티는 극히 민감한 논쟁-갈등의 영역

| "인권" 담론이 사회적 이슈들의 **모든 윤리적 측면을 다루지는 못함**

| 성 소수자를 대하는 상이한 접근방식

(1) 범죄화 → 성적 지향성 이유만으로 처벌

(2) 법적 의미에서 범죄로 취급 않지만 사회적(가시적-비가시적) 차별 존재

(3) 대다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 동성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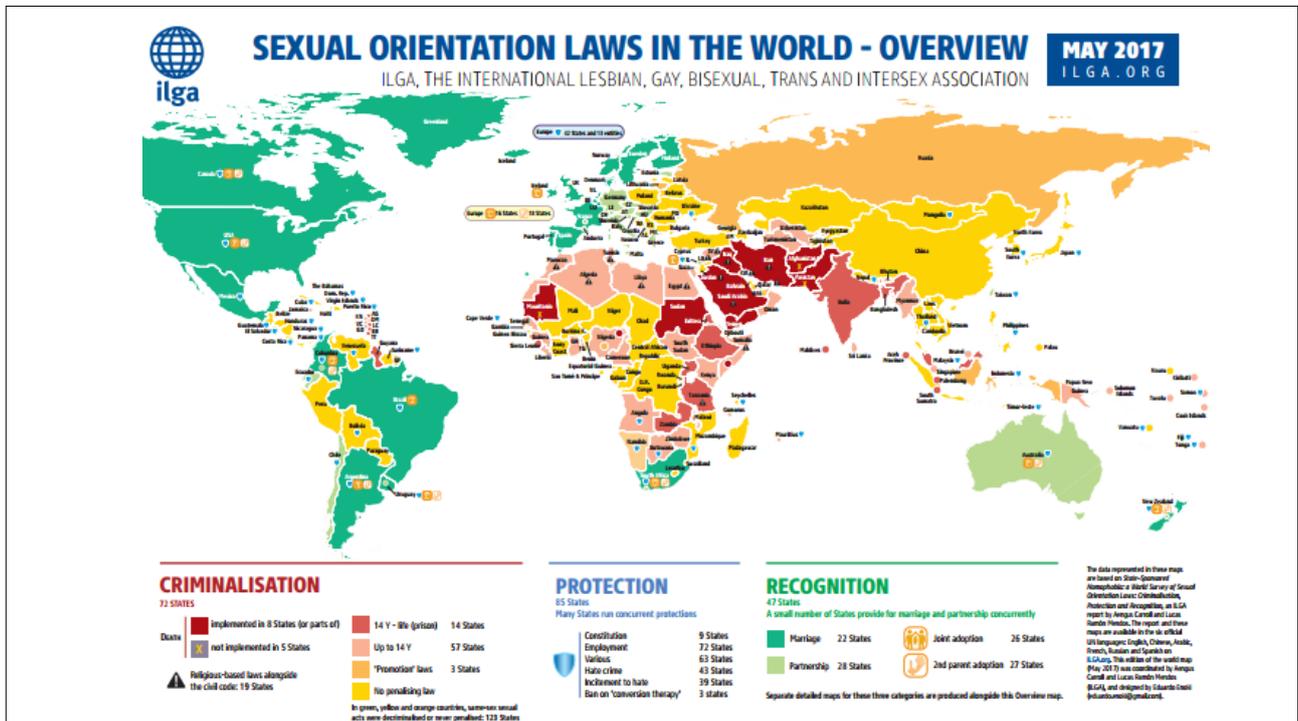
|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 (개인 자율성-선택 존중. 차별금지. **가치판단은 핵심 아님**)

(1) **절차적 차별금지**

최소주의: "....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용, 교육훈련, 성희롱 등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실용주의: 동반자등록법(시민적 결합) 등으로 실질적 차별 해소

(2) **섹슈얼리티 규범 전환:** 내재적 가치판단 → 법적 동성결혼 전면 허용



인권과 동물권은 반대인가?

| 좁은 의미의 인권 = 인간 종(*Homo sapiens*)의 권리

_ “우리가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타고난 존엄성(*inherent dignity*)...을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세계인권선언 전문)

_ 인간 종만이 이성-자유를 가졌으므로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봄

_ 비판: 인권은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종중심적(*species-centric*)??

| 넓은 의미의 인권

_ 인간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권리. 따라서 인간 아닌 동물에게도 권리 가능?

_ 인간이 “이성과 자유의지” 있어야만 인권을 누리는 건 아님: (예) 영유아. 고령자

_ 권리-자유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국제체제 중요(세계인권선언 28조)

| 동물권의 수준

동물 복지/동물의 인도적 처우 → 동물 보호 → 영장류 권리 부분인정 → 동물의 청구권을 인간이 대행 → 동물권의 완전한 인정(논리적으로 채식주의와 연결)

기후변화가 왜 인권문제인가?

| 생명권: 모든 인권의 출발점

_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

_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수몰

_ 저지대 지역 주민들 환경난민 전략

| 건강권: 각종 전염병과 풍토병의 유형 변화

_ 폭염 시 건강악화. 이상기온. 미세먼지, 호흡기 질병. 전염성 질환

| 생계권: 식량안보. 물 부족. 농업 및 어업의 유형 변화

| 폭력 및 갈등 증가

_ 살인, 강간, 가정 폭력과 같은 개인적 폭력

_ 집단간 폭력 및 정치 불안정

반인권적 이데올로기의 특징?

- | 배제적 이념: 배타적 구분을 강조
 - _ 내집단과 외집단의 엄밀한 구분
- |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
- |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상정
- | 강한 공리주의적 경향 + 극단적 능력주의(meritocracy)
- | 남성중심주의
- | 전통적 형태의 섹슈얼리티만을 인정
- | 사회 다원주의: 적자생존. 우생열패
- |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강압력·폭력·군사력을 지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 표현의 자유 특징
 - _ 어떤 표현의 내용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형식적 자유를 옹호하는 것
 - “나는 당신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의 표현자유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볼테르)
 - 애당초 사회통념에 도전하는 소수 언행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 일상적 발언이 아니라 문제적 발언을 허용하는 것이 표현자유 의 원래 목적 → 다수결 민주주의의 안전장치
 - _ 표현 자유를 ‘허용’하자는 것이지, 모든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권장’한다는 것은 아님
- |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
 - _ 외견상 보편적 권리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역사-사회적 맥락과 배경에 의존
 - _ 표현의 자유 원칙을 반대하는 주장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 _ 내용상의 가치판단과 형식상의 자유보장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움: 예) 종군 위안부
 - _ 약자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 그러나 강자가 약자에게 표현자유 사용한다면?
 - _ 표현자유 범위를 법으로 정하기보다 민주시민의 성숙한 판단으로 절제되어야

II. 인권의 개념과 특징

인권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똑 같이 귀하다는 **정의 원칙**,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 수단** ”

인권의 전제

-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 평화, 민주, 존중, 공감, 배려, 신뢰 등의 가치도 중요
- 인권이 중요하지만 다른 가치들과 공존해야 함
- 특히 자기중심적 "권익"과 인권은 구분해야
- 맥락과 사례별로 어떤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잘 선택하는 안목 필요

그러나 인권만의 특징점

- 권리 = 정의 원칙 + 실행 수단
- 명확하고 강력한 담론
- 만인 평등주의
-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에게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인간의 존재 증명과 자존감을 고양하는데 인권만한 가치가 없음

한자 문화권: “권리”(權利) 용어

| 인권 = human(인간) + rights(권리) = 人權

| Right(s)의 한자 번역

- **엄직**(廉直=1815). 정직(正直). 라이트. 도리(道理).
당연(當然). 면허(免許). 진직(眞直). 권의(權義). 공평(公平).
공도(公道). 진실(眞實). 조리(條理). 권세(權勢). 통의(通義) 등
- **권리**(權利=1885) = “정당한 이익”(rightful interests)

| Rights 번역 다양했던 이유: 단어 의미가 이중적이기 때문

- (1) 도덕적 정당성(rectitude)
- (2)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entitlement)

1. 인권은 ‘보편적’

-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됨
- 모든 사람은 본질적 차원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가정
-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개념
- “인간으로서의 권리”(인권)
- “국민으로서의 권리”(헌법상 기본권)

2. 이성과 양심

대다수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고 가정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 (reason and conscience)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1조>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헌법재판소>

3. 본질적 욕구의 사회적 충족

본질적 욕구-필수욕구(needs)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욕구

생명 보전, 의식주, 최소한의 생계, 사회보장, 의료,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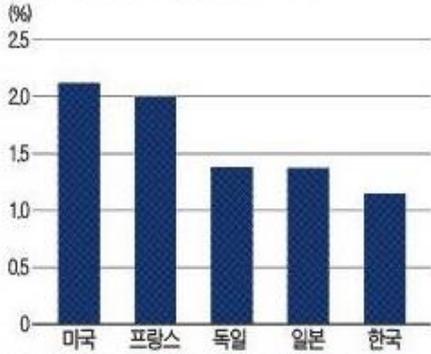
이러한 본질적 욕구를 사회공동체가 책임지고 충족해 주어야 함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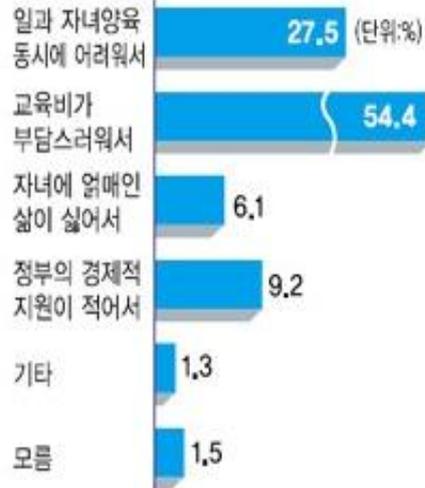
→이렇게 생각하면 반인권적

필수욕구의 사회적 충족 책임은 한국이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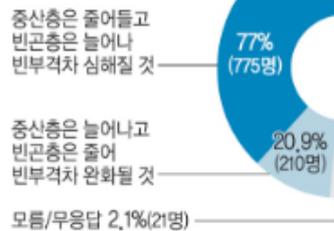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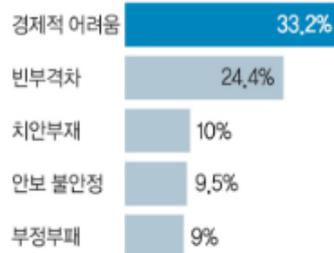
2014년 OECD회원국 자살률

국가	명	국가	명
한국	28.7	*폴란드	15.3
일본	18.7	*체코	14.2
*슬로베니아	18.6	*스웨덴	12.3
헝가리	18	OECD평균	12
*벨기에	17.4	*스위스	12
*에스토니아	16.6	*덴마크	11.3
*핀란드	15.8	*독일	10.8
*프랑스	15.8	*노르웨이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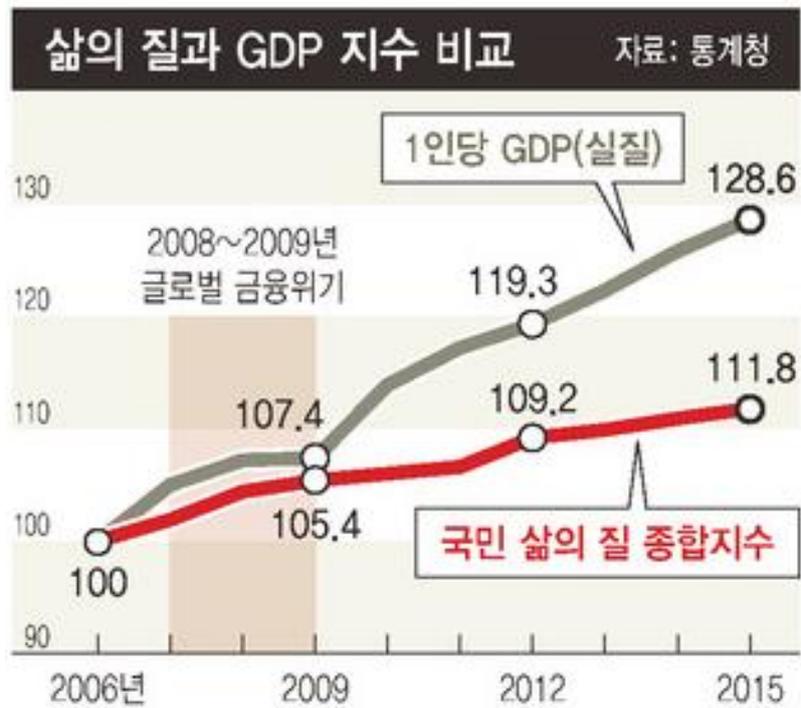
한국 사회 10년 후의 모습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수 응답)



* 전국 성인남녀 1006명 설문조사



4. 차별 금지

- _ 차별 금지=인권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
- _ 인권의 보편성과 연결됨
- _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해 주는 것이 곧 정의
- _ 정의 (Justice) = 공정 (Fairness)

“정의의 여신은 눈에 안대를 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특수 안경을 쓰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인 것만 보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알 수 없어야 정상이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





세계인권선언과 반차별

| 전문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평등한 권리** 및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차별금지 근거는 계속 늘어남 → 인권발전 방향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 훈련 등의 영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인권의 특징1: 공적 개념

시민과 국가(공적 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최근 공적 주체가 다양해 짐

- 국가 → 전통적으로 인권의 궁극적 의무주체
- 지자체 → 최근 부각되는 주체
- 공공기관
- 기업
- 국제기구
- 요즘은 사적 개인들 간에도 적용하기 시작

인권에 있어 **공사 경계가 약해짐**

-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대상 사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1. 국가/지자체의 의무:

- _ 존중 (respect): 공공기관의 인권 의무
- _ 보호 (protect): 국가 감독 책임
- _ 충족 (fulfil): 시민의 기본 욕구충족 의무
- _ 촉진 (facilitate): 인권에 관한 교육 의무

2. **개인의 의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세계인권선언 29조)

인권의 특징2: 권리와 의무



인권의 특징3: 불가분성 = 인권의 통합성

- _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함
 - _ 어떤 한 가지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할 수 없음
 - _ 모든 권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해야
 - _ 인권은 통합적-전일적으로 이해해야 함
- 인권 목록 중 일부만 강조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님

인권의 특징4: 최저기준 설정

- _ 인권의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최대치를 목표로 하지 않음
- _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최저기준을 설정
(minimum standard)
- _ “적어도 ...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 _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면 정말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인권의 특징5: 권리의 역설

| 권리보유의 역설 (잭 도널리)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권리가 없으면 권리가 나타난다.”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자주 쓴다고 해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뜻은 아님

인권 선진국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많이 쓰지 않음

인권 용어 사용을 떠나 실제로 인권 가치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구현되느냐가 더 중요

인권의 특징6: 세대별 발전 = 인권의 통합성

| 1세대 인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

- _ 고전적 권리들
- _ 세계인권선언: 3~21조

| 2세대 인권 (경제적, 사회적 권리)

- 의식주, 의료, 사회보장, 노동과 휴식, 교육, 문화
- _ 세계인권선언: 22~2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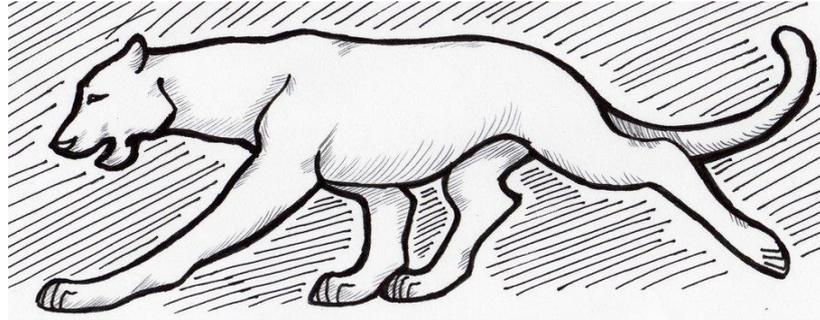
| 3세대 인권 (집단권, 연대권)

- _ 환경, 발전

III. 인권친화적 조직 운영을 위한 팬더 원칙

인권 원칙을 조직 운영에 활용하는 기법

P
A
N
T
H
E
R



팬더 원칙의 특징

- 인권이라는 말만으로 인권 문화와 인권 마인드 생길 수 없음
- 일상적 조직 생활 내에 인권 원칙 스며들어야**
- 팬더 원칙은 인권의 내용을 7가지로 세분하여 공사 조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념
- 팬더 원칙을 실천하면 '인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내용상 인권친화적 조직 운영을 이룰 수 있음

PANTHER 원칙

P articipation	참여
A ccountability	책무성
N on-discrimination	불차별
T ransparency	투명성
H uman dignity	인간 존엄
E mpowerment	권한강화
R ule of law	법의 지배

1. Participation (참여)

P
A
N
T
H
E
R



Participation (참여)

- 모든 사람은 자기존재 증명 욕구
- 자신의 뜻이 관철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자체를 원함
- 의사표현 자유 + 인정받고 싶은 욕구
- 조직의 문화가 중요
 - 참여와 대화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 상사부터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고 소통 노력해야
 - 조직 내 집단들이 서로 의견 경청, 타협-양보
 - 조직 내 자원배분에 대한 발언권 인정(실질적 참여)

2. Accountability (책무성)

P
A
N
T
H
E
R



Accountability (책임성)

- 원래 국가가 시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개념 =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 안전, 행복추구
-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주먹구구식 결정은 구성원 피해
- 약자, 소수자의 욕구 우선적 고려
- 무능하고 책임회피적 태도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악영향
- 조직 내 <윤리강령>
- 책임성 =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에게 해당

3. Non-discrimination(불차별)

P
A
N
T
H
E
R



Non-discrimination (불차별)

“모든 제도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은 한, 당연히 차별적일 것이다” (조너선 만)

차별금지 는 모든 인권의 바탕

→ 세계인권선언 2조

차별 당하지 않는 사람: 차별이 보이지 않음

차별 당하는 사람: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을 모르거나, 문제를 제기할 처지가 못 됨

차별 당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앞에서 열린 마음 필요

4. Transparency (투명성)

P
A
N
T
H
E
R



Transparency (투명성)

- _ 업무가 불투명하면 부패의 온상 되기 쉽다
- _ 부패가 있는 조직의 구성원은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다
- _ 정보의 공개 및 공유
- _ 내부적으로 '말할 자유'와 '표현 자유' 보장
- _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 _ 되도록 모든 언어를 쉽고 평이하게 써야 함
- 어려운 말: 의사소통 비용 높이고 권력 행사

5. Human dignity (인간 존엄)

P
A
N
T
H
E
R



Human dignity (인간 존엄)

- _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체면과 위엄을 존중
- _ 모욕적 언사와 경멸적 대우는 인간의 자존감과 금지 파괴
- (예) 비정규직의 처우: 인간적 차원의 굴욕감?
- _ 눈에 잘 띄지 않는 직군의 처우는?
- (예) 경비, 건물 관리, 급식, 청소, 등
- _ 정당한 명령체계와 인간존중 서로 병행 가능

6. Empowerment (권한강화)

P
A
N
T
H
E
R



Empowerment (권한강화)

_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잠재력 커지고,
창의력 발전=> 장기적으로 조직에 유리

1. 모든 사람과 정보를 공유
2. 업무영역을 확실히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성 존중
3. 결정권한이 있는 팀 구조

7. Rule of law (법의 지배)

P
A
N
T
H
E
R



Rule of law (법의 지배)

인치가 아닌 **법치 원리**가 중요

조직운영상 법의 지배란?

-규정과 절차에 따른 업무

-모든 시민과 민원인을 규정대로 공정 대우

-업무상 잘못 발생 → 사과 및 적절한 후속

조치

-민원과 고충 접수 및 처리과정 있어야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영향력 행사는

반인권적: (예) 지연, 학연, 파벌, 줄 세우기

나오면서

조직의 인권 마인드와 인권 문화

-조직 내에서 반드시 통용되어야 함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인권친화적 조직운영은 무질서한 운영이

아님

-인권적 조직운영은 인권침해 적발-시정하는 것 이상의 실천 요구

-조직 이용자 행복 + 조직구성원 행복 양립 가능

-개인과 조직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

-**팬더 원칙**을 위한 **자체적 방법** 개발 필요

인권

역사로 보는 인권,
인권으로 보는 역사

후지이 다케시(역사학연구소 연구원)

6기 인권학교



역사로 보는 인권,
인권으로 보는 역사

인권?



<https://www.youtube.com/watch?v=UwSU8krLNfQ>

인권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데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vq_-uMQLcMY

무엇이 다를까?

‘인권’을 누가 정하는가?



인권은 미리 정해진 것?

→ 인권이 미리 법과 같은 것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면, 헌법이나 국제인권규약 등을 잘 아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나설 수밖에...

→ 소외되는 ‘당사자’

인권의 주체란 누구인가?

→ 인권을 이야기할 권리는 누가 가지며, 무엇이 인권인지 누가 합의하는가?

인권을 역사적으로 보는 의미



인권을 이미 만들어진 권리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만 보게 되는 경우, 우리는 인권이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된다

필요한 것은 인권을 구체적인 어느 시점에서 누가 만든 것으로 보는 관점

=역사적 관점

→ 누가 무슨 권리로 인권을 만들었나?

인권선언(1789)



1789년 7월 프랑스혁명 발발
1789년 8월 국민의회에서 ‘인권 선언’ 채택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제1조: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한다. 사회적 구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소유, 안전, 억압(oppression)에 대한 저항이다.

‘인간’의 권리

‘인권선언’의 선구자
=미국 독립선언(1776)

인권선언을 기초한 라파예트는 미국 독립전쟁에 자진해서 참여했던 사람이었으며, 그가 인권선언 초안을 쓰고 있던 1789년 1월에 ‘독립선언’ 기초자인 제퍼슨도 파리에 와 있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자명하다고(self-evident) 여기는 바, 모든 인간(all men)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삶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모든 인간’의 권리를 ‘자명한’ 것으로 ‘선언’



흔히 독립선언에 앞선 인권신장의 과정으로 언급되는 영국 명예혁명의 성과인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은 권리의 주체를 영국 ‘신민(subject)’로 한정

자명함의 선언



‘독립선언’은 인간의 권리를 ‘자명한’ 것으로 제시했는데, 자명하다는 것은 논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뒤집어서 말하면 거기에는 다른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이기도 함

=‘권리장전’처럼 왕과의 계약이라는 식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선언’을 한 의미

→이미 있던 주권자(군주)와의 계약을 통해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권자로 나섬

미국혁명의 주체



독립전쟁 와중에 선언된 이 자명함은 그 권리의 주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던 상황을 반영

=논리 이전에 이미 존재한 권리 주체들

권리→저항 X

저항→권리 O

그런데 왜 ‘모든 인간’?

미국혁명의 한 주체였던 ‘잡색 부대(motley crew)’

=흑인 노예를 비롯한 다양한 인종의 잡다한 이들이 영국 의 지배에 끈질기게 저항

→‘영국인’과 같은 식의 민족적 주체 호명 불가능

→‘모든 인간’

하지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한 제퍼슨 역시 노예소유주

=이 모순의 표현이 ‘자명함’

‘모든 인간’?



‘독립선언’ 초안에는 있던 노예무역을 비판하는 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남부 농장주와 북부 노예무역상의 반대로 삭제

→ ‘모든 인간’에서 제외되는 흑인노예

인권선언에서도 자연권의 하나로 ‘소유’가 포함되어 사적으로 소유되는 존재였던 노예의 권리와 충돌

인간=men, homme=남성을 권리의 주체로 설정

→ 여성들을 권리 주체로 생각하지 않음

‘여권선언’과 ‘남권선언’



1791년, 올랭프 드 구즈
(Olympe de Gouges)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 발표



인권선언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거기서 권리의 주체로 이야기되는 ‘인간(homme)’과 ‘시민(citoyen)’이 실제로는 ‘남성’과 ‘남성시민’임을 비판

‘인권선언’ 전문 첫 부분

국민의회로서 구성된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간/남성의 권리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경시야말로 만인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 원인임을 고려하여 인간/남성의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자연권을 엄숙한 선언서를 통해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여권선언’ 전문 첫 부분

국민을 대표하는 어머니들, 딸들, 자매들은 국민의회 구성원이 되기를 요구하며,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경시야말로 만인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 원인임을 고려하여 여성의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자연권을 엄숙한 선언서를 통해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여권선언의 특징

1조: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권리에 있어 남성과 평등하게 존재한다. 사회적 구별을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특히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저항권 강조

인권선언 4조

자유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남성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장하는 것 외에는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 한계는 법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



여권선언 4조

자유와 정의는 남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반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자연권 행사는, 남성이 여성을 끊임없이 대하는 압제 외에는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 한계는 자연의 법과 이성의 법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권리를 누가 정하는가

여권선언이 발표된 1791년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해
→인치에서 법치로

인권선언 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들의 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지 않는다.

여권선언 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들의 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지 않는다.
국민을 이루는 개인들의 다수가 헌법 기초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헌법은 무효다.

프랑스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시기는?

혁명과 식민지



1697년부터 프랑스 식민지였던 카리브해의 생도맹그(Saint-Domingue)는 설탕과 커피의 산지로 프랑스 해외 무역 수익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식민지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좋은 지역
 =그 높은 수익성을 뒷받침한 것은 프랑스혁명 당시 50만 명이나 되던 흑인노예들(1780년대 후반에 급증)
 →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지는 식민지와 노예제문제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

노예들의 혁명



1791년 흑인노예들 봉기
 흑인노예들을 주력으로 한 반란군의 지도자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
 →1793년에 생도맹그에서 노예해방선언. 이어 1794년 프랑스 본국에서도 노예해방선언(프랑스 민중들의 공감 '피부색의 귀족제')
 1797년 투생이 총독 겸 총사령관 취임
 1801년 헌법을 제정해 자치 실시

혁명에서 독립으로

1799년 나폴레옹 쿠데타로 권력 장악

→1801년 연말 실질적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생도맹그에 70만 명이 넘는 군대를 파병(지휘관은 나폴레옹의 처남)

↔이에 대해 투쟁은 우유부단한 태도(혁명프랑스에 대한 미련)

→몇 달에 걸친 전투 뒤 조건부 항복(1802년 5월)

1802년 5월

나폴레옹, 노예제 부활 선언

1802년 6월

투쟁 체포(1803년 프랑스에서 옥사)

1803년 투쟁의 부관이었던 드살린이 총사령관이 되어 독립전쟁 지도해 승리

1804년 아이티공화국 독립

→세계 최초 흑인 공화국

권리 없는 자들의 권리 주장

독립선언이 발표된 1776년 당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인 애덤스는 독립선언의 결과를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새로운 요구들이 등장할 겁니다. 여성들은 선거권을 요구하겠지요 12세부터 21세까지의 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며 동전 한푼 없는 남자들 모두 제반 국가적 사안에서 다른 이들과 동등한 발언권을 요구할 겁니다.”

→정치적 주체의 확대

인권은 어디서?

프랑스의 여성들, 아이티의 흑인노예들은 ‘인권선언’을 만들어낸 프랑스혁명 당시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그들은 북미대륙에서 싸웠던 잡다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없는 권리를 선언하고 또 쟁취했다.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가지게 되는 것

→인권=정치적 개념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 <고향>

이 ‘희망’을 ‘인권’으로 바꿔서 읽어보자

인권

예민해도 괜찮아

이은의(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

2017 대전충남인권연대

예민해도

괜찮아



변호사 이은의

“예민해서 더 반짝반짝해지는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CONTENTS

1. 저란 사람,
2. 성희롱, 性別이 아니라 性格, 계급과 권력
3. 현장에서 만나는 성희롱 사건들
 - 가. 모 명문대학원생 사건
 - _ 일그러진 라이언 일병 구하기까지
 - 나. 모 명문대학교 인턴사건
 - 다. 사귀거나 나가거나 의심하거나
 - 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4. 예민해야 괜찮은 법조인의 삶
5. 결론 / 에필로그, Q 그리고 A

[삼성을살다]가 [예민해도 괜찮아]지기까지

[삼성을살다]가 [예민해도 괜찮아]라고 세상에 이야기를 건네기까지.



[삼성을살다]가 [예민해도 괜찮아]지기까지

[삼성을살다]가 [예민해도 괜찮아]라고 세상에 이야기를 건네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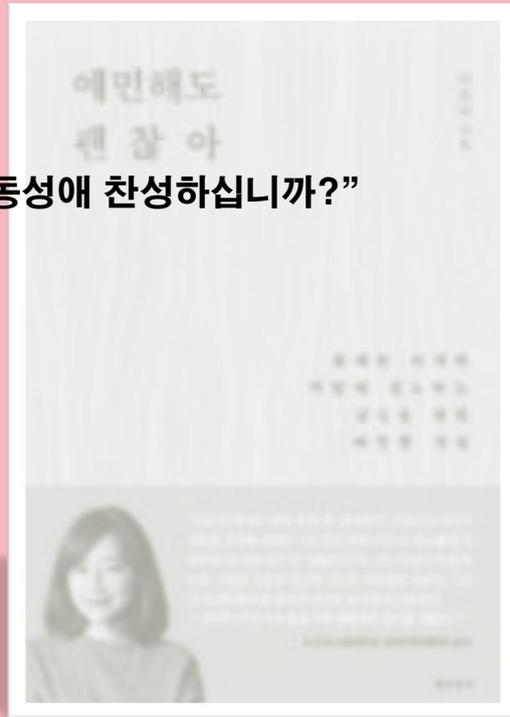
1. 오늘, 예민하게 바라보는 내일



성희롱, 성별이 아니라 성격, Sex가 아니라 Power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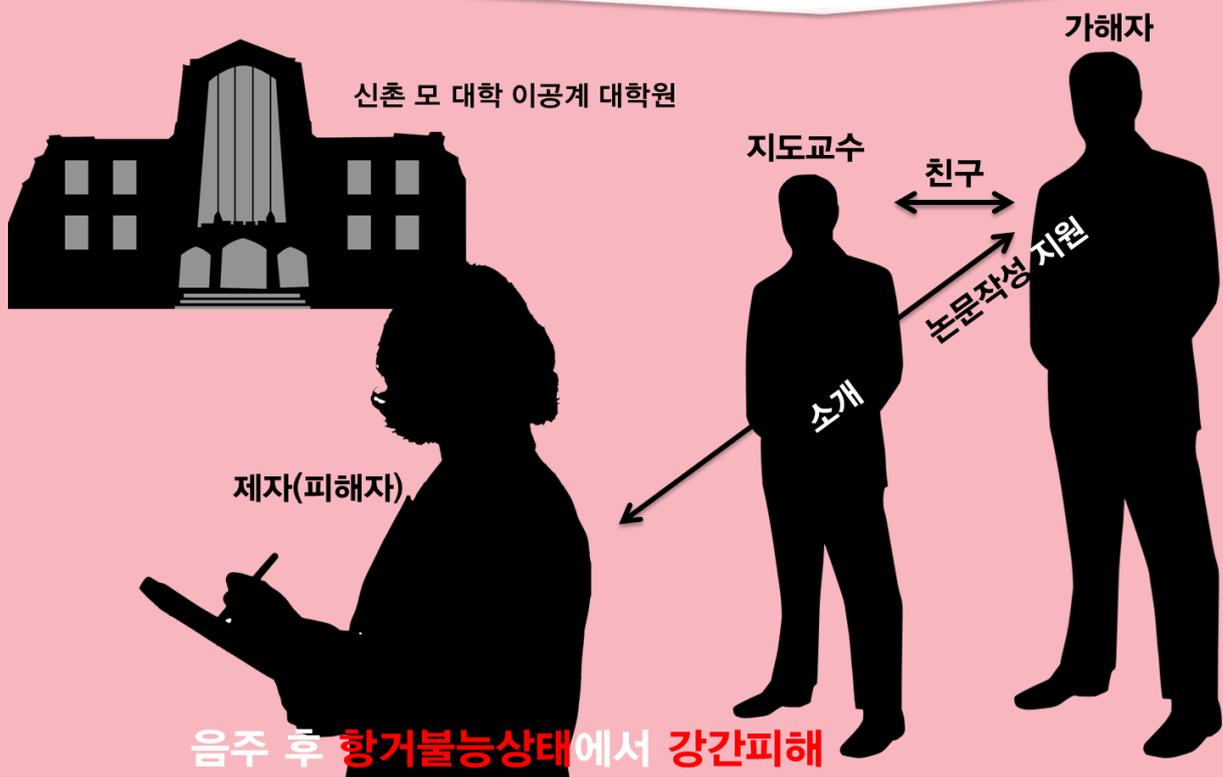
...생각해보기...

- ❖ 대선기간 동안 난데없던 질문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 ❖ 강간과 준강간 사이, 중간지대
- ❖ 왜 그랬냐는 참 많은 말들



모 명문대학교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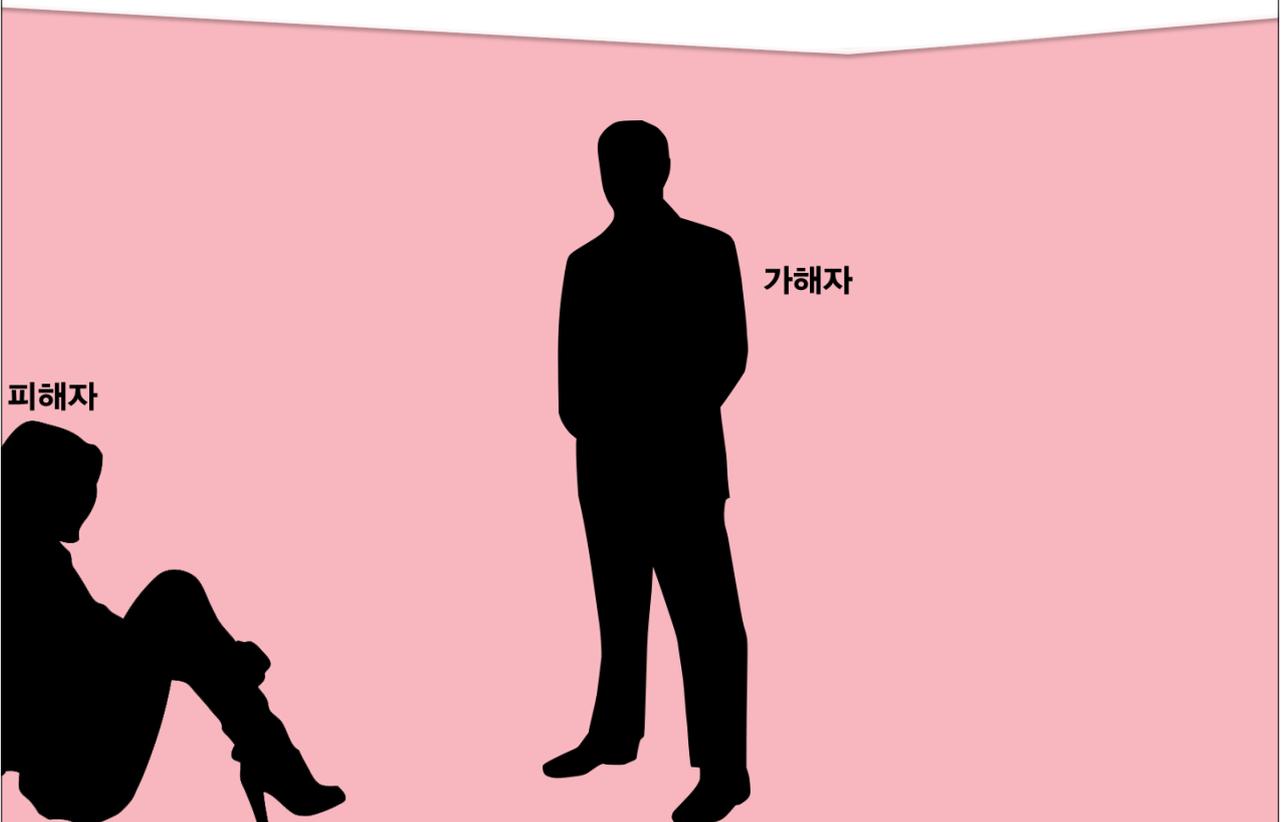
-일그러진 라이언 일병 구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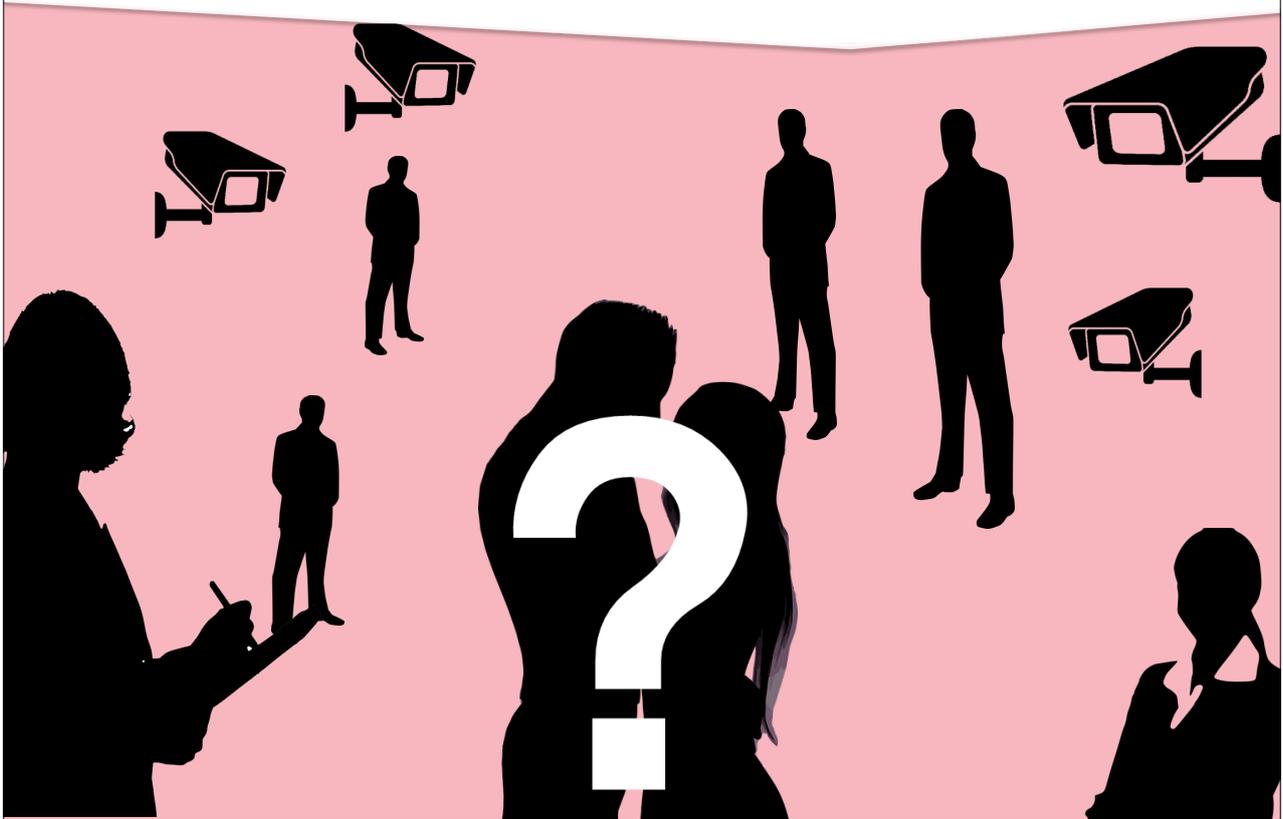
모 명문대학교 인턴사건



사귀거나 나가거나 의심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예민해야 관참은 법조인의 삶



예민해야 괜찮은 법조인의 삶

"무혐의" 박유천 "공인으로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됐다"

2017-03-16 09:30:33

ENTERTAINMENT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모든 혐의를 벗고 본격적으로 활동할까?

박유천 측이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유천의 소속사인 씨제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부 3월 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4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건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했다. 또한 검찰 등으로 구속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 1. 17. 고소인 등 3인에 대하여 공판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하여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고소 수사에 뒤늦게의 결정이다. 박유천은 2017년 1월 17일 고소사건에 불구속 처분을 받고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했다. 박유천은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했다. 박유천은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했다. 박유천은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했다.

'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송고시간 | 2017/07/05 02:58

NEWS

백성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판결...재판부 "증거 입증 부족"



박유천, 박 씨에게 고명 (서울중앙지법) 1심판 무죄 기각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지난해 8월 30일 오후 남포동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된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부 2017. 6. 30. 19180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아란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소된 박유천은 2017년 1월 17일 고소사건에 불구속 처분을 받고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했다. 박유천은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했다. 박유천은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했다.

에필로그, 그리고 Q&A

예민해도 괜찮아,
물어봐도 괜찮아!



이은의 법률사무소

T. 02.597.0343 / E. ppjasmie@nate.com

인권

경찰, 그리고 검찰 개혁,
왜? 어떻게?

오창익(광운대학교 외래교수)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 NGO 지원센터

경찰, 그리고 검찰 개혁, 왜? 어떻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吳昌翼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무국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역임
- **인권연대** 사무국장(1999년 -)
- <경향신문> "오창익의 인권수첩" 연재
- **경찰**혁신위원회 위원(2003-2005년), **검.경**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2004년-2005년)/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2005년- 2008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교정정책기획단 위원/ **국방부** 군인권자문위원회 위원/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오창익 저서

- 저서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 저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
- 공저 <간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청소년 인권학교>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 기획 <경찰개혁론> <리영희 프리즘>
<기억하라, 연대하라 - 강우일 주교에게 듣는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인권연대

경찰 기초 이해

 인권연대

법률 근거

- <경찰법>은 ‘경찰조직법’ 업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법> 제1조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근거

- <경직법> 제1조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 <경직법> 제1조 ②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률로 본 경찰

-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할 조직- 경찰청장 1인을 통해 대통령만이 통제, 전형적인 (지방자치 조직이 아닌)국가 조직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조직 - 권력에만 봉사하는 조직
-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조직 - 정권만을 위한 질서



법률로 본 경찰활동의 원칙

- 필요성의 원리- 꼭 필요한 만큼만
- 최소성의 원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 권한 남용 금지
- 헌법 수호의 원칙- 정권 안보가 아닌,
- 인권보호의 원칙 - 경찰의 존재 이유
- 경찰 만능주의 금지 - 요시나가 유스케



법률로 본 경찰활동의 원칙

- **경찰 그리고 검찰 만능주의 금지** - 요시나가 유스케(록히드사건 주임검사, 나중에 검사총장)
-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경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경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도랑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경찰조직

- **계급조직**
- **제복조직**
- **군대식 조직** - 중세 봉건영주의 깃발 문화
- **승진** - 모든 것을 얻거나, 또는 잃거나
- **上納문화** - 아래서 위를 모시는 문화

경찰조직

□ 계급조직

- 治安總監-治安正監-治安監-警務官-總警-警正-警監-警衛-警查-警長-巡警-首警-上警-一警-二警-行政官-主務官(경찰관만 11 계급)
- 治安總監-治安監-警務官-總警-警正-警監-警衛-警查-警長-巡警(1969년, 10계급)
- 治安理事官-治安副理事官-治安書記官(警務官)-總警-警監-警衛-警查-巡警(8계급)



경찰조직

- **최대규모 조직** -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만5천명 증원, 민선 자치(1995년) 이후 지방직 공무원은 전부 2만6천명 증원. 현재 13만명. 문재인 정권에선 2만명 증원 예정
- **엄청난 예산** - 10조 4429억원(2017년)/ 8조 2,994억원(2013년)/ 3조 7010억원(2003년)
- **그물망식 전국조직** - 252개의 경찰서, 516개의 지구대, 1,479개의 파출소



경찰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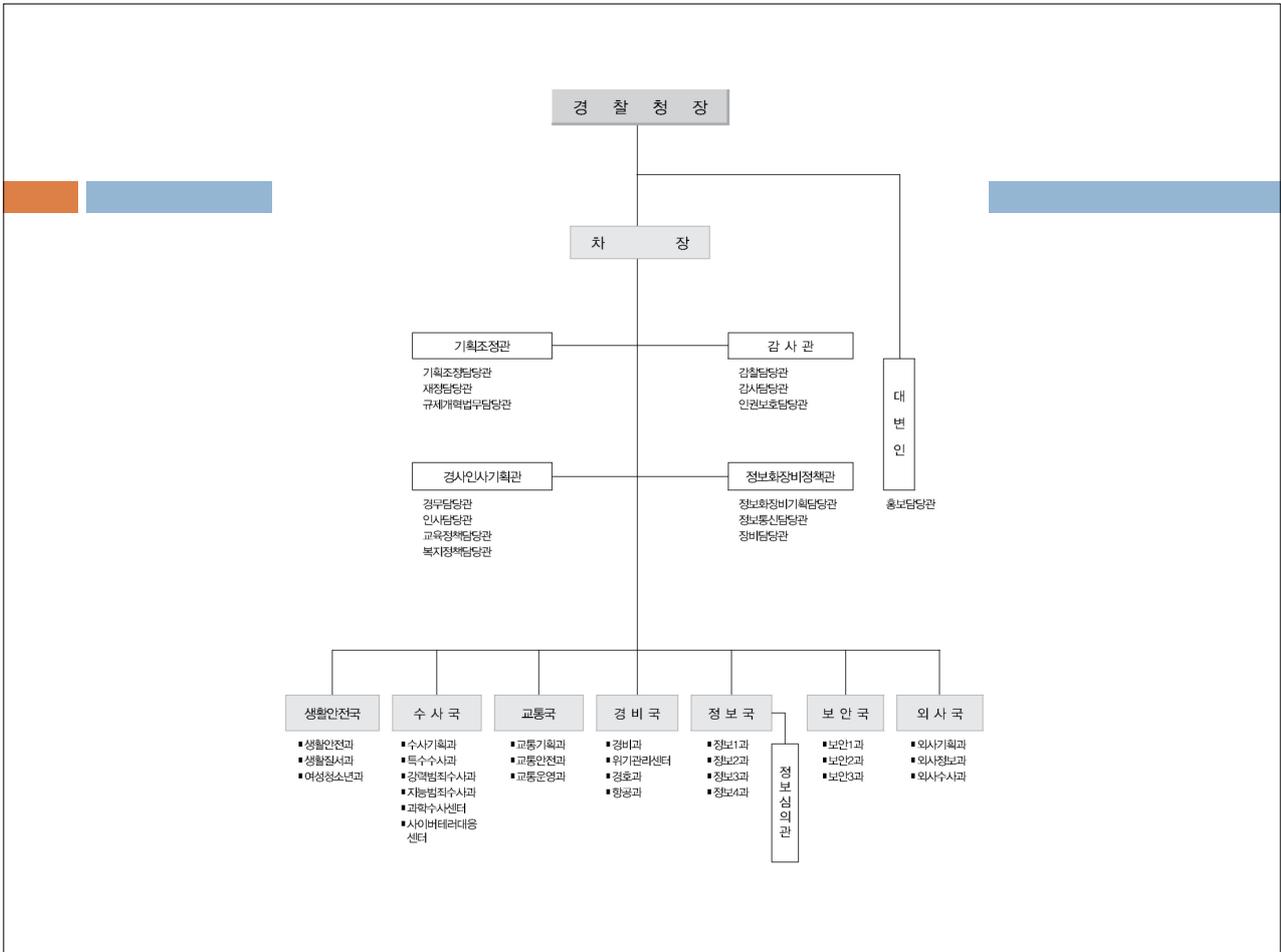
- **그들만의 조직** -
- 지구대 신설(3개섬의 파출소를 통합), 결국은 871개의 경감 보직 신설(2004년 기준)- 지금은 경정 계급
- 청문감사관 신설 - 결국, 250개의 경정 보직 신설/ 여성청소년과 신설
- 지방경찰청 신설 -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주요 보직 신설, 경무관 경찰서



경찰조직- 그들만의 조직

- **치안정감**: 1명에서 6명(1980년에서 현재)
- **치안감**: 3명에서 26명(1969년에서 현재)
- **경무관**: 29명에서 43명(1969년에서 현재)
- **총경**: 248명에서 484명(1969년에서 현재)
- **경정**: 227명에서 1947명(1969년에서 현재)
- **경감**: 855명에서 5548명(1969년에서 현재)





경찰 활동



경찰조직

- 전체 경찰관 105,357명
- 경무(3,250명) 정보화장비(1,359명) 생활안전(8,977명) 수사(18,542명) 교통(9,510명) 경비(10,794명) 정보(3,375명) 보안(1,812명) 외사(1,093명) 감사(1,549명) 홍보(166명) 지구대,파출소(44,461명) 기타(469명)



경찰조직

- 전체 경찰관 105,357명
- 경무(3,250명) 경비(10,794명) 정보(3,375명) 보안(1,812명) 감사(1,549명) 홍보(166명) 합: 20,946명(20%)
- 정보화장비(1,359명) 생활안전(8,977명) 수사(18,542명) 교통(9,510명) 외사(1,093명) 지구대,파출소(44,461명) 기타(469명)



국가 경찰

- 교육 등은 지방사무로 이관했는데, 유독 경찰만은...
- 국가경찰의 폐해 - 치안은 서울이 중심, 그중에서도 종로구, 청와대가 중심
- 지역 경찰은 홀대, 승진도 본청, 서울청만, 지역에서 승진하면 뉴스
- 유독, 서울중심주의가 강한 조직
- 제주식 자치경찰제 확대?



실제 사례



- 절도혐의자 검문 과정에서 과잉대응 논란에 대한 답변

□ 사건 개요

- ○ ' 15. 3. 23(월) 17:00경 1)피의자는 도난 오토바이 112신고 관련 검문을 하는 중부서 을지지구대 경위 양삼열 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 ○ 2)피의자는 경찰관이 1)피의자를 과잉체포를 한다며 경위 양삼열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3)피의자는 경찰관이 아버지 2)피의자를 체포하려 한다며 양손으로 양삼열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 진상 내용

- ○ ' 15. 3. 23(월) 16:46경 성동구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왕십리점 부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도난 사건의 112신고와 관련
- (내용) 남자 2명이 갑자기 와서 욕하면서 오토바이를 훔쳐갔다 / 한명은 본인 오토바이타고 또 한명은 신고자의 오토바이(파란색)타고 갔다 / 19살이라고 하였고 남색 니트 / 한 대는 왕십리 방향 / 신고자의 오토바이는 신당동 방향 / 신고자는 홈플러스 옆에 있다 ※ 도난 오토바이 관련 추가 무전 내용 : 앞.뒤 LED 등이 2개씩 장착, 앞 범퍼 일부가 깨짐

-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

- ○ 17:00:45경 장충파출소 경위 이상배는 별건 무면허 피의자를 경찰서로 호송 중 용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피의자 ○○○를 검문하며 무전으로 경력 지원을 요청하였고
- - 17:02:35경 을지지구대 소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은 지원 요청의 무전을 듣고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인수 받고 장충파출소 경위 이상배는 경찰서로 이동

-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

- ○ 17:04:59경 을지지구대 경위 양삼열은 인접서 도난 오토바이와 매우 흡사(파란색으로 앞·뒤 LED 등이 2개씩 장착, 앞 범퍼가 일부 깨져 있고 번호판 없으며 백미러가 부러져 있음)한 차량을 운행한 1)피의자 ○○○에게 5분가량 신분증 제시 요구 및 125CC 오토바이 소지 경위와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 - 1)피의자가 자신은 "도둑이 아니다" 라며 흥분, 경위 양삼열에게 "맞짱을 뜨자" 며 지갑을 바닥에 내던지고 상의를 벗어 던지고 복싱 대련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자 경위 양삼열이 수갑을 꺼내며 체포하겠다고 경고

-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

- 1) 피의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경장 이제영이 들고 있던 경찰장구 삼단봉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렸으며, (이후 이제영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이 누군가와 부딪쳐 바닥에 발사됨) 계속해서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1)피의자 검거를 지원 출동한 광희지구대 31호, 장충파출소 순찰차 근무자와 함께 미란다원칙을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 ○ 17:08:25경 옆에서 지켜보던 2)피의자 △△△는 "왜 어린 학생을 때리느냐, 경찰관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는 욕설하며 태블릿PC로 촬영하고, 경위 양삼열에게 달려들며 밀치는 등 검거를 방해하여 미란다원칙 고지 후 체포

- 서울 중부경찰서 답변 -

- ○ 17:08:40경 3)피의자 ▽▽▽는 자신의 아버지가 체포된다는 이유로 경위 양삼열과 경장 이제영에게 "야!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검거를 방해하여 역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 ○ 18:30경 오토바이 도난당한 피해자가 을지지구대에 방문하여 용의 오토바이 확인 결과, 자신의 오토바이와 매우 흡사하나 자세히 보니 도난당한 본인의 오토바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해 주었음.

□ **향후 조치**

- ○ 중부경찰서에서는 현재 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행위도 걱정했는지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 아울러 중부서에서는 누구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겠으며 시민 누구라도 제보가 있을 경우 수사와 조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은?

不審檢問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不審檢問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不審檢問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不審檢問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不審檢問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개혁 방안

- **경찰에 대한 전문적, 독립적 감시 기구 설립**(영국식 IPCC 독립경찰비리민원위원회)
- **자치경찰제 시행**
- **경찰관 노조 설립**
- **의경 폐지**
- **경찰대학교 폐지**
- **정보, 보안, 경비 기능 폐지, 대폭 축소**
- **민생, 지역 치안 위주로 기능 재편**

당부와 감사

- 경찰은 시민적,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치외법권적 존재이나, 그 나라 시민의 수준이, 곧 경찰의 수준
- 그래도 법으로 통제할 가능성은 남아 있음. 시민은 경찰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주권자이며, 경찰비용을 대는 납세자이며, 경찰서비스의 수혜자.
- 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관심이 경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검찰,
無所不爲의 권력



검찰의 권한

- 수사권
- 수사지휘권
- 수사개시권
- 수사종결권
- 영장청구권
- 기소권
- 공소유지권



검찰의 권한

- 공소 취소권
- 형집행권
- 법무부 장악
-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인권정책 등
총괄 - 탈검찰화 시동을 걸었지만...
- 정부기관, 자치단체 장악
- 국회와 기업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까지 안정적 영향력 행사



형사사법 - 검찰사법

- 수사 - 공소 - 판결 - 형집행
- 겉으로는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로 보이지만,
- 실제로는 검찰이 완벽하게 장악
- 수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소해도 공소 취소하면 재판 자체가 없어져, 중형 선고받아도 형집행정지면 바로 석방.



검찰이 누리는 호사

- 검찰총장은 장관급- 법무부 외청인데?
- 차관은 43명 - 그나마 좀 줄인다지만.
- 시작부터 3급 - 사법시험 합격한 경찰관은 시작부터 6급
- 근거 없는 관용차
-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 수사도 한번, 기소도 한번인데?
- 근거 없는 특수활동비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챙기는



검찰 개혁

-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 -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법전문 기관으로
- 검찰권에 대한 통제 - 일본식 검찰심사회, 미국식 기소대배심
- 검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 - 지검장 직선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걱정

- 경찰 파쇼 우려
- - 수사는 기소 없이는 의미없어. 기소 단계에서 검찰의 통제 받기에 큰 문제없어. 오히려 양 기관이 서로 경합하도록 해야 함. 아무리 경찰파쇼가 되어도 지금의 검찰보다는 훨씬 약한 기관
- 검찰이 특수수사는 잘하는데?
-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것. 검사들이 수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걱정

- 경찰 수준, 인권경찰 아님
- - 사또 재판을 할 수는 없어.
- 자질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분권.
- 시험 잘 봤다고 자질 있다고 여기는 태도는 문제.
- 지역의 수준이 낮으니 자치는 곤란하다는 태도와 비슷

 인권연대



인권연대

✓ 자유, 평등, 우애의 3대 혁명 정신에 따라, 이를 계승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순수 민간 인권단체**.

✓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는 **독립 인권단체**

✓ **인권연대**와도 **함께해주세요**.

✓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 (www.hrights.or.kr)을 **참고해주세요**.



헌법

헌법은 무엇인가?

김종서(배제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

헌법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김종서(배재대 공무원법학과)
kjsminju@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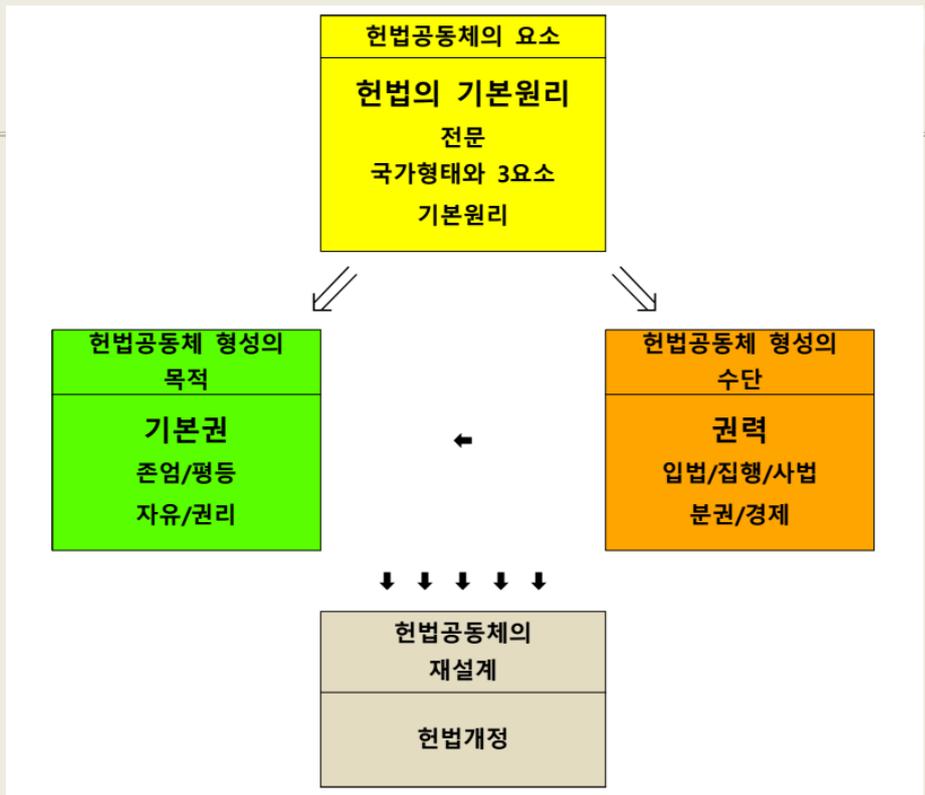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

- 시민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
 - ▣ 인권의 이해
 - ▣ 민주주의의 이해

But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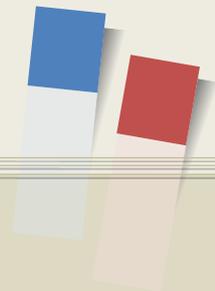
- 전문적 헌법교육(법집행자 교육 등)
 - ▣ 문명화된 국가질서 구현의 필수조건
 - ▣ (헌)법의 지배를 위한 최소 요건

But 각종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헌법 과목 누락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3



기본원리: 헌법공동체의 요소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헌법은 어떤 법인가?

-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
 - ▣ 전문, 민주공화국(민주주의+공화주의)
 - ▣ 국민주권, (국제)평화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 국가 조직규범
 - ▣ 조직규범, 수권규범, 통제규범
 - ▣ 권력분립, 분권, 경제민주화
- 기본권 보장 규범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과 보장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6



헌법 전문(前文)

- 헌법 제정과 개정의 주체, 역사와 방법
 - ▣ 대한국민은
 - ▣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 ▣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 헌법의 이념과 사명
 - ▣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 ▣ 4.19 민주이념의 계승
 - ▣ 평화적 통일과 민주개혁의 사명
- 실천과제
 -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7



민주공화국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공화국: 권력분립을 조직원리로 하는 국가형태
 - ▣ 민주주의: 다수 인민의 지배(참여+통제+책임)
 - ▣ 공화주의: 개인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러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결정함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8



민주공화국의 전제: 국민주권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근대 시민혁명
 - ▣ 절대군주제의 전복과 공화제의 수립
 - ▣ 자본주의체제의 정립
- 주권의 소재 변경(군주→국민): 혁명의 정당화(합법화) 이론
- 혁명 주역(부르주아+하층계급) 간의 체제구상 대립
 - ▣ 국민주권이론과 인민주권이론의 등장
- 파리코뮌의 패배와 국민주권의 공고화
 - ▣ 사회주의혁명과 인민주권이론의 부활 but 실패?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국민주권의 이론구조

- 주권자=국민
 - ▣ 이념적으로 통일된 전체로서의 국민(≠유권자) : **관념**
- 주권행사자로서의 대표
 - ▣ 직접민주제의 배제
 - ▣ 간접민주제(대의제)
- 선거에 의한 대표의 구성
 - ▣ 우연성의 최소화: 추첨, 연령 등 방식의 배제
 - ▣ 제한선거
- 대표와 유권자의 관계
 - ▣ 무기속 위임 원칙: 유권자는 주권자(=국민)가 아님
- ❖ **문제점과 과제: 주권보유자와 주권행사자의 불일치, 대표의 권력남용 문제**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법치주의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권력의 통제 원리: 법치주의

- 법의 지배 ⇔ 인(人)의 지배 or 힘의 지배
 - ▣ **국가권력** 발동의 근거 + 절차 + 방식 + 한계 = 법(률)
 - ▣ 예측가능성과 신뢰의 확보
- 법률의 지배 ▶▶ (헌법과) 법률의 지배
- 목적: 기본적 인권의 보장
- 전제: 성문헌법주의 + 권력분립제
- 법치주의의 변질: '준법주의', 그리고 '법과 원칙' 담론
 - ▣ 국가의 법률 기속 원칙 → 개인의 법률 준수 의무?
 - ▣ 법과 원칙의 충돌: 이명박, 박근혜의 법과 원칙



사회국가 원리

- ❑ 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31-36조: 사회적 기본권(교육, 근로,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혼인과 보건)



사회국가 원리

- ❑ 개념: 국가가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리
- ❑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 헌법의 3면경
 -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의 통치형태적 실현수단
 - 법치주의: 자유와 평등의 국가기능적 실현수단
 - 사회국가: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사회구조 추구
- ❑ 국가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 ❑ 국가의 급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개개인의 권리
- ❑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사회체계
- ❑ 국가와 사회의 분리 지양 → 국가와 사회의 결합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1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

- 등장배경: 전투적 민주주의론
-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배경
 - 1949년 독일기본법: 극우(파시즘)와 극좌(공산주의)의 배제 논리
 - 1972년 유신헌법: 반정부세력의 배제 논리
- 현행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보안법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16



평화주의와 통일

-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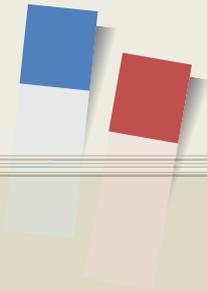


평화주의, 평화통일

- 분단국 헌법의 특징: 현실과 과제
- 세계 속의 한국: 지정학적 특수성의 인정
-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 보편과 특수성의 통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
 - 영토조항
 - 국가보안법과 반국가단체
 - 평화통일
-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 인정 → 부정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18



권력구조: 헌법공동체 형성의 수단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민주공화국의 조직원리: 권력분립

- 국민주권론의 한계: 대표의 권력남용 제어
- 권력의 분할과 분산 (Separation of Powers)
 - ▶▶ 견제와 균형(Cheks & Balances)
- 권력에 대한 불신 + 이론에 대한 낙관
- 권력분립 원리의 현실
 - 집행부 강화현상의 일반화
 - 정당을 통한 권력 통합
 - 현대적 독재의 출현: 군사독재, 개발독재
 - 사법국가화 경향: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행정부 and/or 사법부 강화 ⇔ 입법부의 약화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권력분립 원리의 이면

□ 권력 간의 자율적 상호방임

- 권력 간의 상호 존중
- 견제와 균형의 미작동
- 권력분립을 내세운 권력분립의 부정

□ 권력의 일체화

- 인권의 관점: 입법 집행 사법은 하나의 국가권력
- '국가권력 ↔ 국민권력'의 분립이라는 시각의 필요성
- 국민에 의한 참여와 통제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헌법상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미국식 대통령제의 원형

-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대통령=국가대표+행정부수반
- 집행부=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직선제
- 엄격한 권력분립: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무책임

□ 대통령중심제의 현실: 권력분립의 약화, 기울어진 운동장

-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 입법부(의원)와 집행부(장관)의 겸직 허용
- 제왕적 대법원장, 대권적 헌법재판소

□ 장점: 강력한 집행부, 의회다수파의 횡포 견제

□ 단점: 독재의 위험성, 의회와 집행부 대립시 국정중단

□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담론의 허와 실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정부형태 논의의 함정과 교훈

- 어떤 정부형태도 절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는 않음
- 정부형태의 채택이 곧 정부=국가의 성공을 가져오지는 못함
-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함
 - 민주적 정당제도
 - 합리적 선거제도
 - 언론의 자유
 -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
- 어떤 정부형태 하에서도 주권자의 최종적 심판 가능성이 필요함.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입법권: 국회

- 구성
 - 지역구의원과 전국구비례대표의원(253:47)
 - 의원 정수(1948년 인구 1918만, 유권자 784만명, 의원 200명)
 - 미국, 일본, 멕시코 ↔ 독일, 터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 권한
 - 입법권: 법률 제정, 조약 동의, 예산심의
 - 헌법기관구성권: 선출, 동의, 견제
 - 국정통제권: 탄핵소추, 해임건의, 국정감사
- 특권
 -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집행권: 정부(대통령)

- 구성
 - ▣ 직선제
 - ▣ 5년 단임제
- 권한
 -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대체입법), 계엄선포, 국민투표
 - ▣ 헌법기관구성권
 - ▣ 공무원임면 및 국군통수권
 - ▣ 권한행사원칙: 문서주의, 부서, 국무회의 심의↔독임제(獨任制)
- 특권
 - ▣ 재직 중 형사불소추
 - ▣ 전직대통령 예우(연금, 경호경비, 의료, 교통통신, 사무실, 비서관)
 - ▣ 1969 제정, 1981확대, 1995 예우정지 및 예외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사법권: 법원

- 구성
 - ▣ 대법원장: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6년 임기
 - ▣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국회동의+대통령 임명
 - ▣ 일반법관: 대법관회의 동의+대법원장 임명
 - ▶▶ **제왕적 대법원장??**
-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사법
 - ▣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
 - ▣ 양심에 따른 재판
 - ▣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 배심재판, 전문법원(노동법원 등)의 가능성
- 군사법원(군사재판)은 과연 필요한가?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사법권: 헌법재판소

□ 구성

- 9인, 임기 6년, 연임 가능
- **법관자격자** 중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 권한: 사법권? 입법권? 최고기관?

- 위헌법률심판: 법률의 무효화
- 탄핵심판: 고위공직자의 파면
-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소멸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심판
- 헌법소원심판: 모든 권력의 상위권력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지방분권

- 헌법상 지방자치는 필수, but 헌법직접적 요청은 지방의회의 존재뿐.
-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범위
 - 자치입법: 법령의 범위 내.
 - 자치단체장 선임: 선거, 임명, 기타
 - 조직과 운영: 자치조직권, 자율운영권
- 지방정부 없는 분권이 가능한가?
- 왜 지역이 아니고 지방인가?
- 현 체제하의 분권: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자치행정
- 자치입법, 자치사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은 헌법개정이 필요함.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28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위기
 - ▣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 격화로 인한 저항
 - ▣ 러시아혁명 이후 체제위기
- 자본주의 진영의 대응
 - ▣ 국내적 위기의 체제내 수렴과 이를 통한 대외적 방어
 - ▣ 소유의 제한, 시장경제(사적 자치) 원리의 수정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
 - ▣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부정
 - ▣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 전면적 국가계획경제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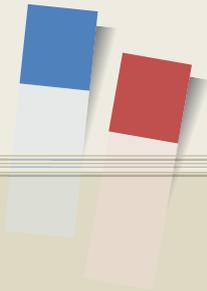


경제민주화

- 87년의 헌법개정시 삽입된 새로운 내용(김종인 표?).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경제권력도?
- 경제현상의 민주화, 곧 경제현상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 강화.
- 경제 분야에도 ‘1원 1표’가 아닌 ‘1인1표’ 원칙의 적용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 ▣ 정부 > 기업 (규제 완화 → 규제민주화)
 - ▣ 기업 > 소비자
 - ▣ 자본가 > 노동자 (공동결정제도? CEO 선출제도?)
 - ▣ 대기업(재벌부문) > 중소기업 (재벌해체론? 재벌이용론?)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30



기본권: 헌법공동체 형성의 목적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기본적 인권 관련 헌법 조문 개관

- 헌법 제10조-37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인권과 기본권

□ 인권과 기본권

- 인권: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 기본권: 인권 가운데 한 국가의 헌법이 특별한 보호 의지를 천명하여 목록화해 놓은 권리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제10조)

⇒ 인권의 전(前)국가적 전(前)헌법적 성격



인권의 발전사(1) - 소유권과 평등

□ 소유권과 인신(人身)의 자유

- 소유권(재산권): 근대 부르주아 혁명의 직접적 목적
- 인신의 자유: 봉건영주로부터 노동력의 해방

□ 거주이전의 자유: 농민의 도시 유입과 노동자화

□ 법 앞의 평등과 자본주의 체제

- 계약자유 원칙의 전제로서 당사자간의 대등성
- 상품소유자로서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등성
-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은폐함



인권의 발전사(2) – 정신적 자유

- 정신적 자유
 - ▣ 사상/양심/종교
 - ▣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
 - ▣ 집회/결사의 자유
- 반대의 자유
 - ▣ 지배적인 사상, 체제, 가치, 질서에 대한 **반대의 자유** = 체제에 대한 위협
 - ▣ 지배권력으로부터의 억압 가능성 상존: 보호 필요성
- 체제 안정 이후에 보장되는 권리
 - ▣ 체제 안정화 장치: 교육, 언론, 종교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35



인권의 발전사(3)-사회권

- 사회권 등장의 의의
 - ▣ 국가의 간섭 배제에서 국가의 개입 요구로!
 - ▣ 소극국가에서 적극국가로!
 - ▣ 계약 자유(사적 자치) 원칙의 수정(근로기준법?)
- 사회권의 유형과 성격
 - ▣ 교육(경제생활을 위한 최저한의 지식 습득)
 - ▣ 근로(일자리 획득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무)
 - ▣ 노동3권(노사관계를 지배하는 사적 자치의 수정)
 - ▣ 사회보장(노동력 상실 후의 생활 보장)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36



인권의 발전사(4)-참정권

- 근대혁명 후 제한선거: 연령+성별+재산 / 프랑스 인구의 3%만 선거권자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 정치운동의 결합
 - ▣ 노동조합운동의 한계 - 정치적 조건
 - ▣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보장의 전제는 노동자의 선거권(차티스트 운동)
- 국가별 보통선거 실시 시점
- 뉴질랜드(1889, **1893**), 독일(1867, 1919), 미국(1856, 1920), 영국(1918, 1928), 프랑스(**1848**, 1944), 일본(1925, 1947), 스위스(**1848**, 1971)
- 영국(1832 중산층남성→1867 도시노동자→1884 농민→1918 남성→1928 여성)
- 한국: 1948년 21세, 1960년 20세, 2005년 19세, 18세는 ???
- **OECD 34개국 중 유일한 19세, 전세계 239개국 중 20개국내에 포함됨.**
<http://aceproject.org/epic-en>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37



인권의 발전사(5)-현대적 인권

- 제3세대 인권
 - 환경권, 발전권, 주거권, 건강권 등
 - 자연과 인간의 조화: 동물권 등
 - 과학기술의 발전: 인터넷접근권
- 인권의 발전사: 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역사
- 헌법 전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 **후손들을 위한 실천 과제의 명령**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38



한국 헌법과 인권(1)

□ 역대 헌법의 주요한 변화들

헌법	인권 관련 주요 내용
1948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 경제상 자유의 한계 명시
1960 (3차)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검열 및 허가 금지, 개별적 법률유보의 삭제, 위헌정당해산제도 도입
1962 (5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공무원의 노동 ³ 권 제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폐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972 (7차)	신체의 자유 축소, 검열금지 삭제,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 제한, 국가안전보장 명시, 국영기업체 종사자 등 단체행동권 금지
1980 (8차)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 행복추구권 , 사생활의 비밀 불가침, 환경권, 방위산업체종사자 단체행동권 금지
1987 (9차)	적법절차의 원칙, 검열 금지 부활, 선거연령규정의 법률 위임 , 최저임금제 시행



한국 헌법과 인권(2)

- 기본권의 압축적 수용
 -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 도입
 - 최초헌법부터 보통선거의 실시(21세)
- 기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재 또는 부족
- 분단과 전쟁: 국가안보 논리가 인권 논리를 압도함
- 지속적인 보호 신장의 확대가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 수준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함.
 - 1차 후퇴: 1961 군사쿠데타
 - 2차 후퇴: 1972 유신체제
 - 3차 후퇴: 1980 신군부 내란
 - 4차 후퇴: 1990 3당합당
 - 5차 후퇴: 1997 외환위기
 - 6차 후퇴: 2008 방송 장악, 민간인 사찰, 선거 부정
 - 7차 후퇴: 2013 국정농단, 국가의 사유화, 탄핵



한국 헌법과 인권(3)

- ❑ 차별 사유의 보편성 결여
- ❑ 자유권의 과도한 강조
- ❑ 사회권의 형식화: 보호의무 ⇒ 노력의무
- ❑ 기본권 규정의 순서: 사회권의 추상화?
 - 1948-1960
자유-사회-청구-참정(국가배상)
 - 1962-현재
자유-참정-청구(국가배상)-사회



개별적 기본권의 목록

자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과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10) ❑ 법 앞의 평등(11) ❑ 신체의 자유(12,13) ❑ 거주/이전의 자유(14) ❑ 직업선택의 자유(15) ❑ 주거의 자유(16)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 ❑ 통신의 비밀(18) ❑ 양심의 자유(19) ❑ 종교의 자유(20)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23) ❑ 선거권(24) ❑ 공무담임권(25) ❑ 청원권(26) ❑ 형사보상청구권(28) ❑ 국가배상청구권(29) ❑ 범죄피해구조청구권(30) ❑ 재판받을 권리(27) ❑ 교육을 받을 권리(31) ❑ 근로의 권리(32)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 ❑ 환경권(35) / 혼인과 보건권(36)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 전제: 차이의 인정
 - '똑같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다수'의 공존
- 집단과 무관한 개인 자체의 존엄
- 평등의 부정=차별은 곧 존엄의 부정
- 존엄의 부정은 비인간화(Homo Sacer)의 승인
- 존엄과 평등은 민주공화국의 최소조건
 - 그것이 없이는 '민주'(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지배)도 '공화'(공동선의 추구)도 불가능함.
- 과제: 수많은 비인간화, 차별의 극복
 - 장애, 나이, 용모,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규범과 현실: 자유

규범

현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과 평등 □ 신체의 자유(12,13)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 □ 통신의 비밀(18) □ 양심의 자유(19) □ 종교의 자유(20) □ 언론/출판의 자유(21) □ 집회/결사의 자유(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차별 □ 불명확한 법률(미네르바 사건)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 감청/긴급감청 □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 사립학교 종교교육의 의무이수 □ 영화등급분류제(제한상영가) □ 인터넷실명제 □ 사전신고와 금지통고(집시법) |
|--|---|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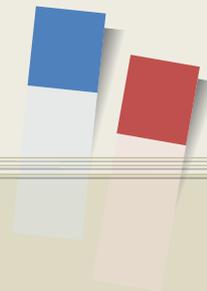
규범과 현실: 권리

규범

현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24) ❑ 공무담임권(25) ❑ 청원권(26) ❑ 재판을 받을 권리(27) ❑ 국가배상청구권(29) ❑ 교육을 받을 권리(31) ❑ 근로의 권리(32)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 ❑ 환경권 (35) ❑ 혼인과 보건권(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연령 문제 ❑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한 ❑ 구두 청원의 배제 ❑ 배심재판 배제와 군사재판 ❑ 군인 등 이중배상 금지 ❑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문제 ❑ 일자리, 최저임금과 적정임금 ❑ 단체행동권 행사의 부정 또는 제한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세월호사건 ❑ 핵발전과 폐기물 ❑ 성소수자와 AIDS 환자 |
|---|---|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헌법개정: 헌법공동체의 재설계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헌법개정절차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 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재설계: 헌법개정

□ 87년 헌법의 한계 극복: 유신헌법의 잔재 청산

- 헌법개정 발의권의 정상화: 국민과 국회
- 군인·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 노동3권 제한(공무원, 주요방위산업체근로자)
- 탄핵소추 발의·의결 요건 강화 및 대통령 정족수 가중
- 국회 정기회의 회기일수 제한
-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에 있어서 선거제 및 법관추천 회의제도 배제
- 전직대통령 예우



민주공화국의 재설계: 헌법개정

- 권력구조의 재설계
 - ▣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조화
 - ▣ 중앙과 지방 권력의 조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자치입법 및 자치조직-자치경찰 포함-은 필수)
 - ▣ 선거 및 정당 제도의 정비: 18세 선거권, 비례대표 전면화, 설립요건 완화
- 국가기관의 민주화
 - ▣ 권력분립의 명확화: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폐지, 의원/장관의 겸직금지
 - ▣ 견제 균형의 실질화: 국회의 국무위원 임명 동의권, 무기명투표 폐지
 - ▣ 사법의 민주화: 배심재판제도, 대법원 구성 민주화, 군사법원 폐지
- 기본적인권의 최대 보장
 - ▣ 보편적 국제인권기준의 수용: 주요 인권조약의 비준(ILO협약 등)
 - ▣ 기본권의 국제조약 연동: 프랑스, 캐나다 등
 - ▣ 자유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화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49



지금 개헌이 필요한가 또 가능한가?

- 주체별 주요 쟁점
 - ▣ 개헌특위: 권력구조 문제에 초점
 - ▣ 대통령: 헌법전문 과 분권
 - ▣ 촛불시민: 직접민주제와 선거연령 인하
- 최대개헌인가 최소개헌인가?
- 당면과제
 - ▣ 개헌으로 단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 ▣ 2018년 개헌이 불가피하다면, 그리고 단 하나만 할 수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

대전충남인권연대 헌법강좌(2017.11.16)

50



Q & A



감사합니다

【특집】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

김중서

배재대학교, 헌법

kjsminju@gmail.com

<국문초록>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이다. 녁 달 가까이 촛불을 든 천만 이상의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박근혜의 탄핵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거의 4개월간의 촛불시위를 통하여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박근혜(정권)의 퇴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현 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국가의 설계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의 변경, 아니면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유신헌법과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은 현 체제의 청산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국가의 설계를 이야기하는 이상 그것에만 머물 수는 없다. 과거의 청산과 현재의 진단 그리고 미래의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한 촛불은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결코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정치인이나 법률가의 상상보다 민중의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 민중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헌법,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설계를 위하여 다시금 광장으로, 촛불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촛불시민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강렬하게 광장에 모여서 외쳤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2008년 이후 늘 광장에서 불렀던 노

* 심사위원: 오동석, 송기춘, 한상희

투고일: 2017.2.8. 심사개시: 2017.2.9. 게재확정: 2017.2.21.

** 이 글은 (사)공공/마을활동가포럼/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5주에 걸쳐 공동 주최한 <2017년 시민포럼: 헌법, 어떻게 바꿀까?>(2017.1.25.-2.22)에서 첫 번째 순서(1.25)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래가 말해준다. 말하자면 우리 촛불시민이 원했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국가인 동시에 공화국이 되고 그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주권 회복이고 주권 회수이며 대의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촛불시민들이 광장에서 요구했던 것은 1)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2) 직접민주제를 전제로 한 대의민주제의 정상화, 3) 권력분립과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치 구조의 수립, 4)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 노동 중심 경제체제로의 재편, 그리고 5) 이를 통하여 기본적 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작업은 결코 여야 정치세력에게 맡겨질 수 없다. 그 순간 촛불은 실패한 혁명이 되고 말 것이다. 필요한 것은 광장의 촛불을 체계화된 민회로 조직해내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헌법적 및 입법적 요구들로 체계화하여 정치권력에 강제하는 것이다.

주제어: 촛불시위, 민주공화국, 직접민주주의, 87년 체제, 헌법 제정, 민회

< 차례 >

- I. 촛불항쟁이 던진 과제
- II.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
- III.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가?
- IV.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 V. 어떻게 할 것인가?

I. 촛불항쟁이 던진 과제

2016년 12월 3일 전국에서 모인 232만에 달하는 촛불시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던 여야의원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고, 마침내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이끌어냈다. 그것도 234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당일 저녁부터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정지되었고 국무총리 황교안의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되었다. 12월 20일 특

검은 수사를 개시하였고 곧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죽을죄를 졌다던 최순실과 3번의 대국민담화를 했던 박근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우려했던 대로 황교안은 권한대행을 넘어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야3당은 탄핵소추 후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직무정지 직전까지 박근혜가 강행했던 일련의 움직임들을 전혀 되돌려놓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 철회도, 국정교과서 폐기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도 전혀 진전이 없고, 국정조사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갈팡질팡 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시민들은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에게는 즉각 퇴진을,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하며 야3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 촛불시위 참여자가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인원 1000만 명을 넘었으며, 해가 바뀐 후에도 여전히 수십만이 매주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 와중에 개헌 논의도 이루어지고 여야를 분분하고 잠재적 대선후보들도 나름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목소리와 같지 않음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강력한 압력으로 탄핵소추의결을 이끌어낸 후에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촛불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제는 좀 더 정교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가 3월 중순까지는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촛불의 함성은 분명히 박근혜의 퇴진과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결정의 시기나 조기 대선의 전망과 관계없이 촛불시민의 요청을 모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도 4.19와 부마항쟁, 5.18 광주민중항쟁과 6월 항쟁을 통하여 반민주적 권력에 항거하여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한 싸움의 결실을 고스란히 구시대 정치인들에게 탈취 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국민들의 싸움으로 얻은 승리의 과실을 낚은 정치세력들에게

약탈당했던 것은 항쟁의 주체들이 새로운 체제의 수립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약간의 헌법 개정을 얻어내긴 했으나 새로운 헌법에 우리의 뜻과 희망과 의지를 담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¹⁾ 이런 일을 또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번 국면은 어찌면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공화국을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에 촛불시민들의 후보를 직접 내세워 당선시키기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야권의 유력 후보들이 광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전과 설계가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전단계로서 87년 체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II.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

87년 6월 항쟁의 핵심적인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였고 그것은 쟁취되었다. 직선제 요구는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요청과 결합되면서 5년 단임제의 직선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아울러 초헌법적인 대통령의 권한들이 삭제되고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됨과 동시에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의 독립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권력분립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국가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직접 다룰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가 현실화되고 이를 담당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 측면의 변화와 함께 기본권 영역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이 금지되고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절차적 규정이 보강되었으며 일정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노동 3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선언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명시되기에 이르렀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있는 절차가

1)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직접정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대전 4차시국토론회, 2017.1.13.), 1쪽.

마련되었다.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의 원리를 경제영역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천명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측면들은 한편으로는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과거 헌법들에 비하여 87년 헌법이 담고 있는 일정한 진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87년 체제의 상징인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과 군사독재의 잔재조차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국민의 권리 보장은 매우 불완전한데 반하여 권력자의 자의를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권력분립이 엄연히 선언되고 있지만 어떤 권력도 다른 권력의 남용을 막아 내지 못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는 이를 웅변한다. 권력남용을 막아야 할 상황에서도 견제를 통한 균형 원리는 작동하지 않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 결과 우리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웅변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87년 체제의 한계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만 가시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가깝게는 4대강사업에서 유사한 예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헌법이 규정한 어떤 국가기관도, 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주권’ 국민도, 국토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4대강사업을 막아내지 못했다. 엄청난 환경 파괴와 생태계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물론 누구에게도 어떤 책임 하나 묻지 못했다. 국정원과 군대, 온갖 정부기구까지 나서서 선거부정을 저질러도 선관위를 비롯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선출되지 않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의회주의를 유린해도(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²⁾),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이른바 해석 입법, 해석개헌까지 감행하는데도(경영권을 거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판결³⁾)이나 통상임금에 관한 기상천외의 전원합의체 판결⁴⁾) 우리에게는 이

2)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3)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

를 바로 잡을 수단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바다 속에 잠기는데도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조에 나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그것을 방치하고 나아가 구조를 방해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고스란히 생방송으로 지켜봐야 했다. 세월호와 그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헌법 위반의 법률이 수다하게 만들어지고 대통령과 집행부는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위반하거나 무시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헌 위법의 권력행사를 교정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위헌 위법의 권력행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오히려 권력과 자본에 장악되어 있고 SNS는 철저히 감시·조작·고립·왜곡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너무나 강력한 물리적 앞에서 유린되어 왔다.⁵⁾ 요컨대, 87년 헌법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87년 체제의 한계는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이 아무리 심각하게 자행되어도 국민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법적 장치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1000만 이상의 국민이 촛불을 들어도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없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움직이지 않는 한 탄핵소추조차 할 수 없으며, 겨우 국회를 움직여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또 다시 9명 법복귀족들의 결정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 정확히 87년 체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오늘까지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은 바로 그런 시스템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 수 없으며 그런 헌법을, 그런 체제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촛불을 통해 선언하였

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

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는 고영남,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당이득”, 민주법학 제54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3), 99-139쪽 참조.

5) 법원은 청와대 앞의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의 집행을 정지하여 행진을 가능케 하면서도 스스로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 없는 제한을 가했고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집회규제권을 경찰 대신 법원이 행사하고 있을 뿐 집회의 자유에는 여전히 제갈이 물려져 있다. 같은 취지로 오창익,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한 헌정질서”, 경향신문, 2016.11.9.

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의 밑그림이 될 새 헌법을 만들고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그려준 그림에 찬성과 반대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리의 요구를 내놓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우리의 헌법안을 형성 확정해 내고자 한다. 우리는 구 헌법, 즉 87년 헌법과 87년 체제의 ‘개정’(revision)이나 ‘수정’(amendment)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환골탈태한 민주공화국 체제를 구축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새롭게 2017년 헌법을 ‘제정’(building)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2년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27년 군사정권, 그리고 30년간의 87년 헌법 운용을 통하여, 느슨한 헌법을 만들어놓고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시에서 농촌에서 공동체는 망가졌으며 지성의 전당이라던 대학은 국가와 자본의 인력생산기지로 전락했고 시민사회조차 70년 전을 방불케 하는 이념대립과 너무나도 참혹한 성 대립, 세대 대립으로 쪼개졌다. 돈의 지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변의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무한경쟁이 크고 작은 모든 생활현장에서 일상이 되어갔다. 많은 국민들, 특히 아이들이 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OECD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3포 5포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혼인이나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헬 조선이 되어버린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돈도 힘도 없는 우리는 헬 조선이 된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안다. 이걸 아니라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또 살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100을 바꾸기 위해서 일어선다면 10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

에겐 희망도 미래도 내일도 남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반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⁶⁾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고 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헌법 전문)하기 위한 싸움을 이제는 피할 수 없다.

Ⅲ.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가?

이처럼 현 체제에 대한 절망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은, 녁 달 가까이 지속된 촛불집회에서 개인과 단체들에 의하여 수많은 구호와 의제들로 제시되었다. 그 중 어떤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고 어떤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헌법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법률이나 정책의 수준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들도 있다. 이들 구호를 잘 정리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청산 대상과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유신체제의 청산이다.

1. 유신과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

87년 헌법이 시민들의 항쟁에 의하여 쟁취된 것이니 유신이나 군사독재의 잔재는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절묘한 동거라고도 볼 수 있는 1948년 헌법과 장기집권과 독재에 대한 1차 항거로 성립되었던 60년 헌법의 많은 성과들이 그 후의 군사정권 헌법에 의하여 부정되고 무력화되었지만, 87년 헌법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⁷⁾ 따라서 87년 헌

6) 구갑우, “시민혁명이 약탈당하지 않으려면”, 경향신문, 2016.12.4.

7) 서경석은 1987년 헌법은 민주화주체와 헌법정립의 주체가 극적으로 분리되고 단절됨으로써 ‘지체된 민주주의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한계를 밝

법에 여전히 파리를 틀고 있는 군사독재와 유신헌법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1단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것만 성취하더라도 많은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1.1. 국민의 헌법개정안 발의권 부정

사실 우리의 역대 헌법은 선거를 제외하고는 국가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에 대한 헌법의 태도이다. 특히 유신헌법은 5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부여되었던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부정하였다.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민항쟁에 의하여 성립한 1987년 헌법에서도 최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에 관한 한 유신헌법의 태도가 고스란히 답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현행 헌법의 한계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⁹⁾

그러므로 국민의 발의권은 되찾고, 대통령의 발의권은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의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1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모든 국가의제가 휩쓸려 들어가는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창안해냈던 미국이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안발의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¹⁰⁾ 최소한 이 정도

힌 바 있다. 서경석,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민주법학 제31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63-66쪽.

8) 또한 1948년 헌법 이후 6차개정헌법(1969)까지 모든 헌법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게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오로지 지배권력(재적과반수)만의 권한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반하여 5, 6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유신헌법에 의하여 복원되었다. 결국 국민과 국회 소수파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인정하는 반면 대통령의 발의권을 부정했던 헌법의 태도가 현재와 같이 변경된 것은 모두 유신헌법에 의해서였다.

9) 김종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저스티스 통권 146-3호(한국법학원, 2015.2), 312쪽.

10) 미국 연방헌법 제5조에 따르면 연방의회 양원 의원의 3분의 2가 분 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또는 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요청이

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야 헌법 개정이 ‘절차적으로’나마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¹¹⁾

1.2. 군인·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제29조 제2항)

이 조항은 1971년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선고받았던¹²⁾ 구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조항을 헌법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국가의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위헌으로 선언한 내용을 버젓이 헌법에 담아 버릴 정도로 파렴치한 법이 유신헌법이다. 그런데 87년 헌법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선고받은 문제의 단서 조항이 도입된 것은 1967년으로¹³⁾ 이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군 파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즉 1964년 9월 이동의과병원장병과 태권도교관 10명을 파병한 이후 비둘기부대 맹호부대 청룡부대 등을 베트남으로 보냈지만 그 파병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66년 2월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험프리 부통령의 지원부대증과 요청 이후였다.¹⁴⁾ 이에 따라 전사하거

있을 때에만 헌법개정안이 발의된다.

- 11) 국회 소수파의 발의권은 헌법개정발의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민 발의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2) 1971.6.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 13) 1967년에 개정된 구 국가배상법([시행 1967.4.3.] [법률 제1899호, 1967.3.3., 폐지제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중에서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자·영내·함정·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발생한 전사·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개정 이전의 국가배상법(법률 제231호, 1951.9.8., 제정)에는 밑줄친 부분이 없었다.
- 14) 베트남 파병 통계를 보면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장병 34만6천여명, 기술자 5만6천여명이었는데, 1965년까지는 장병 기술자를 합하여도 2만여명에 그쳤다. 그러던 것이 1966-1972년까지 장병은 적게는 연간 3만7천여명, 많게는 4만9천

나 부상당한 군인들의 숫자가 자연히 늘 수밖에 없었는데, 위 단서조항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많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고 위 대법원 위헌판결도 그런 사건에서 나온 것이었다.¹⁵⁾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 직후 서울지검을 통해 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작했고¹⁶⁾ 결국 유신헌법에 의해 도입된 법관 재임명제를 통하여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에 다수의견을 냈던 대법원 판사 9명 전원을 재임명에서 탈락시켰다.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군인들과 경찰관들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하기는커녕 위헌적인 법률을 근거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마저 가로막았던 군사정권의 잔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누가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며, 누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오는 핵심적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헌법 제29조 제2항이다. 평등의 원칙 위배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1.3. 노동기본권의 축소·제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노동기본권은 현저하게 축소·제한되어 왔다.

첫째,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제33조 제2항)은 그 첫 번째 사례다. 공무원인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명시한 최초의 예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5차개정헌법이며, 이러한 태도가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4차개정헌법(헌법 제5호. 1960.11.29. 일부개정)까지만 해도 노동 3권에 대해서는 “근

명 이상이 파견되었다. 1966-68년에는 기술자도 1만명 이상 파견되었다. 권혁철, “국제시장, 덕수는 왜 서독·베트남으로 가야만 했을까”, 미디어펜, 2015.1.21.자, <<http://www.mediapen.com/news/view/62339>>, 검색일: 2017.2.24.

15) 이상의 내용은 매일경제, “판례를 만드는 사람들 (20) 73년 국가배상법 위헌결정 파문”, 1993.10.4.자. 참조

16) 이것이 이른바 제1차 사법파동을 낳은 원인이 되었다.

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 노동조합법(법률 제280호, 1953.3.8., 제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5차개정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제29조 제2항). 요컨대, 현행 헌법의 태도는 군사정권의 유산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60년 헌법과 53년 노동조합법의 태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주요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부인·제한(제33조 제3항) 역시 유신헌법의 유산이다. 유신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부인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근로자를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했고 1980년 헌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를 더욱 확장하였다. 이에 비해 현행헌법은 ‘주요 방위사업체’ 종사 근로자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예도 어떤 사업장에 근무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는 유신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셋째,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폐지되었다. 1948년 헌법부터 4차개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규정되어 있던 매우 독특한 규정이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 규정(제18조)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된 이래 오늘날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¹⁷⁾ 물론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노동에 대한 헌법의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1.4. 탄핵소추 발의·의결 요건의 강화 및 차별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232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어야 했다.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요건에 관한 현행 헌법의 태도 역시 유신헌법이나 군사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현행 헌법 제65조처럼 탄핵소추의 발의·의결 요건을 정하면서 대통령과 다른 공직자를 구분하고 의결 요건을 현재와 같이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3선개헌이라 불리는 6차개정헌법(1969)부터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신헌법은 탄핵소추 발의 요건 자체를 종전에 비하여 크게 강화했다. 요약하자면,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 발의나 의결정족수가 가장 강화된 유신헌법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선개헌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대통령에 대한 가중의결정족수 조항 역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일개 국무위원이나 일개 법관의 독직을 탄핵 소추

17) 이 조항은 경제질서의 원칙을 정한 제84조(“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규정한 제87조(“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와 함께 1948년 헌법의 지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대통령에 대한 가중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남용을 막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도 탄핵소추는 하원의 단순 과반수로(미국연방헌법 제1조 제2항 제5호 및 제1조 제5항 제1호), 탄핵의결은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제1조 제3항 제6호) 대상자의 직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그 의결 요건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점을 인정하더라도 왜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고 보면 대통령과 탄핵 대상이 되는 기타 공직자의 유일한 차이는 대통령이 국민

하는 결의 같은 사소한 국내문제가 국제조약이나 선전포고와 같은 대 국 제문제보다도 더 높게 평가되어” 있는데, 이는 “언어도단이며 민주주의가 정말 방상대곡할 일”이고 “완전히 관존민비의 봉건적 사상의 발로가 되는 파쇼사상의 발동”이라고 한 조봉암이 보았다면, 땅을 치고 통탄했을 법 하다.¹⁹⁾

1.5. 국회 정기회의 회기일수 제한(제47조 제2항)

현행 헌법에서 정기회의 회기일수를 100일로 제한한 것은 유신헌법에서 정기회의 회기일수를 90일로, 그리고 대통령이 소집한 임시회를 제외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친 총회기일수를 150일로 제한했던 것(유신헌법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의 5차개정헌법이 정기회의 회기일수를 120일로 했던 것(제43조 제3항)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4차개정헌법까지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1.6.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법관추천회의의 추천 배제(제104조)

2차 개정헌법까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만을 얻도록 한 반면 4.19이후의 3,4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로 구성하였고,²⁰⁾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후

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점이다. 국민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만큼 타 공직자에 비하여 탄핵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19) 정태영/오유석/권대복 엮음, 죽산 조봉암 전집 제1권(세명서관, 1999), 78쪽; 박홍규, “1948년 헌법과 조봉암”, 민주법학 제41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 158쪽에서 재인용.

20) 선거인단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출되는 10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법관의 자격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는 예비선거에서 이를 선출하였다. 선거인단 중 50인은 재직 법관 중에서 선출하였다. 이상 제3차 개정헌법 제78조 및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법률 제604호, 1961.4.26., 제정) 참조.

의 5,6차 개정헌법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을 필수적 요소로 하고 있었다.²¹⁾ 그러나 유신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만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만을(국회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현행헌법은 대법원장은 유신헌법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에 대해서만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87년 헌법의 이러한 태도는 최고법원 구성에서 법원의 독립성을 현저히 약화시킨 것으로 유신헌법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선거에 의하였던 3,4차 개정헌법은 물론 5,6차개정헌법에 비해서도 현저히 후퇴한 것이다.

1.7. 대통령의 지위 조항

한편 대통령의 지위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66조의 태도 역시 유신헌법에서 비롯되었다. 즉 제1항의 국가원수 규정은 물론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제2항과 3항은 유신헌법의 산물이다.²²⁾

유신헌법 이전까지 대통령제를 취했던 모든 헌법들은 대통령의 지위에 관하여 행정권의 수반이라는 것과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²³⁾ 유일한 예외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던 1960년 헌법이었는데, 제51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제51조)고 규정하고 있었다. 요컨대, 국가원수 규정은 1960년 헌법의 산물이며, 대통령의 책무 및 의무 규정은 유신헌법의 산물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권이 국무원에 속하였던 1960년 헌법의 국가원수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유신헌법 이후의 국가원수는 행정권의 수반을 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수호의 책무와 평

21) 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하였다.

22) 현행 헌법 제66조의 규정은 유신헌법 제43조,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1980년 헌법 제38조와 완전히 동일하다.

23) 1948년 헌법 제51조, 1962년 헌법 제63조.

화통일 의무의 수범자로서의 지위까지 가지는, 그야말로 최고통치권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조직원리인 권력분립을 아예 부정했던 유신헌법이나 이를 계승한 1980년 헌법에서야 그러한 국가원수 규정은 현실 권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선제와 대통령의 권한 통제를 주요 목표로 한 시민항쟁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에서 그런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제66조 제2항이 규정한 국가수호책무나 제3항의 평화적 통일 의무는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이고 의무이지 그것을 오로지 대통령의 책무로 보아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들 책무를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시키는 듯한 이들 규정이야말로 87년 이후 줄곧 비판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야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러한 류의 국가원수 관련 규정은 굳이 둘 이유가 없다.

2. 그 밖에 헌법규정 중 청산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들

- 영토조항(제3조)²⁴⁾
- 사형제도(제12조, 제110조 제4항)²⁵⁾
-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된 부분(제12조 3항, 제16조)²⁶⁾
- 배심재판의 배제(제27조 1항)²⁷⁾
-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인정(제27조 제2항 및 제110조)²⁸⁾

24)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휴전선 이북 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근거로도 작용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제4조와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영토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반국가단체이지만 통일조항에 따르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5) 사형제 폐지를 명시하고 군사법원 관련 조항에서 사형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
26)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영장신청이 가능하도록 영장 발부 주체를 법원으로 하는 것만 규정함.

27) 법관에 의한 재판과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모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함.

- 근로의 의무(제32조)²⁹⁾
- 기본권 제한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제37조 제2항)³⁰⁾
- 일반의결정족수(제49조)³¹⁾

28) 일반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 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의 목록으로까지 언급되는 규정인 헌법 제27조 제2항은 기본권으로서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재판의 근거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헌법의 개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재판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 역시 1963년 제5차개정헌법때이며 이후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재판권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이 조항은 일반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범위를 규정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차 확대되는 군사재판을 정당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위헌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세한 것은 송기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7집 제4호(한국공법학회, 2009), 193-227쪽 참조.

29)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근로의 의무 규정이 필요한지에 의문이 있음.

30) 국가안전보장을 독립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것은 역시 유신헌법이 처음이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제한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을 포괄적인 기본권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국가안보를 내세운 기본권 제한을 구체적 필요성과 비례성 등을 중심으로 합헌 여부를 논증해 나가는 것 사이에는 논증의 엄밀성이나 기본적 관점의 형성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1)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가결을 위한 국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300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수인 151명이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인 76명만이 찬성하더라도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즉 재적의원의 1/4을 조금 넘는 의원의 찬성만으로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 대의제의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결코 하나의 법률로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의 강화가 필요하다. 헌법 제49조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지만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함으로써 국회법에서 그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의 의결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책무이므로 헌법 수준의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법이나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organic law)의 입법에 절대다수결 등 특별입법절차를 요구하는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제52조)³²⁾
- 준예산(제54조)³³⁾
- 대통령의 국회간선조항(제67조 2항)³⁴⁾
- 대통령의 피선거권연령(제67조 4항)³⁵⁾
- 대통령 권한대행(제71조)³⁶⁾
-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³⁷⁾
-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및 계엄선포권(제77조)³⁸⁾
- 사면권(제79조)³⁹⁾
-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제84조)⁴⁰⁾
- 전직대통령예우(제85조)⁴¹⁾

32)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삭제하고 국민발안에 의한 입법절차를 추가함.

33) 준예산의 인정 범위를 엄정하게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기속력과 책임성을 강화함.

34)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체함.

35) 현재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더 낮출 필요가 있음. 예컨대, 아이슬란드의 경우 35세로 되어 있음.

36) 직선에 의한 부통령 또는 국회의장(양원제 도입의 경우 하원의장)을 권한대행으로 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타당함.

37) 국민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구속력도 없는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의 임의적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을까?

38) 이른바 헌법의 예외상황을 인정하는 국가긴급권 제도를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하다면 전쟁 발생의 경우에 국한할 필요가 있을 것임.

39)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특별사면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법관이 판결을 선고할 때 아예 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0)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이를 유지해야 한다면 소추 이외의 수사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1) 헌법의 이 규정은 1980년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제61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에 의하여 1969년 3선거한 직전에 진작 만들어졌다(1969.1.22. 법률 제2086호). 그러나 제정 당시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① 대통령봉급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의 연금 지급, ② 비서 3인 채용(1급1인, 2급 2인), ③ 전직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연금(100분의 50) 지급 등 3가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두환에 의하여 엄청나게

- 국무총리제(제86조 이하)⁴²⁾
- 감사원의 대통령 소속(제97조)⁴³⁾
- 대법관 이외의 법관 임기제·정년제(제105조)⁴⁴⁾

강화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법률 제3378호, 1981.3.2., 일부개정). 연금지급액은 대통령봉급연액의 100분의 95%로, 유족연금은 100분의 70으로 증액되었을 뿐 아니라 경호·경비, 교통·통신의 편의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등이 추가되었으며, 국정자문회의의 의장(직전대통령) 및 위원이 되는 것으로 그 예우가 대폭 강화되었다. 1988년에도 기념사업 지원이 추가되었으나, 1995년에는 국정자문회의의 의장 및 위원 부분이 삭제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비와 경호’는 유지된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권력이 퇴임 후의 안전과 영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후안무치한 법률로 도대체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 42)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와는 이질적인 국무총리제—민주적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행정각부의 장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유로건 국정운영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일반 국민 앞에 서야 할 대리인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즉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지만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은 보일 수 없다는 탈책임정치의 표본이 바로 한국 헌법상의 국무총리가 아닌가 싶다. 제71조에 따른 1차적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는 그런 곳을일을 도맡는 데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 43) 감사원을 무소속 독립기구로 하거나 국회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44) 법관의 신분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법관의 신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재임용제(10년마다 근무성적 등의 심사를 통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한 판사 등을 재임용하지 않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는 지적이 많다.)이며 법관의 독립성을 해하는 제도로 지목되어 온 것은 법관승진제도(고등법원부장판사로의 승진은 경쟁률이 5:1 정도로 나타나며 이때 승진을 못한 대부분의 판사들이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을 한다. 그런데 이 고등부장으로의 승진은 각종 연줄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대상자들이 좋은 근무평정을 받기 위하여 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파다하다.)이다. 법관임기제를 두는 이유는 법관의 보수화를 방지하

- 탄핵심판(제111조 제1항 제3호)⁴⁵⁾
- 헌법재판관의 자격 및 임명방법(제111조 제2항 및 제3항)⁴⁶⁾ 등.

IV.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박근혜가 위기를 회피하려는 미봉책으로 개헌을 들고 나왔었고, 탄핵 소추의결 이후에도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러 정파에서 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하면서 탄핵국면을 호도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런 이유로 개헌 이야기를 잘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녀달 간 지속된 촛불시위를 통하여 단순히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하여 현 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국가의 설계를 원하고 있다면 헌법의 변경, 아니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나는 앞에서 유신헌법과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이라도 시작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국가의 설계를 이야기하는 이상 그것에만 머물 수는 없다. 과거의 청산과 현재의 진단 그리고 미래의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한 촛불은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촛불시민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강렬하게 광장에 모여서 외쳤던 것일까?⁴⁷⁾ 그것은 우리가 2008년 이후

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임기연장 여부를 이런 식으로 결정할 바에는 차라리 국민들의 심판(선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5) 양원제를 채택하여 소추부터 심판까지 탄핵절차 전체를 국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
- 46)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 자격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에게 재판관 3인의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하기가 어려움. 국민직선제 또는 가중다수결에 의한 국회선출제로 대체함.
- 47) 주지하듯이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는 수많은 구호와 의제들이 제시되었다. 처음에 광장의 구호는 ‘박근혜 하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만적인 대국민담화가 나오자마자 구호는 곧바로 ‘박근혜 퇴진’으로, 박근혜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자 곧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구속’으로 바뀌었다.

늘 광장에서 불렀던 노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말해준다. 말하자면 우리 촛불시민이 원했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국가인 동시에 공화국이 되고 그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주권 회복이고 주권 회수이며 대의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⁴⁸⁾

그러면 무엇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무엇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킬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촛불시민들이 광장에서 요구했던 것은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제의 정상적 운영, 근대국가의 기본적 조직원리인 권력분립과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치 구조,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 노동 중심 경제체제로의 재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1. 국민주권의 현실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현재까지의 국면에서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느꼈던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이 발생하여, 하루에 최대 232만의 시민들이 전국의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헌정파괴범죄를 저지른 자를 퇴진시킬 수도 처단할 수도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이었다. 물론 이러한 무력감과 좌절감은 박근혜의 버티기,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함, 야3당의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여기까지 끌

동시에 박근혜의 권력 사유화와 민주주의 파괴가 혼자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란 점에 생각이 미치면서 이를 방조, 은폐한 세력의 책임을 묻는 구호, 즉 ‘새누리당 해체’, 검찰, 언론, 대학 등 공범 내지 동조세력에 대한 처벌의 요구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조종하는 주체로서 처벌의 개혁과 해체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48)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공화국을 위한 열세 가지 질문(웅진지식하우스, 2011), 100쪽.

고 올 수 있었다는 데 대한 자신감을 수반하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적어도 미래를, 새로운 공화국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촛불시민들이 광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고권력인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즉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으므로 위임된 권력이 사유화되거나 오남용 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화국의 설계는 당연히 주권의 직접적 실현 방안, 즉 직접민주주의 체제의 도입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대의제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주권자와 통치자의 분리에서 온다고 할 때,⁴⁹⁾ 이를 시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권자가 곧 통치자가 되는 것, 즉 국민이 직접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것이 직접민주정치이다. 대의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치명적 결함으로 신중한 심의의 결핍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즉 직접민주제도하에서는 복잡한 정책이슈에 대해서도 찬반으로 간단히 답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공적 토론과 심의가 결핍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국민의 대표가 일반국민에 비하여 공익지향적이라는 것은 규범과 현실을 혼동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일반국민도 직접 제안된 의안에 대한 토론과정을 통하여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게 되며, 국민이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적 공익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조작가능성 내지 선동가능성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⁵¹⁾

49) 김종서, “인권과 권력구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민주법학 제12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7), 32-33쪽.

50)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안암법학 제25권(안암법학회, 2007), 29쪽; 주성수,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7), 182쪽; 권영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2004), 131-132쪽; 김문현,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한국공법학회, 2006), 56-57쪽 등.

51) 박규하, “정치적 기본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이론”, 외법논집 제28집(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1), 105-107쪽.

직접민주정치의 방안으로 현재까지 거론되는 것으로는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국가기관이 제안한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로써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국민표결제도, 그리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직시키는 국민소환제도가 있다.

1.1. 국민소환제

현재의 국면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국민소환 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한 대리소환절차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직접 탄핵, 즉 파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즉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권력 회수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소환제도가 그리 낯선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의 소환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연방국가에서 주지사 수준이 아닌 연방 또는 국가의 행정수반이나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아시아의 대만⁵²⁾이나 남미의 베네수엘라⁵³⁾ 정도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연방 차원

52) 타이완 헌법의 추가 조항 제2조.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소환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의 제안으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다. 최종적 소환은 중화공화국 자유지역의 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하는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http://taiwandocuments.org/constitution02.htm>>.

53) 베네수엘라 헌법 제72조: “국민투표로 선출된 모든 공무원과 치안 판사는 소환될 수 있다. 선출 이후 임기의 절반이 경과하고, 당해 지역 등록 선거권자 20퍼센트 이상의 의견이 모아지면 해당 공직자에게 위임되었던 권한을 철회하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할 수 있다. 등록된 선거권자의 25퍼센트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결과 소환에 찬성한 투표자의 수가 애초 해당 공직자를 선출했던 투표자 수와 같거나 많다면, 그 공직자의 권한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권위를 충원하기 위한 조치가 취

은 아니지만 주 차원에서 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는 예로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⁵⁴⁾ 스위스의 6개 칸톤,⁵⁵⁾ 미국의 19개 주⁵⁶⁾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의 의원소환법 제정이다. 즉 영국은 2015년 3월 26일에 하원의원의 소환을 도입하는 ‘2015 하원의원 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을 제정한 것이다.⁵⁷⁾ 미국 독립혁명이나 프랑스대혁명보다 100년이나 앞서 이른바 명예혁명을 통해 최초의 근대국가를 탄생시켰고 의원내각제라는 정부형태를 300년 이상 유지해 오고 있는 나라인 영국에는 주지하다시피 성문헌법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의회가 만드는 법률이 헌법이며 법률제정권을 가진 의회가 주권자다. 그

해진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의 권한 철회는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행한다. 공직자 소환 청원은 해당 공직자의 임기 중 한 번을 초과하여 제출될 수 없다.” 출처: 김병권 외,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시대의창, 2007), 부록.

54) 1995년에 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였다.

55) 칸톤별 소환제 도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Bern(1846), Schaffhausen(1876), Solothurn(1869), Ticino(1892), Thurgau(1869), Uri(1888). <https://en.wikipedia.org/wiki/Recall_election#Switzerland>.

56)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네바다, 뉴저지, 노스다코타,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및 위스콘신. 특히 가장 많은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던 2011년 한 해에만 17개 주의 73개 관할권에서 150 건 이상의 소환투표가 있었으며, 그 중 75명의 공직자가 소환되었고 9명은 소환의 압박 하에 사임했다. 한편 역사상 주지사가 소환된 적은 2번이었다(노스다코타 1921, 캘리포니아 2003). <https://en.wikipedia.org/wiki/Recall_election#United_States>.

57)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25/contents/enacted/data.htm>>. 이 법에 따르면 하원의원은 세 가지 경우에 소환청원절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첫째, 영국 내에서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이 확정된 경우, 둘째, 윤리위원회 보고에 따라 하원의장으로부터 회기 중 10일(또는 회기와 관계없이 14일)간의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리고 셋째, 의회윤리법에 따른 범죄(비용청구를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역구의 소환청원을 요구하는 투표에 회부되며 소환에 찬성하는 투표자가 등록유권자의 10% 이상이 되면 소환청원은 성공하고 하원의장의 고지로 의원신분은 상실된다.

래서 영국에서는 국민주권이나 인민주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의회주권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런 영국에서 주권자인 의회의 구성원을 유권자가 소환하는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대표를 통한 주권 행사라는 근대국가의 주권 원리에 일대 변경이 요구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그만큼 이제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소환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당연히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개정 없이 소환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소환을 입법화하고 소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임기 조항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법률적 소환제도는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물론 주어진 조건하에서, 즉 헌법이라는 넘어설 수 없는 전제하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어떻게든 문제를 돌파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필요하다. 만약 지금의 상황이 2004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그런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⁵⁸⁾ 그러나 지금은 2004년과는 달리 이미 모든 국민이 촛불시위라는 직접행동을 통하여 주권의 의미를 체험해 버렸다. 남은 일은 그 체험을 당당하게 제도로 만드는 일이며, 여기에는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1.2.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은 권력의 오남용을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공직자를 쫓아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것은 모든 잘못이 저질러진 뒤에 책임을 묻기 위한 사후적 수단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물론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환이라는 국민적 심판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대표가 권력을 위임해 준 주권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58) 헌법 개정 없이도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논의로는, 이경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민주법학 제26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및 이경주,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책세상, 2005).

경우를 대비하여 주권자가 스스로 법률 제정을 비롯한 국가의사 결정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또 다른 직접민주주의적 방안이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이다.

먼저 국민발안은 정책발의와 그 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하나의 제도로서 공식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정책발의가 오로지 특정한 국가기관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만 현실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최종적 결정을 국가기관이 전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라고 할 수는 없게 되며, 그 경우에는 헌법 제26조가 보장하고 있는 집단적 청원권의 행사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의 국민발안제도란 일정한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일정한 헌법안, 법률안이나 정책이 발의되면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민다수가 동의하면 헌법·법률 등이 확정되거나 정책이 결정되는 제도이다.⁵⁹⁾ 이는 국가기관에 의해 발의된 사항에 대한 선택 내지 가부결정만을 하는 국민표결과 비교할 때 국민의 직접 국가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 능동적이고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즉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안된 발안은 다른 국가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표결에 붙여져야 하며 국민표결에서 가결될 경우에는 하나의 법률 또는 정책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국민발안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앞서보았듯이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대통령과 국회에게만 부여한 헌법 제128조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률안제출권을 정부와 국회의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52조의 개정도 요구되며, 더 나아가 법률안이 국민발안에 의하여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의무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필수적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의 도입도 필요하다.⁶¹⁾

59)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토지공법연구 제29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12), 488쪽.

60) 김선택, 앞의 글, 25쪽; 박경철, 앞의 글, 488쪽.

61) 이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인권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와는 다르다.

그러나 개헌을 통하여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특정한 정책안이나 법률안의 발의가 있을 때마다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의 실시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비용부담이 클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다.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국민투표 피로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헌을 통하여 직접민주제로서의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정기적 실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러한 국민투표는 가끔적이면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⁶²⁾

한편 국민표결⁶³⁾은 국가기관의 발의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법률안, 헌법개정안, 정책사항 등이 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곧바로 국민의 의사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국가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투표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표결을 직접적 의사결정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⁶⁴⁾

우리 헌법상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국민표결제가 도입되어 있다. 먼저 필수적 국민투표로서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로서 이는 인준적 국민투표에 해당한다. 즉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는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위한 필수적 국민투표이며 국민투표결과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첫째,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대통령에 의하여 결정되고, 둘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안 역시 대통령이 결정하며, 셋째, 투표결과

62) 미국처럼 중간선거(2년마다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선거함)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정기적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년 차이로 번갈아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와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3) 국민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민투표는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 결정, 국가적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참여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김선택, 앞의 글, 24쪽, 주 45 참조.

64) 김선택, 앞의 글, 24-25쪽.

구속력도 없기 때문이다.⁶⁵⁾ 이를 직접민주주의적인 국민표결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 실시가 강제되어야 하고, 둘째, 일단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그 결과는 구속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스위스헌법이 참고할 만하다.⁶⁶⁾

2. 대의민주제의 정상화

하지만 주권의 실현이 직접민주주의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대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라면 모르되 국민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영역이 확장된 근대 이후의 국가에서 모든 사안을 광장의 시민들이 토론과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여 행사케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대표의 주권자에 대한 충성 내지 구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담보되도록 대표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장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정부형태의 문제

65)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에 보다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질문 방식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박경철, 앞의 글, 502쪽; 음선필, 앞의 글, 459-460쪽). 특히 국민들 사이에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경우에는 국민투표가 오히려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해 주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66) 스위스헌법은 두 종류의 국민투표를 두고 있다. 먼저 제140조는 필수적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하는 경우와 국민투표에만 회부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제141조는 투표권을 가진 5만의 국민 또는 8개 주가 일정한 법령이 공고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는 임의적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형태의 개편이 종종 주장된다. 현재도 이른바 분권형 개헌이니 내각제 개헌이니 하는 정부형태 중심의 개헌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그러한 정부형태 개편논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주장을 제외한다면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핵심은 현재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교/국방과 기타 내정 분야를 나누어 관장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거나 의회 중심의 정부형태인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형태 개편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특정한 정부형태를 그 자체로 절대화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정부형태는 다른 정부형태보다 낫다는 식의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성립한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형태로 자리잡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두 정부형태는 모두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단지 영국에서 의원내각제가 300년 이상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역시 대통령제를 큰 변화없이 200년 이상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나라가 각각의 정부형태가 가진 약점 내지 단점들을 치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장치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⁷⁾ 단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의 다수는 독립국가의 정부형태로 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목표로 강력한 집행부를 가능케 할 대통령제를 선택했지만 대부분은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 내지 위협으로 거론되던 독재의 등장으로 귀결되고 말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유일한 예는 미국밖에 없다는 평가마저 존재한다. 미국에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면서도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수백 년 간 독재로 흐르지 않고 그 체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가 매우

67) 이러한 요소를 각 정부형태 성공의 정치문화적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로는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6), 755쪽 및 762-763쪽 참조.

강하고 연방국가로서 주정부의 권한이 강한 점이나 중앙당의 규율이 매우 약한 정당제도의 특징 등 독재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바탕이 정치사회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⁶⁸⁾

그런 점에서 특정한 정부형태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진전이나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가져온다는 것은 근거가 매우 희박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부형태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특정한 정부형태를 오랜 기간 성공시켜 온 정치사회적인 조건들이며, 이런 조건들의 구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그것을 견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제도나 선거제도의 문제, 언론의 자유의 위축, 사법기관의 견제 기능 부진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이 취해 온 정부형태는 어느 것이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충형 정부형태의 경우 이상적으로는 두 정부형태의 장점이 결합되어 나타날 것이지만 반대로 양 정부형태의 단점만이 극대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 한국은 그러한 점을 흑독한 경험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형태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민주적 정부 운영의 전제조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2. 선거제도의 개혁

새로운 공화국의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인데, 대표적인 주장은 지역주의를 고착시키고 국민대표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양당제를 강요하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방식을 독일식의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 인구편차가 과도한 데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됨에 따라⁶⁹⁾ 제20대

68) 경향신문, [공화국을 묻다-하승수]“우리의 삶, 우리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 2016.10.12.

69)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총선을 1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도 제시한 것이지만⁷⁰⁾ 실현되지 못했다.⁷¹⁾

비례대표제의 전면화는 헌법개정을 요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처럼 그 실현이 어려운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거대정당들로서는 기존의 국회지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확대된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외부적 조건이 여야 정당에 대하여 이를 강제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광장의 힘으로 기득권정당들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준혁명적 상황이 그런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전면화 또는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여의치 않다면 역설적으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구성방식을 전혀 달리하는 두 개의 원을 두는 것, 즉 양원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헌법개정사항이다. 예컨대, 하원은 의원 전원을 소선거구 지역구 선거로 선출하고(대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 상원은 의원 전원을 비례대표로 구성하는 것이다(군소정당의 이해관계 반영). 이를테면 대정당과 군소정당 사이에 대타협(Great Compromise)⁷²⁾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쿠데타 이후 사라진 양원제를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⁷³⁾ 아울러 최소한 비례대표로 구성되는 하나의 원은 반드시 남녀 성비 5:5로 구성할 것을 제

7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15.2.

71) 오히려 국회는 2016년 개정 공직선거법(법률 제14073호, 2016.3.3., 일부개정)에서 전체 의석수 300석 중 지역구의석을 중전의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을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해 버렸다.

72)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크고 작은 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타협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를 통하여 양원제, 상원의 주별 동등대표제 및 주의회에 의한 선출, 하원의 인구비례에 따른 의석배정과 직선, 대통령 선거인단제와 상원의의석 수의 연계 및 승자독식제의 채택, 헌법개정 절차에서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비준 등은 이러한 타협을 통하여 나온 것이다.

73) 1948년 헌법은 단원제를, 이후 1-4차 개정 헌법에서는 모두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5.16군사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5차 개정헌법부터 단원제로 변경되었다.

안한다. 이 땅에 만연한 여성 차별과 여성 혐오는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비 5:5로 구성되는 의회제도는 실제적인 인구 분포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성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한국 민주주의사에 혁명적 족적이 될 것이다.⁷⁴⁾

두 번째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종종 거론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 문제이다.⁷⁵⁾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의 결정은 단순 다수득표에 의한다. 그러니 투표자의 30% 남짓한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는 비정상적 결과—민주적 정당성의 취약—도 가능해지는 것이다.⁷⁶⁾ 그리고 이는 여야대결구도가 강한 대선에서 야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후보 단일화를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 결선투표제가 헌법개정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도입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⁷⁷⁾ 그리고 의외로 결선투표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74) 양원제가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비례대표의 전면화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면, 지역구의원정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체 의원정수를 확대함으로써 그 확대분 만큼을 비례대표로 추가 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원정수 확대에는 강한 국민적 반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인구 대비 의원수가 한국보다 적은 경우는 미국, 일본과 멕시코 정도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정수 확대는 대표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김중서, “헌법과 정치개혁”,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참여자자치지역운동연대/한국지방정치학회, 2015.4.29), 42-44쪽. 물론 국민의 설득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회 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4쪽.

75) 물론 결선투표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가능하지만(예: 프랑스) 논의의 편의상 대선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76) 그리고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전체 유권자—투표자가 아니다—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요구하는데(제67조 제3항), 현재의 단순다수득표제 하에서는 단독출마한 경우보다 더 낮은 득표로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모순적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1987년 후 배출된 6명의 대통령 중 유권자 3분의 1 이상 득표에 성공한 것은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3명밖에 없었고, 특히 노태우의 득표율은 투표자의 36.6%에 불과했다).

77) 헌법 제67조 제2항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국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선투표 배제 조항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는 동수득표자가 2인 이상이 나오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규율하기

는 지적도 있지만,⁷⁸⁾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지양하고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⁷⁹⁾ 그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⁸⁰⁾ 한편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투표의 반복 실시로 인한 비용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단기식이 아니라 연기식 선호 투표를 실시하고 선호도 순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⁸¹⁾

세 번째로 이번 촛불시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과는 달리 청소년의 권리, 특히 정치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결선투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처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머니투데이, “대선 결선투표제 논란…현재로 가나”, 2016.12.26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22617407665780&type=1>>, 검색일: 2017.2.1.

- 78) 상대다수대표제에서 후보단일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선투표제 역시 인위적인 과반수 창출제도이고, 결선투표에서도 복잡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1, 2위가 바뀌었을 때 예상되는 혼란 등 의외로 결선투표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허석재,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 다른백년, 2017.1.10., <<http://thetomorrow.kr/archives/3618>>, 검색일: 2017.2.10.
- 79) 양당 지배체제가 다당제 경쟁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들여지는 한 결선투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더 합당하다고 한다(김세균의 견해).
- 80) 안철수의 경우 일단 법률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를 물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자문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81) 호주의 경우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순위를 표기해야 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지지정당에 대해 6개 이상 선호도 표시를 하거나 후보자별로 12개 이상 선호도 표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http://www.aec.gov.au/Voting/How_to_Vote/> 참조. 당선자 결정은 1위 기표수를 우선 집계해 여기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로 하고,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2위 기표수를 남은 후보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한 명씩 탈락시켜 과반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막장공천 막으려면 … 오픈프라이머리, 선호투표제 필요”, the300, 2016.3.24.,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32315487618369>>, 검색일: 2017.2.1.

적 권리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이 19세로 매우 높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⁸²⁾ 선거연령을 일반적 수준인 18세로 인하하는 것은 광장의 시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로서 즉각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미래의 주역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도 있는 문제들—교육, 입시 등—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 선출되는 대표자들이 주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선거권이 없으면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광장의 청소년들을 보면 중학생 정도, 백보를 양보해도 고등학생 정도면 정당 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선거를 통하여 선출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임기 중에, 이들 학생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시점에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의 자격을 선거권과 연동시키는 것은 하등의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

넷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이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무원·교사·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⁸³⁾

82)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제한 같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다고 해서 모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모두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은 잠정적으로만 선거권이 없을 뿐 단기간 내에 선거권을 가질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김종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헌법학연구 제18집 제2호(한국헌법학회, 2012), 41쪽.

83) 김종서, 위의 글, 35-45쪽 참조.

2.3. 정당제도의 개선

한편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당의 중요성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당시스템에는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

첫째, 정당의 창설이 매우 어렵다.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이 상당한 규모의 전국조직을 요구하고 있어 신규정당의 제도권 정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코미디언이었다가 정치에 입문하여 6개월만에 레이카비크 시장으로 당선되었던 온 그나르가 최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세무서에 가서 30유로 정도만 내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면 누구나 창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⁸⁴⁾ 정당법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야 하고(제17조)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만(제18조) 정당 창설이 가능한 현 제도 자체가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⁸⁵⁾

둘째, 정당을 창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의 의원들이 의미 있는의 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와 맞물리면 신생정당, 특히 진보정당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이 거의 불가능하여 결국 국회의 의사일정 등 운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의석의 6.7%에 달하는 것이어서, 교섭단체 요건으로 5%의 득표율을 요구하는 독일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과도하다.⁸⁶⁾

84) 경향신문, “성공한 정치덕후 “정치, 정치인에게만 맡겨두기엔 너무 재밌는 일””, 2016.12.23.

85)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결사체(주민정당, local party)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하승수의 견해에 동의한다.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5쪽.

86)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 요건과 결합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하원의사규칙(Geschäftsordnung des Bundestages, IV. Fraktionen)에 의해 연방하원에서 전체의석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교섭단체(Fraktion)를, 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 3석 이상을 얻은 정당은 독자적으로 준교섭단체(Gruppe)를 구성할 수 있다. 윤재만, “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민주적 정당

셋째, 정당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이다. 현대 정치의 핵심주체인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필연성은 없으나,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대부분의 원내정당들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전체 정당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 따라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의 비중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즉 당내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당에 대한 경상비 보조보다는 선거비용에 대한 보조, 즉 선거공영제의 확대 형태로 정당의 선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경비보조를 할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국고보조금의 절대적·상대적 상한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⁸⁷⁾

넷째, 정당의 존립 여부를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맡겨두

조직과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2권 제1호(한국헌법학회, 2016), 64쪽 주 59 참조.

87) 독일에서는 1966년 선거자금지원을 제외한 정당국고지원은 위헌이라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선거자금에 국한하여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다가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반 경상지출에서의 국고보조도 허용되게 되었다. 현재 정당에 대한 독일의 국고보조는 4가지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독일정당법 제18조 제5항은 “정당국고보조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정치자금의 총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상한선(Relative Obergrenze)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정당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절대적 상한선(Absolute Obergrenze)은 국가가 모든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총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현재 1억 3천 3백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셋째, 독일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시민사회적 연계 및 자생력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지급되는 매칭펀드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이때 정당의 자생력은 득표율과 사적 자금 동원력으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넷째,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저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즉 현재 정당법에 의하면 유럽의회선거와 연방의회선거의 경우는 전체 유효투표의 0.5% 이상, 주 의회 선거에서는 1.0% 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직접출마자에 대한 제1투표에서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진숙, “국고보조금제도형성과 담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2집 제1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특히 253-256쪽 참조. 유의할 것은 국고보조금 배분 요건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요건에 비하여 크게 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 있는 위헌정당해산심판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를 통하여 그 운영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난 바 있지만,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도 그 운영을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심판되어야 할 정당의 운명을 국가, 행정부와 사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정치 of 폭을 국가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⁸⁸⁾

2.4. 대표(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임기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1회 연임을 허용하지는 것이다. 이 주장은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의 의중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근거로는 흔히 국가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민 선택의 보장 등이 내세워지고 연혁적으로 멀게는 1952년 제1차 개정헌법, 가깝게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의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장기집권의 위험성이다. 이승만도(1954) 박정희도(1969, 1972) 3선과 종신집권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런 위험이 없어졌는가? 우리는 현재 5년이 얼마나 긴 임기인지를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처절하게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⁸⁹⁾

그렇다면 현 체제에 대한 우리의 진단은 노무현이 제안했던 것이나 박근혜가 제안하려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 즉 단임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나

88) 강경선은 새누리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권의 호위병으로 나서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극우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강경선, “이제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다”, 허핑턴포스트, 2016.12.17.), 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의 운명을 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사법관료들이 결정하는 체제에는 반대한다.

89) 하승수도 4년 중임제는 8년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경향신문, [공화국을 묻다-하승수]“우리의 삶, 우리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 2016.10.12. 반면 박명림은 단임제 헌정구조를 대통령의 탈당으로 인한 지배당-반대당 없는 비정당 정부가 반복된 원인으로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241쪽.

되어야 하는가?’가 아닐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왜 또 4년이나 되어야 하는가? 너무 길지 않은가?

나는 늘 이들 공직자의 임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나는 2년 임기에 1회 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매우 비현실적일 수 있다. 대통령제를 취하는 현존하는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⁹⁰⁾ 그것은 일정 기간의 임기 보장이 강력한 집행부를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제에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통제받지 않는 4년 또는 5년 임기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까지 보장하는 것이라면 곧 제왕적 대통령의 허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5년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즉 안정적 집행부라는 요청에 비추어 임기 2년이 너무 짧다면, 4-5년 임기에 필수적 중간투표의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의 임기도 2년으로 줄이자. 도대체 4년이 왜 필요한가?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 하원이 그러하다.⁹¹⁾ 지방의회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경우는 대통령에 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게 되면 앞서 살펴본 국민발안에 의한 입법도 부담 없이 채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0) 특이한 예로는 의회에서 간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은 허용하지 않되 연임이 아닌 중임은 허용하는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헌법 제176조.

91) 물론 양원제 의회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즉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인 반면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헌법 제정 당시의 설계에 의하여 상원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된다. 말하자면 하원의 단기임기가 상원의 장기임기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음과 아울러 상원 역시 보수화를 막기 위하여 2년마다 일부가 교체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장기임기의 상원이 없는 단원제 국회 체제에서 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중장기적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가치와, 의회의 안정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가치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전자를 지지한다.

3. 권력분립의 실질화: 견제와 균형의 상시 작동 체제

민주공화국의 조직원리는 권력분립이다.⁹²⁾ 한국 헌법 역시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제3장 이하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즉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분립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권력남용의 방지에는 실패해 왔다. 이는 어떤 점에서는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의 성격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987년 이후 성립한 모든 정권에서 권력의 오남용 제어에 실패한 경험들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것을 사람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어떠한 폐단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분명히 시스템상의 결함을 내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1. 중앙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모색

3.1.1. 국회 기능의 정상화

권력분립 원리의 일차적 관심은 입법과 행정 사이의 분립을 통한 양자간 견제와 균형인데 이 양자의 관계에서 한국 헌법은 행정부 우위 쪽으로 한참 기울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게도 입법권의 일부인 법률안제출권이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부에 속하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는 권력분립 원리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가 하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법원의 제청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한 위헌법률심판제도까지 도입되고 있으므로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은 사법부에 비해서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헌법에서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⁹²⁾ 국순욱, “공화국의 정치적 상품화와 순차 결정의 과학적 기준”, 국순욱, 민주주의 헌법론(아카넷, 2015), 489쪽.

되는 것은 입법부, 즉 국회의 약화이다. 이는 근대 국가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 즉 법률의 지배 원칙에 비추어보면 권력분립의 중심이 극단적으로 전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국회 기능의 정상화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설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2. 고위관료 임명 제도의 개선

권력분립과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최상위직 관료의 임명과정이다. 하급 관리를 제외한 상급 관료를 상원의 조인과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헌법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하여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긴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국무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경우—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이런 사례가 표준이라 할 정도로 빈번했다—에도 국회의 의사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그 임명에 반대할 정도의 매우 큰 결함을 안고 있는 자가, 자신의 약점을 잘 알면서도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해준 임명권자, 즉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실행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국정농단이 4년이나 지속되어 왔는데도 그것을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진실을 밝히는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직자임명 체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최소한 비선출직인 정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1.3. 헌법재판소 문제

또 하나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원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문제를 빼뜨릴 수 없다. 도대체 선출되지 않는 9인에게 정당의 운명을 맡기고,

법률의 개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든 간에 민주주의의 핵심에 있는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를 폐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높은 신뢰도를 고려하면⁹³⁾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그려보아야 한다.

우선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극명하게 그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정치의 핵심적 주체인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같은 것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다.⁹⁴⁾ 권한쟁의심판도 굳이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국회를 단원제로 유지하는 한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나, 앞서 제시되었듯이 양원제가 채택되면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을 하원과 상원이 분점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미국). 결국 남는 것은 법령이나 처분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이다.

일단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이나 처분 등의 위헌 여부는 모두 법원에서 심사하도록 일원화하자.⁹⁵⁾ 결국 남는 것은 위헌법률심사인데, 나는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만든 법률의 운명을 직접적인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 이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교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속력을 제거하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반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국회가 가중다수결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할

93) 헌법재판소는 동아시아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정부 기관 중 국민신뢰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로이슈,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공정’ 이미지 77%”, 2015.9.2.자.

94)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베니스위원회의 원칙 중 첫 번째는 비적용원칙이다. 김종서,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민주법학 제56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12), 75-76쪽.

95) 이를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등 소송법의 대폭적인 정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수도 있다). 또 프랑스처럼 법률의 공포 시행 전에 그 위헌성을 심사하는 사전적 위헌심사제로 전환하는 것이나, 헌법재판을 일종의 배심제로 운영함으로써 속의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을 결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⁹⁶⁾

3.1.4. 법원과 감사원의 개혁

한편 권력분립의 문제가 결국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하는 것이라면 사법부와 감사원의 기능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적 통제 장치와 공공감사가 제대로 기능해야 하고, 법치주의 구현,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감사원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⁹⁷⁾ 그런데 사법부와 감사원의 개혁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일반 법관 임명권은 흔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 한 사람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인사권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고,⁹⁸⁾ 현실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슬하게 보아 왔다. 그런 만큼

96) 헌법재판소의 작용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김종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4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3.1), 317-367쪽.

97) 페이스북에 올린 송병춘 변호사의 견해이다.

98)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의 법관임명권을 전적으로 대법원장에게 맡겨두는 것은 사법부 구성을 국민의 감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결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법권의 힘이 매우 강한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모두 상원의 조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2016년 현재 연방법관 정원은 연방대법원 9명, 연방항소법원 167명, 연방순회항소법원 12명, 국제거래법원 9명, 준주법원(territorial courts) 4명, 연방청구법원 16명과 연방지방법원 673명(임시 10명 포함) 등 총 890명이다). <<http://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allauth.pdf>>.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최고법원의 구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보통은 사법부에 요구되는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내세워 사법부는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부문으로 이해되지만, 선거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근거도 없다. 더구나 배심재판처럼 국민에 의한 재판 참여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관공선제, 최소한 대법원장 선거제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⁹⁹⁾ 한편 감사원의 경우 정부,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거나 무소속 독립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⁰⁾

3.2. 수직적 권력분립 방안으로서 연방제

국회의 기능 개선과 관료임명에 대한 통제 강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제 기능 보완 등 중앙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강력한 국가권력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될 지는 분명치 않다. 동서고금의 경험으로 보자면,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란 그것이 정상적으로, 아니 이상적으로 작동할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입법부와 집행부

⁹⁹⁾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종신제로 임명되는데 그 이유는 법관이 당파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강한 독립성이 요청되는 전문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신제는 독립성의 요청에는 부응할지 모르지만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엄격한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연방헌법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법원 판사들의 경우에는 선거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들이 많다. 즉 연방법관의 임명제 및 종신제의 취지를 모든 주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주법원의 경우 건국 초기에는 연방법원처럼 임명제로 출발하였으나 법관선거제도가 대세를 이루었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실적제방식이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법관선거제도에는 정당추천입후보에 의한 선거방식과 비정당추천입후보에 의한 선거방식, 그리고 실적제방식(일정한 방식으로 선발된 법관의 업무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유입 여부를 국민의 투표로 결정) 등이 있다고 한다. 상세한 것은 김명식, “사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州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미국헌법학회, 2011), 1-28쪽 참조.

¹⁰⁰⁾ 오스트리아의 심계원(Rechnungshof) 같은 경우가 의회 산하에 있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와 사법부는 경우에 따라 매우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권력 상호간의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견제를 통한 균형을 달성하기보다는 각 권력의 남용을 오히려 권력분립의 이름으로 방임 또는 정당화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국가권력 자체의 강화를 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권력과는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외부의 권력과 중앙권력을 대립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연방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여러 가지 개헌론들은 ‘분권형’ 개헌을 표방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분권이란 과거 노무현 정부가 말했던 지방분권과는 무관하다. 이들 개헌론의 분권이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과 총리(내각) 사이에(이원집정부제) 또는 집행권과 의회 사이에(의원내각제) 권력의 분점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이러한 형태의 분권은 두 권력이 동질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어 권력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른바 수직적 권력분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권력분립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앞서 본 국가권력에 대한 주권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권력의 우월성이라는 형태의 분립—국민과 국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살펴볼 연방국의 형태를 띠는 분립—중앙(연방)권력과 지방(支邦, 주)권력—이다.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전형으로서의 연방제는 노무현 정부때 추진되었던 지방분권, 즉 중앙정부 권한의 일정 부분을 지방(地方)정부로 이양하는 것, 말하자면 중앙행정의 지방행정으로의 이양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연방제에서의 주는 연방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독립국가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방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지방, 즉 주(州)가 자신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 둘째, 중앙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지역주의를 동원하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셋째, 자연스럽게 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 집중 현상을 완화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넷째,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통일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성을 유지하는¹⁰¹⁾ 바탕이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¹⁰²⁾

그러나 연방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연방과 주 사이, 그리고 주 내에서도 권력의 분산과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규율하는 대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권력(정부)이 일차적인 처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아래로부터 위로 의사결정이 되는 국가구조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과 관련된 1차적인 사무 처리는 기초자치체(외국의 town, city 또는 county 등)가 하고, 기초자치체가 하기 어려운 일은 주가 처리하며,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주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만 연방(중앙)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위가 현재보다 훨씬 소규모—읍·면·동 단위—로 조직되어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법체계 자체의 이원화—연방법과 주법—가 이루어지고, 권력기구의 분권도 필요하다(연방의회와 주의회, 연방법원과 주법원, 연방검찰과 주검찰, 연방경찰과 주경찰 등).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 연방과 주 사이에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연방의 권한을 헌법에 빠짐없이 열거한 후 연방의 권한으로 열거되지 않았거나 헌법이 주에게 금지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주의 소관으로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¹⁰³⁾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앞서

101) 독일은 통일을 하면서 동독의 5개 주들이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래서 동독의 주들이 상당한 자율권을 가질 수 있었다.

102)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7-8쪽.

103)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은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제9항은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을, 제10항은 주에 금지된 권한을 각 규정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수정 제10조는 “본 헌법에 의하여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더욱 명확히 밝히고 있다. 스위스 헌법 제3조도 “주는 연방헌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향유한다. 주는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역시 제30조에서 “이 기본법이

언급한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4.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노동 중심 경제체제로의 재편

박근혜 게이트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비선실세를 통하여 국정을 농단한다는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질을 보면 기업이 일정한 혜택을 기대하고 정치와 결탁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경유착은 재벌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조달 관리했던 박정희 정권의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핵심에는 재벌체제가 있다.¹⁰⁴⁾

재벌체제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방안들은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된 적은 없었다.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강력한 적용이나 각종 불법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지만, 재벌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관점의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일단 현재의 재벌지배체제를 뒷받침하는 순환출자의 금지, 등기이사가 아닌 총수의 경영개입 금지 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드러났을 때 그러한 법 위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새로운 규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1회 위반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부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반이 반복되었을 때에는 기하급수적인 가중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악의적인 법 위반을 하면 어떤 기업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¹⁰⁵⁾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허용하는 한,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과제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16일간 법원 앞에서 사상 초유의 노숙농성으로 항의했던 법률가들은 이 점을 정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특검의 영장재청구 끝에 이루어진 이재용의 구속은 새로운 국면 전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05) 재벌의 해체나 재벌 체제의 이용이냐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요하는 문제이고 재벌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 입각하여 해체보다는 이용을 주장

다음으로 재벌기업들이 정치권과 결탁할 수 있는 것은 그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그룹 총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개별 기업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불법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그리고 기업이 입는 손실에 대한 가장 큰 이해관계인은 그 기업의 주주가 아니라 노동자들이며, 이런 점에서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는 달리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노동자들이 선출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다.¹⁰⁶⁾ 이는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핵심을 1인 1표의 원칙으로 보고 이를 경제 영역에 적용한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이해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의 최고경영자 선출은 대의제 민주주의, 특히 대통령 선거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만,¹⁰⁷⁾ 이런 모델의 결함은 선출 후 통제방법이 없다—지금 우리는 그 문제를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시적 참여와 통제가 가능해지는 노사공동결정제도가 경제민주화의 본질적인 모습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노사공동결정제도는 법률로 도입되었고 한국에서도 입법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한국처럼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고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태도가 현저하게 사용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한 도입의 경우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동결정제도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재벌의 폐해가 너무나 크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체제에서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없는 세상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이 없어서 망할 나라면 삼성이 있어도 망할 것’이라는 각오가 필요하다. 재벌의 폐해를 늘 비판하면서도 재벌기업 상품의 이용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상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재벌에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재벌 경제의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우리는 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그리고 현대의 자동차들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

¹⁰⁶⁾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264-279쪽.

¹⁰⁷⁾ 정세은도 CEO 선출제를 언급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 채권단, 계열사, 하청기업, 노동조합 등이 삼성전자의 CEO 선출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정세은, “87사회경제체제의 한계와 과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 발표문(2016.12.26.).

다.108)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분을 늘리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민주공화제적 통제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109)

한편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떠나서 재벌기업이 위와 같은 불법적 정경유착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이를 견제할 노동조합이 법적 제도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가 업무방해죄 처벌 등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신청 등 민사적 제재에 의하여 극도로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10) 그런 점에서 “구체제가 질식시킨 노동기본권을 복원시키는 것, 그중에서도 노조 할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고 노동 3권 행사를 민사소송으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노동형법의 잔재를 걷어 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111) 그런가 하면 공익사업의 경우에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서 파업을 하더라도 거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문제도 시정되어야 한다. 철도파업이 70일 이상 진행되었지만 새마을, 무궁화 열차가 일부 축소 편성되었을 뿐 KTX열차는 결항 없이 운행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공익사업장의 노동3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파업은 노동력 제공의 거부로써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무임금의 고

108) 네덜란드 헌법 제19조와 노르웨이 헌법 제110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근거규정이다.

109) 재벌 일가의 탈법 상속에 대한 상속 증여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가가 주요 주주가 되고 그로부터 삼성의 막대한 이윤을 배당받아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면, 소유지분을 넘는 경영권을 인정하되(이게 재벌이다) 그에 상응하는 무한책임 재벌총수에게 묻는 기업집단법 등과 같이, 기존의 재벌개혁과 같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정세은, “87사회경제체제의 한계와 과제”.

110) 나는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민형사적 제재를 위한 소송들은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으로 본다. 김종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30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김종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헌법적 관점에서”, 민주법학 제60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참조.

111) 윤애림, “박정희-박근혜 체제 청산은 노동기본권 복원으로부터”, 매일노동뉴스, 2016.12.22.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39>>.

통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단체행동이지만, 필수유지업무라는 이름으로 상당 부분의 노동력 제공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사용자인 철도공사를 전혀 압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현행 체제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조약들을 조속하게 가입·비준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파견,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의 편법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그 재발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정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¹¹²⁾

5. 기본적 인권의 확대 심화

기본적 인권의 보호 및 신장이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집단적으로 감시와 비판을 가능케 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이 더 충실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헌법에 열거된 수많은 권리들에 대하여 그 개선책을 논할 여유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한국 정부는 1990년 국제인권규약 비준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였다. 헌법 제6조에 따라 이들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판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원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원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조약상의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국제연합이 주도적으로 채택한 여러 인권조약들이 기본적으로는 자유와 권리의 보편적 최저기준을 의미한다는 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인권의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이 정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112)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이 사실상 파견노동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고용이 계속되었으므로 직접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대응에서 우리 사회에서 재벌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보편적 기준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사실상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가짐을 뜻하는 것이다. 즉 국제인권조약상의 자유와 권리들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제권리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헌법에 개별 조문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나는 한국 헌법에서도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한 권리는 이 헌법과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본다. 이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보통 이런 성격을 갖는 국제인권조약으로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폐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고문 등의 철폐에 관한 협약’ 등이 있으나, 헌법적 성격을 갖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앞의 두 가지 규약만 포함시키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¹¹³⁾

6. 그 밖의 문제들: 적폐의 청산과 개혁

앞에서 나는 현행 헌법 중 유신헌법이나 군사독재의 잔재로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어서 새로운 세상의 설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운 설계와 관련해서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상화, 권력분립의 실질화라는 정치적 영역과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 노동중심 경제체제로의 재편이라는 경제적 영역,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확

113) 한편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외국의 헌법 가운데 눈에 띄는 하나는 기본권의 효력을 사인에게도 적용할 것을 명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이다. 남아공 헌법 제8조 제2항은 “권리장전의 규정은 해당 권리의 속성 그리고 해당 권리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의 속성을 고려해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를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대 심화라는 인권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 논의는 대부분 헌법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헌법의 변경—헌법 제정이든 개정이든—은 상당한 기간에 걸친 숙고와 치열한 토론을 필요로 하는 것 인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어낼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4개월이 다 되도록 광장을 밝히고 있는 촛불에 깃든 시민들의 염원과 목소리가 빠짐없이 모아지고 정리되고 정돈되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체제의 폐기와 새로운 체제의 구축은 헌법의 변경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지만, 박근혜 체제가 양산한 수많은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결과물들을 바로잡고 그러한 결과를 양산하는데 앞장서거나 방조한 공범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헌법하위적 조치들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헌법 수준의 변화가 없더라도 광장을 채워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을 호기로 삼아서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 경로로 제기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수렴 집적하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야3당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17년 1월 12일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퇴진행동은 대선 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6대 긴급현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이 제시한 6대 긴급현안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저지, 백남기 특검 실시, 언론 장악 적폐 해결,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철회, 박근혜표 나쁜 노동정책 청산 등이다.¹¹⁴⁾

둘째, 국가권력기구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검찰, 경

11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 2017.1.10.

찰 등 공안기구를 총체적·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공안통치 체제를 일상화하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꺾멸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가 파괴한 민주주의의 복원은 이러한 공안통치 체제의 청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검찰·경찰 등 공안기구의 권력을 분산·해체하고, 그 권한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¹¹⁵⁾ 그리고 공안통치체제의 총본산이자 토대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¹¹⁶⁾

셋째, 재벌특혜청산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백지화에서 노동개악 폐기, 환경 적폐 청산에서 고등교육 개혁에 이르는 국민들의 수많은 요구들이 있다.¹¹⁷⁾

V.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수십 수백 가지의 대안을 상상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상상들이

115) 오동석, “국가권력기구 개혁 과제”,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엄: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제안한다(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2017.1.19.), 13-22쪽.

116) 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저지른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어김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즉 2017년 1월 5일 진보 성향 서적 온라인 아카이브인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대표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사상표현이 자유 탄압이 재개된 것이다.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 동족 간에 전쟁을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전히 전쟁상태(정전상태)인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은 과거에는 뺑깡이사냥, 현재에는 중복몰이를 끝없이 이어가면서 모든 진보적 정치의제들을 함몰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정치개혁도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다시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 유무는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7)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국민요구 국민대토론 참고자료(1), 2016.12.29., <<http://bisang2016.net/b/archive03/1052>>에서 표제만 요약한 것이다.

공개적인 장에서 개진되고 토론되고 채택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코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정치인이나 법률가의 상상보다 민중의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이다.¹¹⁸⁾ 그 민중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즉 촛불시위를 통해 발현되었던 광장을, 상시적 광장을 제도화하는 문제이다.¹¹⁹⁾

나는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인권과 권력구조의 문제를 다루면서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상설적 국민조직체를 통한 국민소환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즉 유권자 100명으로 구성된 지역조직을 두고 지역조직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에 의해 국회의 해산이나 국무위원의 해임,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등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적이 있다.¹²⁰⁾ 거기서 언급된 유권자 조직의 임무는 고위직 공무원의 소환에 대한 표결이었고 이런 생각은 매우 낮은 수준의 것이지만, 그 논의를 일정 부분까지는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 논의 중 국민참여기구(지역조직)를 상설화하고 어떤 안전을 스스로 상정하고 표결하여 공표하는 것까지는 소환제도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또

118) 의회의 거부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2011년 3월 24일 아이슬란드에서 시민 주도로 만들어졌던 헌법안은 집단지성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10여개에 불과하던 기본권조항이 31개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권리가 매우 상세하고 심도 있게 규정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 보장, 동물의 권리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헌법개정안은 <http://stjornlagarad.is/other_files/stjornlagarad/Frumvarp-enska.pdf> 참조.

119)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 주도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인터넷한겨레, “아래로부터의 헌법” 시대…시민참여형 개헌이 답이다”, 2017.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6846.html>. 한편 이 기사에서 “개정 절차는 헌법대로 하더라도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거나(한상희), “별도의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헌법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는”(강원택) 방안 또는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360명(지역 대표 180명, 영역 대표 84명, 계층 대표 96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서” 개헌민회를 구성하여 이들에게 개헌 작업을 맡기자(신용민)는 제안들도 언급되었다.

120) 김종서, “인권과 권력구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49-51쪽.

현행 헌법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상설국민참여기구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어떤 결정권을 부여할 필요도 없고, 현행 헌법하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구속력도 가지지 않지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¹²¹⁾ 상설국민참여기구는 국민의 객관적 의사의 확인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에 대한 찬반표결, 주요한 정책의 제안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물론 이들 기구가 행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법적 효과는 부여되지 않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 의사는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충분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 기구는 그 결정에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의미있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뒤늦게 이와 같은 생각을 매우 정교하게 다듬은 하나의 사례를 발견하였다. 즉 연방하원의원 1인에 대하여 추첨으로 뽑힌 시민 100명으로 구성되는 민회를 배정하고 여기서 결정권은 없지만 의회에서 다루어질 의안들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미국의 하원의원은 435명이므로 전국적으로는 43,500명이 민회의 구성원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전국 민회의 공동결정을 통하여 연방하원의 심의 강제를 할 수 있는—따라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인민원의 창설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¹²²⁾

이러한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어

121) 국회가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개헌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절차부터 논의해야 하며, 개헌 논의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가칭 ‘국민의 헌법개정안 작성과정 참여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 속에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추첨시민회의의 구성을 포함시키자는 하승수의 제안은 경청할 만하다. 하승수,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4쪽.

122) 케빈 올리어리 지음/이지문 옮김, 민주주의의 구하기: 미국에서 날아온 하나의 혁신적 개혁 모델(글항아리, 2014) 참조. 이 책에서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이 찬성해야만 헌법개정이 가능한 미국의 사정상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제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은 촛불시위를 고려하여 향후의 민주공화국 설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 일정한 제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광노현의 제안이 주목된다.¹²³⁾ 그의 구상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하나 이상의 지역민회를 조직하되, 100-300명의 시민을 추첨으로 구성하며, 매주 동일한 개혁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상층부는 조직되지 않으며(비조직의 조직화),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전문지원단을 조직하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하며 운영은 자원봉사와 모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일부 제안은 좌절되기도 했지만, 지지치 않는 열정과 발랄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도권 정치가 결코 떠올릴 수 없고 결코 실행할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제안은, 오로지 광장에서만 나올 수 있다.¹²⁴⁾

위와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가동 중이며 각계 전문가 53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조직까지 끝내고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¹²⁵⁾ 그런가 하면 여야 할 것 없이 박근혜 탄핵 후 60일 이내에 실시될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꿈꾸는 잠재적 후보자들은 이미 대선 행보에 나선 듯이 보이기도 하며,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을 예고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 구성이 불가능한 보궐선거의 특성상 각 후보자들에게는 별로 시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국회와 후보들의 움직임은, 거의 녀 달에 걸친 촛불시위를 통하여 상황을 이 지점까지 끌고 온 시민들의 역동성과 그 성과를 탈취해 가려는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방

123) 광노현, “탄핵이후 국면, 시군구 지역민회로 돌파하자”, 허핑턴포스트, 2016.12.12.

124) 광노현의 지적처럼 비조직의 조직화라는 형태를 취한다면 그 시작은 수도권보다는 오히려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125) 영남일보, “국회 개헌특위 공청회 계속…분야별 헌법규정 의견수렴”, 2017.1.26.

치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소리높여 광장에서 외쳤던 요구들과 함성들은 기약없이 외면되고 말 것이고 우리는 87년 후 30년 만에 다가온 이 기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며, 2016-17년에 걸친 이 항쟁은 또 다시 미완의 혁명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필요한 것은 촛불의 요구를 법과 제도 그리고 구체적 정책의 변화로 연결·가시화해 내는 것이다. 엄청난 압력으로, 한 주 한 주 커져가는 함성으로, 박근혜가 거짓으로나마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주저하던 여야의원들을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하도록 압박했으며,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도록 하고 마침내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했던 것처럼, 그리고 현재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할 것이 명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광장에서 그려왔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과 그것을 그려가는 우리의 목소리가 저들의 국회에서, 저들의 개헌특위에서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매우 현실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절실하다.

법률의 개정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헌법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자. 지금 당장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므로, 그리고 예상되는 개헌특위의 다음 움직임은 공식적으로 발의할 헌법개정안의 채택이 될 것이므로, 당장 필요한 것은 개헌특위를 통하여 국회가 발의할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촛불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이나 국회법, 기타 어떤 법률에도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개헌특위를 통해서건 그렇지 않건—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를 담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을 위한 참고자료집으로 <100대 촛불개혁과제 대국민 제안>을 펴냈다.¹²⁶⁾ 100대 과제 중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도 있지만 헌법개

126)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100대 촛불개혁과제 대국민 제안(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참고자료집,

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 나는 비상국민행동이 이 중 헌법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야3당에 제시하고 이들 과제를 시민들의 참여하에서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화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여야 대선예비주자들에게는 이러한 절차의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반드시 공개적인 방식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¹²⁷⁾ 이것이 가능해질 때 촛불시민이 원하는 민주 공화국은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07.2.18.).

¹²⁷⁾ 지난 2월 15일 국회에는 김종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의안번호 5639).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가 제시한 안과도 유사한(하승수, “개헌특위 대신 ‘국민개헌참여법’을”, 허핑턴포스트, 2016.12.27.자,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13861154.html>, 검색일: 2017.2.27.)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헌법개정시민회의를 두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대국민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기구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가 벌써 전체회의만 10차례 진행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법률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출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실제 언론에서도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야 대선주자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경선, “이제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다”, 허핑턴포스트, 2016.12.17.
- 고영남,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당이득”, 민주법학 제5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3, 99-139쪽.
- 곽노현, “탄핵이후 국면, 시군구 지역민회로 돌파하자”, 허핑턴포스트, 2016.12.12.
- 구갑우, “시민혁명이 약탈당하지 않으려면”, 경향신문, 2016.12.4.
-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 권영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2004, 125-157쪽.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 김명식, “사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州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1, 1-28쪽.
- 김명환, “새로운 언어와 정치의 예감”, 경향신문, 2016.12.23.
- 김문현, “헌법개정 기본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 49-82쪽.
- 김병권 외,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창, 2007.
-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안암법학 제25권, 2007, 1-43쪽.
- 김중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4호, 2014.3.1., 317-367쪽.
- _____,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저스티스 통권 146-3호, 한국법학원, 2015.2, 282-318쪽.
- _____, “인권과 권력구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민주법학』 제12호, 1997, 32-52쪽.
- _____,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헌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2, 1-50쪽.
- _____,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헌법적 관점에서”, 민주법학 제60호, 2016, 181-225쪽.
- _____,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30호, 2006, 11-47쪽.
- _____,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민주법학 제56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12, 57-96쪽.
- _____, “헌법과 정치개혁”,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한국지방정치학회, 205.4.29.
-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토지공법연구 제29집, 2005. 12, 483-510쪽.
- 박규하, “정치적 기본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이론”, 외법논집 제28집, 2007. 11,

67-115쪽.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국민요구 국민대토론 참고자료(1), 2016.12.29., <<http://bisang2016.net/b/archive03/1052>>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 2017.1.10.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공화국을 위한 열세 가지 질문, 응진지식하우스, 2011.

박홍규, “1948년 헌법과 조봉암”, 민주법학 제41호, 2009, 145-174쪽.

서경석, “헌법개정 논의 구조”, 민주법학 제31호, 2006, 47-71쪽.

송기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7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9, 193-227쪽.

오창익,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한 헌정질서”, 경향신문, 2016.11.9.

유진숙, “국고보조금제도형성과 담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2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247-269쪽.

윤애림, “박정희-박근혜 체제 청산은 노동기본권 복원으로부터”, 매일노동뉴스, 2016.12.22.

윤재만, “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민주적 정당조직과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6, 39-75쪽.

음선필, “한국헌법과 국민투표”, 토지공법연구 제33집, 2006. 11, 441-463쪽.

이경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민주법학 제26호, 2004, 223-256쪽.

_____,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 책세상, 2005.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십포지엄: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제안한다, 2017.1.19.

정세은, “87사회경제체제의 한계와 과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 발표문, 2016.12.26.

주성수,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7, 177-205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15.2.

케빈 올리어리 지음/이지문 옮김, 민주주의 구하기: 미국에서 날아온 하나의 혁신적 개혁 모델, 글항아리, 2014.

하승수, “개헌특위 대신 ‘국민개헌참여법’을”, 허핑턴포스트, 2016.12.27.자

_____,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직접정치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대전 4차시국토론회), 2017.1.13.

허석재,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 다른백년, 2017.1.10.

<Abstract>

Candle Light Protest & Constitution Building

Kim, Jong-Seo

Professor, PaiChai Univ.

Park Geunhye is on the verge of being impeached. A series of ever-growing million-strong protests since late October, 2016 forced the Parliament to finalise the impeachment process. But the impeachment of Park can not be the end. What more than 10 million citizens have requested through candle light demonstrations for nearly four months is beyond her impeachment. They want liquidation of the ancient regime and building a democratic republic of their own design. If so, the building of a totally new constitution, not just alteration or revi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s necessary.

Though elimination of the remnants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including the Yushin Regime takes precedence over any other tasks, we can not stop there. Candles can proceed to the revolution only when liquidation of the past, diagnosis of the present, and design of the future go together. Regarding these,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imaginative power of the people is far richer than that of politicians or lawyers, and that we have to draw up the plan to find out and mobilize and utilize the imaginative power of the people. Therefore we need to return again to the candles in the agora.

What have we claimed in the agora, for such a long time and so strongly? The song “Art. 1 of Korean Constitution” we have enjoyed singing since 2008 answers the question. To put it in plain terms, what the citizens with candles have been demanding is a democratic and republic country where people, the sovereign, can

and do fully exercise their sovereignty. This means restoration or recovery of the sovereignty, and withdrawal of representation, both by the people.

What is necessary to build a democratic republic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Citizens' reques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roduction of direct democracy including recall system; second, normalization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third,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construction in which the system of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substantially functions; fourth, restructuring the chaebol-centered economy into a labor-centered one; and finally full protection and promo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se tasks can not be assigned to old political circle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candles in agora into a citizens' assembly, and thereby to systematize the people's demands into a concrete plan for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reform. Then we strongly exert pressure on the main stream political parties to accept the demands and to institutionalize the plan. Until then, we must and will keep raising the candle light higher and brighter.

Key phrases: candle light protest, democratic republic, direct democracy, 1987 regime, constitution building, citizens' assembly

【특집】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

김중서

배재대 교수, 헌법학

kjsminju@gmail.com

<국문초록>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을 밝혔던 촛불, 그 항쟁을 통하여 시민들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렸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나라, 대표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사결정을 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나라, 그리고 모든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하는 나라, 이것이 촛불시민이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것이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가 그것이다.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방안으로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 및 국민표결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소환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국민투표에 의한 탄핵결정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의민주주의 정상화 방안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제도 개선, 그리고 국회의 기능 강화와 고위공직자 임명제도 개선 및 사법권력의 구성방식과 권한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모색하면서, 일부 정치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시민의회 구상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그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심사위원: 박지현, 최관호, 한상희

투고일: 2017. 6. 8. 심사개사: 2017. 6. 8. 게재확정: 2017. 6. 20.

** 이 글은 <87년 민중/노동자 항쟁과 2017년 촛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2017년 봄 정기학술대회(2017. 5. 26.)에서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지정토론자 송기춘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요컨대, 이런 논의들을 통하여 필자는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시민들의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민주공화국,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헌법개정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 III.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
- IV.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 V. 어떻게 할 것인가?

I. 들어가며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그 춥고 길었던 겨울에 촛불을 밝혀두고 광장으로 나섰던 것은 단순히 박근혜 하나를 파면 구속 처벌하자는 것만은 아니었지만, 촛불시민들이 원했던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촛불시민으로 가득 찼던 광장은 박근혜 퇴진/탄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이른바 ‘부정의 연대’를 보여줬지만,¹⁾ 탄핵에 이어진 대선국면에서 이러한 연대가 목표 지향적인 긍정의 연대로 이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시민들이 헌법 제1조가 천명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한목소리로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던 것이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 집회부터 3월 10일 파면결정 때까지 지속된 촛불집회를 참석하면서, 필자는 광장과 거리에서 시민들의 헌법적 사고와 그 표현을 날 것 그대로 접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1) 2017년 4월 28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개최한 제2회 ‘찾아가는 세미나’에서 “한국 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던 박동천 교수의 표현이다.

과정에서 필자는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위하여 헌법의 개정을 넘어서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87년 헌법과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그 바탕 위에서 청산 대상과 개선 과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치·경제·사회적 과제들과 그 헌법적 해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러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주도성과 민중의 상상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²⁾ 이 글에서는 그간의 고민들 가운데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의 뒷받침이 될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문제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광장에서 시민들이 목놓아 불렀던 노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말해주듯이, 촛불시민이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국가인 동시에 공화국이 되고 그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었다.³⁾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주권 회복이고 주권 회수이며 대의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⁴⁾ 그리고 이는 헌법상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이라는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여 필자는 이 글에서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을 위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가 그것이다.⁵⁾ 이를 통하여

2)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민주법학 제63호(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17), 77-137쪽.
 3) 촛불집회가 진행되어 온 과정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를 고리로 시민사회적 기본권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전진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국순옥,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국순옥 지음, 민주주의 헌법론(아카넷, 2015), 411쪽.
 4)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공화국을 위한 열세 가지 질문(웅진지식하우스, 2011), 100쪽.
 5) 애초에 필자는 매디슨의 민주주의와 공화제 개념에 의거하여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를 ‘민주’와,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를 ‘공화’와,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참여’와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매디슨은 민주주의를 직

나는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해 보려고 한다.

II.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전국의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국민의 힘만으로는 헌정과괴범죄를 저지른 자를 퇴진시킬 수도 처단할 수도 없다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이었다. 주권자라는 우리 시민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때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지만, 정작 그 전까지는 고작해야 국회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을 들면서 마음 졸일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이 점에서 적어도 미래를, 새로운 공화국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촛불시민들

집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수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로, 공화제를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하는 체제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디슨, “페더럴리스트 10”,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존 제이 지음, 김동영 옮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한울아카데미, 1995), 65쪽. 그러나 이러한 18세기적인 매디슨의 입장은 현대적인 공화국 또는 공화주의 관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도서출판 길, 2010), 33쪽(“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지배가 법치를 통해 실현되는 나라”);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49-51쪽(“비지배적 상호성”: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조건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견제력을 보장받는 적극적 시민성으로서의 전환을 의도하며, 상호 관계를 통해 비지배적 조건이 행위의 준칙으로 내재화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원칙); 김경희, 공화주의(책세상, 2009), 12쪽(“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측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신용인, “민주공화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8권 제3호(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55쪽(“법치, 비지배 자유, 시민적 덕성 등의 공화적 요소의 구현을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이념”) 등 참조 상호간에 차이는 있지만 이들 입장들에 비추어보자면, 내가 제시한 세 가지 중 앞의 둘은 민주공화국의 ‘민주’에, 마지막 하나는 ‘공화’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광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고권력인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으므로 위임된 권력이 사유화되거나 오남용 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국민소환제가 핵심이었다.

대의제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주권자와 통치자의 분리에서 온다고 할 때,⁶⁾ 이를 시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권자가 곧 통치자가 되는 것, 즉 국민이 직접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치명적 결함으로 신중한 심의의 결핍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지만,⁷⁾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 주도 헌법 개정 과정을 보면 이는 기우에 불과함이 입증되었다고 할만하다.⁸⁾ 오히려 현실적 난관은 신중한 심의의 결핍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그러나 대의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영똥한 데 돈을 쏟아 붓게 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사례들이 허다함을 고려해 보면⁹⁾,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통한 시민의 참여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보완책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¹⁰⁾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미디어,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6) 김종서, “인권과 권력구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민주법학 제 12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7), 32-33쪽.

7)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안암법학 제25권(안암법학회, 2007), 29쪽; 주성수,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7), 182쪽; 권영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2004), 131-132쪽; 김문현,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한국공법학회, 2006), 56-57쪽 등.

8) “‘아래로부터의 헌법’ 시대...시민참여형 개헌이 답이다”, 인터넷한겨레, 2017. 1. 1.,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7. 1. 31. 신중한 심의가 결핍된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반론으로는 박규하, “정치적 기본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이론”, 외법논집 제28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05-107쪽 참조.

9) 4대강 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을 생각해 보라.

이용한 성공적인 시민 직접참여 사례가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이 확인되고 있다.¹¹⁾ 이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례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성공의 조건들이 있다.¹²⁾

- 시민은 일상적 상시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그 제안을 집단토론과 표결에 부칠 수 있어야 한다.
- 시민의 합의 결과는 정치와 행정에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 공문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쉽게 기록되어야 한다.
- 다양한 집단별 자치가 존중되고 소수자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집단의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평적 의사결정구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 시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변할 정치적 주체를 만들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항목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나 선결조건이라기 보다는 21세기형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논의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 및 국민표결 등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의 도입 시행과 관련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국민소환제

촛불항쟁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국민소환제임은 두

10) 이진순 외 지음, 들도 보도 못한 정치(문학동네, 2016), 19쪽.

11) <들도 보도 못한 정치>에는, 직접민주주의적인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선보이고 있는 새로운 정당들(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엔 코무,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스페인의 포데모스, 아이슬란드의 해적당 등),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뉴질랜드의 의사결정 플랫폼 루미오, 브리게이드, 데모크라시 OS, 폴리스 등 시민참여애플리케이션)이 소개되어 있다.

12) 이진순 외 지음, 앞의 책, 21쪽.

말할 필요가 없지만, 소환제 요구가 한국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점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원국이면서, 늘 ‘의회’주권을 강조해 온 영국에서 제정된 ‘2015년 하원의원소환법’(2015. 3. 26. Recall of MPs Act 2015)¹³⁾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성문헌법이 없고 국민주권이 아니라 의회주권이란 말이 더 애용되는 나라에서 주권자인 의회의 구성원을 유권자가 소환하는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대표를 통한 주권 행사라는 근대국가의 주권 원리에 일대 변경이 요구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¹⁴⁾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률안이 다수 제안되었다. 2016년 구성된 제20대 국회에는 3건의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¹⁵⁾ 이들 법안은 대체로 선거권자 15% 이상의 발의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단, 박주민 의원안은 투표자 다수의 찬성)으로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환 찬성 투표자가 유권자의 10% 이상이면 소환되는 영국에 비하여 과도한 요건으로 보이긴 하

1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25/contents/enacted/data.htm>>, 검색일: 2017. 5. 31. 이 법에 따르면 하원의원은 세 가지 경우에 소환청원절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첫째, 영국 내에서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이 확정된 경우, 둘째, 윤리위원회 보고에 따라 하원의장으로부터 회기 중 10일(또는 회기와 관계없이 14일)간의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리고 셋째, 의회윤리법에 따른 범법행위(비용청구를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역구의 소환청원을 요구하는 투표에 회부되며 소환에 찬성하는 투표자가 등록유권자의 10% 이상이 되면 소환청원은 성공하고 하원의장의 고지로 의원신분은 상실된다.

14)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00-101쪽.

1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법률안(2016. 12. 12., 의안번호 4324),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 등 33명이 제안한 법률안(2017. 2. 3., 의안번호 5431),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법률안(2017. 2. 13., 의안번호 5606)이 그것이다. 17대-19대 국회 때도 각 1건씩 국민소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의결조차 하지 못한 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지만,¹⁶⁾ 이런 구체적 시도를 담은 법률안이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주민소환투표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실제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예는 80여건이고, 그 중 투표가 실시된 것은 8건인데,¹⁷⁾ 이 중 개표가 이루어진 것은 하남시의원 2명에 대한 소환뿐이었다.¹⁸⁾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권자의 10%—20%의 서명이 필요하고, 개표를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며, 소환을 위해서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실제 소환까지 이루어진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투표가 실시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소환 5건의 경우 단체장들에 의한 조직적인 투표 참여 방해로 인하여 개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 크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요건을 투표자의 4분의 1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으나¹⁹⁾ 채택되지 못했다.²⁰⁾ 생각건대, 유무형의 권력 행사를 통하여 투표 불참을 유도하여 개표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우려되는 단체장의 경우는 물론, 지역 유권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투표자 3분의 1이라는 개표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¹⁾ 나아가

16) 영국에서 10%의 찬성 투표자만으로 소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미 하원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직무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소환 법안들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또는 위법·부당 행위를 사유로 삼고 있어 차이가 있다.

17)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하남시장(2007), 제주도지사(2009), 과천시장(2011), 삼척시장(2012)과 구례군수(2013)가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으로는 하남시의원 3명(2007)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2016. 6), 13쪽 참조.

18) “중앙선관위 “주민소환 개표 요건 완화해야””, 경남도민일보, 2016. 6. 30.자.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2016. 6).

20) “중앙선관위 “주민소환 개표 요건 완화해야””, 경남도민일보, 2016. 6. 30.자.

21) 실제 개표가 이루어졌던 하남시의원 2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도 투표율은 두 건 모두 37.6%에 그쳐 3분의 1을 가까스로 넘기고 있다. 중앙선거관

국회의원선거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소환 요건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투표자 다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박주민 의원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²²⁾

그러나 이를 두고 촛불민심의 즉각적 반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촛불집회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까?

필자는 지난 3월에 발표한 글에서 대통령 소환 제도를 든 예로서 베네수엘라와 대만의 경우를 제시한 바 있지만, 대만의 경우는 국회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민투표로 소환을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 베네수엘라는 소환 투표는 물론 소환 발의 자체도 국민이 하도록 되어 있다.²³⁾ 대만의 경우는 탄핵 절차와 유사하고 베네수엘라는 탄핵을 국민소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탄핵절차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은 베네수엘라의 방식이 아니라 대만의 방식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탄핵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 헌법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을 국민소환투표로 대체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탄핵소추는 현재대로 국회에서 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탄핵결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탄핵(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탄핵소추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현재의 의결정족수는 적절치 않으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위하여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탄핵결정 역시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유효투표 중 다수의 결정에

리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13쪽.

22)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하여 야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소환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23)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99-100쪽.

따르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대표인 국회의 절대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탄핵소추의 수용 여부를 선출되지 않은 9명의 법복귀족에게 맡기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민 발의에 의한 소환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민발안과 국민표결

그러나 국민소환은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일단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뒤에 그 공직자를 쫓아내는 것이지, 그 잘못된 결정을 예방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책임은 그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져야 한다. 이처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국가의사에 대한 결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결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주권자가 스스로 법률 제정을 비롯한 국가의사 결정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이다.

먼저 국민발안은 정책발의와 그 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일정수 이상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헌법안, 법률안이나 정책이 발의되면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하고 그 투표에서 다수가 동의하면 헌법·법률 등이 확정되거나 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즉 국민투표가 필수적이면서 구속적이라는 점에서 국민발안은 집단적 청원권 행사와 다르다.²⁴⁾ 또한 이는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 자체의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선택한 사안에 대해 가부결정만을 하는 국민표결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민주적이다.²⁵⁾

현실적으로 이들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의 발

24)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토지공법연구 제29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488쪽.

25)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25쪽; 박경철, 위의 글, 488쪽.

의 제출권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정기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기존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⁶⁾ 그러나 국민발안 제도가 자칫 중우정치적 형태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세워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즉 공동체가 오랜 고민 끝에 도입하거나 탄생시킨 매우 훌륭한 제도를, 그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국민발안으로 폐기하거나 무산시키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 24개 주에서 국민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²⁷⁾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⁸⁾ 그러나 국민발안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판단을 거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발안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무릇 어떤 제도를 새로 시행할 때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부작용이 새로운 제도의 불가피한 결과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발안의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스위스의 경우 투표권을 가진 10만의 국민이 연방헌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을 요구할 수

26)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03쪽.

27) 대학의 입학사정에서 인종을 전형요소로서 고려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반대하여 이루어진 미시간주의 미시간민권발안(The Michigan Civil Rights Initiative, MCRI), 즉 제안 2(Proposal 2)는 공공기관에 의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효과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발안은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 7일 찬성 58%, 반대 42%로 통과되어 2006년 12월 22일 발효되었다. 이 제안의 합헌성은 연방법원에서 다투어졌지만 연방대법원은 6:2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 134 S. Ct. 1623 (2014).

28) 이는 이른바 ‘간접국민발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박경철, “대의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488쪽.

있으며(제138조 및 제139조), 달리 특별한 절차는 없다. 연방헌법의 전면 개정에는 특별한 형식적 제약이 없으나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초안의 형식으로 발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법률사항인 경우에는 5만의 국민 또는 8개 주(칸톤)가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²⁹⁾ 한편 연방 차원에서는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경우 헌법 또는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인민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23개이며,³⁰⁾ 그 요건은 헌법개정안의 경우 직전 총선거 또는 주지사선거 투표자의 3%(매사추세츠)에서 15%(애리조나 및 오클라호마), 법률안의 경우 2%(노스다코타) 내지 15%(와이오밍)까지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³¹⁾

한편 국민표결은 국가기관의 발의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법률안, 헌법개정안, 정책사항 등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표결을 직접적 의사결정 제도라고 할 수는 없고,³²⁾ 직접민주제로서의 국민표결이 되려면 헌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 실시가 강제되어야 하고, 일단 투표가 실시되면 그 결과는 구속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³³⁾ 국민표

29) 스위스 인구가 84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헌법개정 발안의 경우 요구되는 투표자 수는 인구의 1.2%,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발안의 경우에는 0.6% 수준이다. 이 비율을 인구가 5,140만 명인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헌법개정안의 경우 60만 명, 법률의 경우 3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신헌법 직전까지 일반 국민들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고, 1971년 당시 남한 인구가 3,288만여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6차 개정헌법상 50만 인의 헌법개정안 발의 요건은 인구의 1.5% 남짓이었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30) 헌법개정안에 대한 인민발안을 채택한 주는 18개, 법률안의 인민발안을 채택한 주는 21개이며, 양자 모두를 채택한 주는 15개이다. 한편 주 의회가 법안을 인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모든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https://web-beta.archive.org/web/20160211180917/http://www.iandrinstitute.org:80/statewide_i&r.htm>, 검색일: 2017. 6. 21.

31) <https://web-beta.archive.org/web/20160211180917/http://www.iandrinstitute.org:80/statewide_i&r.htm>, 검색일: 2017. 6. 21.

32)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24-25쪽.

33)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훗날 이후를 생각한다”, 104쪽.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실시되는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결이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는 나라는 스위스인데, 스위스헌법은 두 종류의 국민투표, 즉 의무적 국민투표와 임의적 국민투표를 두고 있다.

먼저 제140조는 필수적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두 가지로 즉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하는 경우³⁴⁾와 국민투표에만 회부하는 경우³⁵⁾로 구분하고 있다.³⁶⁾ 연방헌법의 개정 중 일부는 국민투표에만 회부되는데 반하여 일부는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된다. 이는 헌법개정안의 발의주체에 따른 차이로서, 전자의 경우는 투표권자 10만 명 이상의 국민발안에 의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헌법개정의 경우이며, 후자는 국민의회(National Council)와 전주(全州)의회(Council of States)³⁷⁾ 중 하나에 의하여 제안되거나 연방의회(Federal Assembly)에 의하여 포고되는 전면적 또는 부분적 헌법개정의 경우이다. 한편 스위스헌법 제141조는 투표권을 가진 5만의 국민 또는 8개 주가 법령이 공고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임의적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³⁸⁾

34) 이러한 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는 a. 연방헌법의 개정, b. 집단적 안전보장기구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에의 가입, c. 헌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긴급으로 선언된 연방법률—스위스헌법 제165조는 시행의 연기가 허용되지 않는 법률에 대하여 각 의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처럼 긴급성이 선언된 법률이 1년 이내에 국민투표 또는 국민투표 및 주투표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의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35) 그 대상은 a.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b. 연방의회에 의하여 부결된 일반적 발안의 형식으로 행해진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투표권을 가진 10만의 국민은 연방헌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을 할 수 있다(제138조 및 제139조), c. 양 의회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헌법 전면개정의 여부의 세 가지이다.

36) 국민투표에 회부된 경우에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된 경우는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과 주의 과반수 승인으로 채택된다(스위스헌법 제142조).

37) 스위스헌법 제148조 제2항.

38) 임의적 국민투표의 대상으로는 a. 연방법률, b.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 c.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연방법령, d. 일정한 국제조약—유효기간이 한정되지 아니하고 폐기의 통고가 정해지지 아니한

스위스헌법의 규정에 비추어보건대 의무적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일 경우에, 임의적 국민투표는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일 경우에 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른바 긴급성 선언 법률은 두 가지 국민투표 모두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의무적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중 헌법상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에 국한되므로 이는 사실상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단적 안전보장기구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에의 가입은 주권의 제약을 의미하는 헌법사항과 관련된 것인 반면, 임의적 국민투표의 대상인 국제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스위스헌법에서 규정한 의무적 국민투표의 일부(국민발안에 의한 것)와 임의적 국민투표 전부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본다면 국민표결이 아니라 국민발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위스헌법의 이러한 제도들은 직접민주제적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을 구상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⁹⁾

III.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

직접민주주의의 본원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국제기구에의 가입과 관련된 조약, 중요한 법률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시행에 연방법의 제정이 필요한 조약—이 포함된다.

39)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하여 국민표결의 의미를 조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양당 대립 구도 아래에서 다수당의 폭력적 의사진행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좌절된 데서 볼 수 있듯이 소수파의 몹시에 의한 국회 기능의 정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의 모든 주가 의회의 결정으로 법률안을 인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앞의 주 30) 참조). 오히려 다당제 구조가 현실화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반의결정족수는 충족할 수 있지만 국회선진화법 소정의 정족수는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장 조기에 실시되는 전국적 선거에서 국민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포괄할 수는 없기에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불가피하고 또 중요하다.⁴⁰⁾ 또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이 정비되어야 하고, 대의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내적 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⁴¹⁾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론⁴²⁾과 함께 제기되는 정부형태 중심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교/국방과 기타 내정 분야를 나누어 관장하는 이원집정부제든 의회 중심의 정부형태인 영국식 의원내각제⁴³⁾든 정부형태 개편론자들

40) 박동천 교수는 다른 관점에서, 즉 직접민주주의라고 해서 ‘대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의제, 특히 의회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동천, “한국 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2회 찾아가는 세미나 발표문)(2017. 4. 28.), 9쪽.

41)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러 부문들 간의 권력분립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이 그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서로를 적절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부의 내적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그 결함을 보완하여야 한다. 미국헌법 제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매디슨의 견해이다. 매디슨, “페더럴리스트 51”, 315쪽.

42) 최장집 교수에 따르면 제왕적 대통령론이란 미국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초법적 정책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비판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수적 공화당에 대해 민주당이나 자유주의파의 입장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권위주의 세력들이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제기한 것이고,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의 경우 야당과 의회를 제압하고 견제로부터 벗어나 사회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판)(후마니타스, 2005), 176-178쪽 참조. 이런 맥락에서 그는 한국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 논의의 배후에는 일종의 ‘담론동맹’, 즉 거대 언론과 보수적인 야당의 동맹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최장집, 같은 책, 177쪽.

43) 박동천 교수는 ‘내각제’, ‘의원내각제’ 또는 ‘내각책임제’ 등의 용어가 매우 잘못된 것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교수는 이들 용어가 의회중심성을 교묘히 희석시키고 행정부인 내각이 중심이 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영국식 정부형태가 정국불안정 요인을 안고 있다는 매우 부정확한, 아니 차라리 근거 없는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막고 있다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특정한 정부형태를 그 자체로 절대화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정부형태는 다른 정부형태보다 낫거나 정부형태를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한국정치가 그간 보여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논의가 그것이다.⁴⁴⁾

그러나 근대국가가 성립한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형태로 자리 잡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각 정부형태는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장점이 정치적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정치적 축복이 될 수도 있다.⁴⁵⁾ 그러므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부형태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특정한 정부형태를 오랜 기간 성공시켜 온 정치사회적인 조건들이며, 이런 조건들의 구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⁴⁶⁾

고 비판하면서, 의회 중심의 영국식 정부형태를 ‘의회제’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동천, “한국 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 5쪽. 하지만 이 글에서는 헌법학의 일반적 용례에 따라 ‘의원내각제’란 용어를 사용한다.

44) 최장집 교수는 다른 관점에서 정부형태 개편론을 비판한다. 즉 정부형태 개편론은 현재의 세력구도에서 힘의 열세에 있는 세력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이 줄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분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제도화를 의제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시민사회 내 강고한 보수적 구조가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정치가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카르텔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대통령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60쪽.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해 보면, 곰곰이 되새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45) 국순옥, “공화제 군주국가와 의회제 민주주의”, 민주주의 헌법론, 322쪽. 박동천 교수는,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의회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삼되 행정부의 지위를 영국에서와는 다르게 설정하는 헌정 설계가 건국기에 필요했던 우연한 사정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박동천, 앞의 글, 13쪽.

46) 최장집 교수는 높은 대선투표율 등에 비추어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집정제, 내각제 등 핵심을 비껴간 논의보다는 차라리 대통령 직무공간을 현재의 청와대와 같은 제왕적 공간에서 좀더 일반 대중의 삶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는데(앞의 책, 261쪽), 12년 전인 2005년에 언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어찌면 이 점은,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의 정치가 극도의 정체 내지 퇴행을 겪어 왔다는 점을 말해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1. 대의민주주의의 조건 정비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두 조건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이다. 정당제도와 관련해서는 몇 달 전에 발표한 글에서 한국 정당제도의 중대한 결함으로서 정당의 창설이 매우 어렵다는 점, 과도하게 엄격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당내 민주주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제도, 그리고 정당정치를 국가기관의 틀 내로 왜소화시키는 정당해산제도 등을 언급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⁴⁷⁾ 정당제도에 대해서는 이로써 대신하고, 이 글에서는 선거제도에 집중하고자 한다.

1.1. 선거제도의 개혁

새로운 공화국의 건설과 관련하여 촛불집회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독일식의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⁴⁸⁾로의 전면적 전환,⁴⁹⁾ 결선투표제의 도입, 선거연령의 인하 등이 필요하다.⁵⁰⁾

그런데 사실 이들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은 오래 전부터, 최소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처음으로 이루어

47)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11-113쪽.

48) 이 제도는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두면서도 규모가 작은 지역구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유지시킴으로써 정치 엘리트의 수직적 책임성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62쪽.

49) 다수대표제에서 오는 투표가치와 결과가치의 불일치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인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타자결정으로 회화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민주주의의 참여 기능을 통하여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최소한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군순욱, “대안헌법이론”, 민주주의 헌법론(아카넷, 2015), 454쪽.

50) 그밖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이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무원·교사·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김종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헌법학연구 제18집 제2호(한국헌법학회, 2012), 35-45쪽 참조.

어졌던 200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이들 제도를 위해 반드시 헌법개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공식선거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여전히 기대안망으로 보이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거대정당들로서는 기존의 국회지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전면적인 또는 확대된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⁵¹⁾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볼 때 오히려 헌법개정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선거제도의 내용은 일정 수준까지는 헌법에서 직접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가 한국 헌법에 대해 가져 온 주요한 의문 중 하나는 의회주의를 표방하는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회=국회의 구성방식을 전적으로 법률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심지어 국무총리, 국무위원까지 그 구성방식을 헌법에 명시하면서도 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거로 구성되고 20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혼란 일도 아니다.⁵²⁾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⁵³⁾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개정 없이 공식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⁵⁴⁾ 지금은 대통령조차 헌법개정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대부분 국가는 헌법에서 직접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로 규율하는 국가

51)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07쪽.

52) 선거연령을 제외한 거의 전부를 법률에 맡기고 있는 독일이나, 선거연령과 의원정수 상한만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유럽과 영미 국가들이 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다.

53) 물론 결선투표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가능하지만(예: 프랑스) 논의의 편의상 대선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54)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둘러싼 이러한 찬반의 입장들이 잘 드러났다.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조기대선정국’과 ‘결선투표제’ 도입 논쟁, 2017. 1. 24.

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기회에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그 근거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밖에 결선투표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⁵⁵⁾ 유권자의 선택 기회가 1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그 도입 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문제는 호주식의 연기식 선호 투표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⁵⁶⁾ 요컨대,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 수준을 최소한 보편적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 촛불항쟁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은 물론⁵⁷⁾ 전 세계적으로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⁵⁸⁾ 우선 문

55) 허석재,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 다른백년, 2017. 1. 10., <<http://thetomorrow.kr/archives/3618>>, 검색일: 2017. 2. 10.

56)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에 따르면,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순위를 표기해야 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지지정당에 대해 6개 이상 선호도 표시를 하거나 후보자별로 12개 이상 선호도 표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http://www.aec.gov.au/Voting/How_to_Vote/>, 검색일: 2017. 2. 10. 참조. 하원의원 당선자 결정은 1위 기표수를 우선 집계해 여기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로 하고,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2위 기표수를 남은 후보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한 명씩 탈락시켜 과반 득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2위 기표수 배분은 호주노동당과 동맹의 양당선호도 조사를 위하여 모든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http://www.aec.gov.au/Voting/counting/hor_count.htm>, 검색일: 2017. 6. 21.

57) OECD 34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는 16세, 나머지 32개국은 18세를 선거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가 한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2016. 8. 25), 27쪽.

58)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라는 단체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39개국 중 국가적 선거에서 18세를 초과하는 선거연령을 정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20개뿐이다. 반면 16세가 8개국, 17세는 북한을 포함하여 3개국이며 87%가 넘는 208개국이 만 18세를 선거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question=VR001#g>>, 검색일: 2017. 5. 22.

제되는 것은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이 19세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선거연령을 보편적 수준인 18세로 낮추는 것은 광장의 시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었지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이는 어떤 핑계를 내세워도 변명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 국회가 후안무치함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로 접근하는 한 아마 앞으로도 선거연령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의 전면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헌법개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즉 ‘만 18세에 도달한 국민에게 연령을 이유로 선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헌법의 선거권 조항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⁵⁹⁾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⁶⁰⁾ 이처럼 청소년의 정당 활동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제한하는 것일 뿐이다.⁶¹⁾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던 청소년 역시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이다. ‘개학 전에 탄핵하라’는 피켓을 든 초등학교생도 있었지만, 최소한 중학생 정도, 백보를 양보해도 최소한 고등학생에게는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이 되던 15세 당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은 이 학생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기 때문이

59) 미국헌법 수정 제26조(1971)가 이런 식의 규정이다. “연령 18세 이상의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 정태호, “권리장전의 현대화”,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헌법 다시 보기: 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창비, 2007), 283쪽.

60) 김종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41쪽.

61)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청소년 권리의 박탈이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법적 전형이 청소년보호법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예로는, 김도현,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민주법학 제22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53-84쪽, 특히 55-58쪽 참조.

다. 즉 청소년들이 최초 선거권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공직을 유지하는 대통령 등 공직자의 선거시점부터는 향후의 선거권 행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8세에 첫 선거를 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 14세(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 또는 13세(대통령)부터는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선거의 종류와 공직자의 임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중학교 입학연령인 12세 또는 고등학교 입학연령인 15세 정도 수준에서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의 자격을 선거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하등의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⁶²⁾

그러나 우리 국회는 12—15세의 정치활동은커녕 최소한의 장치로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자는 제안조차 거부했다. 국회의 거부 논리는 한마디로 ‘학교를 정치관으로 만들자는 거냐?’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싶다.

정치란 삶의 모든 수준에서, 모든 영역에서 자원과 권력의 배분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 일에서 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학생들이 정당활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마침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 때 그들은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나라의 대표를 선출할 자격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을 때 청소년은 비로소 완전한 시민이 된다. 그리고 그런 시민이 학교에서 발언권을 가질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혁신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바로 학생의 시민화에서 출발해야 한다.⁶³⁾

62)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10쪽.

63) 지금 당장 합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불법의 위협을 무릅쓰고 학교의 혁신과 변혁을 위하여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이고 기성세대의 죄악이다. 청소년을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 청소년들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학교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열쇠가 될 것이다.

1.2. 대표(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임기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1회 연임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의 의중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근거로는 흔히 국가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민 선택의 보장 등이 내세워지고 연혁적으로 멀게는 1952년 제1차 개정헌법, 가깝게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의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장기집권의 위험성이다. 이승만도(1954) 박정희도(1969, 1972) 위헌적인 개헌을 통하여 3선과 종신집권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런 위험이 없어졌는가? 우리는 지난 탄핵국면을 통하여 5년 임기가 얼마나 긴 기간인지를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처절하게 체험한 바 있다.⁶⁴⁾ 물론 우리 촛불시민들은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을 자행했던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승리를 거두었으므로 과거와 같은 장기집권 시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체제에 대한 우리의 진단은 과거 정부에서 제기했던 것과는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태를 낳은 87년 헌법과 87년 체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셈이다. 즉 단임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나 되어야 하는가?’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왜 또 4년이나 되어야 하는가? 너무 길지 않은가?

필자는 늘 이들 공직자의 임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2년 임기에 1회 연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는 매우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 이야기에 찬성하는 이는 전혀 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왜 대통령 임기는 2년으로 하

64) 하승수도 4년 중임제는 8년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경향신문, [공화국을 묻다-하승수]“우리의 삶, 우리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 2016. 10. 12. 반면 박명림은 단임제 헌정구조를 대통령의 탈당으로 인한 지배당-반대당 없는 비정당 정부가 반복된 원인으로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241쪽.

면 안 되는지 설명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해밀턴의 예를 들 수 있다. <연방주의자 논설>에서 해밀턴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한 것을 두 가지 이유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짧은 관직의 임기로서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짧은 임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일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작은 영향력 때문에 자신을 불편한 상황이나 위협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그 이유라고 한다.⁶⁵⁾ 둘째, 4년의 임기는 어느 정도는 행정부의 안정성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 자유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⁶⁶⁾ 여기에다가 대통령제를 취하는 현존하는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⁶⁷⁾

그러나 해밀턴의 논리는 4년 임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2년 임기가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직의 임기가 짧을수록 중임은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재직 중 선거운동이 일상화되어 공정성 문제가 상시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클 것’이고 따라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그 통제 가능성을 남겨두고 안정적인 임기의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국민을 위하여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⁶⁸⁾ 일정 기간의 임기 보장이 강력한 집행부를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제에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설명보다는 훨씬 더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4년 임기제가 국민소환을 전제로 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제받지 않는 4년 또는 5년 임기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민의

65) 해밀턴, “페더럴리스트 71”, 426쪽.

66) 해밀턴, 위의 글, 427쪽.

67) 특이한 예로는 의회에서 간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은 허용하지 않되 연임이 아닌 중임은 허용하는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헌법 제176조.

68) 송기춘,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에 대한 토론”, 87년 민중/노동자 항쟁과 2017년 촛불(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년 봄 정기학술대회, 2017. 5. 26), 142쪽. 이 학술대회에서 송기춘 교수는 나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였다.

신뢰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국민투표도 한 방법이지만,⁶⁹⁾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똑같이 4년으로 하되 그 주기를 2년마다 교차되도록 설계하는 것⁷⁰⁾은 추가적 비용이 들지 않아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⁷¹⁾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원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미국 헌법은 이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미국헌법이 하원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은 민중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하원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이중삼중의 의회통제수단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⁷²⁾ 그러나 미국헌법이 배제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1년의 단기임기이다. 즉 하원의 주요 업무인 연방 입법과 외교통상분야 입법에는 각 주의 제도와 문화가 갖는 특징들은 물론 외국의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포괄적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1년으로는 부족하지만 2년이면 부족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 1년이라는 단기 임기를 적용할 경우 계속 재임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한 부정확한 수단의 사용에 대한 유해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격년제 선거는 국민의 자유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던 것이다.⁷³⁾

요컨대, 필자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최소한 격년제로 국회의원을 교체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야

69)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114쪽.

70) 송기춘,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에 대한 토론”, 142쪽.

71)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를 일치시키되 중간평가로서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하자는 제안도 있다. 박명림, “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헌법 다시 보기: 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창비, 2007), 88쪽.

72) 매디슨, “페더럴리스트 52”, 320-324쪽은 주로 이런 관점에서 격년제 하원의원 선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73) 매디슨, “페더럴리스트 53”, 325-330쪽.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매우 강한 불신이다. 앞서 보았듯이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시키는 비정기적인 소환이라는 방식보다는 비교적 빈번하게 실시되는 정기적 선거를 통한 심판이 국민들의 의식에 더욱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기관을 평가하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국회가 항상 최하위였다는 점은 이를 웅변한다. 임기의 단축이 국회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의회 독재를 우려했던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독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번한 선거는 의회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⁷⁴⁾ 오히려 단축된 임기가 국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

2. 권력분립의 실질화: 견제와 균형의 상시 작동 체제

민주공화국의 조직원리는 권력분립이다.⁷⁵⁾ 한국 헌법 역시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제3장 이하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분립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권력남용은 방지되지 못했고, 1987년 이후 성립한 모든 정권에서 권력남용 제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⁷⁶⁾ 그것을 집권자의 성품이나 집권세력의 성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지 헌법이 무슨 죄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⁷⁷⁾ 어떠한 폐단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분명히 시스템상의 결함을 내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74) 매디슨, “페더럴리스트 52”, 321쪽.

75) 국순옥, “공화국의 정치적 상품화와 순차 결정의 과학적 기준”, 489쪽.

76) ‘제왕적 대통령’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였다고 한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78쪽. 그러나 권력의 오남용 문제는 모든 정권에서 제기되었다.

77)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은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유사한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들도 상당히 많은 듯하다.

민주공화국의 조직원리 권력분립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⁷⁸⁾

2.1. 국회 기능의 정상화

권력분립 원리의 일차적 관심은 입법과 행정 사이의 분립을 통한 양자 간 견제와 균형인데 이 양자의 관계에서 한국 헌법은 행정부 우위 쪽으로 한참 기울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게도 입법권의 일부인 법률안제출권이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부에 속하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특히 대통령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는 권력분립 원리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가 하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법원의 제청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한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므로⁷⁹⁾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은 사법부에 비해서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헌법에서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부, 즉 국회의 약화이다. 이는 근대 국가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의회주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 즉 법률의 지배 원칙에 비추어보면 권력분립의 중심이 극단적으로 전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78) 권력분립의 재정립 방안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으로서의 지방분권 또는 연방제 관련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면관계상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연방제 채택에 대해서는 김종서,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특히 119-122쪽 참조.

79)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면서 관습헌법까지 동원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데에 이르면 가히 ‘헌법재판소 독재’(홍윤기,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세계 경영과 세기 경영을 위한 헌법개혁의 어젠다”, 헌법 다시 보기, 20-27쪽, 특히 26쪽) 또는 ‘사법 쿠데타’(국순옥, “헌법재판관들의 사법 쿠데타”, 민주주의 헌법론, 501-513쪽)라고 할 만하다.

이 점에서 국회 기능의 정상화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설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회의 기능 회복과 관련해서는 박동천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가 아니라, 의회의 위상이다. 의회 내부가 다원적인 요소들로 구성되고, 일반 시민들은 그와 같은 다원성을 폐단이 아니라 건강의 징후로 인식해야 하며, 다원성의 와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통합적인 결정을 토론과 절차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의 정치생활이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⁸⁰⁾

2.2. 고위관료 임명 제도의 개선

권력분립과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최상위직 관료의 임명과정이다. 하급 관리(*inferior officers*)를 제외한 공직자를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미국과는 달리⁸¹⁾ 한국헌법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하여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긴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국무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경우—박근혜 정권

80) 박동천, “한국 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 14쪽. 나아가 박 교수는, 의회제 정부 설계, 즉 의회의 다수세력이 행정권을 담당하고, 다수세력이 의회 안에서 유지되지 못한다면 바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다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의 정부 설계는 그런 방식의 정치생활이 규범으로 자리 잡는 충분조건은 될 수가 없지만, 하나의 필요조건이라는 점만은 명확하고, 무엇보다 행정권만을 중시하는 정치의식이 의회의 토론 과정과 조사 과정도 함께 중시하는 정치의식으로 확장되기 위해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같은 곳.

81) 미국연방헌법 제2조 제2절 제2항은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법원에게, 또는 각부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에서는 이런 사례가 표준이라 할 정도로 빈번했다—에도 국회의 의사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한다.⁸²⁾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노출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로지 심리적 압박 효과를 가질 뿐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인사청문제도의 이와 같은 결함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난 두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생생하게 입증되었다. 우선 나타나는 직접적인 결과는 어떤 잘못이 드러나도 뻔뻔하게 버틸 수만 있다면 고위공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멧집이 약했던 김종훈, 한만수, 김병관 등은 낙마했지만, 무념무상하게 버텼던 윤진숙, 김재수는 살아남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특징은 낙마한 그 누구에 관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모두 자진 사퇴의 형식을 취했을 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정치의 실종이다.⁸³⁾ 더욱 심각한 결과는 그런 결함투성이의 후보자가 공직에 임명이 된 후에 벌어진다. 국회가 그 임명에 반대할 정도의 매우 큰 결함을 안고 있는 자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알면서도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해준 임명권자, 즉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실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국정농단이 4년이나 지속되어 왔는데도, 국정농단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던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진실을 밝힌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은 그 어떤 정부 하에서도 볼 수

82)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후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 등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송부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고 그 보고서의 내용이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83) 심지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 중 낙마한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김병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지명철회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없는 모습이었는데, 필자는 그것이 이토록 부실한 인사청문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직자임명체제로부터 비롯된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소한 행정부 공무원 중 비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법관, 검사, 외교관 등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⁸⁴⁾⁸⁵⁾

2.3. 사법부 구성과 권한의 재편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원리와 관련하여 사법부를 빠뜨릴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의회주의를 유린하고(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⁸⁶⁾) 정당정치를 질식시키고(통합진보당 해산결정⁸⁷⁾),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이른바 해석입법, 해석개헌까지 감행하는(경영권을 거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거나⁸⁸⁾) 통상임금에 대한 이율배

84)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공직은 4,000개 이상인데, 이 중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직만 1,212개에 이른다고 한다. Zach Piaker, “Help Wanted: 4,000 Presidential Appointees”(Center for Presidential Transition, 2016. 3. 16.), <http://presidentialtransition.org/blog/posts/160316_help-wanted-4000-appointees.php>, 검색일: 2017. 5. 21. 상세한 내역은 다음을 참조하라. Christopher M. Davis & Michael Greene, “Presidential Appointee Positions Requiring Senate Confirmation and Committees Handling Nominations”, RL30959(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3, 2017), <<https://fas.org/sfgp/crs/misc/RL30959.pdf>>, 검색일: 2017. 5. 21.

85)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야당의 맹목적 반대를 접하고 보니 과연 이런 인사청문회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오히려 국무위원 등 임명에도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면 차라리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국회의원의 임기 단축과 결합된다면 합리적인 동의 절차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86)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87)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88)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

반적 판결⁸⁹⁾) 상황은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사법 국가, 아니 사법왕국이라 할 만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주로 이들 사법기관의 구성과 권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해서 늘 비판되어 온 것은 재판관 자격의 획일성과 임명 주체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 성격 자체가 정치적이며 그 판단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헌법 하에서는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것과 필적할 정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판관들이 구성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오로지 법관자격자로 직접 한정하고 있다(제111조 제2항). 그렇다고 법관 자격을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에서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⁹⁰⁾ 일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헌법재판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을 일반 재판과 동일한 관점과 시각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획일적 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동질화에 길들여진 법관 자격자들이 내놓는 헌법판단에 무슨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⁹¹⁾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기간 활동해 온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적 헌법재판이 가능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이다.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최고헌법재판기관 재판관의 3분의 1을 지명하도록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새삼 이야기하기조차 진부

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

89)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90) 법원조직법 제42조는 법관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91) 심지어 일반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자격자로 한정시켜 놓고 있지 않다.

할 정도로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다.⁹²⁾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제도가 유지되어 온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이것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갖는 파괴력을 생각하면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정당성과 다양성의 확보는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 관건이다. 이제는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두 기관이 합동으로, 즉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미국) 또는 합의제 국가기관으로서 고전적인 대표의 자격을 갖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독일).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정파적 치우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재판관의 임명 또는 선출에 국회의 가중다수결(재적 과반수 또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재판관 자격과 관련하여 법관(변호사)자격자로 획일화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변호사)자격자가 재판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선임방식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의 문제이다. 도대체 선출되지 않는 9인에게 정당의 운명을 맡기고, 법률의 개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든 간에 민주주의의 핵심에 있는 의회정치와 조화되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를 폐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높은 신뢰도를 고려하면⁹³⁾ 폐지하는 것은 어렵겠지

92) 한수웅 교수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헌법재판기관 구성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뿐,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다른 국가기관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행 헌법상의 헌법재판관 선임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매우 편협하게 이해한 것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한수웅,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문집 제39집 제1호(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25-26쪽.

93) 헌법재판소는 동아시아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정부 기관 중 국민신뢰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로이슈,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2015. 9. 2.자.

만⁹⁴⁾ 현재의 시스템이 불완전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폐지한다.⁹⁵⁾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탄핵심판을 대법원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므로,⁹⁶⁾ 앞서 보았듯이 양원제를 채택한다면 상원에 맡기고⁹⁷⁾ 단원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국민투표로 대체하거나(대통령) 후술하는 시민의회의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남는 것은 법령이나 처분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인데, 행정입법이나 처분 등의 위헌 여부는 법원에 맡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⁹⁸⁾ 결국 문제는 위헌법률심사(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포함)이다.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만든 법률의 운명을 직접적인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지만,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 이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⁹⁹⁾ 이 양자의 조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속력을

94) ‘헌법재판소 독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홍윤기 교수도 헌법재판소의 폐지보다는 법관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대표되어 반성적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적 의사소통 및 심의 기관으로 개혁할 것을 제시한다. 홍윤기,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세계 경영과 세기 경영을 위한 헌법개혁의 어젠다”, 27쪽.

95)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베니스위원회의 원칙 중 첫 번째는 비적용원칙이다. 김종서,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민주법학 제56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75-76쪽.

96) 탄핵심판을 대법원이 맡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피소추자는 공직에서 파면된 후에도 일반적인 법의 기소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첫 번째 판결이 두 번째 판결의 아버지가 될 가능성, 즉 이중재판의 위험성이 발생하는 점이라고 한다. 해밀턴, “페더럴리스트 65”, 392-393쪽.

97) 상원이 탄핵심판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해밀턴, “페더럴리스트 65”, 392쪽 참조.

98) 이를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등 소송법의 대폭적인 정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99) 이 부분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사법심사를 반대하는 입장이 직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딜레마이다. 김종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4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특히 351-356쪽

제거하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거나, 잠정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국회가 가중다수결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거나,¹⁰⁰⁾ 프랑스처럼 사전적 위헌심사제로 전환하거나, 헌법재판을 일종의 배심제로 운영함으로써 속의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을 결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¹⁾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권한, 특히 위헌법률심사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지 않다. 예컨대,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하거나 위헌법률을 합헌이라고 하면서 위헌성을 방치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는 문제는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잘못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¹⁰²⁾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국회의 대응은 지극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기본권 보장의 직접적 책임자로서 그 최대한 보장을 위한 입법의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 있는 국회가 스스로의 위상을 헌법재판소의 판단 범위 내로 왜소화하는 경향은 충분히 비난받을만하다.¹⁰³⁾ 아울러 앞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관의 자격 문제 등이 적절한 방식으로 재편된다면 위헌법률심사

참조.

- 100) 이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행사될 경우에 국회가 가중다수결에 의한 재의결을 통하여 법률로 확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 이를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거부권 행사, 즉 재의 요구로 보고 국회의 재의결을 통하여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생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101) 김종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317-367쪽. 한편 국순욱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반민주주의적 구조를 손질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기본방향은 인적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 심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밝힌다. 국순욱, “대안헌법이론”, 454쪽.
- 102) 송기춘,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에 대한 토론”, 143쪽.
- 103) 국회의 이런 경향을 지적한 예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민주법학 제43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549-556쪽; 김종서, “집시법의 몇 가지 문제점: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69-171쪽 참조.

에 관한 과도한 권한의 문제들은 상당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권력분립의 문제가 결국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하는 것이라면 법원의 기능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기능해야 하고, 법치주의 구현,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 개혁의 핵심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일반법관 임명권의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¹⁰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한 권력분립이 요구하는 견제와 균형의 달성은 불가능하다.

우선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진다(제 104조 제2항).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장은 합의체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구성원들 중 1명에 불과하고 다른 대법관들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법관 전원의 임명에 대한 1차적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은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법관의 상급자로 군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원장의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에 대한 1차적 지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갖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보다 그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 대법원장 몫으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3인은 다른 방법으로 지명 또는 선출되는데 불과하지만, 대법관은 전원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므로 결국 부의 재판이건 전원합의체 재판이건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재판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임명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의 제청 범위 내로 축소시킴으로써 민주주의적 요청을 배신하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폐지는 사법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104)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므로 이는 상술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법관은 다른 기관의 어떤 관여도 받지 않은 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일반 법관 임명권은 흔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 한 사람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인사권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논외로 하더라도 대법원장 한 사람이 전체 법관의 인사를 좌우하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재판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술하게 보아 왔다.¹⁰⁵⁾ 나아가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의 법관임명권을 전적으로 대법원장에게 맡겨두는 것은 사법부 구성을 국민의 감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결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법권의 힘이 매우 강한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모두 상원의 조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¹⁰⁶⁾

나아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보통은 사법부에 요구되는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내세워 사법부는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부문으로 이해되지만,¹⁰⁷⁾ 선거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

105) 최근 일반 법관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의 개입 의혹이나 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소송을 심리 한번 없이 4년이나 묵혀 두다가 탄핵 결정 직후 각하해 버리는 대법원의 행태는 대법원장의 이런 전횡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106) 2016년 현재 연방법관 정원은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연방대법원 9명, 연방항소법원 167명, 연방순회항소법원 12명, 연방지방법원 673명(임시 10명 포함), 국제거래법원 9명과 연방헌법 제1조에 의해 설치되는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 16명과 연방헌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되는 준주법원(territorial courts) 4명 등 총 890명인데, 이들 모두가 상원의 조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http://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allauth.pdf>>, 검색일: 2017. 5. 31.

107)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종신제로 임명되는데 그 이유는 법관이 당파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러면서 강한 독립성이 요청되는 전문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밀턴, “페더럴리스트 78”, 459쪽. 그러나 종신제는 독립성의 요청에는 부응할지 모르지만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엄연한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관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근거도 없다.¹⁰⁸⁾ 더구나 배심 재판처럼 국민에 의한 재판참여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관공선제,¹⁰⁹⁾ 최소한 대법원장 선거제¹¹⁰⁾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IV. 속의민주주의의 제도화

1. 광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원형적 모습에 충실하도록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확대 심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조건을 정비하는 한편 견제와 균형을 장치가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

10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들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들의 소산이 아닐까? 특히 상당수의 판결과 결정들은 정치기구인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에 의하고 있지 않은가? 그 과정에서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예로 Waldron, *Law and Disagreement*(Oxford University Press, 1999); Waldron,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Yale Law Journal* vol. 115(2006), 1346-1406쪽 참조.

109) 연방법관의 임명제 및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연방헌법의 취지를 모든 주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각주 법원의 경우 건국 초기에는 연방법원처럼 임명제로 출발하였으나 법관선거제도가 대체를 이루었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실적제방식이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법관선거제도에는 정당추천입후보에 의한 선거방식과 비정당추천입후보에 의한 선거방식, 그리고 실적제방식(일정한 방식으로 선발된 법관의 업무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유임 여부를 국민의 투표로 결정) 등이 있다고 한다. 상세한 것은 김명식, “사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卅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미국헌법학회, 2011), 1-28쪽 참조.

110) 국순옥 교수는 헌법재판소와 최고재판소의 우두머리는 제조법조인·제야법조인 그리고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순옥, “통일국가의 헌법과 기본적 인권의 체계”, *공법연구* 제21집(한국공법학회, 1993), 60쪽.

다. 최후의 수단으로 남은 직접민주주의적 보루와 통상적인 정치과정인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가 보장되는 장치가 여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등한 기회를 갖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대표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되, 이들이 잘못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민주주의에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에 의한 국가 운영과정은 여전히 시민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적극적인 표현 활동과 거리에서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형식의 대표들에게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몇 개월에 걸친 촛불항쟁의 경험은 그러한 압력과 영향력 행사가 사실상의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케 하였다. 즉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대표의 국가운영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와 장치를 확보하는 일이다. 즉 촛불시위를 통해 빛났던 광장을, 상시적 공론장으로 제도화하는 문제이다. 이런 광장의 제도화가 중요한 까닭은 어떤 정치인이나 법률가의 상상보다 민중의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이다.¹¹¹⁾ 그러한 상상들이 공개적인 장에서 개진되고 토론되고 채택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민중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2. 시민의회 구상

이런 방안의 하나로서 구상·제안된 것이 헌법 수준의 제도로서의 시민

¹¹¹⁾ 의회의 거부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2011년 3월 24일 아이슬란드에서 시민 주도로 만들어졌던 헌법안은 집단지성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10여개에 불과하던 기본권조항이 31개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권리가 매우 상세하고 심도 있게 규정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 보장, 동물의 권리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헌법개정안은 <http://stjornlagara.d.is/other_files/stjornlagarad/Frumvarp-enska.pdf>, 검색일: 2017. 1. 31. 참조.

의회이다.¹¹²⁾ 김상준 교수와 오현철 교수가 ‘숙의’¹¹³⁾민주주의의 제도화된 형태로서 시민의회를 제안하고 있는데 양자의 시민의회는 기본적 취치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위상과 권한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 김상준의 보완적·완충적 시민의회 구상¹¹⁴⁾

김상준 교수는 87년 이후 한국 시민사회는 역동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지형도에서 하나의 선도적 전범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¹¹⁵⁾ 무려 10년이 지나서 이 전망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체제의 핵심원리인 대의민주주의와 헌법주의는 빈번해지고 대규모화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소화해내지 못하며¹¹⁶⁾ 이처럼 정치 자체가 기존 헌정체제의 구조적 한계 안에 갇힌 상황에서 헌정체제의 개혁 없이는 아무런 실제적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서,¹¹⁷⁾ 헌정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요 공공의제를 심의할 시민심의기구, 즉 시민의회를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¹¹⁸⁾

김상준 교수는 대의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결사체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라는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부분적

112) 이와 유사한 것으로 민회가 있으나 민회는 대체로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는 비제도적 장치로 구상되고 있는 것이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민회에 대해서는 케빈 올리어리 지음/이지문 옮김, 민주주의 구하기: 미국에서 날아온 하나의 혁신적 개혁 모델(글항아리, 2014) 참조.

113) deliberation의 번역어로서 김상준은 논의와 결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심의’란 용어를, 오현철은 사유보다는 언어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토의’란 용어를 선호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호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필자는 ‘숙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세 용어 중 ‘심의’가 사용빈도는 가능 높은 것으로 보인다.

114)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헌법 다시 보기, 144-185쪽.

115) 김상준, 위의 글, 145쪽.

116) 김상준, 위의 글, 146-147쪽.

117) 김상준, 위의 글, 148쪽.

118)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148쪽.

구성원리에 불과하다고 본다.¹¹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정치 상황은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쳐주어야 할 민주주의의 하부구조가 아직도 미발견되어 불안정한 것에서 비롯되며,¹²⁰⁾ 심의민주주의의 제도화가 현재 또는 ‘민주주의 이후’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한다.¹²¹⁾ 이 구상에서 시민의회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와 별도로 존재하는 제4부¹²²⁾가 아니라 기존의 3부를 보완·완충하는 기구로 구상된다.¹²³⁾ 즉 시민의회는 기존의 3부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사안들을 맡아 그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완충하면서 보완하는 것이다.¹²⁴⁾ 김상준 교수는 이러한 시민의회 구상에 대하여,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원초적 상황, 무지의 베일 등 롤즈의 정의론을 근거로 정당성을 부여한다.¹²⁵⁾ 아울러 그는 시민의회 구상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한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이 구상의 정당성을 확인한다.¹²⁶⁾ 김상준이 구상하는 시민의회와 구성과 작동방식은 다음과 같다.¹²⁷⁾

- 시민의회는 국민, 대통령, 국회가 소집할 수 있다.
- 심의사항: 행정부 또는 국회에서 검토 중이나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국회에서 교착중인 법안 그리고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적 반발이 심한 법안 등.
- 시민의회는 결정은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입법화되며, 국회는 시민의회 결정에 대하여 가부표결만 하고 일체 변경은 못함.

119) 김상준, 위의 글, 151-152쪽.

120) 그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과소가 문제라고 한다. 김상준, 위의 글, 153쪽.

121) 김상준, 위의 글, 154쪽.

122) E. Leib는 기존의 제3부에 이은 제4부로 부르는 시민 심의회(deliberative assemblies)를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김상준, 위의 글, 164쪽.

123) 김상준, 위의 글, 164쪽.

124) 위와 같음.

125) 김상준, 위의 글, 166-172쪽.

126) 김상준, 위의 글, 172-181쪽.

127) 김상준, 위의 글, 161-163쪽.

-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현재의 위헌심판은 가능함
- 시민의회는 사안에 따라 소집되고 심의 결정이 완료되면 해산함
- 시민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되면, 시민의회운영기구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적정수(200인 이상 300인 이하¹²⁸⁾)의 시민심의위원을 무작위 선발한다.
- 회기 중 시민의회 의원에게는 그 시기 한국인의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한다.
- 각 회기 시민의원은 예비회의,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제를 검토·심의·결정한다. 시민의원단은 20여명 단위의 분회로 조직된다. 분회는 매 전체회의의 상정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체회의 이후 논의 사항을 재검토한다.
- 시민의회 의원의 임기는 당회 1기에 그치는 반면, 시민의회 운영기구는 일정한 임기를 가진 상설기구로서 정부와 국회의 주요기관이 임명 또는 선출한 자를 배합하여 구성함.
- 운영기구는 시민의원단에게 해당 의제에 대한 정확한 심의자료를 제공할 전문위원회, 의사진행 전문가, 전문법률가 등 전문조력자를 구성, 제공한다(상당수는 상임직).
- 심의사안은 시민의회의 심의와 초다수의결(3분의2 내지 5분의4)로 결정됨.

2.2. 오현철의 최고권력적 시민의회 구상¹²⁹⁾

한편 오현철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이 대중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에 내재하는 위험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주권은 실종되고 정치인, 언론인, 선거전문가 등이 선거와 여론 조작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전문가 주권이 모든 국가에서 관철된다고 진단하고 있다.¹³⁰⁾ 특히 한국에서는 대의정치 이념, 즉 전문가들의 통치라는 이념에 따라 국민주권이 헌법재판소에 넘겨졌고,¹³¹⁾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원칙

128) 이 기준은 공개적 공공심의회가 가능한 적정한 정도의 수와 통계적으로 유권자를 대표할 만큼 유의미한 정도의 수라는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162쪽 주 13).

129) 오현철,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헌법 다시 보기, 293-313쪽.

130) 오현철,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294쪽.

을 근본적으로 침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³²⁾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헌법 재판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근거는 재판관들의 전문성이지만,¹³³⁾ 이런 전문성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전문성을 토대로 한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¹³⁴⁾ 오현철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주권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정치제도인 직접민주주의는 필수적인 토의과정의 경시, 과거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 경험, 선입견의 강화와 집단화 경향 및 엘리트에 의한 조작가능성 등 결함을 갖고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토의민주주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³⁵⁾

그가 보기에 토의민주주의는 이념적 측면에서 개인의 선택을 최우선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교정하고, 방법론 측면에서 엘리트들이 결정권을 독점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¹³⁶⁾ 토의민주주의의 목표를 “공동체와 의사 결정을 위한 토의 과정에 정보를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설정할 때, 토의민주주의의 이념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둘째, 정보에 근거한 공적인 판단, 셋째, 충분한 토의 기회의 제공.¹³⁷⁾ 이런 요건들은 토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안들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토의로

131) 오현철, 위의 글, 295쪽.

132) 헌법재판소에는 민주성, 토의성, 공개성, 책임성이 결여되었고 견제 방법이 없으며 대안 탐색을 봉쇄한다고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직접 행사해야 할 주권을 9인의 재판관이 대신 행사하는 셈이고, 그 결과 국민들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주권 행사 기회를 근원적으로 박탈당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현철, 위의 글, 296쪽.

133) 오현철, 위의 글, 297쪽.

134) 오현철, 위의 글, 298쪽.

135) 오현철, 위의 글, 299-300쪽.

136) 오현철, 위의 글, 302쪽. 그는 코언의 주장을 빌려서 토의민주주의적 정치체제가 전통적인 공적 개념이나 사적 내념을 넘어서고, 결사체 중심의 사유도 넘어서며, 전통적인 대리인 체제도 넘어선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같은 글, 302-303쪽.

137) 오현철,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303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 때 투표 결과는 사적인 선호를 집합한 것이 아니라 토의의 결과가 이루어낸 집단적 판단이 된다고 한다.¹³⁸⁾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대의기구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구의 권력을 제한하고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대표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즉 오현철은 헌법재판소를 대체하여 국민들이 주권적 결정 사안을 직접적·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³⁹⁾ 그는 마넩, 응거, 변하임, 헬드 등의 구상을 소개한 후에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의 의회’에서 공공정책을 판결하는, 입법·사법·행정부와는 별개의 제4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라이브의 구상을 바탕으로¹⁴⁰⁾ 한국 현실에 맞는 시민의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¹⁴¹⁾

- 시민의회는 최고의 대표성을 지니는 헌법적 최고결정기구가 되고, 기존 3부는 시민의회의 헌법적 판단을 제도적으로 조정하여 일상적 정책 결정과 법률의 판단을 담당하게 된다.¹⁴²⁾
- 생활세계와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를 구성한다. 생활세계의 지역·성·계급·연령 등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즉 ‘유사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대표들을 계층별 무작위 선발한다.¹⁴³⁾
- 임기는 1년으로 평생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직 동안 보수를 지급한다.¹⁴⁴⁾
- 시민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국가기구간의 권력 분할과 갈등 해결

138) 오현철, 위의 글, 304쪽.

139) 위와 같음.

140) 오현철, 위의 글, 305쪽.

141) 오현철, 위의 글, 306-308쪽.

142) 오현철, 위의 글, 306쪽.

143) 위와 같음. 김상준과는 달리 오현철은 시민의회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구성방식으로 비추어볼 때 그 규모는 비슷하리라(200-300명) 추정된다.

144) 오현철,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306쪽.

에 관련된 사항(탄핵, 권한분쟁 등), 기본권의 준수 및 확장에 관련된 사항, 위헌심판 청구와 헌법소원 등 헌법이념의 구현에 관한 사항, 국군의 해외파견과 전쟁 수행에 관한 사항, 국가기구를 통치하는 대리인들(대통령, 의원 등)의 선출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이다.¹⁴⁵⁾

- 시민의회의 입법권이나 시민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은 최고권력기구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지만 독자적인 헌법개정안 제출 권한과 행정부·입법부에 대한 권고안 제출권은 보유할 수 있다.¹⁴⁶⁾
- 의사 결정에서 공개성·토의성·소통성을 원칙으로 한다. 의원들을 무작위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토론을 하고, 전체회의에서 다수결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중요한 안건은 절대다수의 가결을 요구한다.¹⁴⁷⁾
- 시민의회 결정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5-10년 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시민의회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안건은 ‘다선택 포맷 방식의 국민투표’에 회부한다.¹⁴⁸⁾

2.3. 평가

김상준과 오현철의 구상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민의회의 위상이다. 그 위상을 기존의 3부를 보완하는 기구로 할 것인가(김상준) 혹은 3부의 상층에 있는 최고권력기구(제4부)로 할 것인가(오현철)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의를 통하여 결정한 내용을 잠정적 결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의 최종적 결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민의회를 주권적 기구로서 국민주권 실현의 담지자로 본다면 최고권력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사안을 시민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현철의 제안에 따르면 시민의회가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다양한 층위의 것들이 혼

145) 오현철, 위의 글, 306-307쪽.

146) 오현철, 위의 글, 307쪽.

147) 위와 같음.

148) 위와 같음.

제되어 있는데, 이들 모든 사항이 다 시민의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그런가 하면 시민의회가 과연 의회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건강함을 담보할 수 있는가, 또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가 동시에 도입된다면 시민의회 구상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가, 대표성 확보와 책임에 충실한 정당과 선거제도의 개혁이 전제된다면, 선거와 직접민주제적 방안 외에 시민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¹⁴⁹⁾ 타당한 지적이지만, 대의제와 직접민주제가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민의 공론적 심의를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이상, 상시적으로 시민의 숙의가 가능한 시스템은 독자적인 존재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시민의회가 주권기구, 즉 최고권력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시민의회가 다루어야 할 사항에 따라 그 위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핵처럼 가부간에 일종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인 경우에는 최고권력기구로서의 위상을 시민의회에 부여한다. 예컨대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하되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따라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탄핵결정은 시민의회가 담당한다.

둘째, 규범의 형성, 즉 입법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잠정적 또는 부분적 권한만 갖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즉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의회가 숙의과정을 거쳐 법률안을 발의하면 국회가 이에 대하여 가부 결정만 하도록 하고, 시민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민의회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셋째, 위헌법률심판이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¹⁵⁰⁾ 상당히 섬세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시민의회에의 결정은 잠정적 또는 개별적 효력만 갖

149) 송기춘,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에 대한 토론”, 143쪽.

150) 법률이 아닌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담당하면 충분할 것이다.

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 경우 시민의회가 특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헌결정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로서 재의결을 하여 해당 조항을 존속시키지 않는 한 해당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다.¹⁵¹⁾

3. 국민참여형 헌법개정 제안

한편 시민의회 구상처럼 연구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직접적 목표로 한 정치인들의 제안도 있었다. 즉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헌법개정 작업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을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2017. 2. 15., 의안번호 5639).¹⁵²⁾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두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대국민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며, 이 기구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151)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회의 결정에 잠정적 효력만 부여한다면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시민배심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헌법배심제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시민의회가 헌법배심의 기능을 겸하게 될 경우 그 결정에 어느 정도의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이지만, 헌법배심이 기본권 침해적인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린다고 하여 그것에 대해 반드시 일반적 효력, 즉 ‘법률 폐지적 효력’을 부여할 필연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일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당해 사건에의 적용 배제라는 개별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보완 또는 폐지라는 사실상의 입법 작업은 입법부에 맡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15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W7V0L2N1U5E1K4M1Q5L5R4Q7L6G5>, 검색일: 2017. 2. 28.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도 이와 유사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승수, “개헌특위 대신 ‘국민개헌참여법’을”, 허핑턴포스트, 2016. 12. 27.,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13861154.html>, 검색일: 2017. 2. 27.

고 국회 내에서는 물론 언론에서조차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개헌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 또는 그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시민회의는 앞의 시민의회 구상, 특히 김상준의 시민의회 구상과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회의는 다양한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헌법개정 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과 국민 제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다는 것이다. 시민회의의 의견서 및 보고서는 자문회의의 의견서와 함께 개헌특위에 제출되는데, 법안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 및 시민회의가 제출한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즉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할 때 이들 의견서와 보고서를 토대로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김상준의 구상과는 달리 개헌특위가 시민회의의 의견서에 대하여 단순한 가부결정권만을 갖는데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회의의 의견에 대하여 개헌특위가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아닐까? 단지, 개헌특위가 시민회의의 의견서를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해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김상준의 구상처럼 개헌특위가 시민회의 의견서에 대하여 가부 결정만을 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¹⁵³⁾ 시민회의의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부 결정 보다는 이유 명시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숙의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V.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남은 문제는 이와 같은 구상과 기획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힘으로 말이다. 그런데 뜻이 있으면 길이

¹⁵³⁾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161쪽.

있다고 했던가? 이와 같은 고민과 결을 같이 하는 실천 시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의 민회 제안¹⁵⁴⁾과 유사하게, 또한 한국에서 진행된 촛불시위를 고려하여, 향후의 민주공화국 설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조직해 나갈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었다.¹⁵⁵⁾ 일부 제안은 좌절되기도 했지만, 지지하지 않는 열정과 발랄한 상상력이 요구됨은 분명하다. 제도권 정치가 결코 떠올릴 수 없고 결코 실행할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제안은, 오로지 광장에서만 나올 수 있다.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은 예외 없이 헌법개정을 공언한 바 있다. 5월 10일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5.18 기념사를 통하여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포함시키겠다고면서 국회의 협조와 국민의 동의를 부탁함으로써 다시 한 번 개헌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을 포함하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것까지 헌법개정의 방향으로 언급된 것은 이른바 분권형 개헌 또는 4년 중임제 개헌 논의에 머물고 있다.¹⁵⁶⁾ 분명

154) 연방하원의원 1인에 대하여 추천으로 뽑힌 시민 100명으로 구성되는 민회를 배정하고 여기서 결정권은 없지만 의회에서 다루어질 의안들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케빈 올리어리 지음/이지문 옮김, 민주주의 구하기: 미국에서 날아온 하나의 혁신적 개혁 모델 참조.

155) 박래균의 시민평의회, 유종일의 시민주권회의, 이진순의 온라인시민의회, 광노현의 지역민회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제안의 기본적 구상과 그 한계에 대해서는 광노현, “탄핵이후 국면, 시군구 지역민회로 돌파하자”, 허핑턴포스트, 2016. 12. 12. 참조.

156) 이 점은 국회의장 정세균의 취임 1년 기자회견 발언에서 분명하게 느껴진다. “한마디로 분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지금 선거제도는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해 득표율이 40%가 안돼도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져간다. 합리적이지 않다.” 경향신문, “[취임 1년 정세균 국회의장]“다당제가 양당제보다 더 민주적…마크롱 현상 속 협치의 길 있다””, 2017. 6. 18.자.

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헌법개정은 이번에도 다시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낸 시민들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소수 정치인들의 손에서 끝나버릴 공산이 크다.

2017년 1월 5일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월 12일 제13차 회의까지 개최되었고, 제13차 회의에서는 대선 후보 3인(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의 헌법개정 관련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회의에서 당시는 후보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3대원칙과 5대 주요 내용을 밝혔다. 국민 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라는 3대원칙과 함께 헌법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정신 포함, 사회 변화를 반영한 기본권 강화, 5년 단임제 폐해 극복을 위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 모색이라는 5개 주요 개헌 내용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방법론으로서 국민참여 개헌 논의기구 설치를 제시하고, 2018년 초까지 국회의 개헌안 통과,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라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내각 및 비서실 인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지시 등을 통하여 일종의 개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내각 구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야3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성격을 갖는 헌법개정을 논의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4월에 이미 상당히 구체성을 띤 개헌 방향과 일정을 밝혔음을 고려하면 내각 등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을 대비하여, 시민의 회 구상이든, 민회 구상이든, 광장의 시민들이 그랬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상에 가장 근접하는 방식과 내용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매야 할 때다.

<참고문헌>

- 곽노현, “탄핵이후 국면, 시군구 지역민회로 돌파하자”, 허핑턴포스트, 2016. 12. 12.
-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5, 33-57쪽.
-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 권영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2004, 125-157쪽.
-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 2009.
- 김도현,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민주법학 제2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53-84쪽.
- 김명식, “사법권독립과 민주주의의 조화: 미국의 州법관선거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1, 1-28쪽.
- 김문현, “헌법개정 기본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 49-82쪽.
-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헌법 다시 보기: 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2007, 144-185쪽.
- 김선택,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안암법학 제25권, 2007, 1-43쪽.
- 김종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4호, 2014. 3, 317-367쪽.
- _____, “인권과 권력구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민주법학 제12호, 1997, 32-52쪽.
- _____,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헌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2, 1-50쪽.
- _____,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민주법학 제56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12, 57-96쪽.
- _____,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민주법학 제6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3, 77-137쪽.
- _____, “헌법과 정치개혁”,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한국지방정치학회, 2015. 4. 29.
- _____, “집시법의 몇 가지 문제점: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47-178쪽.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민주법학 제4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7, 549-556쪽.
-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토지공법연구

- 제29집, 2005. 12, 483-510쪽.
- 박규하, “정치적 기본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이론”, 외법논집 제28집, 2007. 11, 67-115쪽.
- 박동천, “한국 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2회 찾아가는 세미나 발표문, 2017. 4. 28.
-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공화국을 위한 열세 가지 질문, 응진지식하우스, 2011.
- 신용인, “민주공화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8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39-371쪽.
-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존 제이 지음, 김동영 옮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한울아카데미, 1995.
- 오현철,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헌법 다시 보기: 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2007, 293-313쪽.
- 이진순 외 지음, 듣도 보도 못한 정치, 문학동네, 2016.
-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도서출판 길, 2010.
- 주성수,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7, 177-205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2016. 8. 25.
- _____,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2016. 6.
- 최장집 지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판), 후마니타스, 2005.
- 케빈 올리어리 지음/이지문 옮김, 민주주의 구하기: 미국에서 날아온 하나의 혁신적 개혁 모델, 글항아리, 2014.
- 하승수, “개헌특위 대신 ‘국민개헌참여법’을”, 허핑턴포스트, 2016. 12. 27.자
- _____,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직접정치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대전 4차시국토론회), 2017. 1. 13.
-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헌법 다시 보기: 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2007.
- 허석재,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 다른백년, 2017. 1. 10.
- Davis, Christopher M. & Greene, Michael, “Presidential Appointee Positions Requiring Senate Confirmation and Committees Handling Nominations”, RL3095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3, 2017.
- Piaker, Zach, “Help Wanted: 4,000 Presidential Appointees”, Center for Presidential Transition, 2016. 3. 16.
- Waldron, J., *Law and Dis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Yale Law Journal*, vol. 115, 2006, 1346-1406쪽.

<Abstract>

A Proposal to Reform the State Power Structure

Kim, Jong-Seo

Professor, PaiChai University Dept. of Law

Lots of citizens have brightened the plaza with countless candles for nearly five months since late October, 2016, and finally they achieved a regime change. However the new democratic republic they envisaged is yet too far. Those citizens wanted, and still want a democratic state where sovereign people exert their sovereignty fully. In such a state representatives of the citizen make decisions following people's will and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m. What the people wants is an open and republican society where every single citizen can freely and widely participate in the important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tate.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citizens, I suggested three directions for the democratic reform of the state power structure as follows:

First,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state is suggested. For that, I am proposing various ways of direct democracy including recall, people's initiative and referendum.

Second, I emphasized the normaliz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o make the state republican. Reforming the election system and the term of elected officials,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arliament, improving the appointment system of high officers, and restructuring the judicial power are suggested.

Third, I proposed to institutionalize a deliberative democracy for secur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or this, I examined the political ideas of Citizens' Assembly.

In short, I tried to answer the question: "Is this worthy of a

state?”, with a reply: “This *is* the state!”.

Key Phrases: democratic republic,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constitutional revision

헌법

헌법은
무엇이어야 하나?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은 무엇이어야 하나?

.....
"나와 우리의" 인권이 보장되는 헌법 바꾸기

한 상 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이란?

.....
❖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

- 국가의 형성, 유지, 변경: §§1-9,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128-130 헌법개정
- 국가기관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
 - 권력분립: §§40-118
 - 경제질서: §§ 119-127
- 국가와 국민의 관계: §§10-39 → 입헌주의
 -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생활정치와 헌법

- ☀ 청소년의 당구장출입
- ☀ 과외금지조치
- ☀ 학교정화구역내 극장 설치
- ☀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가?
- ☀ 대마초는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데...
- ☀ 결혼식 때 하객들에게 음식과 술을 접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 ☀ 담배는 왜 피지 말아야 하나?
- ☀ 폭력행사는 자녀가 했는데 왜 부모가 교육을?
- ☀ 운전할때 안전벨트 착용하기 싫은데...
- ☀ 왜 남자만 군대가냐?
- ☀ 군인 봉급은 왜 쥐꼬리 끝에 난 터럭 수준도 못 되냐?

법과 인권

-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 ☀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 ☀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전문)>

대한민국 헌법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짐(전문)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
다. (제10조)

민주공화국 - 입헌적 민주주의

- 원칙적으로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무력화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수파에 가담해야 하는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

대표되는 것과 대표되어야 하는 것

- ☀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 제2조(장애)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994년)

매월 1인당

- ☀ 생계보호 : 65,000원 정도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등)
- ☀ 월동대책비: 연간 61,000원,
- ☀ 노령수당: 15,000원 + 3,600원(버스승차권)
- ☀ 상하수도 기본사용료(서울) 2,500원 면제
- ☀ 텔레비전 수신료 2,500원 면제
- ☀ 전화 사용료 월 6,000원 (기본요금 + 통화 150회) 면제

2인, 1가구 최저생계비(1인당)

대도시 190,000원 정도,
중소도시 178,000원 정도,
농어촌 154,000원 정도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 비록 위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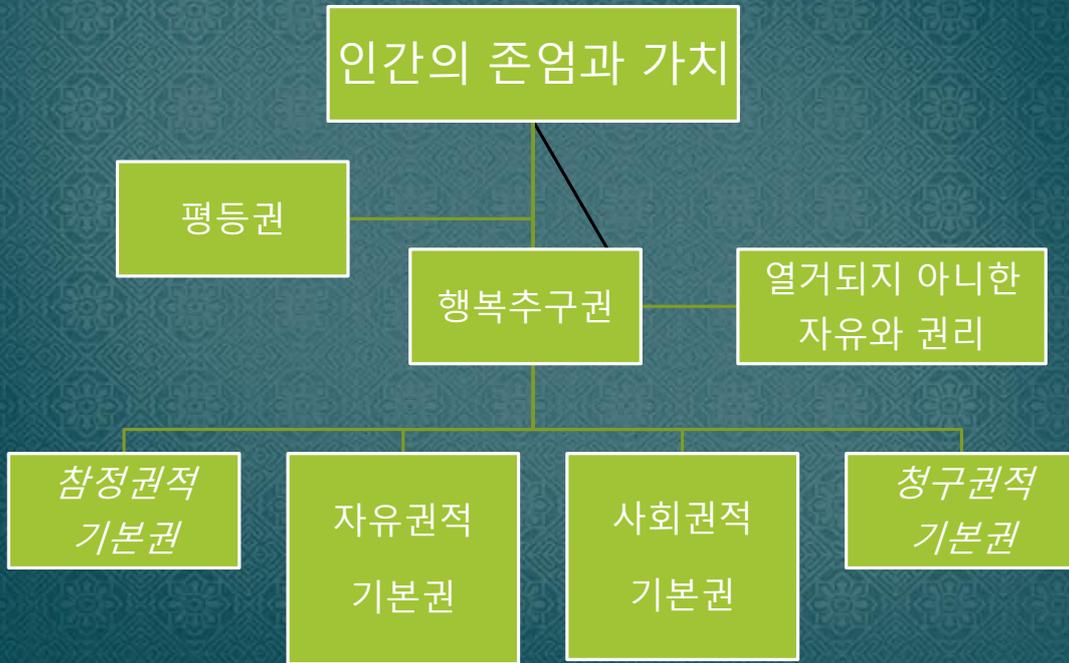
(2004.10.30. 2002헌마328)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구조



기본권의 내용

자유권적 기본권

- 생명권
- 인신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
- 정신적 자유
- 경제적 자유

사회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노동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모성보호/건강권

헌정사 정리

국가형성기	군사정권기	민주화기	
		전기	후기
1948-1961	1961-1987	1987-1997	1997-
제1`2공화국	제3-5공화국	제6공화국,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
독재	권위주의	절차적 민주화	신자유주의
반공(48년체제)----->			
반공	반공	보수-혁신(보혁구도)	보수-진보(좌파)
정격유착(1953-)	개발독재	약한 경제자유화	재벌
1 共:헌법위원회 2 共:헌법재판소	3 共:대법원 4 共: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87년헌법체제의 한계

- ✿ 민중항쟁에 의한 민주화로부터
 - ➔ 정치권력간의 타협에 의한 절차적 민주화로
 - * 1987. 6. 민주항쟁: 최대민중(저항)연합
 - ➔ 6.29선언(호헌에서 직선제 개헌으로):
집권세력과 "민주진영의 대표"간의 타협
 - ➔ 최소정당연합
 - ✿ 정치과정으로부터 민중의 소외
 - ✿ 정치엘리트들의 민주적 정당성 약화
- ➔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청산 불충분
- ➔ 정치과정의 이원화: 대의제정치 v. 시민운동, 시민정치



정치화된 권력, 재벌

☼ 경제의 민주화?

- * 권위주의체제하의 경제통제 → 민주화로 산업억제메카니즘이 약화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 * '극단적' 재산권 보호: 기울어진 운동장

☼ 법치의 왜곡: 사법관의 지배

- * 대기업 법무실, 대규모 법무법인의 전방위적 로비력
- * 무전유죄, 유전무죄, 계약의 자유,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 불균형적인 경제관계

- * 노동법에서 고용법으로: 사용자중심 노동법, 계급사법
- * 갑질?(경제권력의 개인화 담론)의 구조화



베네수엘라의 혁명: 헌법전을 흔들며

- 제88조 ... 국가는 가사 노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부와 번영을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임을 인정한다.



- * 제89조 (3) 여러 법 규정이 상호 충돌하거나 무엇을 적용해야할지 애매할 때, 또는 특정 법규의 해석에 의문이 제기될 때에는,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 ✿ 시민사회의 정치화
- ✿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
- ✿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 ✿ 시대변화
- ✿ 정치개혁의 문제

시민사회의 정치화 1

- ✿ 나는 내가 대표한다... 삶의 다양성, 차이의 긍정
- ✿ 정치참여기회 확대 – 개헌 이전의 입법과제
 -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평등한 대표
 - * 지방분권의 문제: 양원제의 도입필요?
 - * 선거연령 하향조정: 의무교육과 연동필요?
 - * 에콰도르 헌법: 16-18세, 65세 이상
 - *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 *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자유롭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 전국정당체제해소: 지역정당, 분파적 정당 가능케
 - * 정당국가경향 완화 필요
- ✿ 직접민주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거부, 국민소환

시민사회의 정치화 2

☀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

- * 기본권의 강화: 삶의 역량 증진

- *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설명요구권

 - * 프랑스 인권선언(1789) 제15조

 - * 사회는 그 행정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 책무성(Accountability)

- * 납세자소송

 - * 예산법률주의 → 예산의 집행의무 부과

 - * 재정예 대한 국민통제 기회 부여

- * 청원권강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1

☀ 제왕적 대통령제: 유신잔재의 청산

- * 대통령 "중심" 제?

- *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허위의식

 - * 권력나누어먹기의 전형적 수법

☀ 정부형태: 권력의 분할과 조직

- * 대통령제: 미국식, 신대통령제

- * 내각제: 영국형, 독일형

- * 이원정부제(혼합형): 프랑스형, 기타(?)

청산되지 못한 유신잔재

제66조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유신>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유신>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헌헌법>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2

✿ 중요한 것은 권력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것

* 기본권강화

* 국가권력의 절대적 축소: 국가주의 해소

* 시민의식 제고: 시민의 정치·사회적 역량강화

* 지방분권 → 중앙권력의 절대적 약화

* 입법, 행정, 사법간의 견제와 균형

✿ 더 중요한 것은 각성된 시민의식

* 저항권규정,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

* 정보 및 설명요구권, 국민소환권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1

☀ 제헌헌법

* "민족적`사회적 헌법" : 생활의 균등한 향상

*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 노동자이익균점권, 경자유전의 원칙

* 국가통제경제체제

→ 1954년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에서 폐지

사회정의

☀ 공정, 균등한 경제발전: 기업윤리(인권), 갑질 청산

☀ "제9장 경제" → "제9장 시민사회"

☀ 사회적`경제적 소수집단의 권리들: 농민,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등

☀ 토지공개념: 주거권, 영세상인 보호 등

* 경자유전의 원칙?

→ 商者有店鋪, 住居者有住宅, 藝能者有舞臺(劇場)

경제구조의 변화

- ☀ "제4차산업혁명" (?)
- ☀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 * 1% : 99%의 사회
 - 99%의 디스토피아
- * 도시권?
 - * 성장의 공유
 - * 에콰도르 헌법 제31조

시대의 변화 1

- ☀ 기본권의 구조변화
 - * 기본권의 내용(실체)보장에서 절차 보장으로
 - 시민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
- ☀ 생태위기
 - * 에콰도르: 자연은 기본권주체?
 - *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종다양성 보전에 대한 권리
- ☀ 정보기본권
 - * 감시사회: 국가감시, 작업장감시, 소비자감시
 - * 개인정보자기통제권
 - * 정보접근권: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

시대의 변화 2

- ☀ 사생활권:
 - * 통신의 자유(통신망접근권) – 정보문화향유권(?)
- ☀ 정치적 자유의 확대
 - * 공무원·교원의 정치권,노동권
 - * 직접민주제에 대한 권리
- ☀ 망명·난민권
- ☀ 지방자치권
- ☀ 평화적 생존권, 안전권,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헌: 헌법전문<예시>

- ☀ "3·1운동"이나 "4·19의 민주이념"
→ "3·1독립혁명" "4·19혁명의 민주이념"
- ☀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 * 저항정신, 민주이념
- ☀ 지방분권의 이념 삽입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 → "민주주의 제제도 수립" 혹은 "민주적 가치"
- ☀ 생태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및 5·18 광주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의 저항정신과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모든 영역에 걸친 민주개혁을 도모하며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 분권을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공존·공생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따르는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사회경제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총강: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예시>

- 제2조 ①대한민국은 민주적, 사회적, 분권적 법치국가이다.
- ②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존중·보호·증진 및 충족할 의무를 지며 국민의 복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 ③국가는 권력의 분립과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운영된다.
- ④모든 국민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⑤국가는 부당하게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기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감시, 징벌, 교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본권보장원칙<예시>

- 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기본적 인권은 불가분이며 상호의존적이며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 ③ 국가는 입법, 법의 해석과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헌법과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 확인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최우선적이고 진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기본적 인권은 헌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실현가능하며, 국가 및 모든 공무원은 입법이나 정책의 부재나 미비 등을 이유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이유로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기된 절차를 기각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평등조항<예시>

-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모든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고도 완전하게 향유하며 평등한 법의 보호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누구든지(국가를 포함한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혹은 성적체성,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에 열거된 사유에 의한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부당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 또는 그러한 집단을 보호하거나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망명권, 난민권 <예시>

제15조 ①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

④전쟁이나 정치, 사상, 인권, 종교 등으로 인한 박해나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국제조약 및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들에게 출국을 강제할 수 없다.

주거권 <예시>

- ①누구나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누구나 적절하고 위생적이며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③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명령 없이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집에서 퇴거당하거나 주거공간을 훼손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법원은 퇴거 명령을 함에 있어 대체주거지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이나 주택임차인보호정책을 비롯한 주거안정화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권(?)

제18조① 누구든지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 다양한 도시문화의 존중, 도시와 시골 간의 균형있는 발전 등의 원리에 따라 도시와 도시의 공적 공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앞 항의 권리의 행사는 재산권과 도시공간이 가지는 사회적·환경적 기능에 부합하여야 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도시 및 도시의 공적 공간은 도시 거주인들 모두의 집합적 구성물로서 그의 이용과 관리, 개발은 모든 도시거주인들의 민주적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개발의 결과는 모든 도시거주인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한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예시>

① 누구든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통신시설 및 통신상의 편의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과 통신상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신에 대한 감청(통신사실제공을 포함한다)은 법원의 사건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청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피감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알권리, 정보청구권 <예시>

- ① 누구나 알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할 수 있다.
- ② 누구나 국가가 보유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③ 국가는 공공의 문제에 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건이나 자료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고 또 보존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목록, 출처, 내용, 기타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누구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권리의 행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문과 예술의 권리 <예시>

제25조 ① 누구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학술과 과학, 예술적 발전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에콰도르 제25조)

- ②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 ③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하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권<예시>

제34조 ①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누구나 모성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임신, 출산, 산후 회복 및 수유 중인 여성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00조 ①누구나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의 예방과 치료, 충실한 의료 보장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권리<예시>

제28조 ①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자신의 인격을 발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 또는 그 대체적인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④국가는 아동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예시>

제29조 ① 장애를 겪는 모든 사람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인간으로서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직업적 통합과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를 겪는 모든 사람은 모든 형태의 착취나 억압,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성격을 띠는 모든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장애를 겪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와 재활을 보장하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들의 사회통합이나 재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노동권

✿ 노동의 권리/일할 권리: **가사노동, 돌봄노동**

* **고용없는 성장?** → 일할 권리의 국가적 보장

✿ 적정하고 평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 **생활임금, 최저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

✿ 직업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권리

✿ 경영에 참여할 권리(v. 경영의 권리?)

✿ 단결권: 노동자/**모든 사람의 권리?**

* **군인, 공무원, 교원 등 노동3권 제한 삭제**

✿ 노동3권의 보호목적: 노동조건향상 +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안전권, 평화권 <예시>

제34조 ① 누구나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연재해 또는 전쟁·사고 등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나 모든 형태의 전쟁, 폭력, 공포, 기타 불관용에 의한 집단적 억압에 저항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국내외적인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과 사고·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나 국가 또는 위험을 야기한 자에 대하여 그 위험과 그에 대한 예방·안전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청원권 <예시>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자료, 지식, 정보를 제공받고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유를 갖추어 청원인에게 통보할 의무를 진다.

③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 또는 정부에 대하여 사안을 특정하여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청문요구인은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청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농어업보호조항 <예시>

제123조(신설) ① 국가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보호·육성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완전하고 정당하게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농촌이 고유한 전통과 문화 및 지식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육성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이슬란드: 모래시계 형 헌법개정

✿ 2009 국민회의 구성(1,500명)

- ✿ 1,200명 추천 + 300명 기업,단체,기관 등의 대표 → 2010. 헌법개정의 필요성 제시

✿ 2010 의회, 헌법회의법 제정

- ✿ 25명으로 구성
- ✿ 2010.11. 선거: 522명 출마 → 남자 15, 여자 10.
- ✿ 2011.1. 대법원, 선거무효판결
- ✿ 2011.2. 의회가 이 회의의 이름을 헌법위원회로 바꾸고 이미 선출된 25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

✿ 2011.7. 헌법위원회, 헌법개정안 마련

- ✿ 2012. 10. 비구속적 국민투표 실시 → 가결

헌법은 누가 만드는가: 아일랜드

〈한겨레, 2017. 1. 1.〉

- ☀ 2008. 금융위기 → 2011. 총선: 헌법개정이 주 이슈
- ☀ 2012. 의회, 헌법회의의 구성(제1차: 100명)
 - * 시민 66명 + 의원 33명 + 중립적인 의장 1명(예비대표 66명 별도)
 - * 시민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무작위 추첨
 - * 의원은 정당등 정치그룹에서 의석비율
- ☀ 의회가 정한 7개 의제 + 자체 결정한 2개 의제
 - * 대통령임기 단축(7 → 5년), 선거연령인하(18 → 17세), 하원 선거구제 개편, 재외국민에 투표권부여, 동성결혼 허용, 가정·공적활동에서 여성지위 상승, 여성정치활동 확대, 신성모독죄 삭제 등
 - * 회의는 일반공개,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
 - * 총 18건의 권고안 마련
 - * 2건 국민투표회부: 대통령출마자격인하(35세 → 21세, 부결), 동성결혼허용(가결)
 - * 기성정치권은 이에 미온적 대처
- ☀ 2016. 의회는 법률로써 시민의회 구성(제2차)
 - * 시민 99명 + 1명의 의장(연방대법관)
 - * 낙태, 국민투표, 인구고령화대책, 기후변화, 선거일 고정 등

어떻게 바꾸나?

☀ 모범적인 헌법시민...

당신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후보를 찾아내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 보라. 그리고 (...) 당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 지지를 모으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를 찾아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모범적인 헌법시민이 될 수 있다. 찰스 다윈의 말처럼, 헌법의 눈에서 보면 바로 여기에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M. 터쉬넛, 헌법은 왜 중요한가 중에서>

내가 만드는 헌법학

- "The first thing we do, let's kill all the lawyers"
(W. Shakespeare, Henry VI Part II)
-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
(조정래, 전태일평전)

To be or Not to be(Shakespeare)
Two Beer or Not Two Beer(Shakesbeer)



감사합니다.

헌법

합의제 원리와 목표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통한 촛불 혁명의 완성

-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원리와 운영 목표¹⁾ -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더 이상 이런 민주주의로는 안 되겠다!”는 목소리와 열망이 모여 진행된 촛불 혁명이 진정 바란 건 ‘87년 체제’의 극복과 전환이었다. 단순히 나쁜 대통령 하나 쫓아내자고 그 오랜 기간 그 많은 시민이 매일 밤 모였던 건 아니었다. 87년 체제는 승자독식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승자독식 정치가 30년째 계속되니, 승자독식 경제, 승자독식 사회가 고착돼갔고, 그 와중에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는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이 불안하고 절망스런 나날을 보내왔다.

이제 권력공유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촛불혁명이 완성된다. 4.19 혁명은 작동 가능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와 대비 부족으로 그만 그 결과물 군사독재에 빼앗기고 말았다. 87년 시민혁명 후에도 정치권은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모색하고, 실천하려 들지 않고) 자기들끼리 지금의 이 승자독식 다수제 민주체제를 만들어놓았다가 한국을 세계 최악의 양극화 사회,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불안 국가’로 전락시켜 놓았다. 이제 더 이상 죽 썬서 개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죽 썬서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면, 혁명 후엔 반드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1. 민주주의의 양대 유형: 다수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말 뜻 그대로라면, 민주주의는 국가가 그 ‘주인’인 시민의 뜻과 선호에 따라 운영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불가능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가 밝히고 있듯, 시민사회의 뜻과 선호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주인들 간의 선호는 서로 다르기 마련이고 그 선호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

1) 이 글은 저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책세상 2014)의 관련 부분을 수정, 보완, 압축하여 작성한 것임

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국가를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주인의 뜻에 따라 운영해갈 수 있겠는가.

결국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이상에 근접할 수 있는 규칙이나 절차 혹은 제도를 만들어 그것들에 의해 국정을 운영해가는 정치체제인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문제란 결국 절차와 제도 디자인의 문제일 뿐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정치제도와 절차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므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파트(Arend Lijphart) 학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 제도 디자인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캐나다, 호주, 뉴질랜드²⁾)이 택하고 있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선진국가가 운영 중인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이다.

레이파트 등은 그 두 유형의 민주주의를 10대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소위 ‘3대 정치제도’에서 나타난다. 우선 선거제도이다.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대표제 혹은 다수결형 선거제도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예컨대, 그 전형인 소선거구 1위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득표율 1위에 오른 후보만이 그 지역민 전체를 대표하여 의회에 진출한다. 2위 이하의 후보들은 자신들의 득표율이 아무리 1위의 그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대표자격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2위 이하의 후보들에게 던져진 표는 모두 사표(死票)로 처리될 뿐이다. 여기서는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에 ‘비례성’(proportionality)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한다.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에 대하여 투표한다.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산출되면 그것에 비례하여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1등을 뽑는 게 아니니, 크든 작든 모든 정당이 각자 시민들로부터 받은 지지 만큼의 대표권 혹은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특성은 정당체계에서 나타나는 바, 이것은 선거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돼있다. 소위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져 있듯, 소선거구 1위대표제는 양당제를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선거구 1위대표제에서는 선거를 거듭 치를수록 지역구 1등을 양산해낼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역적 자산이 풍부한 거대 정당들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군

2) 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 개혁 이후 합의제 민주국가로 이행 중임

소정당들은 탈락하게 되어 종국엔 총선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각 진영의 대표 정당들 간에 벌어지는 양자경쟁 구도로 고착된다. 거대 양당 중심의 양당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모든 정당들이 등수 혹은 승패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획득한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배정받게 되므로 다양한 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 다당제의 발전은 당연한 귀결이다.

세 번째 특성인 행정부 형태의 차이도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와 연관돼있다. 소선거구 1위대표제로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같은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행정부 형태는 단일정당정부이다. 선거경쟁이 주로 거대 정당들 사이에서 벌어질 경우 어느 한 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따라서 수상 선출을 포함한 정부구성 권한이 의회에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라면 의례히 그 다수당이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중심제가 반드시 다수제 민주주의의 권력구조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행정부 구성 측면에서 그것은 다수제적 성격을 띤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대개 단독으로 행정부를 꾸리기 때문이다. 한편, 대륙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 합의제 민주주의의 행정부는 전형적으로 연립정부이다. 셋 이상의 유력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나누는 환경에서 어느 한 정당이 총 의석의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단일 정당에 의한 행정부 구성은 드문 경우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책 기조 등이 서로 다른 여러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맺는 것이 통상적이기 마련이다. 연립정부가 통상적이라는 의미는 국가 정책이 상이한 정당들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등의 정치제도 환경에 의해 제도적으로 강제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치제도는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34개 회원국 중 다수제 민주주의의 전형적 선거제도인 상대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 대여섯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의제 민주주의의 전형인 비례대표제 혹은 비례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사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대륙유럽 국가들 역시 다수대표제 등 영국식 경향이 강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 둘씩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민주주의의 표준이 합의제 민주주의로 수렴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도 이 같은 전환은 이루어졌다. 영국의 원형보다도 다수제적 성격이 더 강한 민주주의를 운영한다고 평가받아오던 뉴질랜드가 1993년 소선거구 1위대표제를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전격 대체하였고, 그 후 다당제-연립정부 형태의 국가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엔 캐나다에서도 뉴질랜드를 본받아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초정파적 개혁운동이 부쩍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사실은 다수제 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1970년대 초반 이후 줄곧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가 증대돼왔다. 1970년대 중반에는 북아일랜드의 모든 지방선거를 비례대표제로 치르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다른 여러 곳에서도 지방선거는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유럽의회의 영국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발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엔 영국의 중앙정치 차원에서 대기업과 자민당 그리고 노동당의 개혁파 등이 주도하는 선거제도개혁운동이 본격화되어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이 다수제 민주주의가 쇠락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린 다수제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다수제 민주주의와 배제의 정치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성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승자독식’ 또는 ‘패자전멸’ 제도라는 것인데, 다수제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영국인들은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단일 정당에게 정치권력을 몰아주면 임기 동안 그 정당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란 결국 정치권력을 차지한 다수당이 민주국가의 주인인 시민의 뜻을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구현해가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때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과 그 정당이 대변하는 사회세력들은 당연히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배제된다. 즉 ‘배제의 정치’가 다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다.

소수가 배제되고 무시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다수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33%의 득표율로 1위에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실 67%의 선거구민이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은 지역 대표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는 33%의 소수만을 대표할 뿐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 지역구 정치에서는 오히려 67%의 다수가 배제

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지역구의 대표권은 오직 그 소수대표자 한 사람이 독차지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단일 다수당이 이러한 소수대표 의원들로 구성될 경우, 이 당은 이른바 ‘제조된’(manufactured) 다수당일 뿐이다. 그 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사실상 소수파를 대표할 뿐인데, 따라서 그 당은 소수 대표 정당일 뿐인데, 그 당에 지역구 1등이 많은 까닭에 그 당이 50%가 넘는 국회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다수당 지위를 ‘역지로’ 갖게 되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50%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할 경우에도 이 소수대표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회 및 행정부의 구성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소수대표의 문제 혹은 불비례성의 문제는 자칫 사회통합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비록 소수대표일지라도 일단 합법적으로 정부를 장악한 정치세력은 승자독식 제도의 특성을 활용하여 독선, 독주, 심지어는 독재에 가까운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갈 수 있다. 이 경우 다 합치면 다수가 될 여러 소수파 그룹들이 정치과정과 그 과실 분배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사회 혼란과 정치 불안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배제의 정치가, 그것도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배제되는 ‘일방 폭주’의 정치가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합의제 민주주의와 포괄의 정치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정착으로 단일 정당에 의한 권력독식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그리하여 여러 정당들이 정치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 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정치과정은 양보와 타협에 의해 진행되기 마련이다.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당연히 다수제 민주주의보다는 이러한 합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잘 보장된다. 정치적 자유의 핵심은 시민들 누구나가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인바, 합의제 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정치적 자유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실 주체인 여러 정당들을 통해 최대한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설계된 민주체제이기 때문이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는 ‘사회적 자유’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곤 한다. 가난, 실업, 공공재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유는 다수제보다는 합의제 민주체제에 사는 시민들에게 더 안정적으로 주어진다. 이는 합의제 민주

주의에선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를 십분 활용하여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 결정과정(주로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의 분배 및 재분배 정책 강화를 스스로 견인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제 민주국가들보다 합의제 민주국가들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덜하고, 복지수준이 더 높으며, 약자나 소수자 배려가 더 철저하다는 것, 그리하여 합의제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점은 실증 연구에 의해서도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다. 특히 조세나 복지정책 등을 통한 합의제 민주정부의 재분배 수행능력은 다수제 정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 1> 참조)

<표 1> 정치제도의 재분배 효과, 1970-2010

정치제도	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재분배 효과
다수대표제	38.5	35.9	2.6
비례대표제	41.4	32.0	9.4
대통령중심제	48.1	41.4	6.7
의회중심제	38.8	31.4	7.4
단일정당정부	38.7	35.0	3.7
연립정부	41.3	32.6	8.7

* 출처: 강명세. 2013. “재분배의 정치경제: 권력자원 대 정치제도” 『한국정치학보』 47집 5호. 78쪽

합의제 민주주의가 복지 및 분배친화적 민주체제라고 한다면, 다수제 민주주의는 시장 및 경쟁친화적 민주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마디로 합의제 국가들이 다수제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경제민주화와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들은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들이며, 모두가 다당제 국가들이며, 모두가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이 연립정부가 기본인 합의제형 권력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4.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와 선거제도개혁 및 개혁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통해 협치 혹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개혁의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1) 선거제도 개혁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위기 상태에 있다. 현대 민주주의란 대의제 민주주의이며 정당 민주주의이나, 한국에선 대의제 작동의 현실 주체인 정당들이 아직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아 도탄에 빠진 민생을 어떻게 살려 낼 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다수는 자신들은 실상 ‘정치적 대표’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민주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그들을 통하여 국가공동체를 간접 운영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³⁾ 그러니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즉 대표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러한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 대표 없이 그저 방치돼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으로도 약자일 필요는 전혀 없다. 아니, ‘1인1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회의 다수 성원이기 마련인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력은 소수에 불과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비해 오히려 월등한 것이 정상이다. 그 다수자들은 표를 모아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에게 막대한 힘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강력한 정치력 덕분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강자들에 당당히 맞서 늘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와 합의의 정책결정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시민권’은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제대로 지켜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호남이나 영남 등의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왕의 전근대적인 지역 중심 독과점적 정당체계에서 탈피하여 정책, 가치, 이념

3) 결국 대의제 민주국가의 정치권력은 이 대리인들에게 주어진다는데, 그것은 주인인 시민들이 그들을 직접 뽑아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현대적 다당제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리함으로써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해주어 그들이 사회경제적 강자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길항력을 갖추게 한다면,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자유와 평등을 수호할 수 있는 정책과 법, 제도 등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사회의 다종다양한 선호와 이익을 제대로 대리할 수 있는 유력 정당들이 다채롭게 부상함으로써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선거구 1위대표제 중심의 것이다. 더구나 이 불비례적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 선거제도가 야기하는 민의 왜곡 현상은 매우 심각한 지경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독과점체제의 유지가 그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이다. 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늘 그래왔듯, 예컨대,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그 같은 민의 왜곡 현상은 여실히 목격됐다.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54.7%만의 득표로 전체 의석을 거의 싹쓸이(94%) 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영남에서 20.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나름 선전하였으나 의석점유율은 고작 4.5%에 그치고 말았다. 민주당의 이 득표율은 15대 총선에서의 12.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었으나,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의석점유율은 15대 당시의 3.9%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지역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상당수 영남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함이 선거제도로 인해 그 결실을 맺지 못한 현상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호남 지역은 단연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은 53.1%의 득표율로 83.3%의 의석을 가져갔다.

한국에서 정치적 대표성의 포괄적 보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과 이념 중심의 다당제 발전은 오직 선거제도의 개혁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명실상부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그 불비례성이 과도할 정도로 높은 작금의 소선거구 1위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그대로인 한, 시민들만의 노력으로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를 깨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권력구조 개혁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권역별 연동제와 같은 비례성 높은 선

거제도가 도입되고, 그에 따라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되면, 이는 다시 연정형 권력구조의 제도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념과 지향 가치, 그리고 정책기조가 상이한 (따라서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회경제적 집단들이 제각기 서로 다른) 셋 이상의 여러 유력정당들이 자웅을 겨루는 다당제에선 어느 한 정당이 홀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안정적인 정부 구성을 위해선 복수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통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 다당제는 다시 연정형 권력구조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인데, 사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발달 정도로 평가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만한 국가들은 모두 (서로 맞물려 있는) 이 세 종류의 정치체도로 구성된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작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바꿈으로써 협치 혹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도의 개혁보다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더 용이할 것이므로, 이른바 ‘역경로’를 택하여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다.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논거 중의 하나가 소위 ‘공간 생성론’이다.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함으로써 ‘제왕’을 제거하면, 그(녀)가 사라진 그 자리에 전에 없던 새로운 정치 공간이 열린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정당 행위자들은 그 전엔 하기 어려웠던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억제되거나 정체돼왔던 건강하고 자연스런 정치 현상이 벌어진다. 그간 진행돼왔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 정당들의 모습이 과감히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필경은 다당제 혹은 그에 준하는 다원주의적 정당체계가 부상한다. 그렇게 유력 정당 혹은 정치 세력들이 여럿 각자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간다. 각자의 지분을 서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도 공고케 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협치 제도의 발전이 그들 간의 주요 합의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와 분점형 권력구조의 도입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져 가리라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개연성이 있는 주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에

4) 이에 비해, 순경로는 위에 말한 순서, 즉 비례대표제 도입, 이념과 정책 중심으로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 연정형 권력구조의 제도화 순서로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것을 말한다.

선 이런 일이 벌어진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선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정당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공간이 훨씬 넉넉하므로 그 공간에서의 다채로운 활동이 종국에 다당제의 발전과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이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보통선거에 기초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지금까지 그 민주주의를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해온 나라들이 왜 아직 양당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 그리고 왜 아직도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지 못한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폐기되면 기존 정당이 분열하거나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선거구 1위대표제의 양당제 촉진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위에서 언급한 뒤베르제의 관찰 결과를 왜 우리가 ‘법칙’이라고까지 부르겠는가. 투표로 1등을 뽑는 게임은 본디 어느 나라 어느 수준에서 벌어지더라도 후보들 간의 1 대 1 구도 형성을 유인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보수 정당의 여러 계파 입장에서선 분열보다는 거대 정당의 깃발 아래 (일본 자민당의 파벌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로 뭉쳐있는 게 선거정치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권력구조가 어떻게 개편되든 소선거구 1위대표제가 유지되는 한 주요 정치세력들은 양당제 하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것이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계속 양당제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 이유이다.

무엇보다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그 자체가 바로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그 ‘합의’ 형성의 현실 주체는 정당이다. 다수의 유력 정당들이 의회 및 정부에 포진하여 그들이 각기 대표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선호를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통해 상생의 정책을 만들어 갈 때 합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념과 정책 중심으로 구조화된 다당제의 확립이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은 오직 정당의 구조화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곧 자기만의 분명한 이념과 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특정 이익을 안정적으로 대표하고 각자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의 유력 정당들이 확고히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권력구조도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한다. 설부른 권력구조의 개편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자칫 개악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전시켜가되, 그 실천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

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합의제로의 발전을 위해선 권력구조의 개편에 앞서 우선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그래야 정당의 구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5. 선(先)선거제도 개혁, 후(後)권력구조 개편

다시 말하지만, 정당의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은 자칫 권력구조의 개악이 될 수 있다. 지역주의가 여전히 (실재적 혹은 잠재적) 유력 변수로 남아있는 한국의 현 선거정치 환경에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서의) 책임총리제 도입은 이념과 정책이 아닌 지역과 인물 중심의 다당제 형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지금의 '영남당'이나 '호남당'에 더하여 '충청당'이나 '강원당' 등이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군소 지역정당(들)일지라도 지역 지지기반을 잘 관리하여 필요 최소한의 의원 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연립내각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형성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상당한 정치권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할거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며, 권력구조는 결국 지역정당들 혹은 그 보스들 간의 '과두체제'로 개악되는 꼴이 된다. 그러한 방식의 권력 나눠먹기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불안정한 연립정부의 구성과 (중심 이념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잦은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정부의 효율성과 수행능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엔 또한 연립정부의 장점인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정책과 이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이나 지역 이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노동이나 중소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들의 선호와 이익이 정책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 및 정치가들은 정책이나 이념을 좌표로 하는 책임윤리를 지키기보다는 정치적 보스의 사적 필요성이나 지역 이기주의적 요구에 타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보수, 중도, 진보 등을 표방하는 다수의 유력 정당들이 존재하여 그 정당들이 각기 자신들이 대표하는 여러 계층과 사회집단들의 이익을 적절히 집약하고 상호 절충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합의로 결정해간다는, 그리하여 사회통합을 유지한다는 합의제 정치의 본연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20대 총선 직전까지의) 지역 중심 거대 양당제로 되돌아갈 경우엔 의

원내각제에서는 물론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현행 대통령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제 1당(과 심지어는 그 1인자)에 의한 승자독식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뉴질랜드나 영국의 예가 보여주듯, 양당제와 의원내각제의 결합은 여당 (혹은 여당의 1인자인 수상) 독주의 다수제 민주주의로 귀결되곤 한다. 어차피 행정부는 양대 정당 중 의회의 다수당이 된 어느 한 정당에 의해 단독으로 구성되고, 그 정당의 대표인 수상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당체제에서의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동거정부 형성 경우 외에는 여당이 대통령과 내각을 독점하는 다수제 정치가 통상적이기 마련이다. 양당제가 유지되는 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의 개편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면 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우선 힘써야 한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 간의 비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은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 간 경쟁을 촉진하여 정당의 구조화를 견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先)선거제도 개혁, 후(後)권력구조 전환’의 원칙에 따라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혁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권력구조의 개편은 개헌을 요구하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선거제도의 개혁은 법률 개정만으로도 이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무작정 열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개헌을 무리하게 시도하기 보다는 당장은 선거제도의 개혁에 사회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타당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6. 구조화된 다당제와 연정형 권력구조의 친화성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이념과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된 다당제가 구축되면, 권력구조의 개편 작업은 그 이후 정당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돼갈 공산이 크다. 왜 그러한지 간략히 살펴보자.

이번 20대 총선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다당제와 대통령제의 결합은 (정당의 구조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여소야대라고 하는 ‘제도 간의 부조화’ 문제를 수시로 발생시킨다. 유력 정당이 셋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국회의 단독 과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

위 ‘분점정부’라고 하는 이 상황에선 야당들이 연대하여 대통령/행정부의 입법 시도 등을 저지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또는 대통령과 의회는 상호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경우 정부의 집행능력은 크게 저하된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당정치에서는 지역할거주의에 기인한 바 큰 다당제 상황이 여러 차례 벌어졌었다. 지역에 기초한 다수 정당들 간의 경쟁이 팽팽한 상태에서 분점정부 문제가 계속 발생했음은 물론이다. 실질적인 양당제 구도가 굳혀진 노무현 정부에서도 후반기에는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졌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하소연도 이때 나온 것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태우 정부 때에는 3당 합당, 김영삼 정부에서는 타당 의원의 영입,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DJP공조’라는 일종의 연립정부 형성,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연정 등과 같은 인위적인 정계개편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듯 그것들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했고 오히려 정당 간 반목과 대립의 심화, 국민들의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 확산, 의회정치의 위상 추락 같은 심각한 후유증만 남기곤 하였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권력이란 나누어 갖기 어렵게 설계·발전돼온 것이고, 따라서 그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합당, 연합, 연정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은 것이었다. 결국, 다정당체계와 대통령제 결합의 곤란함을 당장 극복하고자 추진됐던 무리한 시도들은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파행과 부작용만 양산했을 뿐, 정부의 수행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는 데에는 모두 실패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다당제에서 대통령중심제의 효율적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정당의 구조화가 이루어지면 과거의 그러한 미봉책마저도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념 및 정책적 차이가 뚜렷한 정당들 사이에선 의원들의 당적 이동도 매우 어려운 일일뿐더러 소수 엘리트들 간의 정략적 거래를 통한 합당, 정당연합, 연정 등과 같은 인위적 정계개편도 (비구조화된 정당들 사이에서처럼) 쉽게 이루어질 리는 없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되면 여소야대에 기인한 대통령의 정책수행과 국정운영 상의 어려움은 과거보다 더 심해지리라는 것이다.

결국 이처럼 심각해진 제도 간의 부조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당들 간에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대통령을 배출하겠다는 정당이라면 그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⁵⁾ 구조화된 다당제는

5) 물론 비례대표제-다당제-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처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연정형 대통령제의 작동이 수월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결합할 때 더 순조롭게 작동하며, 그때 정부의 수행능력이나 정치사회적 안정성도 더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과 이론에 의해 공히 증명된 바이다. 유럽의 선진 합의회 민주주의 국가들이 예외 없이 이러한 제도 조합을 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임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 이후의 추진 과제로 미루어 놓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 따라서 합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제도의 개혁은 비례대표제의 획기적 강화, 정책과 이념 중심으로 구조화된 다정당체계의 확립, 그리고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등과 같은 순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만, 비례대표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은 둘 간의 제도적 상보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에 진행돼도 무방할 것이다.

경우에도, 그것이 과연 연정의 안정성 및 제도화 수준의 측면에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의 연립정부란 제도적 구속력보다는 행위자들의 전략이나 상황 판단에 의해 운영되는 불안정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금

후원개발에 대한 이해

이선희(휴먼트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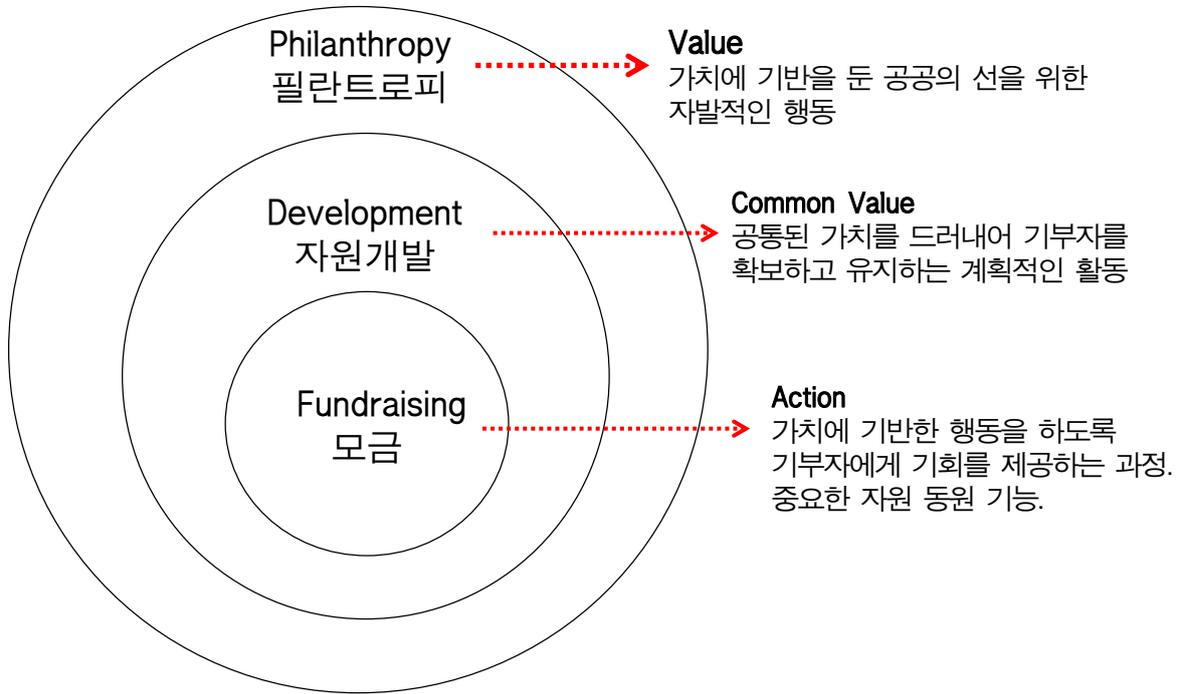
후원개발에 대한 이해

이선희 (주) 휴먼트리 대표
humantree2010@gmail.com

비영리단체 재무구조 이해



후원개발의 기본 개념



Source: New York University / Heyman Center. Annual Giving, Major Gifts, Campaigns

human tree
change the world by fundraising

개인기부자의 발달단계



Source : Successful Fundraising by Joan Flanagan

human tree
change the world by fundraising

기부자의 기부 동기

- 미션에 대한 믿음
- 종교적 책임
- 도덕적 의무
- 이타주의
- 공동체 발전에 기여
- 사회 환원
- 비즈니스 인맥 확장
- 사회적 교류
- 사회적 지위
- 인간적, 영적 성숙
- 동정심
- 관용
- 은혜에 대한 보답
- 감사의 마음
- 의무감
- 죄책감
- 가족 전통
- 금융 혜택, 세제 혜택
- 친구나 동료들이 참여해서
- 직원이나 대표를 알아서
- 요청 받아서

기부자 심리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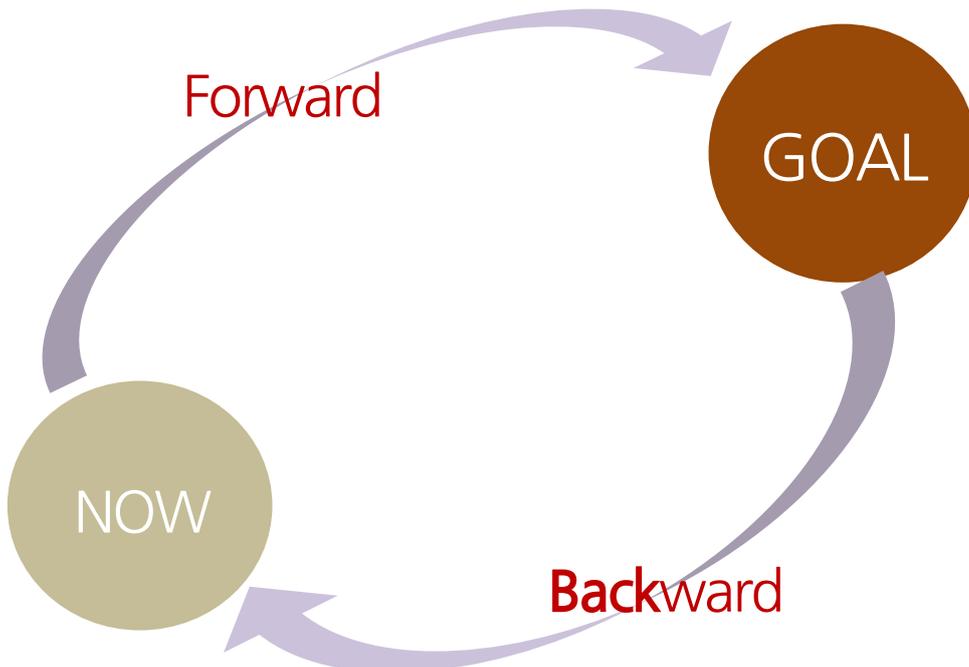
-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프로그램에 관심 있음
- 가치와 비전이 크고 멋질 때 더 참여하고자 함
- 자신이 아는 사람이 요청해 주길 원함
- 즉각적인 피드백(감사, 인정, 결과보고)를 받고 싶어함

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기부한다.
하나는 명분이 나하고 무슨 인연 관계가
있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요청해 올 경우이다.

후원개발의 성공원리

1. 모금 목표 명확히 하기
2.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
구성원의 공감과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
혈연, 지연, 학연 네트워크와 함께
3. 단체의 Ownership 공유 -> 파트너십
4. 기부자 중심 모금
5. Goal Oriented Fundraising
6. 요청 횟수 늘리기

Goal Oriented Fundraising



모금

후원개발을 위한 마케팅 기획

김종욱(휴먼트리 이사)

fundraising

MARKETING PLANNING

HUMANTREE. Kim JongWook



- ★ 철학. 광고학 공부.
88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부터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마케터로 일.
2007년 '올 해를 빛낸 창조적 크리에이터 50인' 선정.
- ★ 2011년, 서울시장 선거모금을 시작으로,
NPO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일 시작.
현재 비영리 마케팅회사, 휴먼트리 마케팅이사.
- ★ '소통을 통한 과제해결 및 성과창출'이 유일한 관심사.

HUMANTREE :

- 최초로 이론/ 워크숍/ 실습/ 멘토링을 통합, 한국 펀드레이징 교육의 기준을 제시.
- HIFS/ 복지재단/ 지자체/ 정부기관 대상 기금조성교육 시행. 한 교육당 약 1억원의 모금실습 성과 창출.
- 현재까지 일천명 이상의 펀드레이저 양성
- 광고 마케터 출신으로 구성된 휴먼트리는 연간 100여 중소 NPO의 문제해결 파트너로, 교육/ 컨설팅/ 캠페인 개발 중.



- 1951. Gehart D. Wieve _ '인류애도 비누처럼 팔 수 있을까?'
- 1965. 170개 대학 재정난으로 폐쇄.
- 1969. Philip Kotler & Levy. 논문발표 : Broadening the Concept of Marketing
- 1971. Philip Kotler & Gerald Zaltman _ Social Marketing 정의
- ⋮
- ⋮
- ⋮
- 2017. 우리의 고민은 진행형

Q. 어떻게 수용자와 소통에 성공할 것인가?

Q uestion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1ST _ 당신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적이며 타당한 것입니까?

Quiz

아래 목록에서
목표라고 생각되는 것은?

유럽 일주하기

1년에 5억 모으기

영어공부 열심히 하기

몸무게 10Kg 줄이기

명문대 입학하기

연봉 3배 올려받기

일본어 마스터 하기

- 스노우볼 게임 中 -

03
jwkim

예를들어

북한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1억원을 모금한다

04
jwkim

목표!



목표+1



상대로부터 이끌어내고
싶은 행동(의 정의)

11.3일까지 기부하고
11.4일 가족, 친구와 함께
나에게 투표할 것

기부자 기대반응목표

적용사례 & Key

북한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말까지
1억원을 모금한다

북한 기아문제의 안정적
해결을 목적으로 2015년
10만톤 식량을 지원키 위해

10명 직원과 자원봉사자
50명이 매일 1,000개 이상의
전화, 메일, 문자를 보내

2015년 12월 31일까지
14년 대비 15% 향상된
1억원을 모금한다

이를 위해, 잠재기부자 중
일만명이 친구와 함께
커피값을 절약,
정기 기부자로 참여하게 한다

07

jwkim

Q uestion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2ND_ 목표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08

jwkim

모금과제? 예를들어

대상 사업/프로그램의 중복성으로 인해 기부 피로감이 발견됨	대상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 저항감이 확인됨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부자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함
대상 사업/프로그램을 기부자들이 낯설어함	모금 담당, 리더십 지원 등 조직적 토대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	기부자 감소 현상이 확인됨
새로운 아이디어/ 전략이 부재함	단체의 재정 상황상 모금예산을 확보하지 못함	단체에 대한 신뢰도 인지도가 낮아 기부를 망설이는 상황
저항없는 기부 요청액은 얼마일까?	휴가, 대형이벤트 등 외부요인으로 기부를 잘 안함	모금가의 부끄러움 etc...

09
jwkim

예를들어

5why

10
jwkim

▶ 왜, 목표부터 잘 세워야 할까?

**목표는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등이며
해결할 과제를 알려주는 과업지시서**

마케팅 기획은 그 과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고안하고 실행, 통제하는 작업

11
jwkim

Question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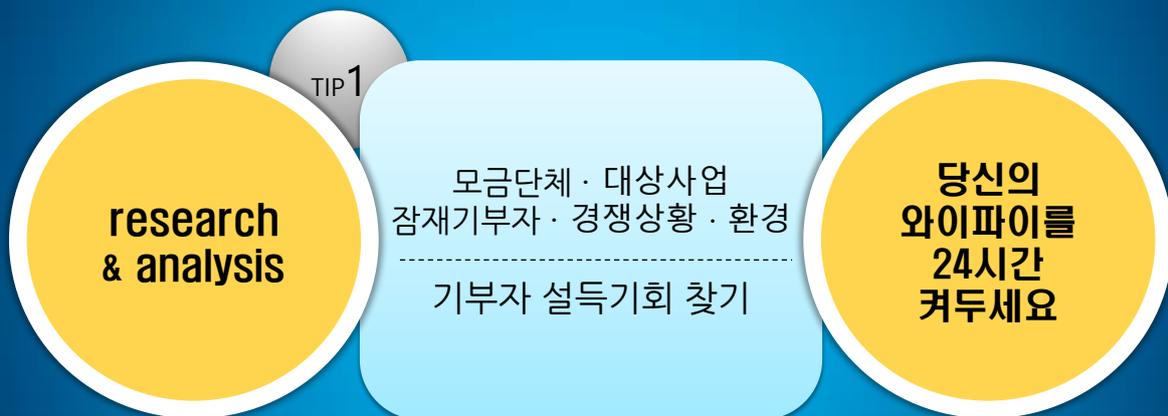
3RD _ 어떻게 과제를 해결하겠습니까?

12
jwkim

MARKETING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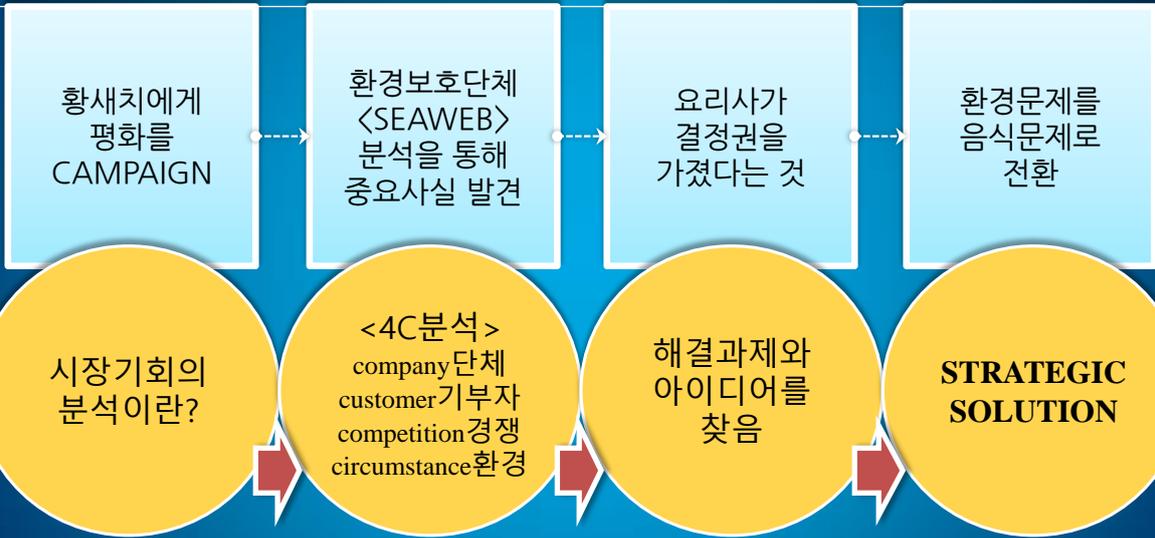
과제해결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TIP5

13
jwkim



14
jwkim

예를들어



CASE1 - 현장



현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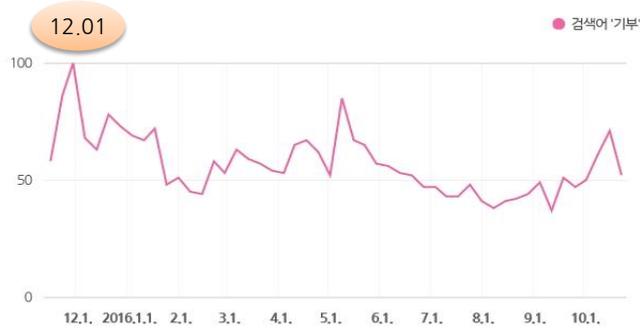
CASE3 – 뉴스



시익성 :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나?

CASE4 – 통계 데이터





‘기부’ 일년중 언제 기부 요청하면 가장 성공확율이 높을까?
네이버(데이터 랩)



CASE STUDY

〈00대책〉
기아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구호활동을 펼치는 본 단체는 캄보디아 지역개발사업을 준비중이다. 병원, 학교, 급수시설 등 건립에 소요되는 10억원의 모금이 필요하다

“
잠재기부자는 누구일까?
무엇이 그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까?
”



무엇이
보이나요?

Your best listener

adopt. volunteer. donate.



Your biggest fan

adopt. volunteer. donate.



Your
personal
trainer

adopt. volunteer. donate.



20

jwkim

TIP 1-1

donor
profiling

펀드레이징 관련 대학원 논문 90%
- 기부자심리

기부자 시선으로 보고
기부자 언어로 말하고
기부자에게 물어보고
기부자가 원하는 것을 쓰기

ie. 기부자
마음에서
답찾기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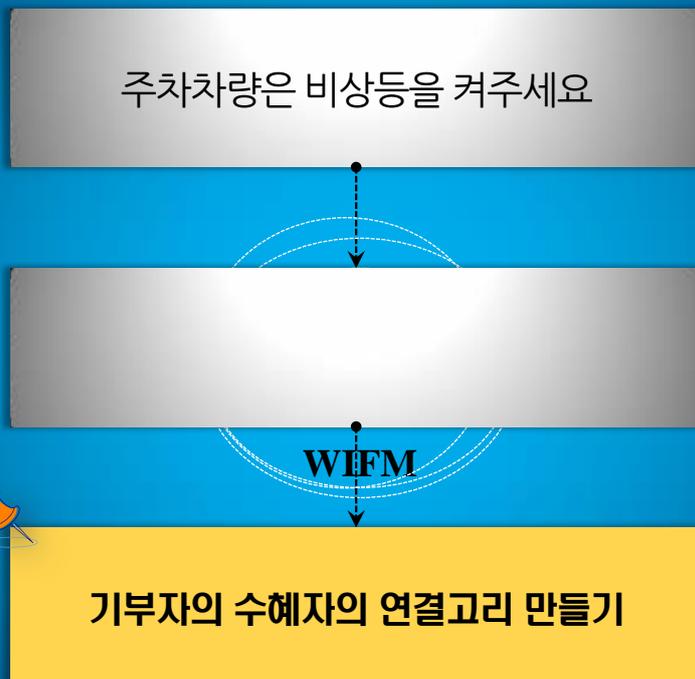
jwkim

예를들어



Global Angels

결국 이것!



기부동기



경제적 혜택



종교신념 구현



지위. 명예 획득



변화가치 실현



자녀의 교육가치



창조육구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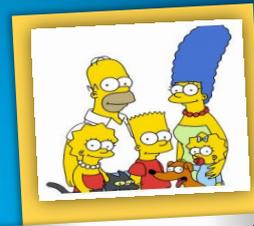
기부동기



생명구제 자긍심 실현



공동도전 즐거움



가족애와 도덕적 책무



평판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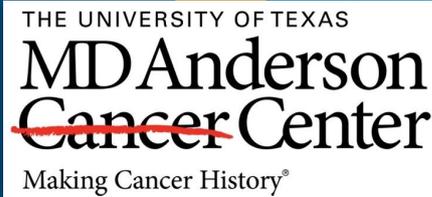


집단소속감



교류기회 etc

어떻게 파악할까? - 기부자 데이터 수집



성별, 연령,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

기존 기부자와의 관계

단체와의 관계

준거집단, 영향력자

단체에 대한 인식

취미, 관심사

단체에 대한 요구조건

소득과 기부가능액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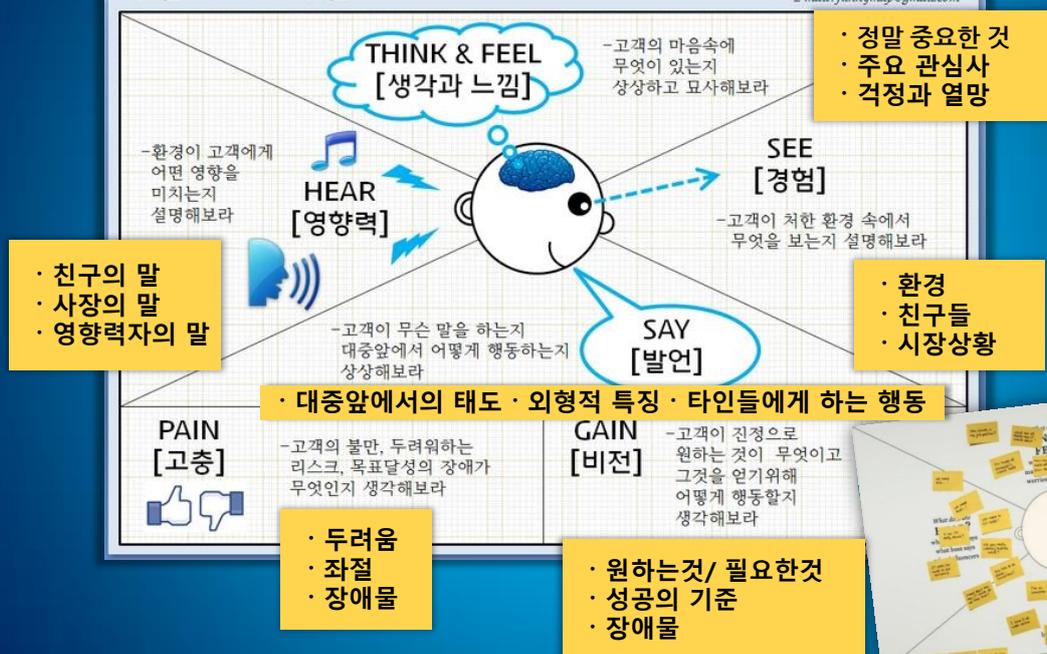
26

jwkim

어떻게 파악할까? - The Empathy Map : 공감지도

공감지도 작성법

Blog: <http://blog.naver.com/warmair>
E-mail: fanymasp@gmail.com



27

jwkim

참고

기부자 여정맵을 통하여 고객의 일상을 추적해 봅니다.

TIME	06:00	07:00	08:00	09:3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PLACE	집				교회				점심방				점				취침			
행동	1) 6:30 기상 2) 기도하기 3) 운동(스트레칭) 10회 4) 세수하기(식사하기) 5) TV시청 - 기상예보 - 뉴스 6) 인솔권 주사(자기주사) 7) 피트니스(화장) 8) 집에서 어떤거리 상담미팅				1) 예배 2) 12:00 점심식사 3) 노인대학공부 4) 교회동료와 대화				1) 피맛찬 점심편 2) 친구들과의 모임				1) 저녁식사 2) TV시청 - 드라마 3) 할 근거리 걷기 4) 취침 전 영상							
사람	1) 아들, 매느리와의 아침 식사				1) 예배, 목사님, 교회동료와 대화				1) 친구들과 대화 - 교회(이)기, 자녀(이)기(자랑)				1) 아들, 매느리 - 주처, 정처, 경제공고, 일생 - 손자, 손녀, 건강관련대화							
이용도구	1) 신문 (경제가짜보통판, 동보(이)기) 2) TV, 뉴스시청 3) 피트니스 4) 인솔권 주사기				1) 집에서 이동(다중)공통이용 - 다리가 아프지만, 운동이와 생각함				1) 직접(한)시(대화)기 만남 2) 전화 걸고 친구(연)계(제)제(이)용(분)기 - 스키(연)분(제)는 (연)계(제)제(이)용(분)기 - 시골(연)분(제)도 (연)계(제)제(이)용(분)기				1) 아들(연)계 (연)계(제)제(이)용(분)기 2) 라디오는 잘 안들음 - 우산(연)분(제)가 (연)계(제)제(이)용(분)기							

- 사용자(기부자) 일상경험을 체계적으로 시각화
-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터치 포인트를 바탕으로 구성
- 문제와 함께 해결의 기회를 발견하고 특정 터치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



CASE STUDY

<0000무용단>

국립기관인 본 기관은 저소득청소년 무용체험교육 등 공익성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모금액은 이천만원이다

“ 소수의 향유대상인 무용단체에 왜 기부자가 참여해야하나? 기부자와 현대무용에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

Q
2017년 최고의
히트작은?

29
jwkim

benchma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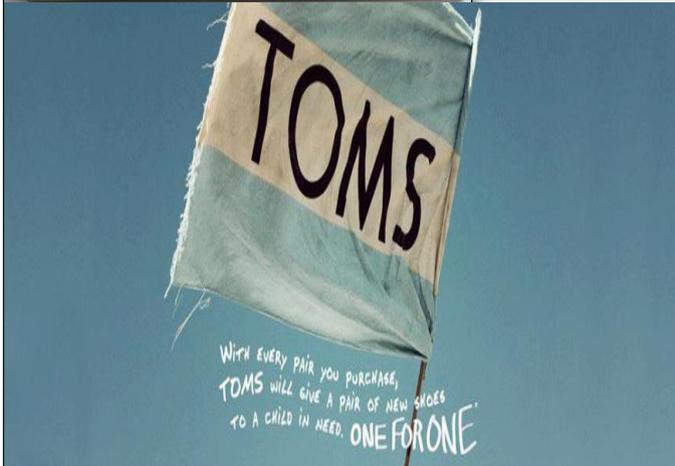
TIP2

세상에 널린 아이디어를
훑쳐써라. 자신에 맞게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이노베이션 - IFC. 30주년

성공사례의
내 것화

30
jwkim

사례2 - 모금방식/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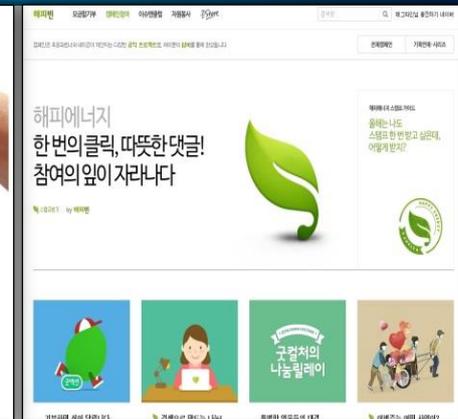


1+1. 기부연계상품

31

jw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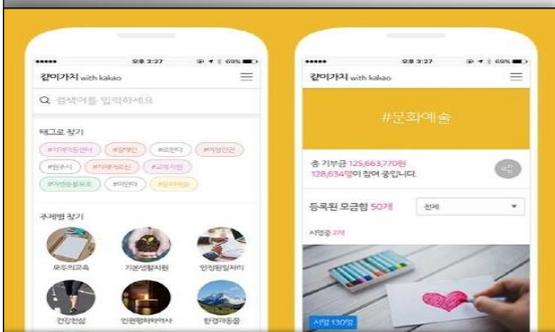
사례3 - 모금방식/상품



기부위젯

뉴미디어 기부시스템

온라인 포털모금



모바일 펀딩

스토리 펀딩

32

jwkim

사례4 - 모금방식/상품

Giving Back for a Better Tomorrow.

100% of all net proceeds will be donated to the Avon Breast Cancer Crusade.

Pink Ribbon Product Collection

Speak Out Against Domestic Violence Collection

AVON BREAST CANCER CRUSADE



브랜드 로열티 상품



단체산출물의 기부상품



자체개발 Charity Goods

사례6 - 모금방식/상품



기부클럽

나눔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Honor Society™

아너 소사이어티

나눔 문화를 만드는 고액기부자 클럽입니다.

참여방법

- 개인회원: 1억원 기부 또는 기부액 (단, 연간 3천만원 이상 기부)
- 법인/단체회원: 연간 3천만원 이상 기부

※ 기부금 지원/채: 혜택을 받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다양한 분야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혜택

- 3년 범위: 소이름 및 본사명 환자 가족 혜택
- 5년 범위: 휴가비 지원
- 10년 범위: 휴가비 지원
- 15년 범위: 휴가비 지원
- 20년 범위: 휴가비 지원
- 30년 범위: 휴가비 지원
- 40년 범위: 휴가비 지원
- 50년 범위: 휴가비 지원

명예와 혜택

- 명예의殿堂에 기부자명 헌액
- 명예로운 기부자명으로 지정사업 운영
-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 40년 이상 유공자 훈 표창 대상 추천

기부금 세제 혜택

- 개인: 소득세율 세 30% 20% 10% 소득금액의 10% 소득공제
- 법인: 포괄과세제일 때 20% 10% 5% 소득금액의 30% 소득공제

사례7 - 모금방식/상품

Thirsty?
\$1

unicef
united nations fund

Challenge
To raise \$1 million for UNICEF, we had to create a product that was both fun and functional. The solution was a water bottle that could be used as a water filter.

Implementation
We created a water bottle that could be used as a water filter. We then launched a campaign where people could buy the bottle for \$1 and donate the rest of the money to UNICEF.

Results
We raised \$1 million for UNICEF. The campaign was a success because it was both fun and functional. People wanted to buy the bottle because it was a great way to help a good cause.

DIRTY WATER™
is not an actual product but a real problem for millions of children around the world.
TAP PROJECT.ORG

외오리레이싱 동전 모금함

unicef ROLYPOLY Donation Box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BRIEF
기부, 모두에게 더 쉬워질 수 있을까?

IDEA
다 함께 일으켜 세우는 오목이 모금함

RESULTS
동전 하나로 얻는 아름다운 선행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독특한 모금함

35

jwkim

사례8 - 모금방식/상품

개인화한 온라인 모금의 가능성
BSR (Blog Social Responsibility)

콜로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파워블로거와 함께 하는 '나마스떼, 갠지스' 해피빈 모금 이벤트 설명회

온라인 개인화 모금

기부의 달인
달인(達人) [명사]
1. 화문이나 기예의 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
2. 널리 사람의 아지에 정통한 사람. 달관한 사람. 달자(達者), 명인(名人)

기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부의 달인을 만나다'의 BF입니다. 오늘 모서를 달인은 16년동안 한반도 노래방 점수가 90점 밑으로 내려가 본적이 없다는 **맹 업체호 기부자님**이십니다.

어린이 시민모금가 지리산에 오른다

시민모금가는 기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의 모금이나 SNS, 수혜모금과 같이 누군가 만들어 준 곳에 단순히 기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철학과 방식으로 모금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리산 정상 천왕봉에서 (막무가네 대장부) (막무가네 대장부)가 자랑스럽습니다.

자원봉사를 활용한 모금

생일도, 철암, 부산반송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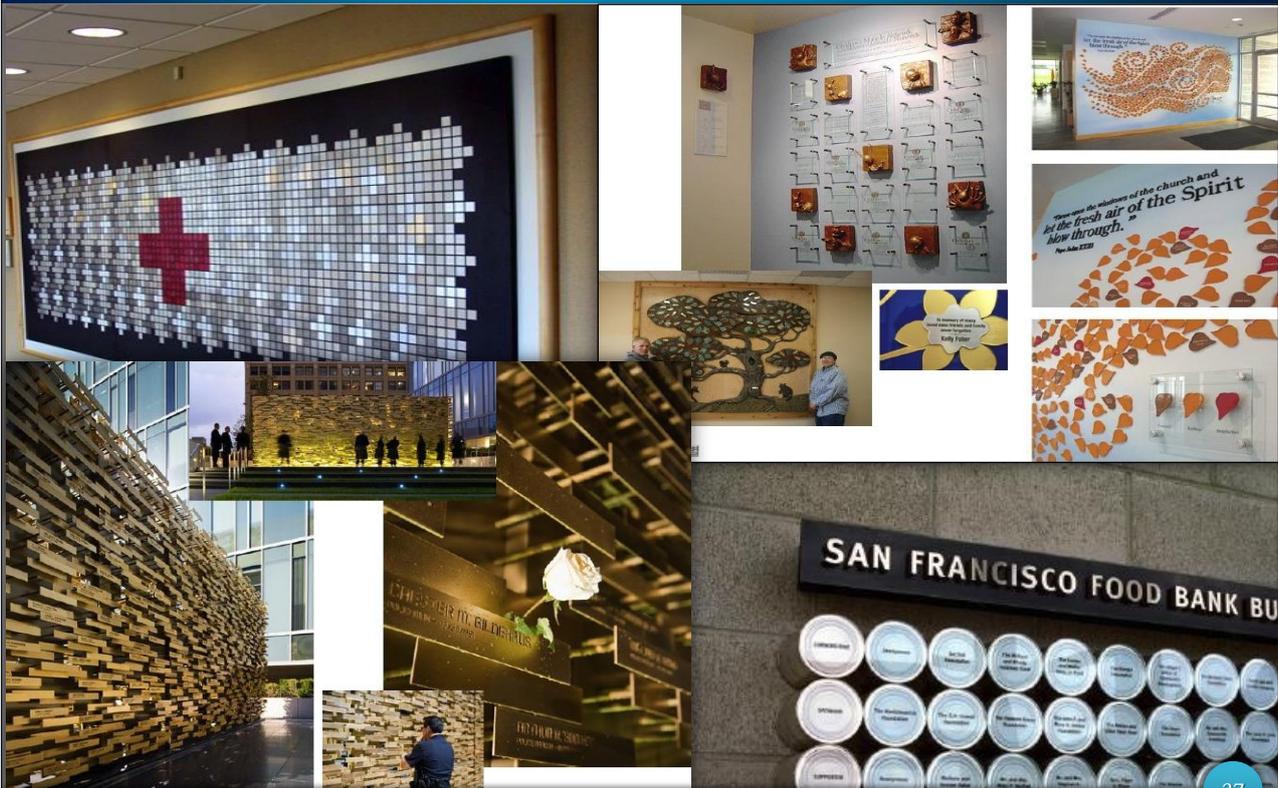
기부 불패 아이템 : 어린이

모금의 새로운 트렌드 : 실 수요자들(주민 포함)의 참여로 인한 감동

36

jwkim

사례9 - 모금방식/상품



도너스월. 기부자벽

37
jwkim

사례11 - 모금방식/상품



스타연계모금



기림일연계기부



바자회

38
jwkim

사례13 - 캠페인



動因 - Enabler는 무엇인가?

W.Edwards Deming - Benchmarking

경기도민. 평균 69점 맞는 시험지

소속: () 나이: () 이름: () 점수: ()

1. 몸을 바닥에 붙인 자세가 다른 하나는? (10점)
 ① 딱딱기
 ② 찰반기
 ③ 침반기

2.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 색깔을 바꾸는 동물이 아닌 것은? (10점)
 ① 불가사리
 ② 문어
 ③ 창개구리

3. 축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 스포어는? (10점)
 ① 1:1
 ② 2:1
 ③ 3:2

4. 축구에서 드로잉(두 손으로 던지기)한 공이 그대로 들어가면 골이 인정될까요? (10점)
 ① 골로 인정된다.
 ② 골로 인정되지 않는다.

5. 다음 중에서 <부치는> 것은? (10점)
 ① 우표
 ② 짐
 ③ 밥풀

6. 동요 나비야에서 나오지 않는 나비는?
 ① 노랑나비
 ② 호랑나비
 ③ 흰나비

7. 신조어를 연결해 보세요. (10점)
 ① 버카중 ○ ○ 킬 때끼고 빠질 때 빠져
 ② 안물안공 ○ ○ 버스 카드 충전
 ③ 켈기빠빠 ○ ○ 안 물어봐음 안 공급함

8. "우중이는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주(도로 항했다)"에서 <C>는?
 ① 요금소
 ② ...
 ③ ...

9. 동 ...
 ① ...
 ② ...
 ③ ...

10. (...)
 ① ...
 ② ...
 ③ ...



6. 풀어봅시다 (전주시장 김승수)



2,000,000원 지원

6. 풀어봅시다 (홍남지사 안희정)



금일부 지원

6. 풀어봅시다.



Friendship Machine – Coca Cola

42
jwkim

TIP3

donor
relationship

모금기여도 :

- 조사와 기부자발굴 - 25%
- 긍정적 관계와 참여 - 60%
- 요청서와 제안과정 - 05%
- 사후관리 - 10%

**‘관계맺기’
일편단심
내편 만들기**

43
jwkim

효과적 관계맺기① - 기부자 주인공 만들기



44

jwkim

효과적 관계맺기② - Experience 전략 : 강력한 비언어적 요청



기부자

“ 경험을 통한
강력한 연결고리 만들기 ”



단체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



자원봉사로
참여를 이끈



문화를 함께
소비



학습욕구를
자극

45

jwkim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4+1



Q

어떤 종교가
노숙자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differentiation

TIP4

경쟁자를 찾을 것. 차이를 만들려는 노력이 생겨나고, 새로운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에너지가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

**경쟁의 힘
이용하기**

경쟁자 선택하기

당신의
경쟁자는
어디에 있나



욕구경쟁자

바캉스? 기부?

품종경쟁자

국제구호에?
의학에?

상표경쟁자

A대학?
B대학?

**제품형태경쟁
자**

병원?
의과대학?



몇가지 사례



50
jwkim

TIP5

share-tainment

사람을 모은 후, 가치를 소구
- 先 방식, 後 가치소구 :
재미는 더 많은 기부자를 모은다

유머의 힘
활용하기

51
jwkim

둘째미끼 – Fun! : 공유재미 만들기



52
jwkim

Question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4TH _ 목표를 향한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segmentation & targeting

53
jwkim

: 병법에서 배우기

“ 나는 한 전투에서 패배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1분도 잃지는 않을 것이다 ”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



“ 신(God)은 병력이 많은 쪽에 존재한다 ”

나폴레옹

MGM
members get members

고수는 자기만큼 모을
사람을 모은다

프로젝트 관련 이해관계자
(Stakeholders)를 모금가로
활용

'뽀빠이'
약자의 승리
전략 활용하기

참고

활동가/일원	정기후원 목표 내용	정기후원 목표금액	일시후원 목표 내용	일시후원 목표금액	총 목표 금액
이정선			20명	500,000	500,000
홍진영	5명x10만원x12개월	6,000,000	5명x10만원	500,000	6,500,000
정경선			50명x10만원	5,000,000	5,000,000
김현주	(1만원x 12개월) x 20명	2,400,000	100만원	1,000,000	3,400,000
미은하			1만원x10명	100,000	100,000
윤희정			2만원x10명	200,000	200,000
조문선			11월/10명100만원 12월/10명100만원	2,000,000	2,000,000
박주연			일시후원 50명x2만원	1,000,000	1,000,000
서문영	5명x1만원	50,000	일시후원 10명x10만원	1,000,000	1,050,000
김경희			10명x1만원	100,000	100,000
진정은				1,000,000	1,000,000
김해인			5만원x10명	500,000	500,000
정애경	5명 x 12개월	600,000	5명 x 10만원	500,000	1,100,000
김정현			답 아직		
유의선			답 아직		
조영권			답 아직		
채리미영			답 아직		
윤영호			답 아직		
한채윤	소개만 가능		소개만 가능		소개만 가능
합		9,050,000		13,400,000	22,450,000



참고

(블런티어) 모금가 및 관계망을 통한 잠재기부자 개발 표

모금가	스타트 모금가의 관계	정기기부자 예상목표	일시기부자 예상목표	현물기부자 예상목표	예상목표금액
		※ 예: 10명x1만원x12개월 = 120만원 (정기기부는 1년지 합산)	※ 예: 10명x3만원 = 30만원	※선물기1x5만원(소비자가)	※ 예: 120+30+5=155만원
	본인				
총인원		소계	소계	소계	총계

참고 – 연대 or 융합



사람 연대

MGM방식 _ 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

Volunteer방식 _ 수원. 국제청소년 볼런티어 캠프 • 아르고. 볼런티어 펀딩 • Virgin Money Giving • 네일아트 전문가가된 여직원 • 커피배달원이 된 김대리

Crowd Funding/Sourcing방식 _ kiva

MGM



조직 연대

단체와 단체 결합 _ 수원. 기부올림픽

단체와 매체 결합 _ Daum. 뉴스펀딩

단체간 정보 결합 _ 환경재단+ 카라의 기부자데이터 공유

Platform



이종 융합

제품+제품 _ 후원경품 • 금융제휴카드

제품+서비스 _ 애니멀레스큐카 : 현대차+동물연대

서비스+서비스 _ 모자뜨기캠페인 : GS+기부+패션+취미

Synergy

57
jwkim

Question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5TH _ 어떤 언어로 설득할까요?
value pro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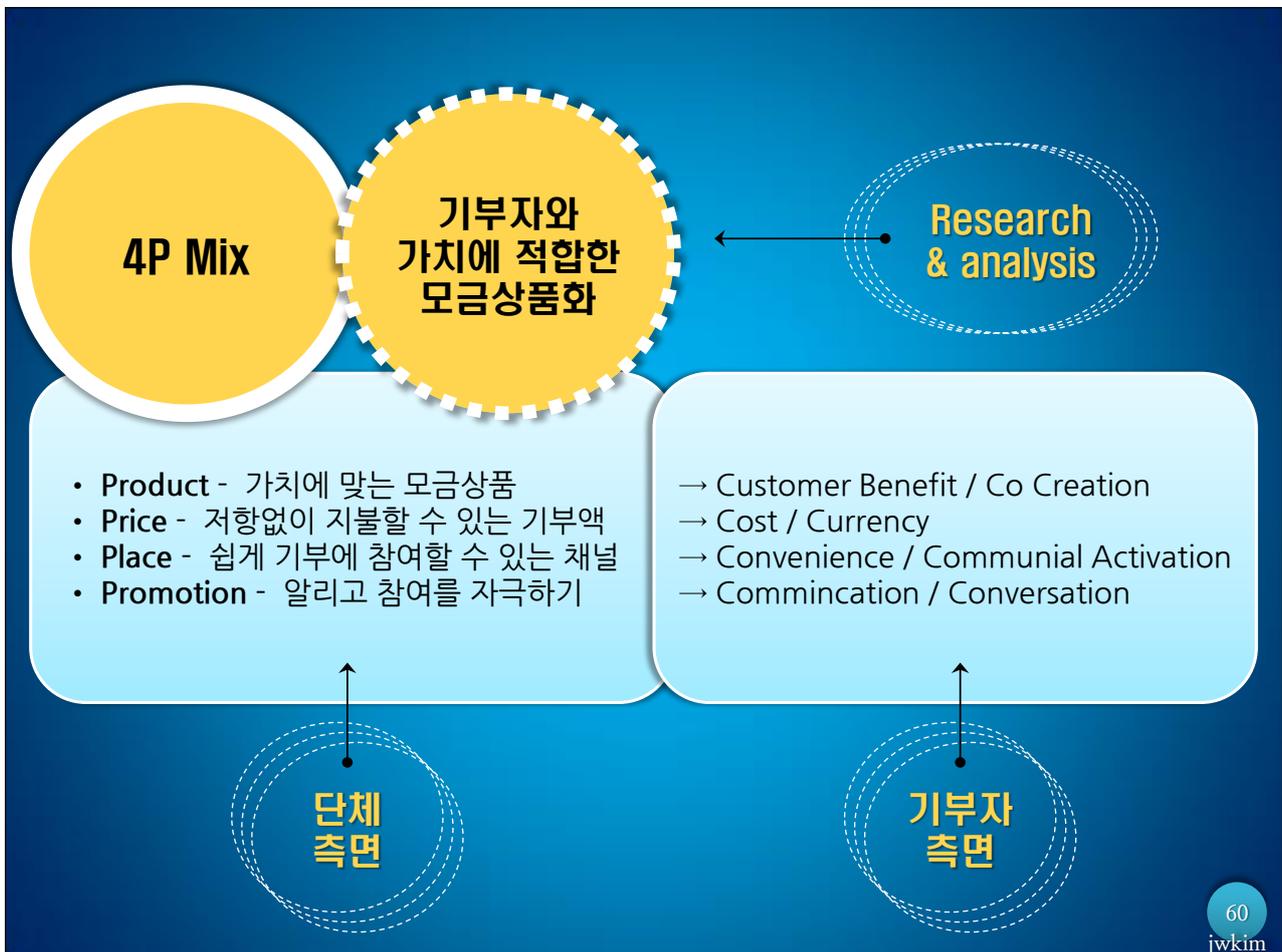
58
jwkim

Question

답해야 할 6가지 질문

6TH _ 가치를 전달하는 효과적 방식은 무엇입니까? 4P MIX

59
jwkim



예를들어

- ▶ Integrated Marketing Campaign(통합모금캠페인) ▶ Telemarketing(전화모금) ▶ F2F(대면)
- ▶ Direct Mail(메일모금) ▶ Cavassing(방문모금) ▶ 모금ARS방송 ▶ 기업매칭기부 ▶ 바자회
- ▶ Charity Goods(기념품 등 자체제작 상품) ▶ 경매 ▶ 이용권, 저작권 등 기부서비스 상품연계
- ▶ Online & SNS(모금포털, 모금블로그, 기부위젯, 클라우드 · 스토리 · 뉴스 펀딩)
- ▶ 포인트, 마일리지기부 ▶ 인별, 사업처별 할당모금 ▶ 다단계 모금 ▶ 릴레이모금
- ▶ MGM모금(인적소개) ▶ 유산기부 ▶ 콘서트Event(음악) ▶ Social Dinning Event(음식)
- ▶ 스포츠Event(건강) ▶ 투어Event(관광) ▶ 체험Event(예:더티워터캠페인)
- ▶ 커뮤니티 제공형 모금행사(공모전, 집들이, 모금파티, 후원의밤 등) ▶ 결혼모금
- ▶ 금주, 금연 등 미션도달형 행사 ▶ 축의금 등 수익일부 기부 ▶ 세차 등 개인서비스 제공
- ▶ Volunteer Funding(모듬자원봉사) ▶ 강연 등 재능기부 ▶ 꽃드커기, 소원빌기 등 대리기부
- ▶ 끝전 등 자투리 급여공제형 기부 ▶ 1+1 기부연계 상품형 모금 ▶ 기부클럽(네트워크 형)
- ▶ 모금함 ▶ 기부자별 등 예우프로그램 형 ▶ 기념일 연계 모금 ▶ 행운의 연못 등 소원빌기형 모금
- ▶ 클라우드소싱 방식 ▶ 장학퀴즈형 모금 ▶ 공연장모금 ▶ 신체기부 ▶ 분양모금
- ▶ 내기기부 ▶ 자연, 혈연, 학연 관계형 모금 ▶ 행사, 축제연계 모금 ▶ 공동플랫폼 방식모금
- ▶ 이사회, 운영위 위인설관형 모금... etc

일상 생활

- 이메일 서명란에 한 줄을 추가. "당신이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www.ourgroup.org에 기부하세요"
- 음성메시지에 "저희 웹사이트 www.ourgroup.org를 방문해주세요"와 같은 말을 녹음해 둔다
- 간행물 - 브로셔, 보고서, 소책자에 기부정보를 실는다
- 고객기부자를 방문할 때 기부에 관심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다
- 강연할 때, 반드시 기부에 대해 소개한다
- 생일, 결혼식,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이나 명절에 선물대신 기부해 달라고 부탁한다
- 모금담당자 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언제든지 모금해 동참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61
jwkim

marketing planning

PRODUCT _ 상표 : BRAND

포스터
브로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동영상
DM
현수막
etc
통합적용

상표 brand	다른 상품과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기호, 상징, 캐릭터, 색상, 음악 혹은 그들의 결합
상표명 brand name	상표 중 언어로 표현되는 부분 Ex - 나눔가게 vs 내 마음의 명품숍
상표마크 brand mark	심볼, 로고, 색상 등 인식 되지만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부분
CI, BI	Corporate Identity / Brand Identity - 기업/상표 이미지 통합

62
jwkim

PRICE _ 기부 요청액 : 몇가지 방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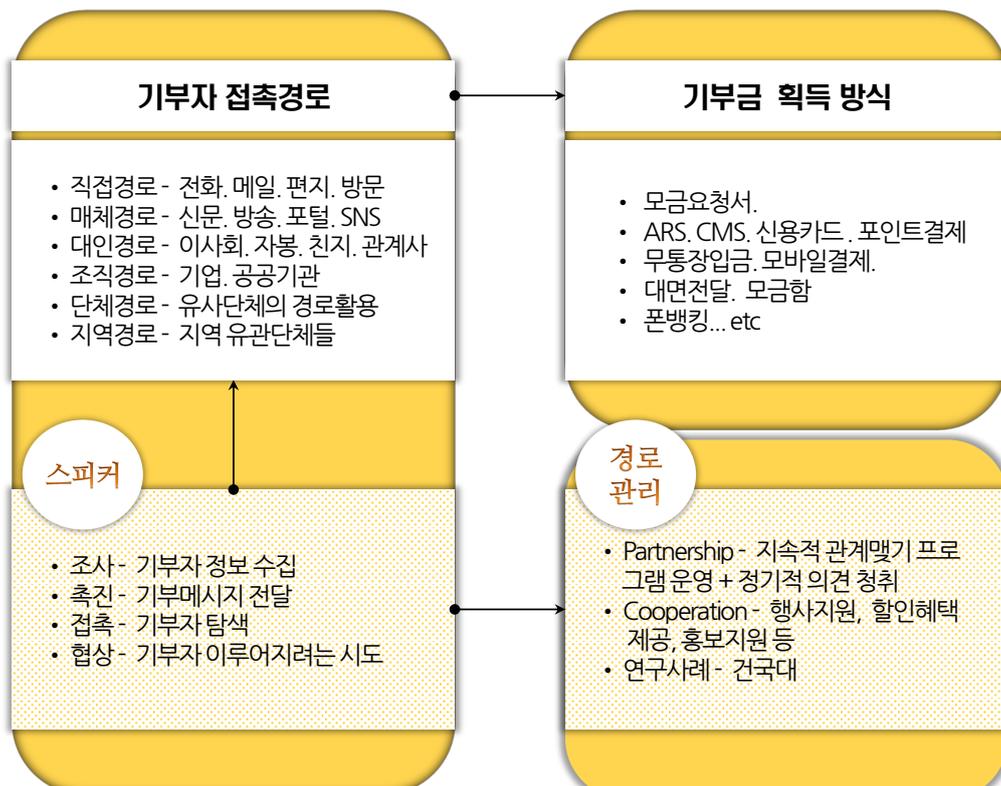
적정 요청액 : 최대 기부액의 70% + 마지막 기부금의 30% x 120% = New Asking

최대 요청액 : 순자산의 3~5% or 최대 기부액의 120%

시급한 모금 or 혜택/ 변화가치가 명확한 모금 - 목표액 기준

장기적 모금 or 기부액에 따라 혜택이 다른 모금 - 기부자 결정

PLACE _ 모금상품 노출경로 및 획득(요청)방식



PROMOTION _ 커뮤니케이션과 촉진



PROMOTION _ PR : 언론사가 뉴스를 선택하는 7가지 원칙

- **시의성 - 새로운 이야기인가?**
 - #1 - Make a Wish재단 : Wish Day 행사. 인천공항 특급 보안시설인 수하물 시스템을 과학자가 꿈인 난치병 어린이에게 오픈
 - #2 - Plan Korea : 20~30대 싱글 남녀 후원자 18명 대상 후원자 미팅 프로그램 진행. 행사참가비와 애장품 경매수익 전액기부 - 지속적인 후원자 모임으로 연계되
- **구체성 -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인가?**
 - #1 -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 행사 현장을 단순히 보여주기 보다는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숫자를 통해 보여줌. 통계, 수치 등으로 효과성,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 뉴스의 신뢰도를 확보해 줌
- **근접성 - 독자의 관심사와 가까운가?**
 - #1 - 월드비전, 김보성 효과 : 6분 영상 '의리의 아이들' 페이스 북에서 458만회 클릭.
 - #2 - 글로벌호프, 티파티 효과 : 소녀시대 티파니 홍보대사 위촉후 정기후원 10배 증가.

PROMOTION _ PR : 언론사가 뉴스를 선택하는 7가지 원칙

- **적합성 - 관심을 끄는가?**
#1 - 1주년, 5주년 • 장애인의 날 • 명절, 연말 등 언론사는 기념일에 맞춰 기사를 씀
이슈, 날짜에 맞춰 언론사에 꼭 필요한 사람중심 미담 기사를 준비할 것
- **흥미성 - 인간적 관심을 끄는가?**
#1 - 간이식 아들의 이야기, 전 재산을 기부한 할머니 이야기, 대신 희생한 경찰관 이야기
#2 - 다일복지재단 : 100원의 노숙인 자존심 유지비 1천만원 모아 네팔 지진 구호기금
- **영향성 - 독자에게 주는 영향력이 큰가?**
#1 - 굿네이버스 : 아동학대 기획. 전문성과 사회이슈를 연결시킨 기획기사를 좋아함.
비영리단체 간 연대,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것도 방법.
- **이슈성 - 갈등 이슈가 있는가?**
#1 - 유명인사의 이혼, 전쟁, LA혹인폭동, 원전반대시위, 기부관련 사기사건 등

※ 출처 - 조선일보 더나은세상. 경유진부편집장

PROMOTION _ PR : 단체가 해야할 작업 - 뉴스 꺼리를 만들기

Award. 상을 제정하라
Book. 책을 출판하라
Contest. 공모전을 하라
Demonstration. 특징을 보여줘라
Exhibits. 전시회를 열러라
Festival. 행사를 개최하라
Guarantee. 약속을 이끌어 내라
Hotline. 전화를 이용하라
Interview. 인터뷰를 하라
Junkets. 현장으로 초청하라
Key Issue. 시대적 이슈와 연관시켜라
Luncheons. 기자 간담회를 열러라
Meeting. 회의를 만들라

News Letter. 보도자료를 이용하라
Official Endorsment. 인증제도를 이용하라
Presents. 특별한 선물을 주라
Questionnaires. 설문조사를 해라
Road Show. 순회 이벤트를 열러라
Symbol, Song. 브랜드 심볼을 만들어라
Training. 훈련 프로그램을 운용하라
Under Writing. 서명운동을 벌여라
Video release. 동영상에 대해
Weeks. 행동의 날을 만들어라
Xpert Columns. 전문가를 이용하라
Youth Programs. 아동 프로그램을 만들자
Zone Programs. 지역 프로그램을 짜라

운영계획 _ 외 준비할 사항들



일정표

기부금영수증

현물기부의 회계처리

모금윤리, 모금 가이드 등의 정책

MRM, Member Relationship Management : 회원관리시스템



아프리카 저체온증
신생아 살리기 위해
17.12.30일까지
6억원을 모금함

1

목적사업
및 목표설정

유사 경쟁단체의
유사 활동 多!
중복사업으로 인한
기부피로감을
어떻게 해결,
참여를 이끌어낼까?

2

목표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설정

- ① 털모자가 필요함
(현장사업분석)
- ② Girl Effect 효과
(잠재기부자 분석)

3

과제해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자료조사, 분석

털실뜨기를 즐기며
패션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25세~ 35세 여성

4

기부자 설정



예산 · 일정표 · 조직
기부자리스트 · 후원
요청서 · 홍보영상
기부자예우 · 모금윤리
... etc

8

실행준비

털실 판매를 위한
온라인 유통망 확보
: GS Eshop

7

CSF
critica succses factor

모자뜨기캠페인



6

모금상품 : 기부자
참여프로그램 제안

상표명 · BI · 기부액
모금경로 · 프로모션

내가 뜬 하나의
예쁜 털모자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5

명분제안

A nnex

The way we think about charity is dead wrong

A nnex

비영리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까?

Annex

비영리 분야가 받는 차별들

“ 활동가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부금이 광고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도덕적 비난 때문에 과감하고 용기있게 새로운 모금을 하려는 시도를 꺼립니다
길고 원대한 꿈을 실현키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을 비난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144 vs 46,136

1970 ~ 2009

Annex

If... 국내총생산의 2%에서 한 단계 위, 그 성장에 투자하여
3%가 되면 1,500억달러의 추가 기부금을 모을 수 있음



“모금비용을 낮게 유지했다” vs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절약했다” vs “전체 파이를 키웠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금

다양한 후원개발 아이디어

이용수(모금가클럽 대표)

내가 경험한 모금 이야기

모금과 기획

모금가클럽

STRATEGIC PLANNING

01



전략적 모금기획

함께 하고 싶은 일, 함께 하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왜 모금을 해야 할까요?

모금은 돈이 아닌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별다른 이유없이 다른 단체가 모금하기 때문에 하고 있진 않나요?

나는 왜 모금을 하려고 하는 걸까?

왜 모금을 해야 할까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왜> 모금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금은 나와 우리단체에 어떤 의미인지 모금이라는 단어를 정의내려 보세요.

하고 싶은 것인지 해야 하는 것인지, 하고 싶은 것인지 피하고 싶은 것인지..., 혹은 앵벌이?!

저는 모금을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 함께 할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남들에게도 같이 해보자고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인지'가 모금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 간절히 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때 꼭 모금을 합니다.

모금가와 기부자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 2가지

DREAMBROKER - 꿈을 연결해 주는 사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도 다녀야 하고 나름의 바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해 활동을 하는 단체를 통해 기부를 합니다.

모금가는 이런 기부자와 그들의 꿈을 연결해주는 DREAMBROKER라고 합니다.



STAKEHOLDER - 마권을 산 사람

만약 내가 6번말에 가진 돈 전부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편하게 경마를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미친듯이 6번말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금은 단순히 돈을 내고 떠나 가는 사람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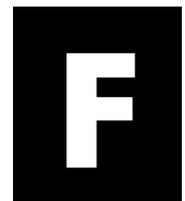
마권을 산 사람처럼 우리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기부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체들은 우리를 현금지급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단체의 미션과 기부자의 꿈을 이야기 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는 않나요?



전략적 모금기획

전문가 VS 단순업무 수행자

기획은 문제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모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획이 담긴 모금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모금에 기획이 필요할까

혹자는 돈을 많이 모금하는 모금이 성공한 모금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돈을 모은 모금’ VS ‘나름의 가설이 있는 돈을 모으지 못한 모금’ 중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좋은 모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자의 생각과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미생 申에서

기획의 핵심요소

웹툰 <미생>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자의 의도, 즉 가설입니다.

돈을 많이 모았지만 가설이 없는 모금은 지속될 수 없고, 돈을 많이 모은 못했지만 가설이 있는 모금은 다음 프로젝트의 좋은 발판이 됩니다. 가설은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해결책에 대한 생각도 다르기때문입니다.

가설보다 더 중요한 <실행을 통한 검증>

가설만 세운다고 해서 기획이 있는 모금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기획대로 실행해보고 그 가설을 검증해보아야 합니다.
‘가설설정 -> 실행 -> 가설검증 및 수정 -> 재 실행’
실행과 검증이 없는 가설은 그저 좋은 생각일 뿐입니다.



전략적 모금기획

배운사람(?)처럼 모금해보기

모금교육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배운사람(?)처럼 모금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금 VS 아무나

전쟁중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다음 세 환자 중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할까요?

1. 치료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사람
2. 치료해도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
3. 치료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

당연히 3번이겠죠?

손대야 할 사람과 손댈 필요없는 혹은 손대도 가망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모금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 3번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를 고민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전략이 없이 내가 아닌 누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모금을 하면서 뿌듯해하고 있나요?

모금에 전략을 더하는 전제

온통 우리 자랑만 들어있는 제안서, 제목만 봐도 거르고 싶은 소식지, 감사인지 스팸인지 모를 감사문자.
이런 활동들을 보면 기획자의 기본 전제(혹은 마인드)가 보입니다.

이런 단체들의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기부할거야.'

전략적인 모금을 위해서는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사람들은 OO하지 않을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OO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작은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모금에 강력한 전략을 가져다 줍니다.

전략을 위한 두가지 WHY

전략적인 모금을 하려면 두가지 WHY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첫번째 WHY -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일의 본질을 생각하는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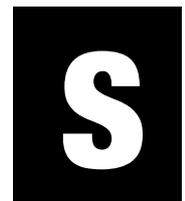
감사문자는 왜 보낼까?, 행사포스터는 왜 만드는 것일까?

두번째 WHY -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는 질문 WHY.

왜 사람들이 바자회에 오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은 우리 소식지를 열어보지 않고 스팸으로 보내버릴까?

왜 사람들은 감사문자를 받고도 별 감흥이 없을까?



생각해보기

1. 모금에 대한 정의 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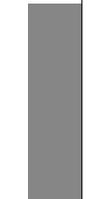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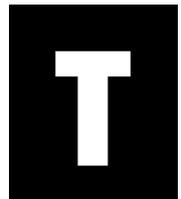
‘모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 이미지는 내가 모금을 할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2. 기획자의 '의도' 찾기

나 혹은 다른사람이 작성한 제안서를 보면서 각 페이지 별 기획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해보세요.
제안서를 보는 사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했습니까? 정말 의도한 그림이 그려질까요?

3.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기부하는 가게 벽에 달아주는 <좋은가게>라는 현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걸까요?
그것은 기획자의 의도대로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자회 포스터, 현수막, 명함, 리플릿을 가지고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그밖에...

>>요청이 안되는 이유 (1/5)

모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거절상황에 대한 과한 상상력

모금과 요청이 어렵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금과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앵벌이’, ‘아쉬운 소리 하는것’, ‘하고 싶지 않은 일.’ 등등

모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요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작은 성공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3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모금해보기>

둘째, 거절 상황에 대한 과한 상상력

모금이 어려운 사람들은 거절 상황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하고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자체를 하지 못하고, 모금 교육이나 모금아이디어(비법)을 찾아 해매기만 합니다.

하지만 막상 요청해보면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 머릿속엔 어떤 시나리오가 들어있는지 글로 적어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모금기획서가 좋은 기획서일까

모금기획서 VS 제안서

모금기획서와 제안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 설득의 대상입니다. (기획은 내부사람, 제안은 외부사람 설득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모금기획서는 기획서를 보는 사람(모금을 실행해야 하는 내부사람- 즉 직원)이

‘이렇게 하면 모금 될거 같다.’ 혹은 ‘이렇게 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기획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요청하면 조언을 얻고, 조언을 요청하면 돈을 얻는다.”

모금을 해야하는 직원, 더 나아가 우리의 타겟인 잠재기부자들을 기획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고, 기획서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주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기 기획은 <내 기획>이 됩니다.

<내 기획>을 위해 직원들은 열심히 모금할 것이고,

잠재기부자들은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고 주변사람을 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금과 기획은 어떠한가요? 혹시 이런진 않나요?

(잠재기부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획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돈만 내면 돼.”

(직원들에게) “전문가가 만든 기획이야. 너는 이대로만 열심히 모금하면 돼.”



FUNDRAISING PLANNING

02





대상프로그램 분석

Section 1

대상프로그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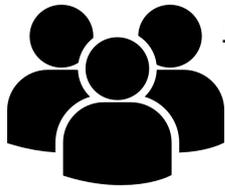
내가 팔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후원담당자 K씨는 담당합니다.

비싼 모금교육을 받고 왔지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왜 팔아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에서는 조직의 존재 이유와 모금을 통해 무엇을 하려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금대상프로그램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 **기획자** 입장

왜 기부를 해야하는지 - **기부자** 입장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 **대상자** 입장

끊임없이 던져야 보아야 할 질문 ‘나라면’

기획자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면’은 상대방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나라면 이런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나라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 5만원 정도 기부할 것 같은가?’

‘나라면 이런 감사문자를 읽고 감사한 마음이 들까?’

“모금은 어젯밤 재밌게 본 **YOUTUBE**영상이다.”

어젯밤 정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주변 친구와 동료들에게 영상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을겁니다.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고 싶고 주제를 찾아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용기가 생기는겁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설득하는 작업,

모금에서는 **자기동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해보기

1. 대상프로그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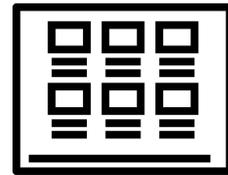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열정적으로 요청(모금)할 수 있는 대상 프로그램을 적어보세요.
대상 프로그램과 필요금액을 적어주세요.

2. 기획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위에 선정한 대상프로그램을 알리는 광고 콘티를 만들어보세요.

A4용지를 6~8면으로 나눕니다.

각 페이지마다 사람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단어 혹은 문장으로 표현해봅니다.



3. 기부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기부이유와 기부저항을 찾아보세요.

후원하는 사람은 왜 후원하고 후원하지 않는 사람은 왜 후원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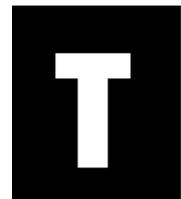
4.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위 프로그램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EX)어느날 갑자기 한글교실이 없어진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5. 자기동기화

본인은 위 프로그램에 얼마정도 후원할 것 같습니까?



그밖에...

>>요청이 안되는 이유 (2/5)

모금 대상에 대한 이해 및 공감부족

직원들이 모금을 못(안)해 고민이라는 대표들을 가끔 만납니다.
문제는 조직 안에서 모금 결과만 논할 뿐, 왜 모금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체 리플렛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번달에 10명만 모아봐.”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왜 모금을 하려고 하는지 더 나아가 우리 조직의 존재이유(미션)는 무엇인지
조직원들과 공감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먼저 필요해보입니다.
내가 팔 물건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심지어 나도 안살것 같은 물건을 팔아야 할때...
그것은 고문이 아닐까요?

>>모금에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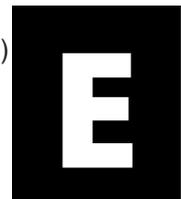
시체를 만질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고, 다른 한명은 장의사입니다.
가족은 애정으로 만지고, 장의사는 기술로 만집니다.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써 가족은 추억을 되새기고, 장의사는 돈을 벌니다.
가족은 만지는 법을 배우진 않지만 만질 수 있고, 장의사는 만지는 법(기술)을 배웁니다.
가족은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질수 없지만, 장의사는 누구나 만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활동가는 가족과 장의사 중 누구에 더 가까울까요? 아마 가족일 것입니다.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목적)을 위해 모금(수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싼돈 들여 좋은 교육은 다 보낸 직원이 모금을 못해 속상하다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면 모금을 잘하게 되는 걸까요?
모금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모금교육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해피빈 등 우리주변에 보이는 많은 성공 사례들은 모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에게겐 모금 교육이나 기술보다
우리가 모금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일이 꼭 하고 싶은 일인지를
따져보는 일이 먼저 필요해보입니다.





목표 설정

Section 2

목표설정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

"올해 우리 모금 목표는 1억입니다."
3년동안 같은 목표로 모금을 했지만 한번도 달성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클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 기관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모금 목표는 클수록 좋은 걸까요?

모금 목표는 달성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00만원이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모금활동이 끝나고 보니 500만원 밖에 모금이 되지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달성하는 것이 몇배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

기관의 전체예산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봅니다.
전체 예산중 보조금은 얼마인지 모금을 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금할 금액 역시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나누어보고,
모금방법 별로 목표를 나누어봅시다.

Process oriented VS Goal oriented

전자는 A~Z까지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목표부터 역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합리적인지를 보려면 goal oriented 방식으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목표금액) = (남은기간) * (요청자) * (요청횟수) * (요청이 OK 될 확률)
이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요청자가 2명인 단체에서 10달동안 1억을 모금한다고 했을때,
1달동안 1명이 500만원을 모아낼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목표액을 줄이든지, 기간을 늘리든지, 요청자를 더 모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생각해보기

1. 목표설정

(앞 섹션에서 정한) 대상프로그램 모금을 위한 목표를 적어봅니다.

<형식> 무엇을 위해 (대상프로그램), 언제까지 (기간), 얼마를 (목표액) 모금한다.

2. 포트폴리오 구성

위 목표금액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재구성해보세요.

1. 자원출처에 따른 구분 (총 500만원 중 - 지원금혹은 보조금(200) / 자부담(100) / 직접모금(150) / 기타(50) 등
2. 모금방식에 따른 구분 (위 직접모금 액 150 중 - 대면 / 온라인 / 전화 / 오프라인행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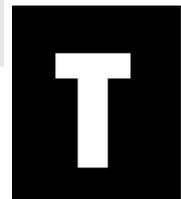
3. 목표에 대한 합리성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원 한명이 한달에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모금을 위해 몇명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각 인원 별로 한달에 얼마를 모아야 합니까?

그 금액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몇명의 기부자를 만나야 합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밖에...

>>요청이 안되는 이유 (3/5)

크고 명확하지 않은 목표

기부자들이 단체에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금을 하는 활동가에게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고 돈만 내세요, 좋은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와 같은 모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기부금마다 이미지를 매칭하기도 합니다.

“5천원 기부하시면 학용품세트를 선물하시는 겁니다.

1만원 기부하시면 의자가, 3만원 기부하시면 책상이, 100만원은 교실의 기둥을,

1,000만원은 강당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학교짓는데 10억 필요하니까 낼 수 있는 만큼 내주세요.” 최소한 이런 요청보다는 백만배 훌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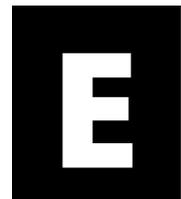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상경대에서 진행하는 <블루버터플라이 캠페인> 역시 좋은 사례입니다.

하루 1천원 기부하는 동문 30명이 모이면 등록금이 필요한 후배에게 장학금을 줄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000명이 아니고 500명도 아닌 30명입니다.

‘(손에 닿을듯한 목표) 30명만 모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금액설계는

기부자에게는 확신을, 요청자에게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명확성을 줍니다.





타겟설정 및 분석

Section 3

타겟설정 및 분석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일반시민', '서울시민',
'우리기관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인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획을 할때마다 생각없이 적어넣었던 것들이 정말 타겟일까요?

명확한 타겟팅은 기획의 핵심성공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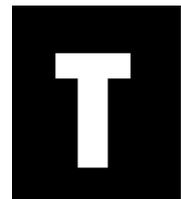
모금이나 홍보, 캠페인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팅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갑을 열지 <명분>, 어떤식으로 요청을 할지 <모금방식>, 누가 요청을 하면 호의적일지 <요청자>, 얼마정도를 요청하면 적당할지 <요청금액>, 누가 어떤말을 하면 감동을 받을지 <예우> 등...
타겟팅만 잘해도 기획의 반 이상은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겟이 모호하면 기획의 모든 내용도 모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쫄꺀수 없을 때까지 쫄꺀고, 여러가지 기준으로 나눠보자

일반시민 -> 서울시민 -> 홍은동 주민 -> 자녀를 둔 부모 -> 홍은초등학교 1~6학년까지의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 -> 앞 사례의 부모 중 남편
타겟을 쫄꺀면 쫄꺀수록 우리의 기획은 명확해집니다.
한명을 타겟으로 기획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쫄꺀수 없을 때까지 타겟을 쫄꺀보세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보자

'우리기관에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타겟을 한번 살펴봅시다.
언뜻보면 별문제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단체들이 기획을 할때 애용(?)하는 타겟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 타겟으로 명분이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려고 하면 막연합니다. 타겟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뀌보면 어떨까요?
'월 1회 이상 자원봉사를 오는 사람'
'단체의 전체 행사 10번 중 7번 이상 참여한 사람' 등등
<호의적>이라는 표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만드는 순간
타겟이 명확해지고 더 나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지가 눈에 보입니다.



생각해보기

1. 잠재기부자군 찾기

향후 우리기관의 기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적어보세요.

우리기관자원봉사자, 교육참여자 등

2. 타겟분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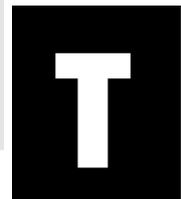
이미 기부하고 있는 우리단체 기부자를 5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분류해보세요.

후원금액, 연령 및 성별 등

3. 객관적 지표로 명확성 확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아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타겟팅 해보세요.

후원의밤, 우리기관의 행사 및 프로그램



그밖에...

>>요청이 안되는 이유 (4/5)

관계의 미성숙

프로포즈는 언제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에게 “야, 나랑 결혼하자”라고 했을 때 OK받을 확률이 90%이상일때> 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포즈(=요청)가 안된다는 것은 아직 프로포즈 할 관계가 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를 할 관계가 되어있지 않다면

현재 관계상태를 놓고 어떻게 하면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 단계의 모금 아이디어입니다.

>>모금 기획자의 역할

누가 요청했을 때 가장 확률이 좋은가

기부 요청은 모금담당자가 해야한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금담당자는 타겟을 놓고 누가 요청했을 때 가장 확률이 좋을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고액기부자는 단체 대표나 이사회가, 교육에 참여한 참가자는 교육담당자가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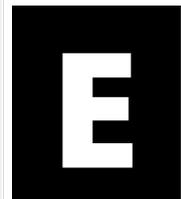
타겟과 가장 관계가 잘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금담당자의 역할은 요청자가 잘 요청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래는 한 사회복지사가 단체 대표에게 감사/요청 전화를 부탁하면서 책상에 올려둔 문서입니다.

기부자의 현황과 관심사,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후원자명	연락처	관련사항
장*제 ***대표 (남/50세)	010-****-**** (서울시 동대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 현재 / 매월 10만원 후원 - 자녀 2명인데, 첫째 이번에 대학 떨어져서 재수하고 있어요. - 사업확장으로 현재 많이 바쁘지만, 후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 후원 증액을 요청하시면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살짝 물어봐주세요.
박*영 ***대표 (여/53세)	010-****-**** (경기도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현재 / 매년 2회 생활용품 1톤 후원 - 장애인 이용자에게 잘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카톡 - 5월달에 쪽방촌 재가 이용자 생활용품 전달사진 보내드렸는데, 많이 감동하셨습니다. - 경제상황이 안좋아서 요즘 후원품 지원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 카톨릭 신자이며, 여러 곳에 후원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이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심리적 지지 부탁드립니다.





명분개발

Section 4

명분개발

무슨말로 요청할 것인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

후원요청을 할때마다 리플렛에 적혀있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말을 듣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체문자 VS 개별문자

대상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명분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체문자 같은 명분 그리고 개별문자 같은 명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는 단체문자 같은 명분입니다.

단체문자 같은 명분의 장점은 누구한테나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체문자에는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보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분은 홈페이지나 리플렛처럼 누가볼지 모르는 곳에다 쓰는 것입니다.

그 리플렛을 들고간 사람이 또 다시 단체문자 같은 명분을 말하는 순간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때는 그 사람에게만 통하는 개별적인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상대방 이야기

우리는 보통 요청을 할때 우리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 기부받으려면 설명을 해야지!!)

이런 행위를 전문용어(?)로 'BLAH BLAH'라고 합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나와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때입니다.

한 노숙인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스를 찢어 <어떤 종교가 노숙인 문제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쓰고

구걸바구니(?)마다 종교를 붙여 놓았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 노숙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모두 노숙인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좋은 명분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

최악의 명분은 기획자가 혼자 책상에 앉아 생각해 낸 명분입니다.

보통의 명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 명분입니다.

최고의 명분은 우리프로젝트에 돈을 낼 사람에게 물어 본 명분입니다.

어떤 명분이 좋을지 혼자 고민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잠재기부자를 만나

어떤 식으로 물으면 좋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보기

1. 누구에게나 통하는 범용명분 찾기

기부를 위한 리플렛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기부를 요청하는 문구를 적어보세요.

<섹션1>에서 선정한 모금대상프로그램으로 요청문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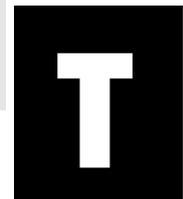
2. 잠재기부자 별 개별명분 찾기

위에서 만든 범용명분을 잠재기부자 개개인에게 통하는 개별명분으로 바꿔보세요.

<섹션3>에서 선정한 잠재기부자 리스트 활용

3. 나의 기부이유와 기부저항 찾기

당신은 어떤 이야기에 기부를 결정하시나요? 또, 어떤 이유를 들어 기부요청을 거절하시나요?



그밖에...

>>요청이 안되는 이유 (5/5)

결과에 대한 부담감

모금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모금을 해보면 OK보다는 NO를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아이디어, 기획이 있어도 모금의 기본은 거절을 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거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금은 원래 잘 안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 안되면 어찌지’라는 걱정 대신 ‘어떻게 하면 OK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떼쓰는 모금 VS 가치교환

상대방의 고민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기업사회공헌담당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기부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모금가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에 기부를 제안하는 제안서는 온통 우리가 필요한 내용으로만 가득차있습니다.

“모금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지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청을 하기전에 상대방의 고민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기업사회공헌담당자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연한 기회에 사회공헌담당자를 만나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은 임직원들 봉사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매번 비슷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직원들이 좀 색다른 봉사 좀 해보자고 난리도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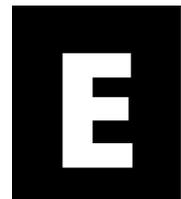
비영리단체들이 매번 기부금을 요청하는 제안서만 보내시는데...

저라면 기업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의미있는 봉사활동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안해 볼 것 같아요.

봉사활동으로 같이 땀도 흘리고 단체 구경도 시켜주시고

그런 후에 기부요청을 하면 기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필요만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고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설계

Section 5

아이디어 설계

어떤 방식으로 모금할 것인가

얼마전 모금 아이디어 강의에서 '하늘아래 새로운 것 없다, 베껴라'라는 말을 듣고
셰이브더칠드런의 <모자뜨기> 캠페인을 벤치마킹한 <장갑뜨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겉모습만 베끼면 망한다

한번 대박난 모금아이디어는 많은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하지만 벤치마킹한 모금아이디어 중 성공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바로 겉모습만 따라했기때문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똑똑하게 벤치마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7페이지에서 조금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핵심성공요소

해피빈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잘 읽히고 좋은 글 (글 잘 쓰는 사람 섭외)
2.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키기 (해피빈 담당자에게 문의)
3. 유명인사의 인터뷰를 넣고 그 사람의 지지자들이 모인곳에 홍보하기 (유명인 섭외)

대략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핵심성공요소라고 합니다.

핵심성공요소는 그냥 모금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하나만 살짝 건드리면 모금이 더 잘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핵심성공요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핵심활동입니다.)

‘어떻게 모을지’가 아닌 ‘무엇을 줄지’ 고민하는 것

모금 아이디어는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부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부자 아이덴티티’입니다.

‘기부자 아이덴티티’는 어떤단체에 기부를 했을때 가지게 되는 이미지 같은 것입니다.

여성단체에 기부하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이미지,

제 3세계를 돕는 대형NGO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이미지,

모자뜨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미지.

우리는 기부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생각해보기

1. 핵심성공요소와 핵심활동 찾기

아래 활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성공요소와 핵심활동을 적어보세요.

지역상점에 뿌리는 저금통, 자선바자회

2. 기부자 퀄티베이션과 모금아이디어

아래는 기부자가 단체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의 예시입니다. 각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단계0) 모르는 사람 (어떻게 연락처를 받을 것인가)

(단계1) 연락처만 있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알릴 것인가)

(단계2) 소식지를 받아보는 사람 (온라인 소식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게 할 것인가)

(단계3)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소식지를 받아보는 사람을 어떻게 오프라인 행사에 오게 할 것인가)

(단계4) 일시기부를 하는 사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시기부를 하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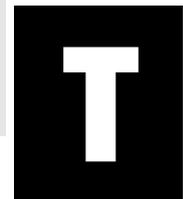
(단계5) 정기기부를 하는 사람 (일시기부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기기부로 전환 할 것인가)

(단계5) 정기기부금을 증액하는 사람 (정기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증액시킬 것인가)

(단계6) 주변 지인을 기부자나 행사참여자로 데려오는 사람 (어떻게 지인을 참여시키게 할 것인가)

(단계7) 단체에 주요 직책을 맡는 사람

(단계8) 중거액 기부를 하는 사람



그밖에...

>> 똑똑하게 벤치마킹을 하는 세가지 방법

아이디어 본질에 대한 통찰

벤치마킹해서 주로 망하는 것 중 기부팔찌가 있습니다.
노란색의 두꺼운 고무로 된...(아시죠?)

팔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장신구입니다. 예뻐서 당장 팔에 하고 싶어야 합니다.
좋은 의미가 담긴 팔찌니 그냥 기부금 내고 가져가라?! 무대포도 이런 무대포가 없습니다.
그럼 이쁘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보통 언제 팔찌가 하고 싶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닮고 싶은 사람이 했을 때 아닌가요?
처음에 성공한 두꺼운 고무 팔찌도 랜스암스트롱이 해서 화제가 됐던걸로 기억합니다.
성공하는 모금아이디어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핵심성공요소에 대한 분석과 접목

모금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할 때는 그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모금방법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겁니다.
아이스버킷챌린지에서 벤치마킹할만한 핵심성공요소는 무엇일까요?
<재미>, <릴레이 혹은 추천>, <셀럽>, <인증> 이 정도가 아닐까요.
지금 기획하고 있는 모금아이디어에 위 요소 중 1~2가지만 살짝 섞어보세요.

다른 영역의 것

이케야는 소비자가 직접 재료를 선택해서 조립하는 DIY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구업체에서 이 DIY방식을 차용하면 이케야처럼 대박날 수 있을까요?
변주없이 같은 분야의 것을 차용하는 순간 따라쟁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아이스버킷챌린지나 모자뜨기 캠페인을 따라한 우리 모금아이디어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구 업체가 아닌 햄버거 가게에서 이 DIY방식을 차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의 재료를 골라 나만의 햄버거를 만들어 먹거나 주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햄버거 분야에서는 선구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같은 비영리영역의 아이디어만 볼것이 아니라
홈쇼핑, 보험, 서점, 패스트푸드와 같은 다른 영역의 아이디어를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SKING

03



요청

요청의 처음과 끝

아무리 좋은 기획도 요청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금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요청>

요청은 복권을 사는 행위

모금에서는 요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모금이 요청이고, 요청이 모금입니다.
모금을 복권당첨에 비유한다면, 요청은 복권을 사는 행위와 같습니다.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연히 복권당첨은 없습니다.

담당자니까 당연히 요청하셔야죠?!

10주간의 다양성 강의와 워크숍이 끝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누가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후원담당자? 단체장?
기획자는 타겟을 놓고 이 타겟에게 누가 요청했을때 가장 효과적일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양성 교육을 진행한 담당자가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겟과 가장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청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과 <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로 요청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말을 하든 요청의 순간으로 뭔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 대신 '요청하는 그 순간까지 요청을 받는 대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미 우리의 요청을 받아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모금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밖에...

>>모금 비법을 찾아헤매는 사람들에게

인상깊었던 강연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시간관리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외출했던 한 여성이 집에 돌아옵니다. 지하실에 내려가보니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온통 물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주에 7시간의 시간을 내서 보일러수리, 카페트빨래, 지하실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성에게 처음부터
‘일주일에 7시간만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해주실수 있을까요?’라든지
‘일주일에 7시간만 투자해서 철인3종 경기 출전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시간없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 깜짝 놀라실거예요”라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터져서 7시간을 냈습니다)

강연자는 이야기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보일러가 터진일만큼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강의나 컨설팅을 가면 자주 나오는 단골질문이 있습니다.
‘성공한 모금 사례가 궁금합니다.’ ‘모금을 잘하는 비법이 있나요?’

왜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 헤맬까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만큼 큰 도움이 될까요?

“1억원을 모으고 싶다면 1억원어치의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1억원을 모금하기 위한 1억원어치의 시간은
우리가 모금을 높은 우선순위에 놓을 때 생깁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바로 모금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교육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음달 임대료가 없어
쫓겨나기 직전의 상황이 된 사람들이 모금을 가장 잘 했습니다.



Ver 0.1

본 자료집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강의내용을 메모하느라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과

교육생들의 관심어린 눈길이 고평 저 자신 위해 '서술형' 자료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금현장에서의 수많은 거절경험과 몇 몇의 성공경험,

거기에 왜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지 깨달음을 준 많은 스승님과 선후배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족한 글솜씨를 잘 알기에 Ver 0.1를 붙여두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가클럽 이용수 (010.6641.3311, fundclub@naver.com)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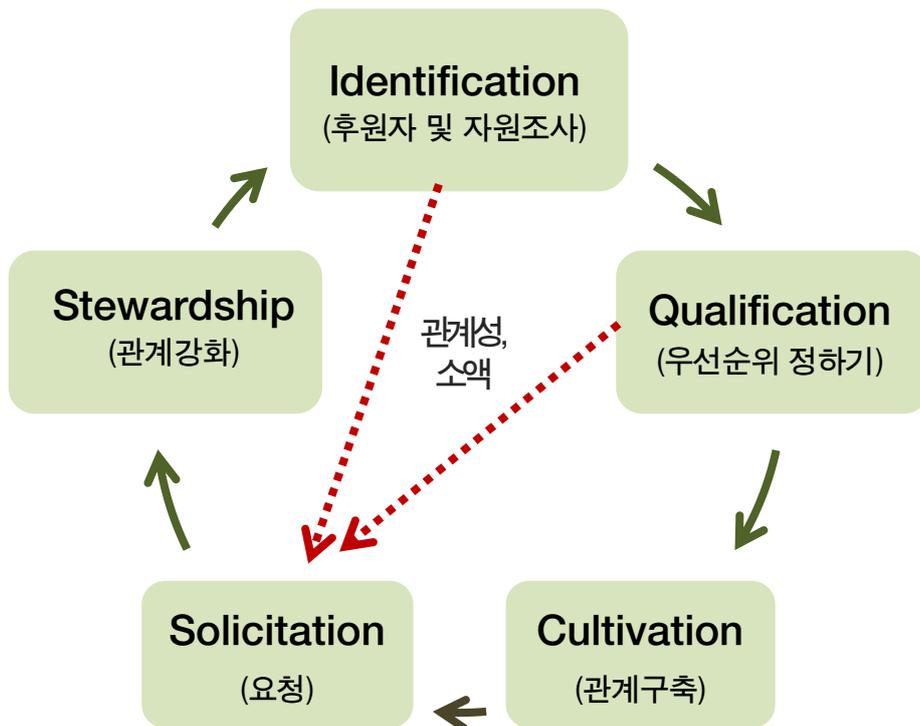
후원자 조사 및 개발

이선희(휴먼트리 대표)

후원자 조사 및 개발

이선희 (주) 휴먼트리 대표
humantree2010@gmail.com

후원자 조사 및 개발 과정



필요한 잠재후원자수 파악 _ Gift Table

목표 모금액: 1억원

1인당 후원금	후원자수	잠재후원자수	소계 (후원자수×후원금)	비고
10,000,000	1	4	10,000,000	고액
5,000,000	2	8	10,000,000	
2,500,000	4	16	10,000,000	
1,000,000	10	40	10,000,000	
500,000	20	60	10,000,000	중액
250,000	40	120	10,000,000	
100,000	100	300	10,000,000	
50,000	200	600	10,000,000	소액
25,000	400	800	10,000,000	
10,000	1,000	2,000	10,000,000	
합계	1,777	3,948	100,000,000	

humanan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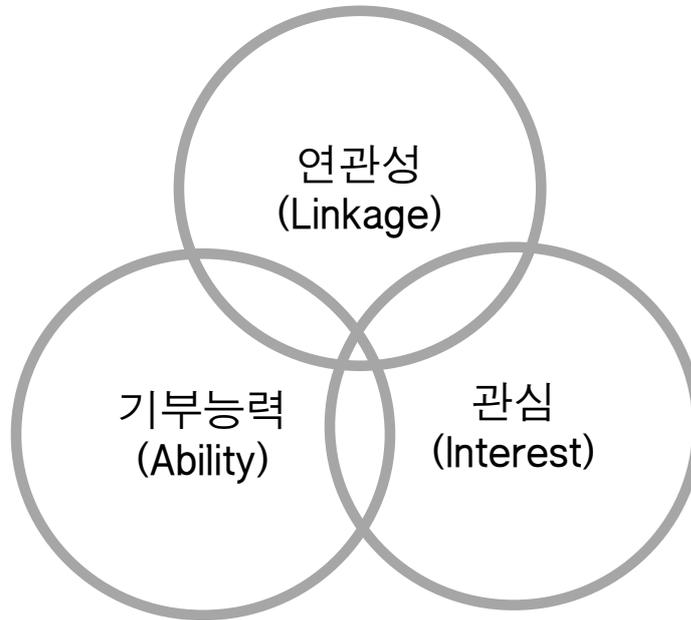
필요한 잠재후원자수 파악 _ Gift Table

목표 모금액: 1천만원

1인당 후원금	후원자수	잠재후원자수	소계 (후원자수×후원금)
1,000,000	1	4	1,000,000
500,000	2	8	1,000,000
300,000	4	16	1,200,000
200,000	5	20	1,000,000
100,000	10	30	1,000,000
50,000	20	60	1,000,000
30,000	35	70	1,050,000
20,000	50	100	1,000,000
10,000원 이하	180	360	1,750,000
합계	307	668	10,000,000

humanantree

1단계 _ 후원자 조사 _ 조사원칙(LAI)



humanantree
change the world by understanding

1단계 _ 후원자 조사

1. 기관 내 욕구 파악

기관의 목표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

-> 후원금, 물품, 서비스, 자원봉사자, 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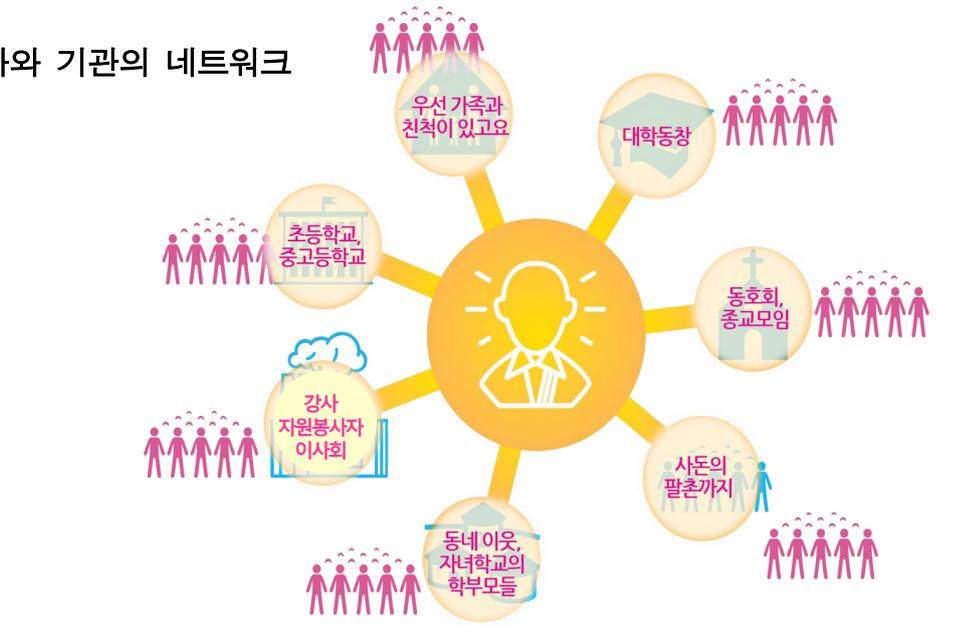
기관의 필요 자원	개발 가능 자원	
?	나와 기관의 네트워크	지역사회 자원
	사업 관련 단체 및 기업	

humanantree
change the world by understanding

1단계 _ 후원자 조사

2 개발 가능 자원 조사

나와 기관의 네트워크



humanantree
change the world by networking

1단계 _ 후원자 조사

② 지역사회 자원

- 단체 : 종교단체, 학교, 재단, 협의체, 마을공동체, 상가번영회, 생활체육동호회 등
- 공공기관 :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 자영업자, 지역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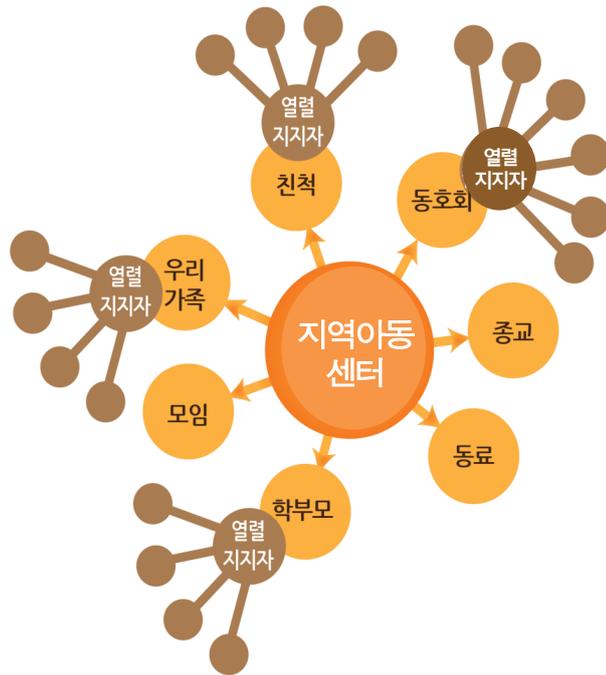
③ 오픈 된 관련 단체 및 기업

- 관련 단체 : 협의체, 지역연합회
- 관련 기업
- 관련 사이트 : 사회공헌정보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전경련 등

humanantree
change the world by networking

Data is Money!

센터만의 잠재후원자 및
자원 리스트 만들기
(영향력 인사 함께 기록)



human tree
change the world by handwriting

잠재후원자 조사 사례

● 전국미디어협의회

- 각 지역 미디어센터 직원 및 전스텝(미디어교사 등)
- 언론노조, PD 연합회, 방송기자 연합회, 기술인 연합회
- 신문방송학과 교수들
- 케이블방송협회, 방송인협회, 영화인협회, 감독협회, 배우협회 등
- 전미협 이사진 및 구성원
- 각 지역 미디어센터 이용자, 교육생, 수료생
- 전미협 구성원 지인네트워크 및 각 지역 미디어센터 스텝 네트워크
- 전미협 페이스북 팔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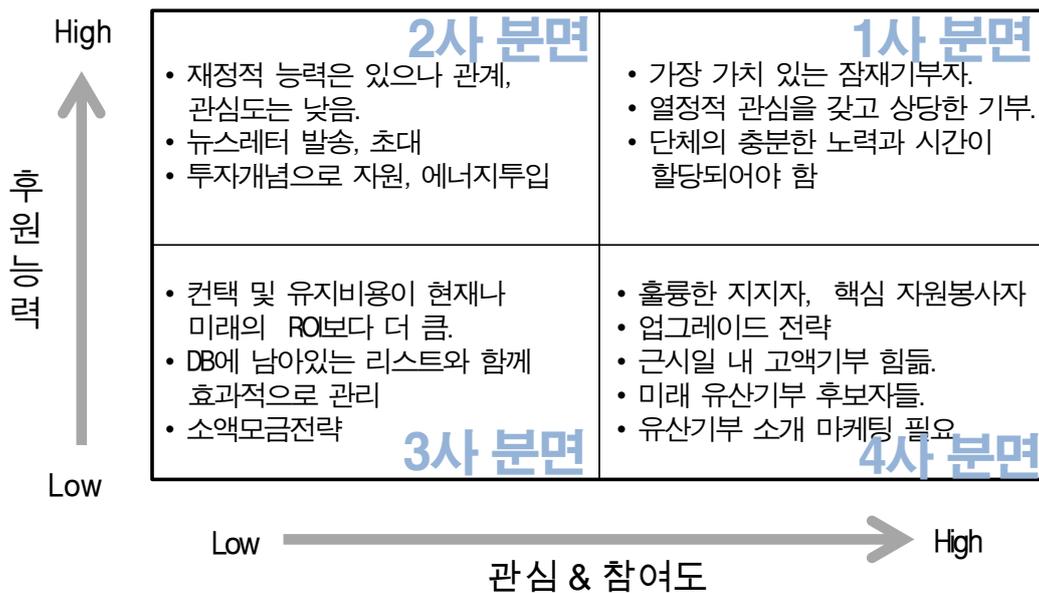
human tree
change the world by handwriting

잠재후원자 조사 사례

- 희망제작소 고액기부클럽 '1004클럽'
-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 2011, 2014 선거캠프

2단계 _ 우선순위 정하기

PEG (Prospect Evaluation Grid)



후원자 타겟팅 사례

- 전미협 모금을 위한 잠재후원자 타겟팅은?

- ① 전미협 이사진 및 구성원 - 20명
- ② 각 지역 미디어센터 직원 및 전스텝(미디어교사 등) - 100명
- ③ 각 지역 미디어센터 이용자, 교육생, 수료생 - 1만명
- ④ 전미협 구성원 지인네트워크 및 각 지역 미디어센터 스텝 네트워크 - 100명
- ⑤ 방송관련 종사자들: 언론노조, PD 연합회, 방송기자 연합회, 기술인연합회, 신문방송학과 교수들, 케이블방송협회, 방송인협회, 영화인협회, 감독협회, 배우협회 등
- ⑥ 전미협 페이스북 팔로워 - 1천명

타겟 후원자 설정 사례

- 지역아동센터 STP전략 _ 영등포, 김해지역 사례

- ① Segmentation - 잠재후원자 탐색
- ② Targeting - 타겟 후원자 설정
- ③ Positioning - 후원클럽 _ 아까징끼클럽, 뽀빠이클럽

3단계 _ 관계 구축

- 지역 행사 및 활동에 참여, 지원세력 되어 주기
[사례] 주민참여예산 시 아이들과 참여, 센터 소개
마을 축제 때 아이들과 함께 참여
태극당 빵집, 아이쿱생협
- 골목 공동체의 주체자로 참여
[사례] 가가호호 아이들의 명절 인사
골목청소, 골목장터 열어 주민들 참여시킴

기관이 먼저
GIVE



3단계 _ 관계 구축

- 지역주민이 참여할 판 만들기
[사례] 운동회, 자전거 타기, 골목장터, 공연, 기관의 안전교육 등에
주민, 학부모, 후원자 초청 강연이나 자원봉사 기회 제공

기관이 먼저
오픈 마인드



공동체 의식

Ownership의 공유!
지역사회의 것!
공유재라는 인식

3단계 _ 관계구축_ 신뢰, 책임감, 동기부여 제공

- 후원부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후원자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
- 잠재후원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

구분	내용	비고
정보제공	연차보고서, 소식지, 뉴스레터 등 단체 및 관련 사업 정보 제공	단체 소개시간필요 정기적소통, 다양한채널, 직접,미소
초청	단체 초대, 리더십과의 만남, 공연·전시·행사 초대	
참여, 체험	리셉션 연설자나 강연 요청, 단체 활동의 자원봉사자로 요청, 수혜자와의 만남, 현장 방문, 기부자 모임 등	
조연구하기	관련 사업의 전문지식이나 조언 요청	
파트너십·프렌드십	각종 위원회 멤버, 명예홍보대사 등으로 요청, 기념일 축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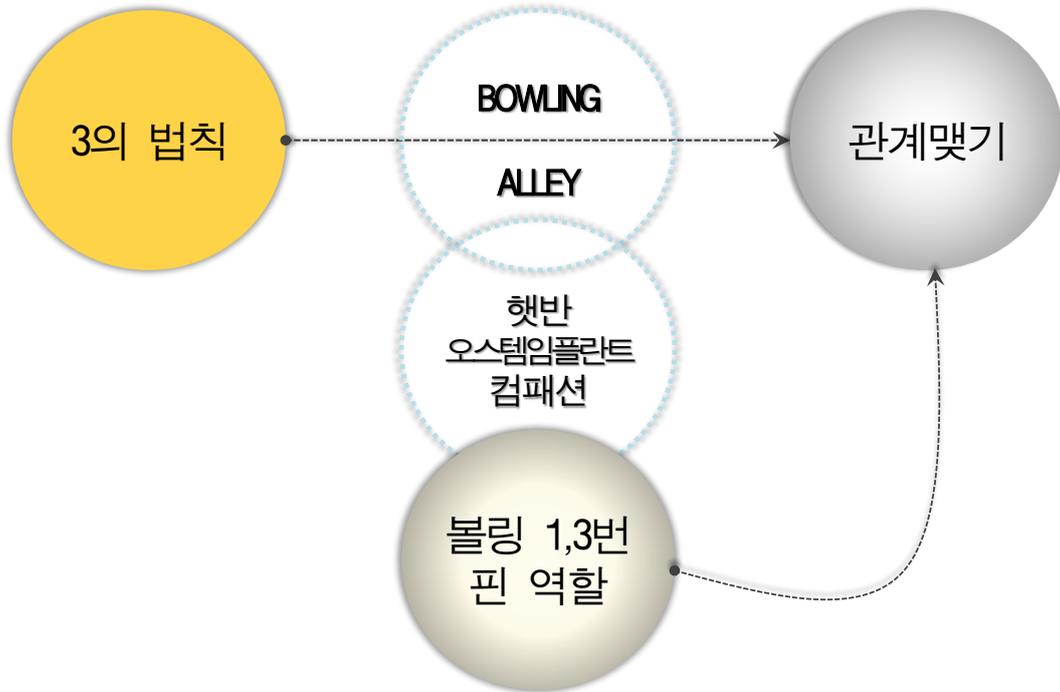
human tree
change the world by volunteering

후원자 개발 사례

- **광주광역시 후원개발네트워크**
_ 잠재기부자 조사를 통해 연을 맺은 한국기자협회와의 Co-promotion
- **잠실 종합사회복지관**
_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활용(기관의 모금가로)
- **국민통일방송**
_ 2개월간 5천개 데이터 모음.
_ 매월 3만원 정기기부자 클럽 'U-friends 클럽' 회원으로 130명 개발

human tree
change the world by volunteering

잠재후원자 그룹과 관계맺기 전략_ Bowling Alley 전략



huanantree
change the world by fundraising

잠재후원자 그룹과 관계맺기 전략_ Bowling Alley 전략

지역사회에서 볼링 1, 3번 역할 해줄 사람은 ?



승의공구상가 번영회



회원 명부

· 회 장: 태종고양포스 경수빌 010-5351-2948
· 부회장: 용인거점(주) 홍효표 011-230-0332
승의공구상가 산업융합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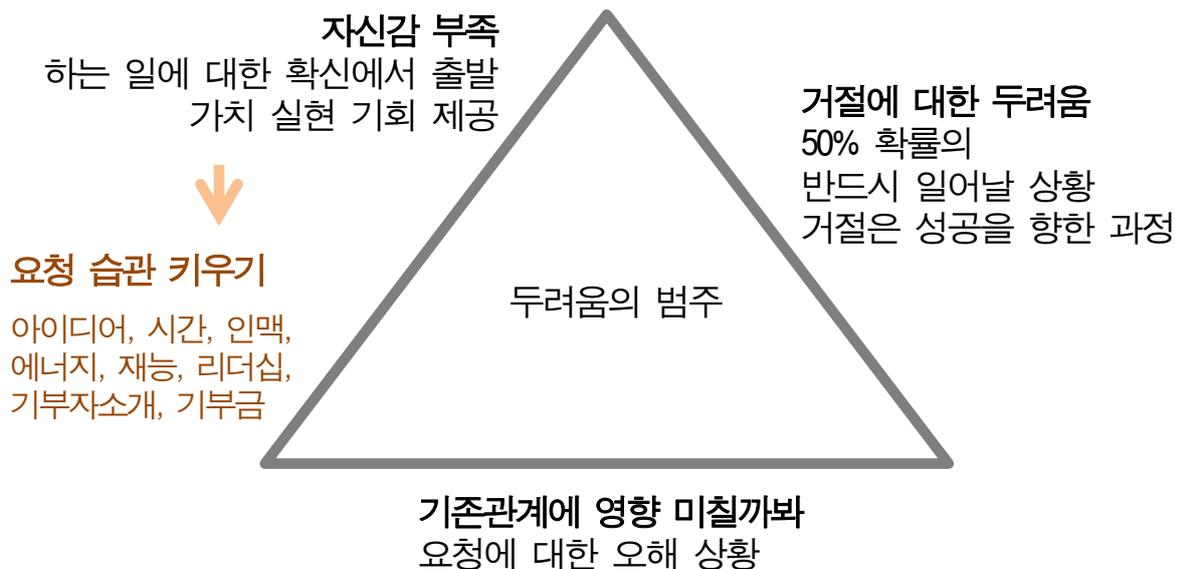


huanantree
change the world by fundraising

4단계 _ 요청하기

- 요청이란 ‘우리와 함께하자’ 고 말하는 것
- 요청은 Give & Take
‘주세요’ 가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말하기

요청의 두려움 극복



감사합니다

human
tree

(주)휴먼트리
소셜 마케팅 회사
humantree2010@gmail.com
02_2031_2133

모금

후원에 힘을 더하는
메시지 개발

김종욱(휴먼트리 이사)

CAUSE & WRITING

HUMANTREE. Kim JongWook

- ★ 철학. 광고학 공부.
88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부터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마케터로 일.
2007년 '올 해를 빛낸 창조적 크리에이터 50인' 선정.
- ★ 2011년, 서울시장 선거모금을 시작으로, NPO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일 시작.
현재 비영리 마케팅 & 모금회사, 휴먼트리 마케팅이사.
- ★ '소통을 통한 과제해결 및 성과창출'이 유일한 관심사.



HUMANTREE :

- 최초로 이론/ 워크숍/ 실습/ 멘토링을 통합, 한국 펀드레이징 교육의 기준을 제시.
- HIFS/ 복지재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대상 기금조성교육 시행. 한 교육당 약 1억원의 모금실습 성과 창출.
- 현재까지 일천명 이상의 펀드레이저 양성
- 광고 마케터 출신으로 구성된 휴먼트리는 연간 100여 중소 NPO의 문제해결 파트너로, 교육/ 컨설팅/ 캠페인 개발. 약 100억원의 모금성과에 기여 중.



Q

<비영리 활동가에 묻다>

다시 태어날 때
한가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예를들면



독일차

철과의 승부

스필버그

영화는 시각효과



희망
제작소

소셜 디자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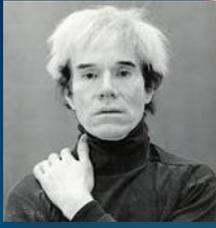
کمپ션

꿈을 잃은 어린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가오츠
나게테

농촌의 보물산



Andy Warhol-대중개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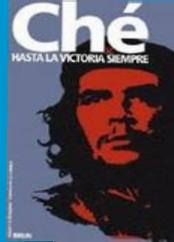
Calvin Klein-위반의 상업적효과



Sex Pistols-탈신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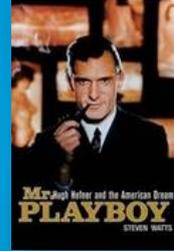
John Cage-미니멀리즘



Che Guevara-혁명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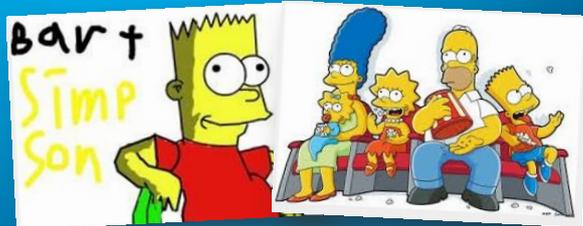
Bertolt Brecht-소격효과



Hugh Hefner-중산층의 욕망



Oprah Winfrey-미국적인생에 대한 대화



Bart Simpson-마이너리티전략

03
jwkim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한 단어/문장은 무엇인가?

04
jwkim

CAUSE & WRITING

PART 1

명분. 명분서의 이해

의미

CAUSE + MISSION / FUNDRAISING + JUSTIFICATION

- 미션/모금이 왜 정당하며 필요한지 이유. 근거를 밝히는 것
- 미션이 단체 설립목적이라면, 명분은 기부자 설득목적
- because로 설명 되는 바, 개별 케이스에 따라 명분은 달라짐

CASE

미래리더양성 - MISSION



06
jwkim

개요와 사례

단체가 실현하려는 사명, 임무 단체의 존재이유와 프로그램을 정의	mission 미션	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대
미션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 최종의 목표로 단체가 지향하는 것의 정의	vision 비전	
미션을 실현키 위한 핵심사업/솔루션	goal 목적	낮은 건물을 구입 저렴한 아파트로 개조
목적을 달성키 위한 장, 단기 실행 방안	objective 목표	1차로 열채를 개조키 위해 2014년 1억원 기금조성
단체설립 후 성과의 기록	history 역사	1990년 설립후 노인주택 100채 개보수 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구성원과 단체조직 구조	organization 조직	단체는 설계사와 건축관련 사업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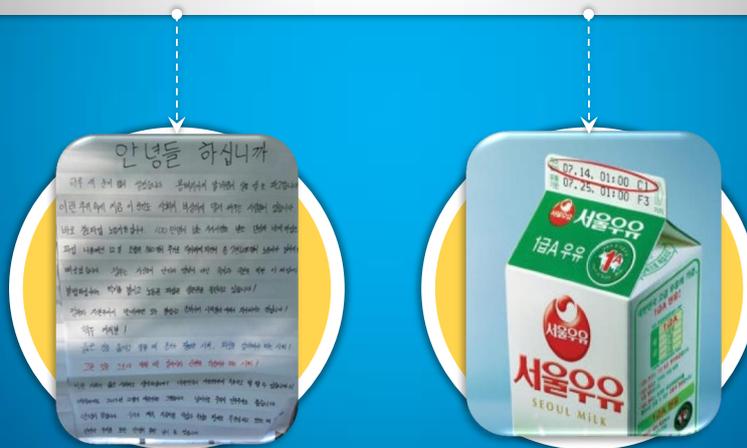
07
jwkim

- Institutional Plan : 단체의 존재 이유 세우기
- Development Plan : 존재 이유를 달성할 전략목적 세우기
- Fundraising Plan : 목적을 달성할 전술세우기



Agenda Setting?

공감의 동지애를 불러 일으켜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다면!



2016년, 공감의 동지애를 모을 아젠다는?

10
jwkim



The Power of Language 1 – Change your word, Change your world

11
jwkim



Change your Words
Change your World

12
jwkim

empathy
justification
mobi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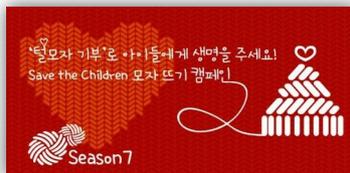
13
jwkim

CAUSE & WRITING

PART2

명분만들기

기분구조



for EX :

하나의 모자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기부자 : 생명 구조의 자긍심 - 보상가치를 약속

공유,소통 통로

변화가치 약속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기부자마다 다른 욕구를 이해해야 함

기본구조



내가 아름다워질수록, 소녀들의 미래는 바뀝니다
 Gil's Education - Olive Young & Unicef

15
jwkim

정리하면, 명분이란



16
jwkim

참고 - 기부동기의 종류

경제
효익

가벼운 GE믹서는 만능
겨우 17.95달러!

3만원이면 한 아이의
한달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됩니다

편리성

주차차량은 비상등을 켜주세요

당신의 서명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SIMPLE! '손가락 톡'이면 되요

지위
부여

독립민간연구소
희망제작소를 후원회 주십시오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셜 디자이너가 되십시오

17

jwkim

참고 - 기부동기의 종류

해결
가치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 시키지 않습니다

교육
가치



당신의 자녀는 동물원에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욕구

Viewer → Creator

당신의 참여로 세기의
<라보엠>이 완성됩니다

18

jwkim

참고 - 기부동기의 종류

휴머니티

하나의 모자가
하나의 생명을 살립니다

Local Music
Global Impact

도전

형제의
도적적
책무

반걸음만 함께 해도
동포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단체의 천 명
당신을 기억합니다

평판

소속감

삼성전자 직원의 67%가
우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추모

19
jwkim

참고 - 기부동기의 종류

교류

우리는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Kin
Selec
tion

사회적
책무

참여는 생각보다 힘이 쎄다

카이로 보물복원의
역사적 주인공이 된다

자긍심

기억될
이름

미래 리더들의 가슴에
당신의 이름을
세겨놓겠습니다

&..?

20
jwkim

CAUSE & WRITING

PART3

실전 글쓰기 Tip 5

글. 요소와 기능



에드라인. CREATIVE CONCEPT - 기부자 시선 잡기

서브라인. AD CONCEPT - 설득명분 : 프로그램 의미와 그것이 창출할 변화가치. 기부자가 얻게 될 보상가치 타이틀이 단체의 시선에서 띄여진다면 서브라인은 기부자 시선으로 띄여짐

타이틀. PD CONCEPT - 무엇을 위한(목적)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는지 소개

본문. BODY LINE - 문제상황. 솔루션(캠페인). 기대효과. 참여방법 등 세부 내용의 소개,

22

jwkim

컨셉개발 프로세스

프라그를 제거하는 치약



제품컨셉



제조사 의도

개운한 치약



광고컨셉



소비자 설명

뽀드득



크리에이티브컨셉



소비자 자극

23

jwkim

N01

- 차별적 위치를 잡아라



The Power of Langage 2 – Time to make a difference

포지셔닝 활용

COMPETITION

경쟁

DIFFERENTIATION

차별화

POSITIONING

위치잡기

Think Small

You deserve a break today

문밖세상

26

jwkim

TIP5

N02

- 구체적으로 써라
- 정보를 제시하라

27

jwkim

사례1

용인에 아파트 사고
남는 돈으로 아내에게 차 사줬다

이미지연상

우리는 50만명의 아프리카인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수치화

수혜 대상자의 90%가
우리 서비스가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백분율



특정 사례

사례2

Share This Reality
advertisers without bor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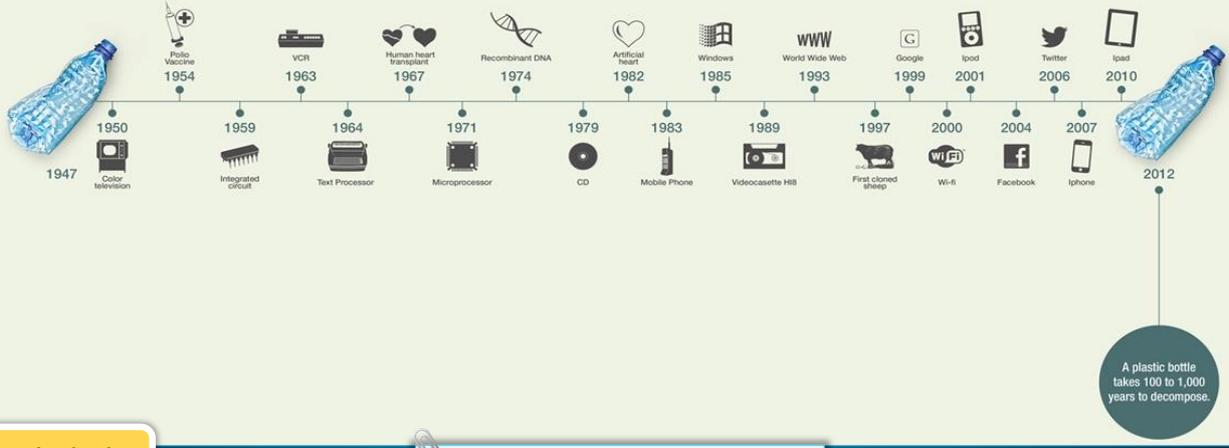


전세계 아동노동자
2억 1천5백만명



비교

사례3



연대기

illiteracy =
 Unemployment,
 Poverty,
 Female foeticide,
 Population burst.
 : Door Step School

함의

사례4

ethical treatment of animal
 not to eat, wear, experiment, use for entertainment

_ PETA _

사용예

N03

- 2SOT를 활용하라
- 문제를 알리고 동참시켜라

사례

sympathy

당신이 비만으로 고생할 때
아이들은 굶주림에 죽어갑니다

피해 상황제시

safety

한 잔의 커피가격으로
5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

obligation

우리 선택이 7세대 후손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규범제시

threat

15억원의 설립 기금중
마지막 1억원이 부족합니다

해결책의
부족함제시

N04

- 약속하고 증언하라

사례

7년 새차
- SM5 -

기부금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 HABITAT -

000은 함께 했던 단체 중
비용절감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 빌 게이츠 -

우리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 참여연대 -

N05

- 미래는 무조건 재미있는게 이긴다
- 창의적인 글을 써라

사례1

불법해석, 불법생각,
〈불법사건〉

나는 지진아인 내가
자랑스러워
〈바트심슨〉



낯설게 하기

Room 선택 후
10\$에 예약하십시오
faktumhotel.com
〈노숙자호텔〉



사례2

알렉산더 대왕이
수염을 관리하던 오일
<더 샘>

스토리
만들기

아빠는 없지만 살은 많은 울 엄마
똥똥한 그녀에게 발레신발!
<서울발레시어터>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아오모리의 깨진사과>

pot
reefer
spliff
weed
joint
roach
dime
bong
hit
hooch
doobie
grass
gange
shake
smoke
marijuana
마리와나를 여러가지로 부르지만 해롭지 않다고 하지 마십시오.
마리와나는 폐, 두뇌에 손상을 줍니다. 약물중독 예방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시각화

38
jwkim

Volkswagen : The funtheory



40
jwkim

사례3

흡연은 날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거기서
불을 붙일 수 있다면
흡연은 가능합니다

우린 정말 불량단체입니다

**유머
활용하기**

2014년, 新 국민 4대 의무 발표!

병역.납세.근로 그리고
ooo에기부

회원님, 사랑합니다
우린 당신의 돈도 사랑합니다

엄마에게 수상한 자식이 생겼다!

초산비닐수지를 넣지 않은
천연 치클껌
<오리온>

**노이즈
만들기**

비영리도 1대 99?

부자 NPO에만
기부하지 마세요



Pray for Nepal-네팔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 단체명: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공제 안내
- 기부처: 지구촌 나눔 > 네팔 지진피해
- 모금기간: 2015. 04. 26 ~ 2015. 06. 30 D-65
- 목표금액: 9,900,000원

모금율 50%

4,960,000 원모금 **720** 명참여

GIVE 기부하기



네팔의 지진참사에 동참해주세요

- 단체명: 뷰티플월드 기부금 공제 안내
- 기부처: 지구촌 나눔 > 네팔 지진피해
- 모금기간: 2015. 04. 26 ~ 2015. 09. 30 D-157
- 목표금액: 4,000,000원

모금율 1%

16,200 원모금 **19** 명참여

GIVE 기부하기



[긴급구호] 네팔 지진피해아동 최우선 인도적 지원

- 단체명: 세이브더칠드런 기부금 공개안내
- 기부처: 지구촌나눔>네팔 지진피해
- 모금기간: 2015. 04. 26 ~ 2015. 05. 31 **D-35**
- 목표금액: 9,900,000원

모금율 **34%**
3,451,000 원모금 **505** 명 참여

GIVE 기부하기



네팔 지진 피해지역 주민 돕기 긴급모금

- 단체명: 굿네이버스 기부금 공개안내
- 기부처: 지구촌나눔>네팔 지진피해
- 모금기간: 2015. 04. 26 ~ 2015. 12. 31 **D-249**
- 목표금액: 50,000,000원

모금율 **19%**
9,531,000 원모금 **1,321** 명 참여

GIVE 기부하기



80년만의 네팔 최악의 지진, 최대의 참사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7.8 지진 발생

굿네이버스 네팔 현지 지부는 지진 피해 발생 이후 긴급구호팀 신속히 파견! 현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지진 발생 이후 네팔 전역에서 어린이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사업, 빈곤가정아동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해외 30개국에서 긴급구호 및 3세까지 예방사업을 통해 건강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대북사업으로는...

· 해외모금 가입	2005년
· 총 모금액	981,189,506원
· 전체 모금할	225개
· 기업/개인 후원율	100%
· 정기/기부자	122명
· 후원처는 2014년	

43 jwkim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 ★ **2인칭으로 쓸 것** :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 당신이 브룩스 옷을 입으면, 옷차림이 짜임새 있다고 느껴집니다
- ★ **1인칭의 증언과 보증을 활용하라** : 신뢰를 확보하도록
 - 000은 함께 일했던 자선단체 중에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가장 노력한 단체입니다 - 빌 게이츠
- ★ **특정인을 지칭할 것** : 고객에게 접근해야 한다
 - 35세까지 만족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 ★ **구체적으로 말할 것** :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 용인에 아파트 사고 남은 돈으로 아내에게 차 사했다
- ★ **명확한 성공과 수치를 제시하라**
 - 우리는 50만명 이상의 방글라데시인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
 - 매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100만건 이상의 전화를 받는다
- ★ **백분율과 설문결과를 활용할 것**
 - 우리는 비용절약을 위해 운영비를 10%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손해대상 조사에 따르면 90%가 우리의 상담 서비스가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 ★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것** : 궁금증 일으켜 바디카피를 읽게 하라
 - MB 파이팅 (홍명보 파이팅)
- ★ **낯설게 말할 것** : 습관화된 것은 의식을 잠재운다. 잠을 깨우기 위해 낯선 단어를 조합하자
 - 이주일의 ‘그거 말 되네’ / ‘여보세요 혁명’ <노키아> / ‘불법사건’ / 불만합창단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 ★ **공약을 제시할 것**
 - 기부금이 잘 사용되지 못된다면 기부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해비타트
 - 기부로 이루어질 6개월 후의 변화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밤 사이에 완벽하게 상품배발 : 페덱스
- ★ **머리를 뒤 흔들것** : 특히 신제품이 진입할 때 흔들어 놓지 않으면 구멍이 안생긴다
 - 아니오, 디오겔 주세요
- ★ **때론 문법을 어겨도 좋다** : 조사는 빠고 어순은 어겨도 좋다
 - 대한민국 1% <렉스톤>
- ★ **말장난을 하라** : 제품특징과 말장난을 절묘하게 연결할 것
 - 사고몽치로 키우세요 <레고> / 마라! 말아톤
- ★ **경쟁자를 살려주지 말 것**
 - 초산비닐수지를 넣지 않은 천연 치클껌 <오리온>
- ★ **패러디 하라** : 법전, 역사, 문학, 노래, 책, 연극, 영화, 전설, 속담, 논문, 개그, TV프로그램 등
 - 오늘의 소주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참이슬>
- ★ **겁을 줘라** :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무서운 결과를 말해줄 것
 - 10년전 수학여행 때 먹은 김밥이 아직 당신의 장 구석진 곳에 숙변이 되어 달라붙어 있습니다 <닥터캡슐>
- ★ **유행, 관심을 컨닝하라** : 소비자는 무인도에 살지 않는다. 그들이 열광하는 것에 제품을 갖다 붙여라
 - 동대문, 잔치는 끝났다 <동대문 메사> (서른, 잔치는 끝났다)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 ★ **머릿속으로 들어가라** : 타겟 머리 속에서 출발, 제품을 그 뒤에 슬그머니 갖다 붙이면 된다
 - 피파 회장님, 내 아이 대학들어갈 때 까지만 월드컵을 연기해 주세요
- ★ **솔직하게 털어 놓아라**
 - 직면한 어려움은 '현재 일이 효과적이나'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혜자들에게 질문하고 기부자들의 생각을 묻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우리는 201통의 편지를 받았습시다. 대표는 모든 편지에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절반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 **일등을 끊어라** : 2등 3등의 전략
 - 침대가 침대에게 묻습니다 / 스프링만 가지고 침대가 허리를 10년이상 힘있게 받쳐줄 수 있습니까?
- ★ **이익을 선물하라**
 - 가벼운 GE 믹서는 만능입니다... 겨우 17.95달러
 -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만원의 나비효과' 캠페인 - <당신이 1만원 기부했을 때 경제적 가치 = 179,000>
- ★ **이름을 알려라** : 브랜드네임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효과적이다
 - 알리안츠 러브를 아십니까?
- ★ **반복하고 나열하라** :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필요하면 주저말고 늘어놔라
 - TV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오디오 만들고 남는 기술로 에어컨을 만든다? <센츄리어에콘>
- ★ **휴머니티를 붙들어라** : 따뜻한 메시지는 영원한 테마다
 - 콩을 심으려면 꼭 세계씩 심게나. 하나는 땅 속 벌레 똥, 또 하나는 하늘 새의 똥, 나머지 하나가 사람의 똥이라네 <풀무원>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 ★ **캠페인을 생각하라** : 아이디어에 목직한 힘이 있어야 한다
 - 우리에게 부끄러운 철도 있습니다(휴전선). 하루 빨리 이 철을 녹여 자랑스런 철을 만들겠습니다 <포스코>
- ★ **5학년에게 말하라** : 가장 좋은 광고는 가장 쉬운 광고다
 - 리모콘이 고장나면 TV를 바꾸십니까? 문짝 하나 때문에 가구를 바꾸지 마세요 <동서가구>
- ★ **변화를 브랜드로 전환시켜라**
 - 우리는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 우리는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 시키지 않는다
 - 전화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8 파운드가 필요한데, 이는 작년에 비해 1 파운드 감소한 금액이다
- ★ **가장 광고를 만들어라** : 없는 사실을 말하면 과장광고. 있는 사실을 극대화하면 가장광고
 - 지구 위의 컴팩 PC를 모두 모아 쌓으면 하늘에 구멍이 날 것이다 <컴팩>
- ★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라**
 - 쿵!쿵!쿵!쿵! 80세 소녀가 다가온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 ★ **타겟을 좁혀라** : 다 잡으려 하다가는 단 하나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 자녀가 하나라면 <후디스 아기밀>
- ★ **돌아가지 마라** - 사족을 다 떼어버리고 말할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끝!
 - 여수에 돈을 풀겠습니다 <여수상호신용금고>
- ★ **신조어를 만들어라** -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는 것. 카피라이터의 특권이다
 - 평가는 윤성생이 합니다. 칭찬은 엄선생이 해주세요 <윤선생 영어교실>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 ★ **기업을 팔아라**
 - 3M이 또 사고 쳤어! / 세상 어떤 얼룩도 견뎌내지 못하는 '한울'탄생 <3M한울>
- ★ **그들의 언어를 써라** - 자기가 자주 쓰는 언어들을 만날 때 설득력도 커진다
 - 상한가로 모십니다 <KGI증권>
- ★ **시장을 키워라**
 - 입술과 루즈 사이에도 메이크업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입술과 루즈 사이에 <소프트립스>
- ★ **소비자를 띄워줘라**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라면 잘 먹는 아이, 뉴면 잘 먹는 아이. 뭐가 다르니까? 엄마가 다릅니다. 좋은 엄마는 <뉴면>
- ★ **뉴스를 활용할 것** : 정보,새로움,날짜 등을 이용
 - 6월 1일, GE전구가 더 밝아집니다
- ★ **공동의 해결방안을 찾아라** : 왜? 어떻게하면? 을 활용
 - 왜 존슨 대통령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을까요? /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까요?
- ★ **증명형 헤드라인을 활용하라**
 - 연수입 9천달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월 스트리트 저널'을 구독하기로 예약했습니다
- ★ **권유할 것** -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알려주기 :
 - 새로운 가구를 보시기 전에는 책상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가이드라인 – Headline의 12가지 법칙

- ★ **두운법** - 문장과 구절의 초성에 같은 음의 단어를 사용사용, 리듬을 살리고 쉽게 기억되도록 함
 - 밋 부르지 않은 듯이 밋이 나는 <캠브리지멤버스> /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영어 <돌리의 배낭여행> / 찍으면 재밌어요, 찍혀도 재밌어요 <플라로이드>
- ★ **대조법** - 서로 상반되는 어구나 생각을 대조시켜 강조함
 - 당신이 잠들 때, 에이스는 깨어납니다 <에이스침대> / 기대 반? 걱정 반? <재능교육> / '뭘 마실까하다가 왜 마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포카리 스위트> / 색연필이 짧아질수록 실력은 쌓여갑니다 <구몬>
- ★ **모순 또는 배반** - 논리의 모순 또는 상호수식의 오류를 범해서 메시지를 역설적을 강조함
 - 유럽에 없는 유럽 <터키 관광청> / 밭에서 따온 요구르트 <풀무원요거트> / 봄, 여름, 가을, 봄 <금성>
- ★ **은유법** - 원관념을 더 재미있고 설득적이고 유니크한 보조관념에 비유하여 단정적을 말함
 - 나폴레옹, 이순신, 콜럼버스... 모두 '바다'라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동원산업> / 강해지고 싶어서 나는 책에서 영향을 섭취했다 <고단사> / 키 크는 하얀 소고기, '우유' <한국유가공협회>
- ★ **직유법** - 원관념을 더 재미있고 설득적이고 유니크한 보조관념에 비유하여 '...같은' '... 처럼' 등을 사용
 - 칫솔 같은 검 <위시> / 김일병의 휴가처럼 기다려지는 뉴스 <sbs8시뉴스> / 러닝슈즈처럼 편한 드레스 슈즈 <비제바노소프트> / 빙판길을 움켜쥐듯 달린다 <노르딕>
- ★ **패러디** - 격언, 속담, 경구 등 이미 친숙한 문장을 변형시키거나 새롭게 해석하여 메시지를 전달
 - 길고 짧은 것은 써봐야 안다 <듀라셀> / 반값만사성 <두루넷> / 그림은 글의 어머니 <히다찌제작용>

가이드라인 – Headline의 12가지 법칙

- ★ **유머와 유티** - 세계 모든 소비자가 좋아하는 패턴
 - 속 마음은 속웃으로 전하세요 <레노마 언더웨어>
- ★ **의성어와 의태어** - 텍스트에 시청각적 이미지를 더해서 전달
 - 30초짜리 무선교향곡 "보글 보글" <물리닉스> / 찌든 때는 쭉쭉 양복까지 보들보들 <대우공기방울 세탁기> / 당신 모발에도 촘촘촘 붐이 시작됩니다 <직공모발력> / 와사삭! 이보다 더 싱싱할 수 있을까? 덤체에서 꺼낸 수박 <덤체>
- ★ **질문** - 새로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때 의문문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발휘
 - 어촌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을 아십니까? <마리놀> / 당신의 카드결제일은 안녕하십니까? <굿머니 클리어론> / 결혼이란? 반은 버리고 반은 채우는 것 - <선우> / 출산,빨래,청소,요리... 당신의 허리, 안녕하십니까? <한국유가공협회>
- ★ **실증** - 경험자 또는 그 방법의 권위자의 입과 말을 빌리는 것만큼 설득에 효과를 더함
 - '황제의 꿈을 읽는 동안, 난 내려야 할 정류장을 두번이나 지나쳤다' <도서출판 모아> /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 ★ **단언 또는 명제** - 단정적인 말, 확신에 찬 의견. 이런 딱 부러지게 말하는 스타일 활용
 - 아내의 여자보다 아름답다 <프리마> / 광고라기보다 뉴스입니다 <대우 셀프> / 당신의 가치는 피부가 말해 줍니다 <아이오페 리제너레이션>
- ★ **병렬적 구조** - 글의 내용이 대조되는 것은 아니나, 병렬적으로 구성해서 글과 말에 리듬을 주고 메시지를 강화
 -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교보문고> /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대우> / 마루가 원목이면 집안은 자연이 됩니다 <크레신 참참마루> / 입은 사람이 좋아야 한다. 사람도 좋아야 한다 <헌트>

가이드라인 – Head or Subline

- ★ 비밀형 - 나만 몰랐던 00인기상품 BEST 10 /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00 /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00의 비밀
- ★ 이슈형 - 떠오르는 00의 블루칩 / 무조건 먹어봐야 한다는 000 / 나왔다 하면 완판되는 00! 특가판매
- ★ 노하우형 - 00 꿀팁 대 방출 / 000하기 쉬운 방법 BEST10 / 일주일만하면 터득하는 00 노하우
- ★ 목적형 - 이것도 모른다면 당신은 00 덕후라 할 수 없음 / 00을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할 방법 3가지
- ★ 진실형 - 우리는 몰랐던 00의 진실 / 아마도 당신이 몰랐을 000 / 꼭 데리고 가봐야 하는 추천 000
- ★ 정보형 - 믿고 보는 000의 황금레시피 / 초간단 000레시피 / 000의 A to Z. 파헤치기

CAUSE & 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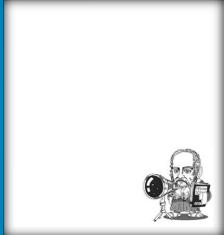
PART 4

아이디어 발상법?

2nd

인물
대입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
움베르토 에코



다시
살아났어요



54
jwkim

3rd

단어
융합



성소수자 단체

화자
전환



아름다운 가게

새의미



55
jw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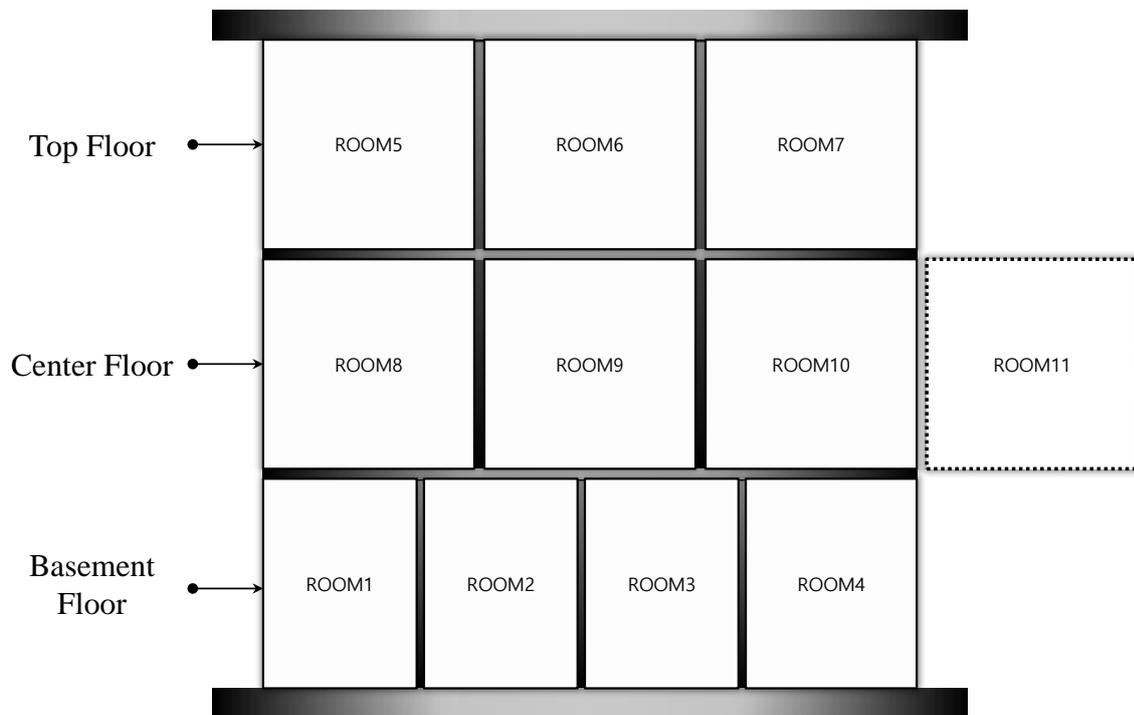
모금

후원개발
기획프로세스 소개

이선희(휴먼트리 대표)

FRAMEWORK for PLANNING

HUMAN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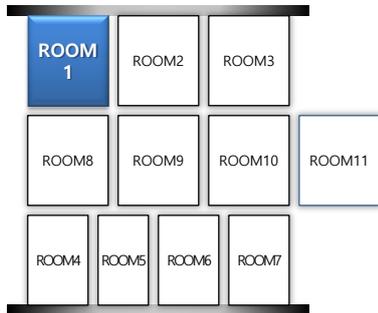


1. 모금목적

mission

누구의 무엇을 위한, 어떤 사업을 위해 모금하려고 하는지 :

- ① 수혜대상
- ② 기부금 용도와 목적
- ③ 사업의 핵심 활동(컨텐츠) 등을 기술함



Check Points

- 목적 사업 Unique Selling Points는 무엇인가
- 해야할 것 · 할수있는것 · 하고 싶은 것의 중복 부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답

Sample

- 아프리카 저체온증 신생아에 체온 유지용 털모자를 선물, 생명을 살리는 사업(프로그램)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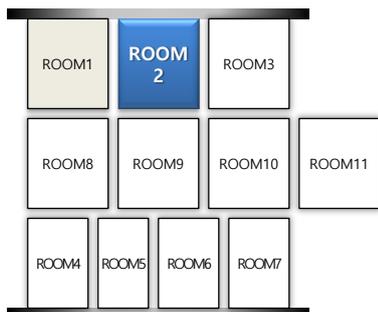


2. 모금목표

objectives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별(장,단기) 모금목표를 제시함

※ 목표액 = 잠재기부자수 x 평균기부참여율 x 평균기부액



Check Lists

- 언제까지 - 시한
- 어떤 모금활동을 통해 - 방법
- 얼마를 - 목표액 : 실현 가능한 공동의 목표
- 이때 기부자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 - 기부자 반응행동

Sample

- 2015년 12월까지 / 대중참여 기부캠페인을 통해 6억원을 모금한다 / 기부자는 정기 및 일시기부에 참여하고, 지인에게 캠페인을 소개하고 동참을 요청한다



IS IT POSSIBLE?

-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지원 사업프로그램을 위해
- 행사, 대면, Mail, 커피판매 등 통합 모금캠페인을 통해
-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대비 15% 향상된 2억원을 모금한다
- 기부자는 친구, 가족와 커피 1+1 방식으로 하루 한잔의 커피값 기부에 참여한다



3. 과제설정

task

모금목적사업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단체 내, 외부의 중점 과제를 분석,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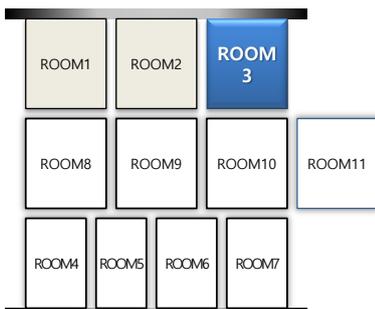


Check Lists

- 대상 프로그램은 경쟁(유사)단체 프로그램과 차별점이 있나
-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저항은 없나
- 잠재 기부자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나
- 모금담당자 - 조직은 구성되어 있나
- 모금담당자, 조직은 모금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나
- 단체와 리더십은 모금에 친화적인가
- 모금을 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
- 모금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원 - 파트너들은 확보되어 있나
- 기부자에 대한 단체의 신뢰도, 인지도는 충분한가
- 기존 회원, 후원자들의 피로도 없는
- 모금에 영향을 미칠 정치, 사회, 기술적 요인이 있나
- 모금활동을 펼칠 장소(공간)에 문제는 없나... etc

Sample

-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유사경쟁기관에서 아프리카 아동지원을 위한 유사 프로그램이 많다. 중복사업이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기부피로감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견됨. 어떻게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까?



지역아동센터의 고민

- 아동지원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기부 피로감이 발견됨.
또한 지원사업(겨울캠프)의 시급성 부족으로 인한 기부자 무관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까?
- 조직기반이 취약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모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자료조사 및 분석

research & analysis

과제를 해결할 전략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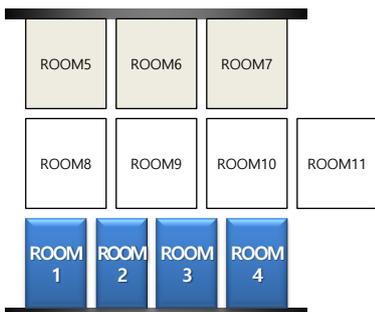
- ① 모금단체 및 모금대상 사업/프로그램
- ② 경쟁상황
- ③ 잠재기부자
- ④ 모금환경에 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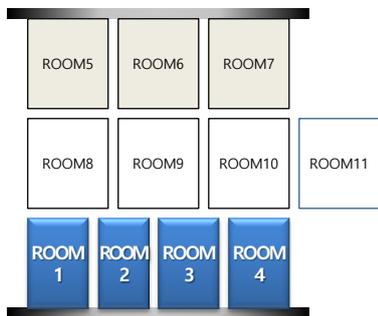
※ 위 4개 영역관련 수혜자, 담당자, 기부자 인터뷰 • 내부자료조사 • 현장조사 및 관찰 • 통계자료 입수 • 관련뉴스검색 • 유사기관 및 활동내역 조사



Check Lists

- 단체의 미션/ 비전은 있다. 무엇인가
- 단체의 핵심 사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 단체의 구성원은 몇명인가 (상근/ 비상근)
- 단체에 이사회/ 후원회/ 자원봉사조직은 있다. 몇명이며 어떤 사람들인가
- 단체의 회원/ 후원자(일시, 정기)/ 우편물(메일) 수령자는 각각 몇명인가
- 단체 활동/사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연간 몇명인가
- 2014년 모금성과는 얼마인가 - 2012년, 2013년과 비교하면 성장했나
- 성장했다면 이유는/ 축소되었다면 그 이유는
- 2014년 단체의 총 사업비 중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떠한가
- 단체의 주요 파트너사/ 관계사는 어디인가. 후원금을 내고 있다
- 어떤 대상사업/ 프로그램을 위해 언제까지 얼마를 모금하려 하나
- 모금대상 사업/프로그램의 핵심요소(활동)는 무엇인가
- 모금대상 사업/ 프로그램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
- 모금대상 사업/ 프로그램의 경쟁(유사)단체는 어디인가
- 경쟁/ 유사단체는 어떤 모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경쟁/ 유사단체의 모금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 공통점/ 단점이 있다





---> **Check Lists**

- 모금대상 프로그램은 경쟁/ 유사단체의 그것과 어떤 차별점/ 특징이 있나
- 모금대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현장에선 누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 단체의 최고액 기부자는 누구이며 기부액은 얼마인가
- 모금 체어맨 역할을 해 줄 사람은 있나
- 단체가 모금을 할 경우 지원해줄 사람이나 조직이 있나
- 단체의 주요 기부자는 누구인가 - 특히 기업 등 기관기부자가 있나
- 단체장과 조직구성원은 모금경험이 있나
- 단체장/ 리더그룹/ 조직구성원은 모금에 동참할 의지와 있으며 여건이 되나
- 단체의 모금담당 인력은 몇명인가 - 전임자인가
- 모금담당 인력의 모금경험/ 성과는 어느정도 인가
- 2104년, 2015년 모금예산은 얼마인가. 향후 얼마까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나
- 잠재기부자 데이터는 확보되었나. 몇명인가
- 잠재기부자의 규모/ 기부능력/ 특성은 어떠한가
- 단체의 인지도/ 신뢰도/ 호감도는 지역사회와 관련영역에서 어느정도 인가
- 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 모금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사건이 있나
- 모금에 영향을 미칠 계절적 요인이나 행사는 있나...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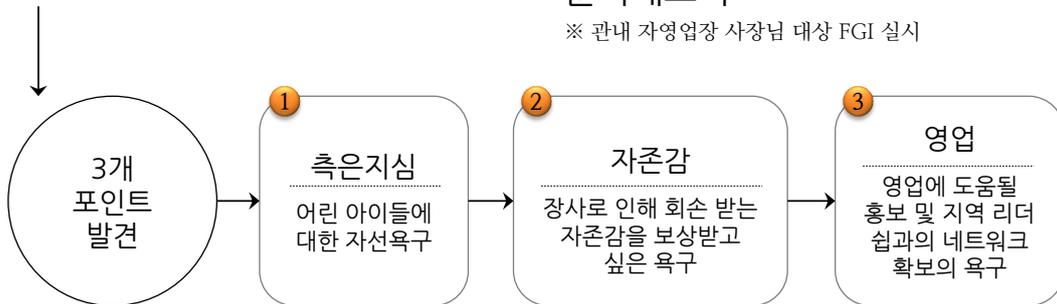
sample

자료조사, 분석 통해 과제해결 솔루션 찾기

다시보자, 잠재기부자

지역자원을 개발키 위해
지역 중소 자영업장의 욕구를
분석해보니

※ 관내 자영업장 사장님 대상 FGI 실시



“ 자선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영업에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 ”



다시보자, 지역

지역 사회내 자선관련 기관을
조사해보니

기부클럽이 부재함을 발견

“더 좋은 것 보다 최초의 것이 낫다”
- 마케팅 불변의 법칙1 -

00지역 최초의 기부클럽
방식의 모금 프로그램 기획

기부클럽이 부재한 지역상황
+ 기부자(지역 중소기업사장님)
욕구를 결합



기부클럽 제안만으로 성공할까?
클럽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인터뷰 - 지역 중소기업 사장님의
관심 사항을 조사해 보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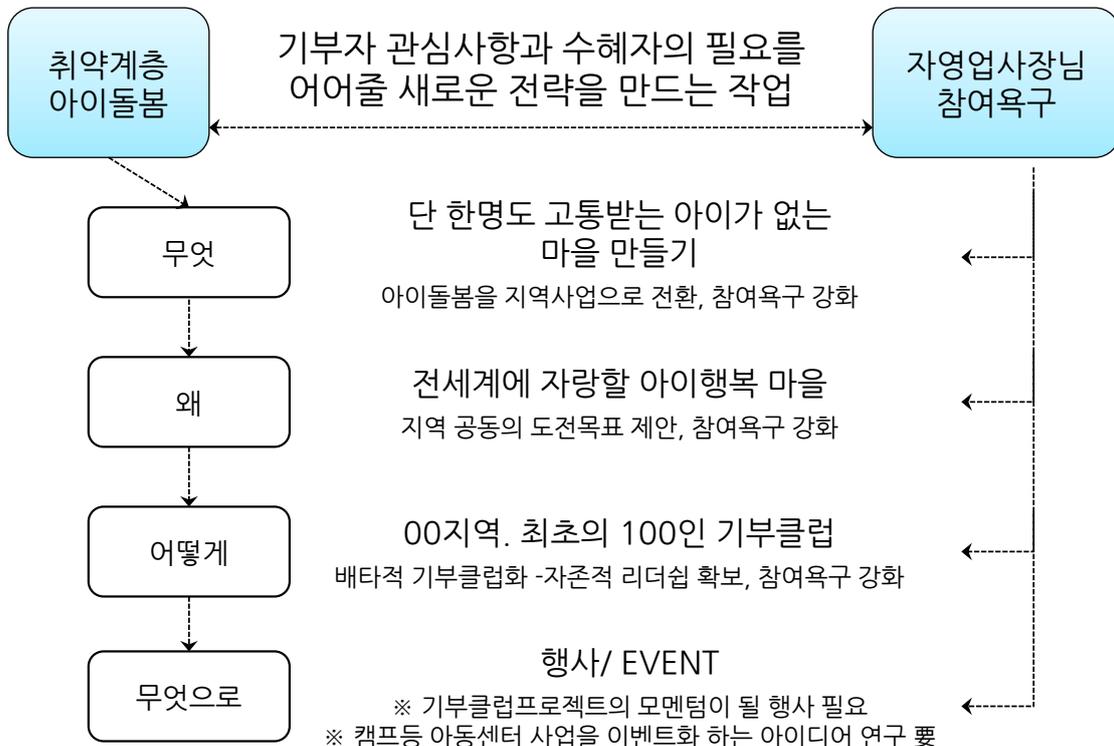
① 새로운 도움의 대상(수혜자)을 알게 되거나

② 자존감을 세울 조건이 제시되거나

③ 사회적 관심(이슈)를 도전목표가 제시되거나

④ 고객을 모을 효율적인 행사가 제시되거나

etc...



정리하면!

자영업장을 지역아동센터의 기부자로 유인키 위해선
다음 3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영업의 기반은 마을! 따라서 아동문제를 '자선을 통해 세상에
사랑할 마을만들기' 컨셉으로 전환함으로써 참여동기를 강화
하는 **메시지 전략**
- '100인 기부클럽'이라는 배타적 자선클럽화 **모금방식**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심리적 보상을 확보해 주는 전략
- P2P(대면모금)을 기본으로 하되, 기부참여 **모멘텀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형 이벤트를 제안하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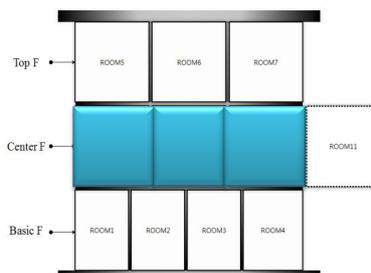
● 과제해결 방안(솔루션)을 기반으로 모금프로그램 기획 ●

1) 소구대상 - 표적 기부자 설정

2) 기부참여 이유 - 명분 제안

3) 모금프로덕트 _ 기부자 및 명분에 맞는 모금방식(상품) 제안/ 핵심성공요인 설정

- ① PRODUCT : 기부자가 참여할 모금 상품/프로그램 제시
- ② PRICE : 저항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기부액 제시
- ③ PLACE : 기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④ PROMOTION : 모금을 알리고 참여를 자극



5. 표적 기부자 설정

donor targeting

- 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부자수
- ② 모금대상 프로그램에 반응할 수 있는 잠재기부자 탐색
- ③ ROI 평가. 1차, 2차 표적기부자 결정
- ④ 표적기부자 프로파일 작성



Check 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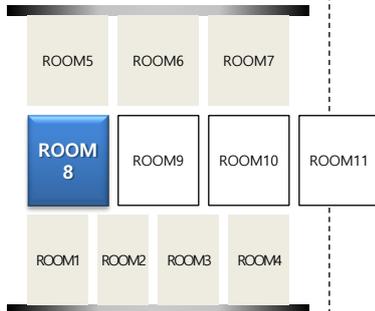
기프트테이블작성
gift table



잠재기부자탐색
identification



잠재기부자범주화
categorizing



- 단체내부 리스트
- 단체 네트워크 리스트
- 관련 오픈 리스트

- 잠재기부자대상 - 개인/ 기업/ 기관/ 단체/ 커뮤니티/ 불특정 다수
- 인구통계적특성 - 나이/ 성별/ 직업/ 지역/ 소득/ 종교/ 가족/ 라이프스타일
- 규모 - 인원수/ 그룹수
- 단체와의 관계 - 신규/ 비기부회원/ 일시기부자/ 정기기부자/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참여자/ 이사회
- 예상기부액 - 소액/ 중액/ 거액
- 네트워크 - 가족/ 온라인/ 동문/ 직업/ 취미/ 지역/ 기타
- 기부성향 - 기부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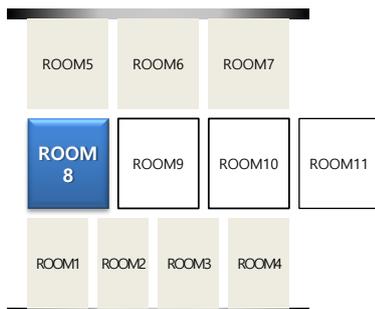


Check Lists

표적기부자설정
evaluation
& targeting



표적기부자자료정리
profiling



- ※ 1,2,3차 기부자 설정
- 규모 경제성
- 접근 가능성
- 단체 관계성
- 설득 용이성
- 행동 변이성
- 틈새-차별성
- 확장 가능성

- 대상
- 인구통계적 특성
- 규모
- 연간 평균 기부가능액
- 기부자 특성
- 단체와의 관계
- 준거집단 및 게이트 오프너
- 관계 네트워크
- 기부욕구 및 핵심요구 사항
- 기부 장애요인



누구에게 요청할까? Targeting : Potential Donor Group



sample

Gift Table :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부자수

기부자 수	기부액	금액	잠재기부자수
2	2,500,000	5,000,000	8
5	500,000	2,500,000	10
10	100,000	1,000,000	30
50	50,000	500,000	100
75	10,000	750,000	200
142		10,000,000	348



- 1차 타겟 기부자 :
 - 대상 - 지역아동센터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방문한 경험했거나 소개받은 중소기업장
 - 규모 - 125개 영업장(대표).
 - 특성 - 시간부족으로 인해 비자발적 기부 성향. 그러나 생존의 애환을 공유, 잠재된 자선의 동기를 내재. 기부의 명확한 이유를 제안하면 기부참여 가능. 지속적 설득 및 반복 요청이 주효함.
 - 기부가능액 - 매월 2만원 ~30만원
 - 영향력 - 단골고객. 각종단체 관계자. 관내 관공서 담당자 등
- 2차 타겟 기부자 :
 - 대상 -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기부중인 기존 영업장
 - 규모 - 271개 영업장(대표)
 - 특성 - 기본특성은 위와 같음. 특히 단체활동에 대한 인해도 높음. 따라서 기부자 조사를 통해 불만제거, 만족강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한 증액 및 지인 소개 요청 필요
 - 기부가능액 - 매월 2만원 ~ 30만원
 - 영향력 - 상동



6. 명분제안

value proposition

설정된 기부자의 욕구를 파악, 설득하기 위해 - 기부대상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유와 기부대가로 기부자가 얻게 되는 가치/혜택(Exchanged Value)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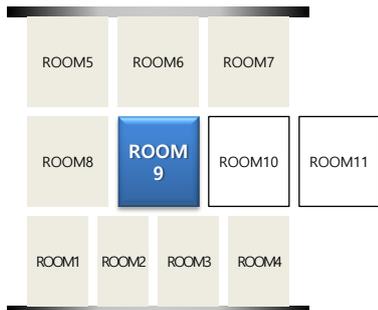
※ V.P 아이디어 대상 - 기부대상 프로그램 자체의 차별적 가치 / 기부의 대가로 얻게 되는 유,무형의 가치(donor identity) / 모금 프로그램의 참여로 얻게 되는 다양한 혜택



Check Lists

모금대상 사업 및 모금 프로그램은 -

- 변화가치가 차별적이거나 특별한가
-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거나 혜택이 보장되나
- 특별한 지위와 명예를 제공하는가
- 자녀에게 교육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나
- 창조적 욕구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해 주나
- 사회적, 공적 책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을 주나
- 형제애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게 해주나
- 소속감을 강화해 주나
- 평판, 인지도, 신뢰도를 높여주나
- 추모를 할 기회를 제공해 주나
- 사람들과의 교류 - 네트워크를 강화할 기회를 주나
- 혈연, 지연, 학연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주나
- 편리한가
- 참여프로그램이 좋고 재미있나
- 기념품, 할인권, 멤버십, 서비스의 혜택이 있나 .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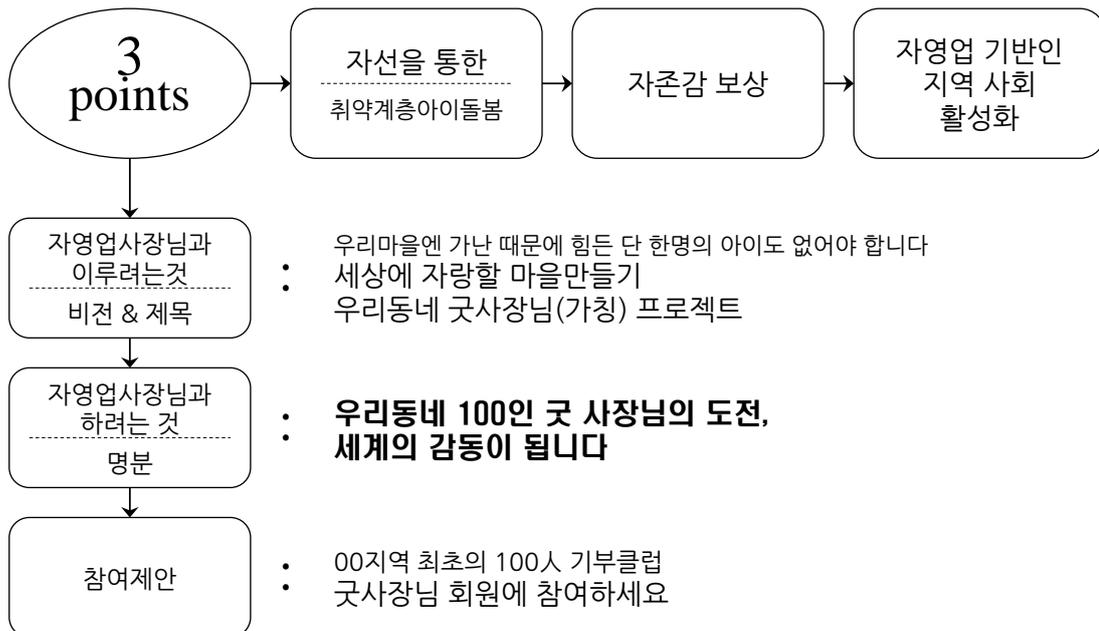


어떤 언어로 기부이유를 설득할까?



sample

명분제안



7. 모금프로덕트 & 핵심성공요소 수립

Fundraising Product & Critical Success Factor

실제 기부에 참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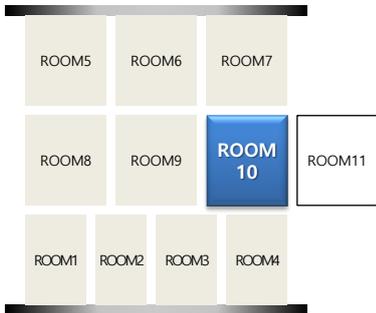
① 효과적 모금도구 ② 이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핵심요소(CSF) 혹은 전략을 수립함



Check Lists

모금도구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전화모금 <input type="radio"/> 거리모금 <input type="radio"/> 캔버스상-방문모금 <input type="radio"/> 방송모금 <input type="radio"/> 기부광고 <input type="radio"/> 모금캠페인 <input type="radio"/> SNS모금 <input type="radio"/> 모금편지 <input type="radio"/> 포인트, 마일리지기부 <input type="radio"/> 기부상품판매 <input type="radio"/> 바자회, 경매 <input type="radio"/> 기부금융상품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자선파티, 후원의 밤 <input type="radio"/> 공약형 모금 - 금연,금주 <input type="radio"/> 결연모금 <input type="radio"/> 모금자원봉사 <input type="radio"/> 짜투리모금 <input type="radio"/> 이벤트 - 마라톤대회 <input type="radio"/> 공모전 <input type="radio"/> 릴레이기부 <input type="radio"/> 개인행사 수익일부 기부 <input type="radio"/> 유산기부 <input type="radio"/> 재능기부 <input type="radio"/> 매칭그랜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모금블로그 <input type="radio"/> 해피빈 등 모금포털청원 <input type="radio"/> 인별,사업처별 할당모금 <input type="radio"/> 소원빌기 등 대리기부 <input type="radio"/> 내기모금 <input type="radio"/> 분양모금 - 지원대상상품화 <input type="radio"/> 모금함 <input type="radio"/> 크라우드 펀딩 <input type="radio"/> 스타연계 모금 <input type="radio"/> 뉴스연계 모금 <input type="radio"/> 도전형모금 - 성적 <input type="radio"/> 신체모금 - 식발... etc |
|---|--|--|



Check 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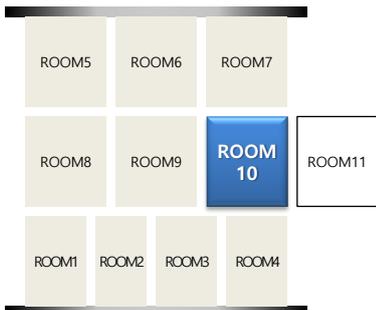
--> 모금도구에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키워드들 : -->

- Benchmarking - 성공사례에서 아이디어를 빌려보았나
- MGM - 내 역할을 해줄 모금가를 확보했나
- Relationship - 효과적 관계맺기로 참여이유를 강화했나
- Differentiation - 차이를 만들어 참여동기를 강화했나
- Sharetainment - 경쟁, 유머 등 즐거운 방식을 제안, 참여 동기를 강화했나
- Convergence - 힘, 아이디어를 합쳐서 부족한 참여의 힘을 강화했나
- PR - 효율적인 이슈만들기는 어떠한가 ... etc

전략 성공을 위한

CSF _ critical success factor :

- 신뢰있는 기부권유자
- 주요기부자의 게이트오프너
- 새로운 기부자DB
-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 사진, 동영상
- IT시스템
- 예산
- 충분한 전화회선
- 기부자 예우상품
- 이슈를 확산시킬 기자.PD
- 모금케어맨
- 조직 및 리더쉽 지원
- 기부자 관리프로그램
- 스토리를 만들어줄 첫 기부자...etc



8. 마케팅 수단의 수립

4P mix & stewardship

'모금도구의 상품化' 를 위해

- ① Product : 모금상품브랜드 ② Place & Payment Methods : 노출경로 및 요청방식 ③ Price : 기부요청액 ④ Promotion : 홍보 및 프로모션 + ⑤ Stewardship : 기부자 예우관리 방식을 수립함



Check Lists

PRODUC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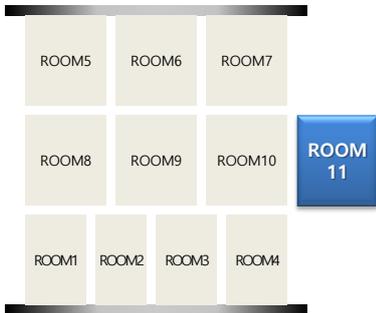
최적의 모금 상품화

- 상표 - BRAND : 기호, 상징, 캐릭터, 색상
- 상표명 - BRAND NAME : 상표 중 언어표현
- 상품마크 - BRAND MARK : 심볼, 로고
- BRAND IDENTITY - 상품 이미지 통합

PLACE :

모금상표를 노출할 최적의 경로 선택

- 대면 - 직접/대리, 방문/거리
- 단체홈페이지
- SNS/ 이메일/ 뉴스레터
- 전화/ 편지
- 인적경로 - 자봉/ 이사회/ 친지
- 지면/ 방송매체
- 온라인 - 포털/ 블로그/ 카페
- 기사화
- 파트너 광고매체
- 리플렛 / 현수막 / 배너
- 파트너 - 블로거/ 트위터리안/ 공동캠페인파트너사이트/ 기업유통망/ 지역유관단체...etc



Check Lists

PAYMENT METHO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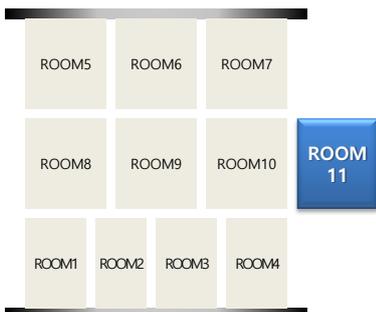
기부자 편의성을 고려한 획득(요청)방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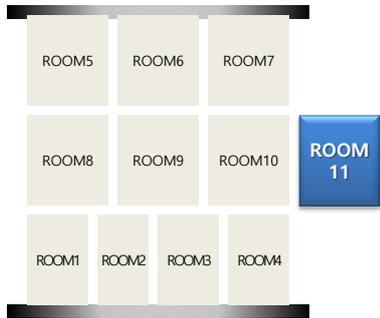
- 모금요청서 - CMS
- ARS
- 무통장입금
- 대면전달
- 모금함
- 폰뱅킹
- 신용카드
- 포인트결제
- 모바일결제... etc
- ※ 일시불 / 정기납부 / 축적후 일시불

PRICE :

기부자에 최적화된 기부금액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제시

- 기부자 결정방식
 - 자유선택 / 약정
 - 수입조건부기부액설정
 - 매칭그랜트
 - 끝전
- 단체 제시방식
 - 고정금액
- 단체, 기부자 협상방식





Check Lists

PR & PROMOTION : ----->
 기부상품의 인지, 확산을 위해
 유통경로를 활용, 홍보 및
 프로모션 기획

- Award 제정/ 출판/ 공모전/ 전시회/ 기념품/ 쿠폰/ 실연회
- 경연/ 포상금/ 참여행사
- 전화/ 인터뷰/ 현장초청
- 이슈연결/ 기자간담회
- 회의초대 / 인증제도
- 특별한 선물증정/ 설문조사
- 훈련프로그램/ 서명운동
- 동영상활용/ 전문가활용
- 아동프로그램/ 지역프로그램
- 바이럴마케팅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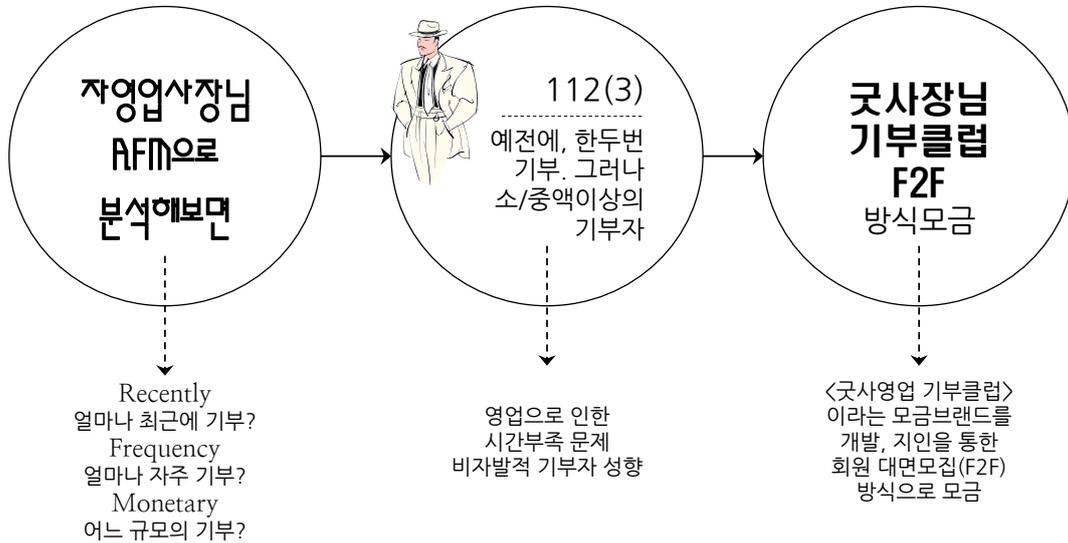
STEWARDSHIP :
 기부자 관리를 위한 효과적
 보상방안 채택

- 감사편지/ 전화/ 문자
- 기부인증서/ 감사패
- 홍보를 위한 인터뷰
- 기부생일카드
- 기부자 브로셔/ 벽
- 할인혜택/ 멤버십
- 입장권/ 단체서비스
- 명칭부여
- 기부자 네트워크
- 기부선물 패키지
- 유명인의 감사인사... etc



기부자와 명분에 쇠척화된
 모금상품은 무엇인가?





✓ F2F를 성공시키기 위한

The Seven Right for Successful Asking : $F(x) = X1 * X2 * X3 * X4 * X5 * X6 * X7$

X1 - Select the right **Solicitor** X2 - To ask the right **Target** X3 - To the right **Time**
 X4 - For the right **Amount** X5 - In the right **Way** X6 - For the right **Reason** X7 - With right **Luck**

- X1 - 올바른 기부요청자
 영업장의 특성을 활용, 소비자 혹은 게이트 오픈너를 활용, 접근
 "인근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이라고 추천받고 왔습니다"
- X2 - 올바른 타겟기부자
 단골가게, 수익성이 확인된 영업장, 상가번영회 등 참여 영업장 등 선택
- X3 - 올바른 시간
 영업장의 특성상 바쁜시간 피함 - 식당이라면 점심과 저녁사이 3~4시 방문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사시기와 연결하면 좋음



● X4 - 올바른 기부요청액

기부클럽은 일반 모금과 달리 회원가입 형태로 통일된 일정 금액을 제안해야 함
 소규모 자영업장의 지불 능력을 조사한 결과 매월 2~3만원이 적당할 것.
 단, 매월 균등 지불방식과 연간 일시불 방식을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

● X5 - 올바른 제안 방법

상가번영회, 정당, 로터리 클럽 등 게이트 오프너 역할을 해줄 리더십을
 통한 접근채널 확보가 CSF가 될 것. 또한 모금가 역할자를 확보, 그들 네트워크
 를 공략하는 방식도 중요.

● X6 - 올바른 명분방법

내적 명분과 공적 명분을 구분할 필요. 공적명분은 아동지원의 가치. 그러나
 내적 명분은 자영업사장님들의 욕구 - 영업, 자존감 강화 -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회원특전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관장, 국회의원 등 리더와의 정기적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 100명 제한된 기부클럽이라는 메시지를 통한 자존
 감 강화가 요구됨.



sample

모금가 및 관계망을 활용한 잠재지부자 개발표

모금가	스타트 모금가의 관계	정기기부자 예상목표	일시기부자 예상목표	현물기부자 예상목표	예상목표금액
		※ 예: 10명x1만원x12개월 = 120만원 (정기기부부는 1년치 합산)	※ 예: 10명x3만원 = 30만원	※선물기기1x5만원(소비자가)	※ 예: 120+30+5=155만원
	본인				
총인원		소계	소계	소계	총계



9. 운영계획

① Budget & Cost - 전체예산과 항목별 비용

인건비/ 행사비/ 교통비/ 물품구입비/ 우편발송비/ 인쇄비/ 제작비/ 진행비/ 온라인, 모바일운영비/ 기부선물비/ 기부자관리시스템비/ 장비사용료/ 임대비/ 회계처리비/ 로열티/ 세금/ 홍보진행비/ CMS 등 금융비/ 예비비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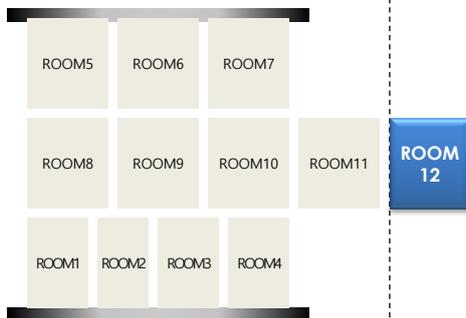
② Organization - 모금조직

담당/ 이사회/ 후원회/ 자원봉사/ 프로보노/ 파트너 etc

③ Schedule - 운영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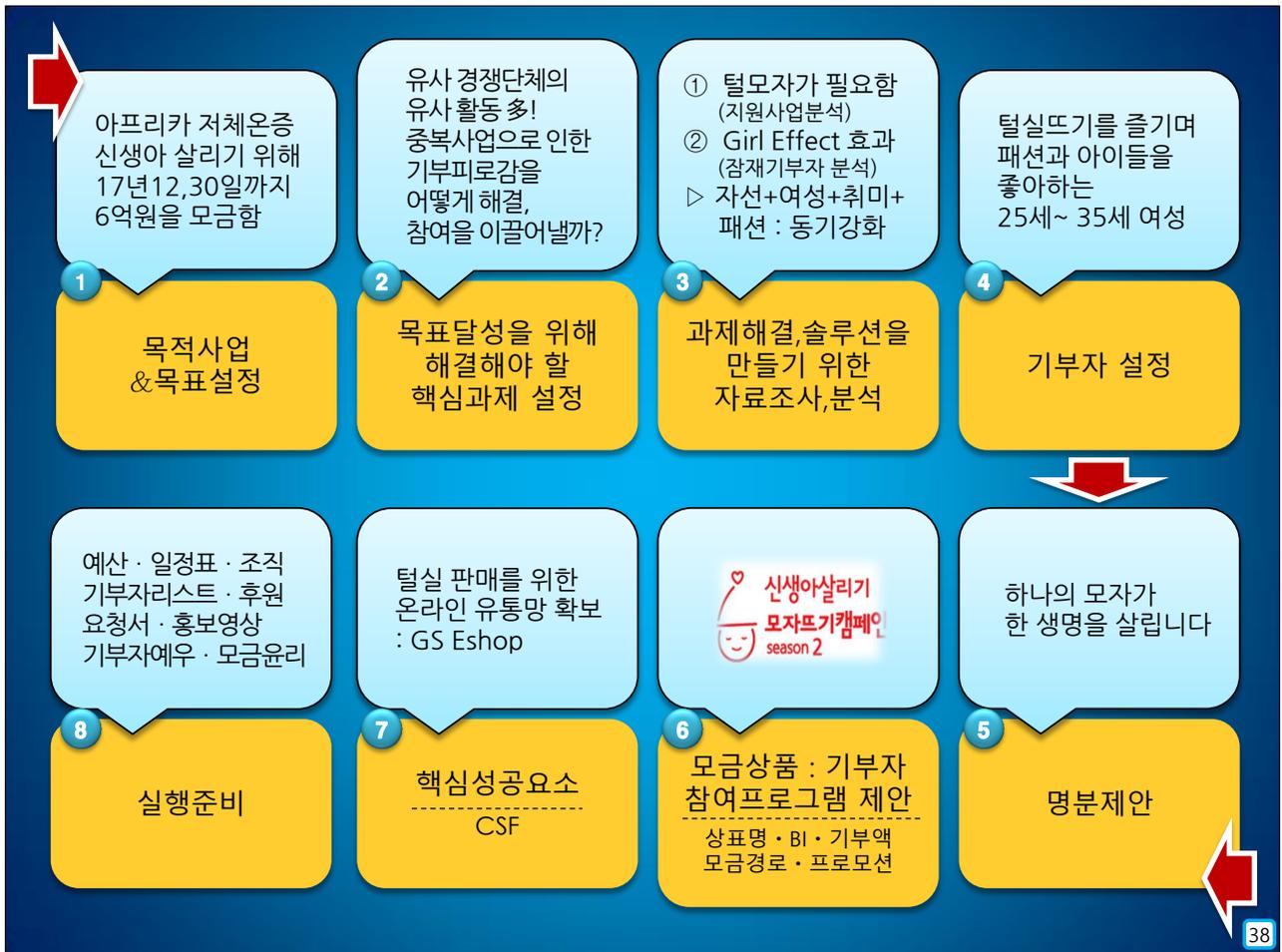
④ Code of Ethics - 모금윤리

기부처 윤리기준/ 기부금사용 윤리기준/ 기부금사용 보고기준/ 기부자, 수혜자 보호윤리기준 /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부분 etc



1. 잠재기부자 List - 모금인력별 기부자 할당
2. 모금브로셔 - CMS정기기부자용. A3 혹은 4절지 추천
3. 굿사장님저금통 - 일시기부자용. 저금통에 넘버링과 이름기입
4. 행사기획 - 굿사장님 프로젝트에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이벤트. 브로셔에 기입하고 기부자 설득용으로 활용 - 샘플: 우리동네 기네스 대회 등
5. 굿사장님인센티브 - 굿사장님 클럽에 가입할 경우 얻게 되는 인센티브 계획. 관내 기관장 등 리더십과의 만남자리 주선 등이 효과적





체험 프로그램 방식 : Photo			
budget cost 모금비용 : 인건비 인쇄비 제작비 진행비 행사비 교통비 물품구입비 우편발송비 기부선물비 진행비 CMS금융비 etc	모금방식 A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참여형 행사 : 자선 사진전 기획 사진출품과 기부요청 병행 ○ 개인소액기부 + 꿈카프로젝트 준비위원회 방식참여제안 방식의 고액기부 	핵심성공요인/전략 CSF or STRATE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을 유인할 (사전) 사진연출 ○ 기부자대상별 리더그룹/ 유명인 사진 확보 ○ 단체(기업)의 조직관리 프로그램으로 접근 	
	명분 VALUE PROPOSITION 잊었던 꿈을 사진에 담은 순간, 한 아이의 꿈이 응원됩니다		income 모금 수익 material 잠재기부자 리스트 모금브로셔 모금홍보영상 기부자예우 etc organization 지불방식 : • cms 등 모금조직 : • 디렉터 • 팀원 • 자봉 • 멘토 운영스케줄 etc
	타겟 기부자 TARGET DONORS 주위지인 / 아동센터 주변 자영업장 사장 / 청주지역 기업		
	과제해결방안 SOLUTION ① 겨울캠프 프로그램, 기부자와 소통할 1차 공유 키워드 - 여행 ② 여행가서 하는 활동들을 조사해 보니 : 사진찍기(2차 키워드) ③ 사진 활용 캠페인을 조사해보니(벤치마킹 사례) :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 - 저소득 아이들에게 1달러 카메라를 선물, 자신의 꿈을 짚게하는 미션 제안 ④ 당신(기부자)에게 '한 장의 사진에 당신이 있고 있던 꿈을 담을 수 있다면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질문 한다면? ⑤ 사진이라는 경서적 매체와 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기부자와 수혜자가 소통하는 사진전 기획 ⑥ 모금 프로그램 제목 -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		
	과제 TASK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잠재기부자의 일반적 무관심. 또한 시급성, 절실성이 부족한 캠프(여행)프로그램의 소구력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목적 및 목표 GOAL & OBJECTIVE oo 지역아동센터 연합팀의 겨울캠프 지원을 위해, 2016년 10월 20일까지, 1,500만원을 모금함		

기획모델4.4 - 체험 프로그램 방식 : Nude			
budget cost 모금비용 : 인건비 인쇄비 제작비 진행비 행사비 교통비 물품구입비 우편발송비 기부선물비 진행비 CMS금용비 etc	모금방식 ACTIVITY ○ SNS 캠페인 : ○ 기부 요청자의 누드사진을 활용한 SNS 릴레이 모금 - "옷 좀 입혀주세요" 라는 워딩라인을 통해 관심유도	핵심성공요인/전략 CSF or STRATEGY ○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진연출 ○ 잠재기부자대상 - SNS 관계망 확보 ○ 다수의 기부요청자 확보	income 모금 수익 material 잠재기부자 리스트 모금브로셔 모금홍보영상 기부자예우 etc organization 지불방식 : • cms 등 모금조직 : • 디렉터 • 팀원 • 자봉 • 멘토 운영스케줄 etc
	명분 VALUE PROPOSITION 우리에게 패션이지만, 독거노인에게 생명이입니다.		
	타겟기부자 TARGET DONORS 1차 - 주변 지인 / 2차 - SNS 관계망을 통한 지인		
	과제해결방안 SOLUTION ① 소외계층의 난방비/용품 → 따뜻한 온기 → 상경물 : 옷 → Fashion → 생명 : 일반인에게 패션이지만 소외계층에게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일깨우는 메시지 전략으로 잠재기부자의 감성을 자극. ② 성공한 국내외 공익캠페인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 즐거움. Fun : '아이스버킷챌린지' '더티워터 캠페인' 등 → ①+② : Naked/누드 이미지를 활용, 패션과 생명을 재미있게 연결해주는 캠페인 기획, 잠재기부자 참여를 유인. ③ 본 모금프로그램 이름 : OOO, 옷 입이기 캠페인		
	과제 TASK 복지기관 및 NGO의 중복사업으로 인한 기부피로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 잠재기부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까?		
	목적 및 목표 GOAL & OBJECTIVE 동절기. 소외계층 겨울나기용 난방용품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해 2016년 10월 31일까지, 2,000만원을 모금함		
			



동절기우리아웃을위한후원캠페인

우리가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우리에게는 패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입니다

신협 131-015-176166 예금주: 양평평화의집
 나눔 문의 031)774-9901

미경이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우리에게는 **파헤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입니다

기업은행 111-137121-04-013
 예금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나눔 문의 031)548-5610

슬기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우리에게는 **파헤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입니다

농협 301-0068-6555-51
 예금주: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나래울
 나눔 문의 031)8015-7482

우리가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우리에게는 **파헤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입니다

신협 131-015-176166 예금주: 양평평화복지회
 나눔 문의 031)774-9901

성철이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우리에게는 **파헤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입니다

기업은행 336-050299-01-054
 예금주: 버드내노인복지회관
 나눔 문의 031)547-6221

동구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우리에게는 **파헤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입니다

농협 355-0001-0881-73
 예금주: 화성아름마을

나눔 문의 031)355-7520-2